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한국은행

머리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94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처음으로 펴낸 후 2004년에는 2차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CLS 시스템이 가동되어 외환결제에도 동시결제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선진형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이 성공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직접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통합도산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의 제정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관련된 법적 기반도 확충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및 금융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지급결제 규모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자방식 지급 및 결제의 일반화,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 연계 확대 등으로 인해 한 참가기관 또는 한 시스템에서의 결제 불이행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어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견실한 설계 및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지급결제환경의 변화내용을 반영하고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업무지속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확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거나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금융결제국장 전 한 백

200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I 지급결제제도 개관 1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3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3

제2절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5

제3절 지급결제제도의 분류 7

제2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10

제1절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 10

제2절 지급결제제도와 통화정책 14

제3절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15

제4절 지급결제제도와 경제활동 17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18

제1절 결제리스크의 개요 및 유형 18

제2절 결제리스크의 관리 방안 24

II 지급결제제도 관련법규 및 참여기관 25

제1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정 27

제1절 개요 27

제2절 한국은행법 28

제3절 한국은행 규정 29

제4절 기타 관련법률 33

제2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42

제1절 한국은행 42

제2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45

200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제3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53
제4절 기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56

III 지급수단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59

제1장 지급수단	61
제1절 개요	61
제2절 현금	61
제3절 어음·수표	62
제4절 계좌이체	68
제5절 카드	74
제6절 기타 지급수단	79
제7절 지급수단 관련 금융보안사고 및 대책	84

제2장 거액결제시스템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신한은금융망의 특징	93
제3절 신한은금융망의 일중 결제유동성 조절수단	98
제4절 업무내용	101
제5절 운영 및 관리	109
제6절 거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13

제3장 소액결제시스템	117
제1절 개요	117
제2절 어음교환시스템	119
제3절 지로제도	132
제4절 은행공동망	147
제5절 신용카드결제시스템	169
제6절 기타 소액결제시스템	172

제7절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82

제4장 증권결제시스템 194

제1절 개요	194
제2절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201
제3절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205
제4절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206
제5절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207
제6절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210
제7절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시스템	213
제8절 증권결제리스크의 관리	217

제5장 외환결제시스템 226

제1절 개요	226
제2절 외환결제의 유형	227
제3절 CLS시스템	230
제4절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	235

IV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241

제1장 개 요 243

제1절 감시의 의의	243
제2절 감시의 법적근거	248
제3절 감시대상	249

제2장 감시업무 253

제1절 모니터링	253
제2절 지급결제통계 수집 및 분석	256
제3절 평가	257
제4절 개선권고 등의 조치	261

200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V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263

제1장 개 요	265
제1절 개념	265
제2절 필요성	266
제3절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	267

제2장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269
제1절 신한은금융망	269
제2절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 BCP 공조	275

VI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와 과제 277

제1절 지급결제분야별 발전동향	279
제2절 지급결제관련 국제기준의 신규 제정 및 강화	287
제3절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및 과제	289

〈부 록〉	299
1. 지급결제제도 연대표	301
2. 국제기준	324
3. 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341
4. 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344

〈색 인〉	353

표차례

〈표 Ⅱ-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	27
〈표 Ⅱ-2〉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관련 법률 현황	36
〈표 Ⅲ-1〉 어음·수표의 요건	64
〈표 Ⅲ-2〉 자기앞수표 자금조정방식 비교	66
〈표 Ⅲ-3〉 수표별 주요특징 비교	68
〈표 Ⅲ-4〉 CMS 출금이체와 지로 자동계좌이체 비교	71
〈표 Ⅲ-5〉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실적	73
〈표 Ⅲ-6〉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	74
〈표 Ⅲ-7〉 신용카드의 종류	75
〈표 Ⅲ-8〉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비교	78
〈표 Ⅲ-9〉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실적	79
〈표 Ⅲ-10〉 국내 전자화폐 현황	80
〈표 Ⅲ-11〉 전자화폐 발급현황 및 이용실적	80
〈표 Ⅲ-12〉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현황	81
〈표 Ⅲ-13〉 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84
〈표 Ⅲ-14〉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87
〈표 Ⅲ-15〉 전자자금이체 한도	87
〈표 Ⅲ-16〉 신한은금융망 자금종류별 결제규모	91
〈표 Ⅲ-17〉 결제시스템 및 결제계좌별 대상업무	94
〈표 Ⅲ-18〉 신한은금융망의 지정처리시점	97
〈표 Ⅲ-19〉 지정처리시점에서의 결제순서	98
〈표 Ⅲ-20〉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100
〈표 Ⅲ-21〉 신한은금융망의 취급업무	103
〈표 Ⅲ-22〉 신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 확대 추이	104
〈표 Ⅲ-23〉 신한은금융망 가입기준	109
〈표 Ⅲ-24〉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수 추이	110
〈표 Ⅲ-25〉 신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추이	111
〈표 Ⅲ-26〉 신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112
〈표 Ⅲ-27〉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118
〈표 Ⅲ-28〉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시행	128
〈표 Ⅲ-29〉 이미지 정보표준(안)	130
〈표 Ⅲ-30〉 지로 이용현황	133
〈표 Ⅲ-31〉 일반이체 이용현황	138

200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표차례

〈표 Ⅲ-32〉 자동이체 이용현황	142
〈표 Ⅲ-33〉 타행환공동망 이용현황	150
〈표 Ⅲ-34〉 CD공동망 운영시간 변경 추이	152
〈표 Ⅲ-35〉 CD공동망 이용현황	154
〈표 Ⅲ-36〉 CD/ATM 설치현황	155
〈표 Ⅲ-37〉 CMS공동망 이용현황	160
〈표 Ⅲ-38〉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 추이	169
〈표 Ⅲ-39〉 신용카드 이용현황	172
〈표 Ⅲ-40〉 담보증권 납입비율 변경 추이	189
〈표 Ⅲ-41〉 담보증권 납입규모 추이	190
〈표 Ⅲ-42〉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주요 내용	193
〈표 Ⅲ-43〉 증권결제 방법의 분류	195
〈표 Ⅲ-44〉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및 거래대상 증권	197
〈표 Ⅲ-45〉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개요	201
〈표 Ⅲ-46〉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개요	209
〈표 Ⅲ-47〉 주식기관투자자결제와 장내시장결제간 비교	211
〈표 Ⅲ-48〉 증권결제리스크의 유형 및 관리	219
〈표 Ⅲ-49〉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의 비교	222
〈표 Ⅲ-50〉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의 비교	223
〈표 Ⅲ-51〉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225
〈표 Ⅲ-52〉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추이	232
〈표 Ⅲ-53〉 CLS시스템 참가현황	232
〈표 Ⅳ-1〉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과의 차이점	247
〈표 Ⅳ-2〉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250
〈표 Ⅳ-3〉 지급결제통계 현황	257
〈표 Ⅳ-4〉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주기	259
〈표 Ⅳ-5〉 평가등급의 구분	260
〈표 Ⅳ-6〉 개선권고사항 분류	261
〈표 Ⅴ-1〉 비상상황의 구분	271
〈표 Ⅵ-1〉 주요국의 RTGS시스템 도입 시기	280
〈표 Ⅵ-2〉 주요국의 혼합형결제시스템 도입 사례	282

그림차례

〈그림 Ⅱ-1〉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52
〈그림 Ⅲ-1〉 약속어음 견양	64
〈그림 Ⅲ-2〉 수표 견양	67
〈그림 Ⅲ-3〉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	91
〈그림 Ⅲ-4〉 결제시스템의 보유 유동성수준과 결제소요시간과의 관계	114
〈그림 Ⅲ-5〉 부도어음 업무처리절차	124
〈그림 Ⅲ-6〉 어음·수표 교환업무 흐름 비교	129
〈그림 Ⅲ-7〉 전자정보교환 업무흐름	131
〈그림 Ⅲ-8〉 각종 지로장표	136
〈그림 Ⅲ-9〉 일반이체 업무처리절차	139
〈그림 Ⅲ-10〉 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140
〈그림 Ⅲ-11〉 납부자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144
〈그림 Ⅲ-12〉 대량지급 업무처리절차	145
〈그림 Ⅲ-13〉 인터넷지로 업무처리절차	146
〈그림 Ⅲ-14〉 창구의뢰시 타행환업무 처리절차	149
〈그림 Ⅲ-15〉 CD공동망의 현금인출 업무처리절차	153
〈그림 Ⅲ-16〉 점포외 CD네트워크 구성도	156
〈그림 Ⅲ-17〉 직불카드공동망 업무처리절차	157
〈그림 Ⅲ-18〉 CMS출금이체 업무처리절차	161
〈그림 Ⅲ-19〉 CMS입금이체 업무처리절차	162
〈그림 Ⅲ-20〉 전자화폐공동망 업무처리절차	166
〈그림 Ⅲ-2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처리절차	168
〈그림 Ⅲ-22〉 전자금융공동망 이용현황	168
〈그림 Ⅲ-23〉 BC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170
〈그림 Ⅲ-24〉 전문카드사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171
〈그림 Ⅲ-25〉 전자외상매출채권 업무처리절차	174
〈그림 Ⅲ-26〉 입찰 수수료·보증금 납부 서비스 절차	176
〈그림 Ⅲ-27〉 납품대금 지급서비스 절차	177
〈그림 Ⅲ-28〉 신용카드PG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179
〈그림 Ⅲ-29〉 계좌이체PG(금융결제원)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179

2009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그림차례

〈그림 Ⅲ-30〉 통신과금서비스(무선전화결제)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180
〈그림 Ⅲ-31〉 순채무한도 설정규모 추이	188
〈그림 Ⅲ-32〉 증권결제 흐름도	194
〈그림 Ⅲ-33〉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시스템 개요	200
〈그림 Ⅲ-34〉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202
〈그림 Ⅲ-35〉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	204
〈그림 Ⅲ-36〉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05
〈그림 Ⅲ-37〉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207
〈그림 Ⅲ-38〉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08
〈그림 Ⅲ-39〉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	209
〈그림 Ⅲ-40〉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11
〈그림 Ⅲ-41〉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	212
〈그림 Ⅲ-42〉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214
〈그림 Ⅲ-43〉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	227
〈그림 Ⅲ-44〉 CLS시스템의 원/달러거래 결제과정	234
〈그림 Ⅲ-45〉 외환결제과정에서의 결제리스크 발생단계	236
〈그림 Ⅳ-1〉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	258
〈그림 Ⅳ-2〉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업무흐름도	260
〈그림 Ⅵ-1〉 거액결제시스템 발전 과정	281
〈그림 Ⅵ-2〉 CLS은행의 결제규모 추이	283
〈그림 Ⅵ-3〉 주요국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규모 추이	284
〈그림 Ⅵ-4〉 지급결제 규모의 증가 추이	290
〈그림 Ⅵ-5〉 장표방식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비중 추이	291
〈그림 Ⅵ-6〉 상호의존성의 유형	292

참고차례

〈참고 I-1〉 영란은행의 발전과정과 지급결제제도	12
〈참고 I-2〉 미국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배경	13
〈참고 I-3〉 지급결제관련 국제협력	16
〈참고 I-4〉 주요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	22
〈참고 II-1〉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35
〈참고 II-2〉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37
〈참고 II-3〉 별도 지급결제관련법 제정 국가	39
〈참고 III-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115
〈참고 III-2〉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181
〈참고 III-3〉 증권대금 동시결제	196
〈참고 III-4〉 CCP	198
〈참고 III-5〉 CSD	199
〈참고 III-6〉 주요국의 증권결제시스템	215
〈참고 III-7〉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229
〈참고 III-8〉 BIS CPSS의 외환결제리스크 서베이 결과	238
〈참고 IV-1〉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장실패	244
〈참고 IV-2〉 지급결제시스템 상호의존성	251
〈참고 IV-3〉 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예시)	255
〈참고 VI-1〉 유로지역의 SEPA 추진배경 및 현황	286
〈참고 VI-2〉 영·미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 강화 내용	295

I 지급결제제도 개관

-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 제2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일반 국민들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음·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하거나 개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지급수단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는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예금계좌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수취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는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틀림없이 자금이 이전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 이외의 수표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급(payment)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취하는 과정으로서 지급결제의 시작 단계이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주거나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 house)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이다.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이 경우의 결제과정을 좁은 의미의 결제라고 한다. 결제는 단순히 자금이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이체되는 단순형 결제와 금융자산과 자금의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

for-value) 결제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통상 단순형 결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가치교환형 결제는 거래의 구성요소인 화폐의 지급(또는 화폐적 가치의 이전)과 대상 물건의 인수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 예로는 외환거래에서 이중 통화의 동시 인수도(외환동시결제, PVP)¹⁾나 증권거래에서 자금과 증권의 동시 인수도(증권대금동시결제, DVP)²⁾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같은 참여기관, 업무처리규정, 그리고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구체화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

- 1)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시스템은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결제방식으로서 현재 미국 뉴욕소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CLS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2)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자금이체시스템과 중앙예탁기구의 증권계좌대체(book-entry)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손실위험(증권결제리스크)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제적으로도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표준이기도 하다.

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발행기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방법 및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결제시스템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참여기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자금이체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과정에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어음·수표나 신용카드, CD/ATM, 계좌이체 등의 지급서비스)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기확정된 금액 내역을 송부받아 그 금액을 결제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각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간에 이체시킴으로써 모든 지급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결제기관 또는 결제은행의 역할은 예금수취기관들의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고 결제자금 부족시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이 결제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지급, 청산 및 결제와 관련된 전자적인 정보를 송수신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지급결제정보의 이전을 위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급결제제도에서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무처리규정)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규정 또는 표준적인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로서 중앙은행이 정한 규정이나 참가기관인 개별 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의 감독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각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다.

제3절 지급결제제도의 분류

지급결제제도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은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한은 금융망(BOK-Wire+), 일본은행의 RTGS-Xg,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의 TARGET2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결제시스템은 민간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서 운영주체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가 증권결제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킨 차액으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지

급지시 건별로 총액으로 결제되는지에 따라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ment system),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간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한 다음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의 순포지션은 해당 금융기관이 수취한 지급지시 금액의 합계에서 그 금융기관이 보낸 지급지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이러한 차액 금액의 산출이 두 참가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를 양자간 차감계산(bilateral netting),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전체 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를 다자간 차감계산(multilateral netting)이라고 한다. 반면 총액결제시스템은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총액결제시스템의 장점인 거액자금의 신속한 결제와 차액결제시스템의 장점인 결제자금의 절감을 함께 구현하는 결제시스템이다. 혼합형 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들의 지급지시를 수시로 모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일중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실행되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지정시점결제(designated-time settlement)시스템³⁾과 실시간결제(real-time settlement)시스템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차액결제시스템의 대부분은 지정시점결제시스템이며 지정시점에 지급은행이 보유한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수취은행의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결제가 완료된다. 실시간결제시스템은 가동시간 중에 이체지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과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

3)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정시점(designated-time) 대신 지연(deferred)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거액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통상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국채의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 외환거래 등의 결제가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제는 대부분 건당 금액이 크고 결제시점의 중요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신한은금융망,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결제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은 점이 특징이다. 주로 신용카드, 수표, 계좌이체,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제2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제1절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은 법정통화의 발행, 금융기관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의 제공 등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간의 금융거래나 금융기관간의 채권·채무가 화폐 또는 중앙은행의 예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제된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두 가지 핵심기능인 통화가치(또는 물가)의 안정과 금융안정은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로부터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시 금·은, 주화 등의 정화(正貨) 또는 어음, 수표 등이 이용되거나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은행권이 사용되었다. 이 때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은행권을 최종결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담당자들이 상대은행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되는 정화를 들고 각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공동으로 청산소(clearing house)를 설립하여 결제에 필요한 준비금을 청산소에 예치하고 청산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결제함으로써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청산소 또는 은행간 자금결제를 담당하는 대형 상업은행은 긴급유동성 제공, 회원은행 감독 등과 같은 현대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청산소는 회원은행만을 위해 조직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지 못하였고 일

부 회원은행이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즉 민간 청산소나 상업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제도는 은행들간의 이익상충이나 최종대부자 기능의 미비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법정통화를 발행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지급결제자산을 공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 등이 지급결제자산으로 사용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발권력을 이용하여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기능⁵⁾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안정을 본연의 책무로 부여받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4) 상업은행들이 발행한 초기의 은행권들은 대부분 태환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일반적 통용력에 한계가 있어 그 유통지역이 제한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신용도를 지닌 대형 상업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사용범위는 점차 확대되면서 동 대형은행이 일반적 통용력을 갖는 화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모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 5) 최종대부자 기능이란 예금인출사태,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금융시장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은행이 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중개기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란은행의 발전과정과 지급결제제도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당초 대형 상업은행이었으나 사회적 신용을 바탕으로 독점적 발권력을 획득한 이후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란은행은 각종 전쟁으로 재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다. 영란은행은 그 대가로 당시의 은행권 발행규모에 비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타 상업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정부와 상인은 물론 상업은행들까지 영란은행에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상호 거래를 결제하게 되었으며, 영란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상업은행들이 타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각기 모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특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어음을 교환함으로써 런던어음교환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영란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시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현대적 중앙은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배경

미연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1907년에는 은행 및 수표청산소가 일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의 결제를 거부한 것이 금융공황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국가통화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는 1907년 금융공황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2가지를 지적하였다.

- i) 비상시 동일지역내 금융기관의 현금지급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과 수표청산소 관할지역 밖에 있는 은행들간의 협조수단 미비
- ii) 지역간 수표교환을 실시하거나 금융공황시 수표교환시스템의 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

미 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13년 연준을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¹⁾을 제정하여 연준과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어 1987년에는 자금결제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²⁾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연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 1) 연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연준의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2) 연준이 처리하지 않는 수표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연준에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예금취급기관이 고객계좌에 수표대금을 입금할 때까지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였다.

제2절 지급결제제도와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대출, 국공채 매매 등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및 증권 결제시스템 등에서의 자금이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파급되므로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채권 채무관계의 종결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당좌예금(지급준비금)을 이전하는 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차적으로 전달되는 경로이다. 따라서 동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은행간 지준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컨대 RP 거래를 통한 단기 유동성 조절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은행간 지준결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액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도 원활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은 통화정책의 1차적 전달경로인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편 지급수단의 안전성 및 효율성도 통화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주체들의 지급수단 이용관행이 달라지면서 지급수단간의 대체관계 및 이에 따른 통화수요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무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져 금융불안을 예방하거나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무난히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참가기관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유동성 부족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종대부자 기능을 발휘하여 결제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의 견실한 설계 및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감시업무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 증대로 특정 금융시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불안 등이 전체 금융시장 또는 다른 국가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관련 국제협력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지급결제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이다.

BIS의 CPSS는 2001년 1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10대 원칙과 중앙은행의 4대 책무가 수록되어 있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11월에는 IOSCO와 함께 각국의 증권결제시스템이 주식, 회사채, 국채, 단기금융시장상품 등을 결제할 때 충족해야 할 최소 기준인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를 공표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동 원칙들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포함시켜 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즉 결제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8개국¹⁾ 중앙은행과 함께 CPSS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동 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 제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중앙은행간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정책수행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EMEAP²⁾의 지급결제제도 Working Group과 SEACEN³⁾의 지급결제국장회의 등을 통해 지급결제관련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간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멕시코

2)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 Pacific Central Banks)

3) 동남아중앙은행기구(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시장경제에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 및 금융활동은 지급수단이나 결제과정을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급결제제도와 경제성장이나 금융제도의 발전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역규모가 늘어날수록 지급결제제도가 발전하고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록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예컨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간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반면 지급결제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지연되거나 금융제도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수단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거래비용이 높은 현금 이용이 증가하거나 물물교환이 늘어나게 되면 결제자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은 중앙은행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다.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제1절 결제리스크의 개요 및 유형

1. 개요

결제리스크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자화(電子化) 및 다양한 지급수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간 및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고,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도 높아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 급속히 파급되어 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이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다양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1994년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이체와 관련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거래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가동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순채무한도제, 사전담보제 및 손실공동분담제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11월부터는 장외채권 등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부터는 외환거래의 동시결제가 가능하도록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과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PvP)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 4월에는 금융기관들이 일중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상계결제기능을 추가한 신한은금융망을 가동하는 등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결제리스크의 유형

결제리스크는 결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거래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차이, 결제방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시점 또는 특정시점에 결제대금 전액을 완전히 결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며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로 나누어진다.

원금리스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도와 거래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부담하게 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권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증권의 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국가간 결제시간대가 다른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금리스크로 인한 손실 범위에는 거래원금 전체가 해당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거래당사자 일방의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원래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외환 또는 증권 거래시 계약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대체비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입자가,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도자가 각각 대체비용리스크에 노출되며 외환거래에서는 가치가 상승한 외환의 매입자가 대체비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대체비용리스크의 크기는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외환 등의 가격 변동성과 결제기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지는 반면 손실의 범위는 당초 계약보다 높아진 비용에 한정된다.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단기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예정된 시간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한편 유동성리스크는 결제시점 이후에라도 원금 전액이 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리스크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동성리스크는 다른 계약의 불이행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내부통제의 결함, 전산시스템 운영자의 업무 미숙이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전산 및 통신 장애, 또는 태풍·지진·화재·전력공급 중단 등과 같은 재해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인력의 감염 등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전자방식의 실시간 자금이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실시간 자금이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급진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의 부족, 담당 직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은행은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보강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리스크)

법률리스크는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제가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률, 운영기관의 규칙 또는 참가기관간 협약 등이 미비한 경우나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책임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리스크)

시스템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특정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또는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제리스크를 말한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되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참가기관 또는 시장의 리스크가 다른 시장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리스크는 실제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리스크의 방지를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른 참가기관으로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은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 I-4

주요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

□ Herstatt은행 사건(1974년 6월)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프랑크푸르트 시간) 독일 Herstatt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청산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Herstatt은행과 마르크화를 매도하고 미달러화를 매수하는 거래를 체결한 은행들은 마르크화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약 2억달러로 추정)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후 외환결제시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리스크를 Herstatt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 BONY 사건(1985년 11월)

1985년 11월 증권달러를 위해 증권의 인수도 및 자금결제를 수행하던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에서 시스템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증권결제 지급지시의 송신이 중단되었으며, 증권수취(자금지급)만 일방적으로 늘어나 뉴욕은행의 뉴욕연준 계좌에 거래의 잔액 부족이 발생했다. 뉴욕은행은 잔액 부족을 메우기 위해 뉴욕연준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일중대출과 230억 달러의 익일물 대출을 받고서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 뉴욕 대정전(1990년 8월)

1990년 8월에 뉴욕 월가에 대정전이 발생하여 금융시장과 결제시스템이 수일에

걸쳐 영향을 받아 운영리스크가 현재화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시스템 가동이 정지되거나 결제업무에 지장을 받은 은행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변동했다. 뉴욕 연준은 자가발전기를 가동시켜 Fedwire를 운영하였지만 정전 4일째에는 자가발전기도 고장나 뉴욕시 교외에 있는 백업 센터를 가동시켜 Fedwire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 BCCI 사건(1991년 7월)

199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아랍계 은행 BC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가 장기간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유럽 각국의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동결이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BCCI의 해외지점 자산도 동결되어 이 은행과 외환거래를 하고 있던 일본계 은행이나 영국은행 등이 매수통화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계은행들은 엔화 매도·달러화 매수 거래에서 이미 엔화를 지불하고도 달러화를 수취하지 못해 원금상당액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Herstatt리스크가 실제 발생한 사례이다.

□ 베어링 사건(1995년 2월)

1995년 2월 영국 베어링은행(Baring Brothers)의 파산은 EBA(Euro Banking Association)가 운영하고 있던 ECU결제시스템(ECU clearing)에 장애를 일으켰다. 베어링은행과 외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은행이 2월 24일 베어링은행의 환거래은행에 27일자로 베어링은행에 ECU(European Currency Unit)¹⁾를 지급하는 지급지시를 보냈다. 그러나 26일 베어링은행에 파산 관재인이 임명되었고, 이에 거래상대방 은행은 지급지시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상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반대거래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베어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상대방 은행은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액결제 포지션을 해소하여야 했으며, 이로써 ECU결제시스템에서 당일 최종결제가 실행되지 않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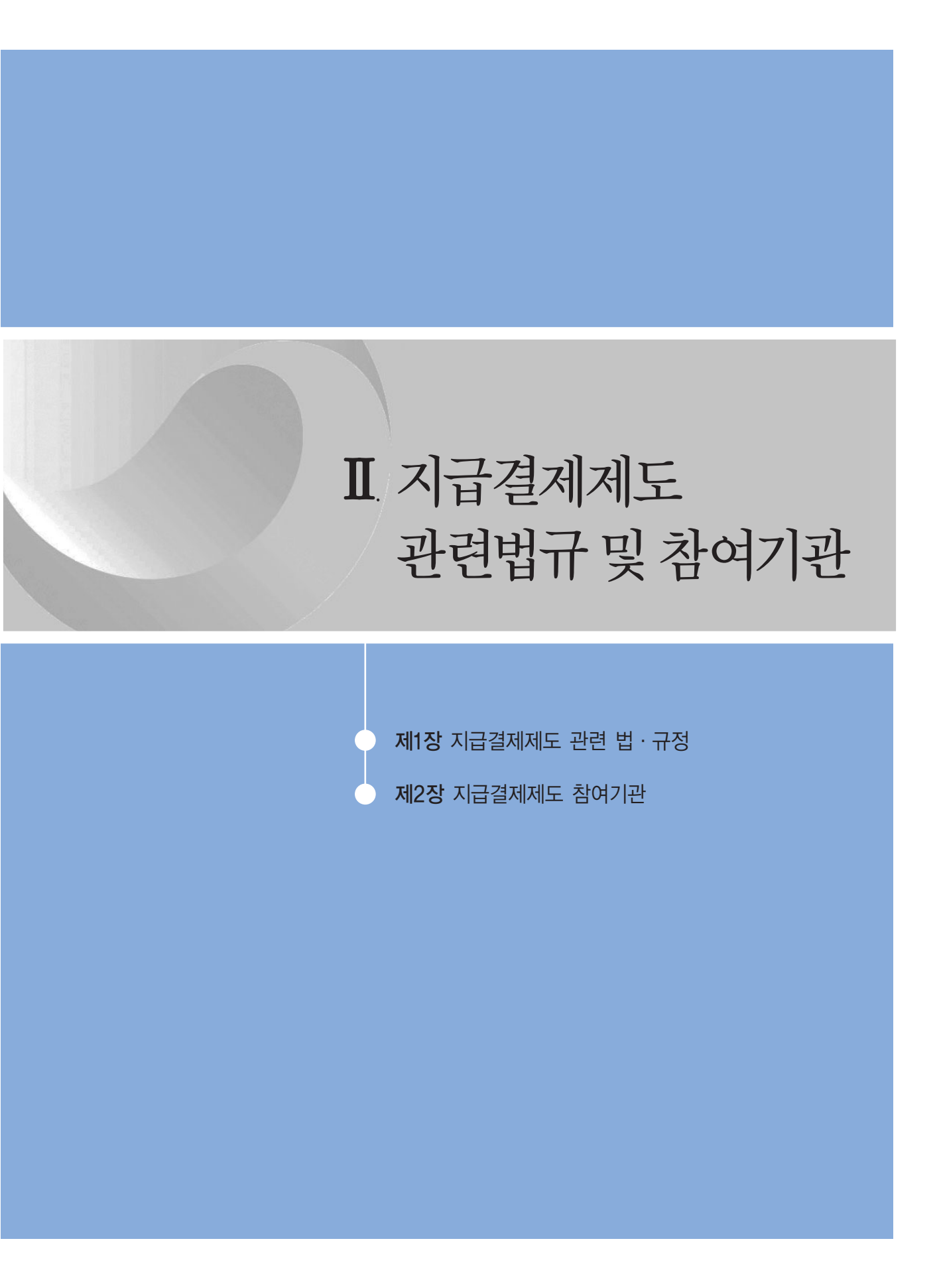
주: 1) European Currency Unit(유럽통화단위)는 1979년 3월 13일에 도입되어 1999년 1월 1일까지 유럽공동체의 통화단위로 사용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 유로화로 대체되었다.

제2절 결제리스크의 관리 방안

결제리스크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질적·양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제리스크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등이 결제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제리스크는 결제금액이 클수록, 결제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이나 결제시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줄여야 한다. 결제금액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차감계산(netting)이 널리 사용된다. 차감계산을 사용할 경우 결제건수를 줄여 결제정보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종 결제되는 금액을 감소시켜 유동성리스크도 감축시킬 수 있다. 한편 결제시간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지급지시와 동시에 결제를 완결시키는 실시간(real-time) 결제가 있다.

결제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 측면과 시스템 참가기관 측면에서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 발생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제한하거나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중에 유동성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의 발생이 결제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스템 측면의 관리방안에 해당된다. 개별 참가기관 측면의 경우 참가기관간 자금이체가 완결된 이후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제도 이외에 여타 금융기관과의 유동성 공급협약 등을 통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감축시킬 수 있다. 운영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내부의 리스크 관리절차 마련, 백업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Ⅱ. 지급결제제도 관련법규 및 참여기관

- 제1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정
- 제2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제1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정

제1절 개 요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되는 법제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법적 환경에 따라 일반법, 특별법, 지침, 명령, 규정, 규약, 협약, 약관, 판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로는 거래 또는 이에 따른 결제 내용, 지급수단의 발행과 유통,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및 기타 결제완결성 보장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표 II-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

내 용		법 률
거래 관련	일반 상거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 관련	어음, 수표	어음법, 수표법
	전자자금이체 및 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직불·선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시업무 관련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및 감시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결제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중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업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주체를 한국은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및 그 하위규정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다.

제2절 한국은행법

과거 명확하지 않았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 및 감시기능은 2003년 9월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결제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가 여타 선진국 수준의 한층 진전된 법적 제도적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신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중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신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신한은금융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관련 감독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자료 수집, 평가 및 개선 유도 등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은행 이외에 신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가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3절 한국은행 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⁶⁾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

1.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의 목표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장에서는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지급수단은 그 소지인 또는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

6) 지급결제제도 관련 한국은행의 규정체계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현금 외의 모든 장표 또는 전자적 방식의 수단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 및 소액 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은 물론 신용카드, 전자화폐, 모바일 지급수단 등과 관련한 지급결제메커니즘도 하나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감시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 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의 목표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의 목표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제2장 및 제5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신한은금융망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금융망의 취급업무는 자금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발행·상환 및 한국은행 대출 관련 자료의 송수신 등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으로서 일정한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위한 약정체결 등 관련절차를 명시함과 아울러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이 신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도 규정하였다.

그밖에도 신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의 실시 근거, 신한은금융망 이용관련 비용의 부담, 전문의 송수신 기준, 자금이체전문의 처리시점, 신한은금융망 이용

관련 사항의 표준화, 참가기관 등의 의무, 전산시스템 장애·재해·파업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신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 확보,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⁷⁾, 신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및 휴무, 규정 등의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먼저 매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심각한 장애·재해·파업·테러 등으로 신한은금융망 자금이체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경우,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신한은금융망 이용을 허용한 경우, 신한은금융망을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한 경우,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케 한 경우,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대응조치를 권고한 경우 및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신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중지 또는 관련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3. 결제리스크의 관리

제3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 및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차액결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규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간에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결제 순채무액⁸⁾

7)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 및 외환동시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8) 미결제 순채무액이란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다른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채무)에서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채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순채권액을 의미한다.

의 상한인 순채무한도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참가기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담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에 대해서는 동 한도의 30%, 순채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도 반기중 차액결제시점별 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⁹⁾ 3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예치토록 하였다. 참가기관이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이행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담보증권을 해당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담보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참가기관이 그 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결제를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2009년 2월 4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차액결제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즉 차액결제참가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차액결제대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기준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차액결제위탁기관인 비은행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차액결제대행과 관련한 담보관리, 결제자금 부족시 차액결제대행은행의 공동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제4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의 범위를

9) 참가기관간 차액정산결과 특정 기관이 여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채권)보다 여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채무)이 많은 경우 그 초과되는 채무금액을 특정기관의 교환순지급금액이라고 말한다.

i)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ii)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iii)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iv)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v)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주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뿐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급결제시스템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을 그 결제규모, 결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의 2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감시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및 「신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운영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제4절 기타 관련법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 먼저 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내용과 관련된 법률로는 일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상법」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결제에 관한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외환결제에 관한 특별법인 「외국환거래법」 등을 들 수 있다.

지급수단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전통적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를 다루는 「어음법」 및 「수표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행과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전자방식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

명법」 등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위 법률중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들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결제완결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있다. 「통합도산법」 제120조 및 제336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¹⁰⁾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청산·결제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10) 2006년 법 제정시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지시·청산·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irrevocable)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지시·청산·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무효화되는 법률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동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2006년 8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 3개 소액결제시스템(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외환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 등 5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은 「통합도산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결제완결성을 보장받고 있다.

표 II-2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관련 법률 현황

	독 일	뉴질랜드	미 국	싱가포르
관련법률	도산법	중앙은행법	파산법, 연방예금보험법, 연방예금보험 공사개선법, 금융계약차액 결제촉진법	지급결제시스템 (결제완결성 및 차액결제)법
입법형태	기존법률 개정	기존법률 개정	기존법률	별도법률 제정
법률 제·개정시기	1999년	2003년	—	2002년
결제완결성 보장내용	지급결제시스템 을 통한 결제의 완결성 보장	지정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결제의 법적 불확실성 제거	특정금융거래에 대해 파산절차의 일반적 적용 배제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성 보장
결제완결성 적용범위	—	지정된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특정금융거래 (스왑, 옵션, 환매계약, 선물환 등)	중앙은행이 지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또는 차액 결제되는 모든 거래
	영 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 주
관련법률	금융시장 및 파산 (결제완결성)규정	법률 210/2001호	청산결제법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 액결제법
입법형태	별도법률 제정	별도법률 제정	별도법률 제정	별도법률 제정
법률 제·개정시기	1999년	2001년	1996년	1998년
결제완결성 보장내용	지정된 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는 파산법 적용을 배제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음을 규정	지정된 결제시스템의 결제규칙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유효함을 규정	파산으로 인해 기 실행된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으로부터 특정 거래를 보호
결제완결성 적용범위	영란은행 및 금 융감독청이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증권 결제시스템 및 청산 시스템	캐나다중앙은행이 지정한 청산결제시스템	승인된 결제시스템 및 다자간 차액결제협약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중앙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감시수단을 부여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EU국가들은 유럽연합 설립 조약과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및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정관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98년 및 2001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기능을 법제화하였다. 프랑스은행법은 프랑스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지급수단에 적용되는 기준의 적합성(pertinence)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은행에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권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1998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을 부여하였다. 일본은행법 제1조는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 간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고사(考査)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제정하면서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역할을 명문화하였다. 은행법은 영란은행에 대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원칙 및 업무규범 제정권, 운영규정 개정요구권 및 승인권,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제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자금결제촉진법 등에서 명시한 은행감독,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의 권한과 운영기관, 참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발표된 금융규제개혁안을 토대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서비

스감시위원회가 연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한 중요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정권, 운영규정 승인권, 자료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 및 제재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법 률		주 요 내 용
프 랑 스	프랑스은행법	- 프랑스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급수단의 안전성 및 지급수단에 적용되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감시하도록 명시
일 본	일본은행법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간의 자금결제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으로 규정 -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신용질서의 유지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 관련 업무의 고사(考査)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고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영 국	은행법	- 영란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및 업무규범 제정권, 운영규정 개정요청권 및 승인권,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현장조사권·시정지시권·제재권 등을 부여
미 국	통화관리법 (Monetary Control Act)	- 연준의 지급결제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 수취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촉진을 연준의 의무로 명시
	자금결제촉진법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 연준에 연방준비은행, 환거래은행,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추심되는 모든 수표의 수납, 지급추심, 청산 등 수표결제제도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을 부여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 연준에 자동교환결제(ACH) 시스템, ATM, 직불카드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

별도 지급결제관련법 제정 국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감시업무의 근거법률이 없거나(캐나다, 홍콩), 중앙은행의 감시내용이 상세하지 않았던 일부 국가(호주, 노르웨이, 싱가포르)에서는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중앙은행에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파산관련 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지급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을 제정하였다.

호주에서는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을 통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였다. 동 법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중앙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급결제분야의 사회적 중요성, 일관성 있는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지급결제시스템법」(Act relating to Payment Systems)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은행간 시스템의 인가 요건, 참가자격 등 은행간 시스템에 대한 규제, 지급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시스템 요건 등 지급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청산·결제약정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2002년 실시된 IMF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의 법률적 근거 도입을 권고받고 2004년 「청산결제시스템법」(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Ordinance)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청산결제시스템의 지정 요건,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완결성 보장,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6년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

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정보요구권, 지정요건, 참가기준 등을 규정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ayment Systems Oversight Act)을 제정하였다.

법 률		주 요 내 용
캐 나 다	지급,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 중앙은행은 청산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도모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권,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 운영 및 참가기관에 대한 시정지시권 등 부여 -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파산관련 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호 주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운영기준 제정 및 지급결제시스템 관련분쟁의 조정 등의 권한 부여 - 중앙은행에 지급수단(가치저장형 지급수단 등)에 대한 감시권한도 부여
노 르 웨 이	지급결제시스템법 (Act relating to Payment Systems)	- 중앙은행에 은행간 시스템에 대한 인가권을 부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설립·운영을 규제 - 중앙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시정지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청산 및 결제약정에 파산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
홍 콩	청산결제시스템법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Ordinance)	- 중앙은행(홍콩 금융관리국)은 청산결제시스템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정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권, 운영기관에 대한 규정개정 명령권·자료요청권·시정명령권 등 부여 -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파산법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싱 가 포 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중앙은행(싱가포르 통화청)은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수단을 감시할 책임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운영기준 제정, 운영·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시정명령권,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권 등 부여
	증권선물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	- 중앙은행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시장을 지원하거나 금융하부구조의 핵심부문인 청산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

제2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제1절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현금 지급수단인 법정화폐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 제공,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 지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개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 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현금 즉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¹¹⁾ 아울러 새로운 화폐의 공급, 손상된 화폐의 회수, 훼손된 화폐의 교환 및 폐기 등 발권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화폐 종류별로 화폐수요, 화폐폐기액, 적정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화폐제조액을 결정하고 이를 한국조폐공사에 발주하여 조달한 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다.

(최종결제서비스의 제공)

한국은행은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있는 지급수단인 화폐의 발행과

11) 「한국은행법」은 제47조(화폐의 발행)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 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및 정부 당좌예금 등의 입·출금을 통해 최종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등을 통한 자금결제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국은행과 행한 거래의 자금결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에 의해 수취·지급된 자금에 대한 차액결제 및 정부당좌예금을 통한 국고금의 결제 등이 있다.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경제규모의 확대 및 금융시장의 팽창으로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시스템리스크의 감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4년 12월부터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처리 규모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2005년 5월 신한은금융망 구축에 착수하여 2009년 4월 기존의 총액결제 외에 상계결제 방식의 실시간 동시처리 기능을 도입한 혼합형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을 가동하였다.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콜거래 등 단기금융시장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 교환 및 은행공동망 이용에 따른 차액결제, 증권매매거래에 필요한 대금결제, 외환매매거래에 따른 원화자금결제 등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금융망 도입으로 금융기관은 일중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조달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은행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상태에 직면하여 여타 참가은행의 연쇄적 결제불이행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의 최종대부자로서 긴급 결제유동성 제공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공급의 주체로서 위기상황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영업시간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결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중당좌대출제도와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1영업일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등에 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법」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3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그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2년에 한 번씩,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필요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의 개선·확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결

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 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금융정보화사업을 주도하면서 은행공동망 등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음교환, 지로 및 은행공동망 등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 및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는 제1절에서 언급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외에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CLS은행 등이 있다.

1.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서 명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이용횟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은 가입신

청서와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년 10월말 기준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은행 53개, 금융투자회사 53개, 보험사 9개, 종합금융회사 2개 등 총 127개이다.

2.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80년대 중반 개별 은행별로 운영하는 전산망을 모든 은행을 잇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시 어음교환과 지로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과 지로업무 이외에 CD공동망을 시작으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정보망 등 은행간 자금이체메시지의 전송을 중계하는 은행공동망(interbank shared network)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공인인증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이 금융결제원 사업에 참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사업별로 특별참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여타 기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다.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참가기관은 어음교환, 지로, CD공동망 등 사업별로 참가할 수 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사원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 준사원은 10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참가기관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수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10월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지로, CD, 전자금융, 타행환공동망 등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였다.

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¹²⁾,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로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및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회원사간 수수할 증권과 대금의 차감(netting) 및 결제지시 등 장내 회원사간 매매체결 및 청산의 역할을 수행한다.

1956년 2월 증권단, 금융단, 보험단 등의 공동출자에 의해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된 후 1964년 4월 한국증권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후 2005년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으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되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되었다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금의 한국거래소가 되었다.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40개 금융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총 43개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만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은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되며, 결제회원은 본인의 결제이행책임 하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가 모두 가능하나 매매전문회원은 자기매매만 가능하며 결제는 결제회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공동기금 적립, 거래 수수료 납부, 보증금 예탁, 재무상황 보고 등의 의무를 지닌다. 2009년 10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95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분류되며 채권시장은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나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매매체결 및 청산 업무 외에도 결제회원의 채무 인수¹³⁾, 결제 이행 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예탁기구(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로서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계좌대체 및 증권청산·결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한다. 시장별로는 장내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증권결제 업무를 수행하며 장외시장에서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증권 청산과 결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전체적인 규모 확대와 거래량의 급증 추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매매거래 결제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73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대체결제¹⁴⁾ 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증권거래소가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설립되고 1975년 증권거래소로부터 대체결제 업무를 위임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증권예탁결제제도가 개시되었다. 이후 1994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특수법인¹⁵⁾으로 전환하여 증권시장에서 유일한 중앙예탁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¹⁶⁾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 요구권, 업무규정 제·개정시 승인권 등을 가지며 금융감독원은 업무 및 재산상태를

13)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결제회원은 한국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한국거래소에 부담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14)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발생시 거래 당사자의 계좌간 대체기재로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는 결제 업무를 말한다.

15) 법률상으로는 특수 법인이나 설립 형태는 「상법」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7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코스콤, 금융투자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나머지 30%를 소유하고 있다.

검사한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관계기관, 외국예탁기관 등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 및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탁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탁자의 명칭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등을 기재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하며 계좌대체 방식으로 해당 증권에의 소유권을 실물이동 없이 이전시킨다.

증권의 매매가 발생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및 매매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매수자의 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결제와 동시에 증권에의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결제를 실시한다.¹⁷⁾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결제업무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주식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매매중개기관과 그 고객인 기관투자자간 결제를 처리하는 주식기관결제 업무, 집합투자기관과 수탁회사간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업무 등을 수행한다.

5.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으로는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CLS은행과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부 국내 은행¹⁸⁾이 있다.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주요 국제상업은행들이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미국 뉴욕에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으로서 동 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면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 계좌를 통해 동시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자간상계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감

16) 관계 법률인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2.4일 시행)로 통합되었다.

17) 대금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증권에의 인도(분리 결제)도 발생하나 대부분 DvP 방식을 통하여 증권결제가 이루어진다.

18)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 동 업무를 수행한다.

효과도 거둘 수 있다.

CLS은행은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CLS그룹지주회사(CLS Group Holdings)의 자회사로서 1999년 11월에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2008연말 현재 전세계 59개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과 약 5,300개의 제3자고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원화 등 총 17개 주요 통화간 외환거래 등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 설립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업무를 이관받아 이를 수행하여 왔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2001년 7월 및 2007년 11월부터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¹⁹⁾ 동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결제은행에 통화별로 외화예수금계좌를 개설하고 결제은행은 동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은행간 자금이체를 처리하게 된다. 2008년말 현재 한국외환은행은 60개 국내 외국환은행과 50여개 역외은행을 대상으로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20개 통화에 대해 실시간 외화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6. 기타 운영기관

이 외에 중앙조직 차원에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카드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BC카드회사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각 중앙기관²⁰⁾을 중심으로 하나의 금융기관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19) 한국은행도 신한은행망을 통해 외화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통화가 미달러화 및 엔화로 제한된 데다 예치잔액 범위내에서의 이체만 허용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해당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회원기관간 이해 조정과 지원 등을 위해 회원기관들로부터의 예약금 및 지급준비자금 수납·운용, 회원기관간 자금결제, 회원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감독 등 회원기관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연결하여 자금이체 등의 지급지시 정보를 교환한다. 가령, 저축은행 상호간의 거래는 중앙회가 결제대행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저축은행 계좌간 자금을 정산하여 처리하고 저축은행과 은행간의 거래는 중앙회가 저축은행 전체의 포지션을 산출한 후 금융결제원에 정보를 송수신하여 중앙회 계좌와 상대방은행간 자금을 정산하여 처리한다.

BC카드사는 BC카드 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11개 국내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은행계 신용카드회사이다. 신용카드회원인 구매자가 상품·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면 카드발행 은행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자에게 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 때 BC카드사는 회원은행간에 카드발급은행으로서의 지급금액과 가맹점 거래은행으로서의 수취금액을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정산한 후 사용대금 관련 자료와 함께 순채무 은행에게 차액결제 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II-1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란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의 이전을 통해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지급수단의 발행과 통신, IT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도 포함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채권·채무를 종결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거나, 직접 참가가 어려운 경우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청산·결제업무의 대행을 의뢰한다.

한편, 그 동안 자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는 예금수취기관이 취급하는 요구불예금에 부가된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카드, 전자화폐, 모바일뱅킹 등 지급서비스 관련 신기술의 개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의 지급결제환경 변화로 비은행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도 은행과 제휴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지급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1. 은행

은행은 「은행법」상 환업무²¹⁾가 고유업무²²⁾로 허용되어 있어 요구불예금을 근거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은 물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 11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지로, 타행환, CD/ATM, 자금관리서비스(CMS),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이체 및 현금 출금 지급서

21) 환업무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금거래 당사자간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 및 채신관서 등이 발행한 증서나 유·무선 전화, 인터넷 및 CD/ATM 등 금융전산망에 연결된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이다.

22) 은행의 고유업무는 ①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수신과 차입), ②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여신), ③내·외국환(환) 업무이다.

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경우 외환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이중 통화간 매매 등에 따른 외화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은지점은 신한은금융망에는 대부분 참가하고 있으나 소액결제시스템에는 일부 외은지점만이 타행환, 전자금융 등 필요한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²³⁾

2.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해당 특별법에 따라 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2002년 2월 해당 중앙조직을 대표로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하여 지로, CD, 타행환, CMS, 전자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어음교환시스템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는 중앙조직이 선정한 결제대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금융투자회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²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자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자금이체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금융투자회사는 서민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자금이체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차액결제리스크 방지를 위해 차액결

23) 이는 외은지점의 국내 영업규모가 작음에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시 참가분담금 납입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4)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61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인가하였다. 2009년 10월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특별참가하였다.

제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는 금융권 간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고객만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4.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회사는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한다.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²⁵⁾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행위가 발생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을 공여하게 된다. 이 때 신용카드 발급은행 또는 카드 발급기관의 거래은행과 판매점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거쳐 자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²⁶⁾

신용카드회사는 은행계와 비은행계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회사는 다시 전문회사와 판매점회사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은행계 및 전문 신용카드회사는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제공서비스는 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구분되며 각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회원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는 부대업무로서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도 가능하다.

25) 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등의 금융기관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

26) BC카드의 경우 BC카드사가 회원은행간의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받을 금액이 있는 은행에게 차액결제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원은행은 동 영수증을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에 회부하여 차액결제대금을 회수한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²⁷⁾ 발행업자(선불업자)는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다. 선불업자가 IC칩을 내장한 카드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또는 서버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면 구매자는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 단말기, 인터넷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선불업자는 가맹점에 이용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선불카드가 주로 이용된다.

한편, 2009년 6월말 SK마케팅앤컴퍼니, 한국스마트카드, 카드넷 등 12개 전자금융업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제4절 기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

27)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

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8년말 현재 등록된 PG업자는 모두 44개이다.²⁸⁾

2.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은행VAN업자)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계좌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VAN업자는 점포외 CD/ATM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미리 수취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에 정산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이후 은행에 청구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은행 VAN업자는 전자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CD공동망에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자금융은 금융공동망 차액결제를 통해 전체 은행과 운영자금을 정산하지만 여타 은행VAN 업자는 은행별로 운영자금을 정산한다.

은행VAN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²⁹⁾로 분류되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09년 6월말 현재 한국전자금융 등 7개 업체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신용카드 VAN업자

신용카드 VAN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설치, 신용

28)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기관에 준하여 한국은행 및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을 받는다.

2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 정의되나 이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확한 분류는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 거래의 전송 및 조회, 매출전표 수집 및 청구 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가령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VAN업자는 거래 승인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을 전송하고 승인 및 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또한 VAN업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방문하여 전표 실물을 수거하거나 전표서명 데이터를 수집한다.

신용카드 VAN서비스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되고 있다. 한편 2009년 6월말 현재 신용카드VAN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VAN업자는 한국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 등 10개 업체이다.

4. 이동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사용자가 휴대전화나 PDA 등 이동통신기기의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 자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통신회사가 은행에 무선결제플랫폼을 제공하고 은행이 고객정보와 대금결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좌이체도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처리된다.³⁰⁾

2008년말 현재 SKT, KTF, LGT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모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0)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공간적 제약과 이동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인터넷뱅킹과 구분하고 있다.

Ⅲ. 지급수단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 제1장 지급수단
- 제2장 거액결제시스템
- 제3장 소액결제시스템
- 제4장 증권결제시스템
- 제5장 외환결제시스템

제1장 지급수단

제1절 개 요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어음·수표,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계좌이체수단에는 지로, 타행환, CD/ATM,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 인터넷뱅킹 등이, 카드는 신용·선불·직불카드가 있다. 또한 장표의 이용여부에 따라 장표방식(paper) 지급수단과 전자방식(paperless) 지급수단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어음·수표와 지로의 일반계좌이체가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지로의 자동계좌이체·대량지급과 타행환,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종래의 현금, 수표 위주의 장표방식 지급수단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 현 금

현금은 소액거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지폐(은행권)와 주화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4종의 지폐(천·오천·만·오만원권)와 6종의 주화(일·오·십·오십·

백·오백원화)가 유통되고 있다.

화폐발행액의 대부분은 지폐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권의 비중이 매우 높다. 현금은 소액거래에 있어서 그 이용의 편리성과 국민의 높은 현금선호경향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1990년대 들어 신용카드, 지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이용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절 어음·수표

어음·수표는 2000년 이전까지 기업을 중심으로 현금 대신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지급수단이다. 어음·수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대기업의 부도발생이 중소기업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등 어음 사용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았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년 5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2001년 2월), 기업간(B2B; 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2002년 3월) 및 전자어음제도의 도입(2005년 9월) 등 전자방식 지급과 은행신용공여기능을 결합한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개발되고 그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의 이용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어음·수표의 교환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어음

어음은 발행인이 그 소지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으로 구분되며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어음의 수취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

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지급약속증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은 제3자인 지급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은행도(銀行渡)어음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는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가 은행에서 교부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만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인 진성어음과 주로 금융기관간 자금대차거래에 이용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성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전에 할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한편 어음의 규격, 지질 및 색채 등은 은행연합회의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으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 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환어음은 격지간 자금 지급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급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신용장 거래에 따른 환어음 발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상거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III-1 약속어음 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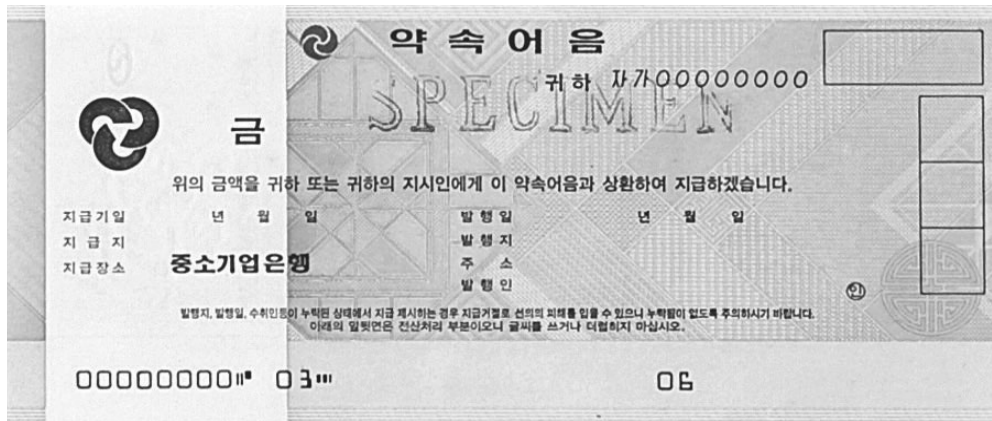


표 III-1 어음·수표의 요건

약속어음(어음법 제75조)	환어음(어음법 제1조)	수표(수표법 제1조)
•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적 약속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적 위탁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적 위탁
-	• 지급인의 명칭	• 지급인의 명칭
• 만기(지급일)	• 만기(지급일)	-
• 지급지	• 지급지	• 지급지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지급인(은행)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며, 「수표법」상의 기재사항을 반

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식증권이기도 하다. 또한 수표는 대표적인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 개인간의 거래나 기업 및 정부간의 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표로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이 있다.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1948년 3월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은행과 우체국이 결제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별단예금에 발행대금을 예치한 후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기앞수표는 정액권 자기앞수표와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구분되며, 정액수표에는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의 3종³¹⁾이 있다. 특히 10만원권 정액자기앞수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CD/ATM을 통하여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자기앞수표는 당초 은행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은행이 거의 없는 농어촌 및 격오지 주민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1968년), 지역농협(1982년) 및 지역수협(1984년)에도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되었다. 한편 2008년에는 농·수협 지역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저축기관도 중앙조직 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금 받은 은행은 당일자로 수표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고객앞 입금처리하고 다음 영업일에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자금결제를 받기 때문에 자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1983년 3월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6월까지 적수보전방식으로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수납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순지급액(적수기준)만큼 무이자콜론을 제공받은 후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적수의 누적으로 자금조정규모가 늘어나고 결제리스크도 함께 증대됨에 따라 2004년 7월

31)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는 2000년 12월 1일 30만원권 발행을 중단하였다.

부터는 자금조정방식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자정산방식에서는 수표 수납은행이 수표 발행은행으로부터 순지급액(적수기준)만큼 콜론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다.

표 Ⅲ-2 자기앞수표 자금조정방식 비교		
구 분	적수보전방식	이자정산방식
자금조정대상금액	$\text{교환차액}^{①} \times \text{자금부담일수}^{②}$	
자금조정금액	$\frac{\text{자금조정대상금액}}{\text{다음결제일}-\text{결제일}}$	$\frac{\text{자금조정대상금액} \times \text{금리}^{③}}{365}$
최종 결제금액	은행간 교환차액±자금조정금액 ±전영업일 자금조정상환금액	은행간 교환차액 + 자금조정금액

주: 1) 제시금액-지급금액
 2) 교환일-수납일
 3)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전영업일의 익일물 무담보콜금리

또한 2004년 8월에는 타행발행 정액권(10만원, 50만원, 100만원) 자기앞수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은행고객이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려면 자기앞수표 발행은행과 수납은행간에 차액결제가 종료되는 그 다음 영업일 14시 50분(현재는 14시 20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즉시 필요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어음교환 참가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고객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의 각 은행점포에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하는 고객이 발행인이 되어 자신의 거래은

행으로 하여금 정당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 증권으로서 주로 기업이 자금결제,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이용하고 있다. 당좌수표는 발행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III-2 수표 견양



(가계수표)

가계수표는 1981년 7월 도입된 가계종합예금(1992년 12월 가계당좌예금으로 변경)을 근거로 발행되는 수표로서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와는 달리 발행자가 개인 및 자영업자로 한정되고 장당 발행한도도 제한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계수표는 부도증가에 따른 신뢰도 저하, 전자지급수단의 발달 등으로 그 이용실적이 현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Ⅲ-3 수표별 주요특징 비교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인	은행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및 자영업자
장당 발행한도	정액: 10, 50, 100만원 비정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인: 100만원 자영업자: 500만원
대월제도	없음	있음	있음

제4절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결제당사자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좌이체에는 결제당사자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간의 자금이체 외에 결제당사자 중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좌이체에는 동일은행내 계좌이체와 지급인 거래은행과 수취인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로, 타행환, CD/ATM, 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 등이 있다.

계좌이체는 지급지시의 주체에 따라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fer)와 수취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출금이체(debit transfer)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계좌이체의 대부분은 입금이체에, 지로의 자동계좌이체와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출금이체에 해당한다.

1. 지로

지로(Giro)란 회전을 의미하는 희랍어 Guros에서 유래되었는데 원시적 형태의 지로는 고대 이집트 및 바빌론의 곡물반출청구서에서 비롯되었다. 영주 또는 군주가 운영하는 곡물창고에 곡물을 보관시킨 농민이 자신의 곡물 범위 내에서 곡물반출청구서를 발행하여 채무변제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 후 은행제도의 도입을 통한 예금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자료 처리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소액대량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지로제도란 전기·전화요금 및 상품판매대금 등 대량의 수납거래와 급여, 연금 등 대량의 지급거래 및 개별 송금을 위한 자금이체가 지급결제중계센터를 거쳐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수취인과 지급인의 예금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로제도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지로업무는 지로장표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로 일반계좌이체가 있으며, 전자지로업무는 종이 장표 없이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 등의 업무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및 대량지급이 있다.

2. 타행환

타행환은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은행점포에서나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영업시간중, 건당 1억원 한도)할 수 있는 계좌이체 수단이다. 지로와 타행환을 비교하면 지로는 다수의 지급인 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수납하고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타행환은 개인 또는 기업간 일대일 송금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로는 입금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단, 급여이체는 당일)되는 반면 타행환은 지급인의 입금 직후 수취인의 인출이 가능하다.

3. CD/ATM

CD/ATM을 통한 계좌이체는 이용고객이 거래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 인출기(CD; Cash Dispenser)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의 본인계좌로부터 거래은행내 또는 다른 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입 초기에는 고객이 거래은행의 CD/ATM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동일은행 계좌간 이체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94년 2월부터 타행으로의 이체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9년 6월부터는 출금계좌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은행 CD/ATM을 통해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자금관리서비스(CMS)

자금관리서비스는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 등이 모든 거래은행과 접속할 필요 없이 CMS센터인 금융결제원, 또는 한 은행과의 접속만으로 전체 거래은행의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좌이체 수단을 말한다. CMS계좌이체에는 입금이체 서비스와 출금이체서비스가 있다. CMS 입금이체서비스는 상품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각기 상이한 은행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이며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각종 상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이용대금, 회비 등 납부인이 지정되어 있는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CMS 출금이체는 내용면에서는 지로의 자동계좌이체와 유사하나 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빠른 시간내에 수납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Ⅲ-4 CMS 출금이체와 지로 자동계좌이체 비교

구 분	CMS 출금이체	지로 자동계좌이체
자료전송	납기일 -1일	납기일 -1일
이체기일	납기일 +1일	납기일 +3일
부분출금	예금잔액 한도 내에서 가능	이용기관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수수료	은행과 개별계약 (지로보다 높은 수준)	건당 50원

5. 텔레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는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화기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 199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홍콩상하이은행 국내지점 등에서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07년 6월 국내에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기존의 일반전화선(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대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다양

한 형태의 텔레뱅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텔레뱅킹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해킹 등 보안사고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시 유의가 필요하다.

6.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이란 고객이 각종 은행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휴대전화나 PDA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도 전용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전달되는 등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뱅킹의 범주에 포함된다.

1995년 10월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래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각종 금융상품정보의 제공, 홍보 등에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는 1999년 7월 신한, 한미, 주택은행 등이뱅크타운(Banktown)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홍콩상하이은행·도이치은행·BOA·JP모건체이스은행 국내지점 등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제공하는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예금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계좌통합서비스,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 및 홍보업무처리도 지원하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5천만명(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경우 중복 합산)을 상회하고 있다. 2008년중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일평균 기준)은 2,243만건, 22.9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1% 및 23.1% 증가하였다³²⁾.

32) 2009년 상반기중 일평균 이용건수 및 규모는 각각 2,666만건 및 27.6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5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천건, 십억원, 천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조회서비스	9,199	-	10,596	-	15,177	-	19,093	-
자금이체	1,924	12,518.2	2,204	15,090.3	2,740	18,577.0	3,330	22,842.6
대출신청	1.8	11.5	1.9	13.7	2.0	13.5	2.5	16.0
합 계	11,125	12,529.7	12,802	15,104.0	17,919	18,570.5	22,425	22,858.6
등록고객수	26,737		35,912		44,698		52,595	
기업	1,434		1,789		2,302		2,520	
개인	25,303		34,123		42,396		50,075	

7.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나 PDA 등 이동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은행이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은행고객의 정보조회 및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내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9년 11월 농협이 제공하기 시작한 ‘인터넷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최초이다. 초기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신뢰성 문제, 요금차별화 등의 마케팅 유인 부족, 복잡한 단말기 조작절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금융솔루션의 부재 등으로 이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IC칩 방식 모바일뱅킹 서비스(Bank On, M뱅크, K뱅크) 및 2007년 4월 VM 방식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2008년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일평균 기준)은 106만건, 1,50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7.6% 및 42.0% 증가하였으며³³⁾ 2009년 6월말 현재 등록고객수는 996만명이다.

표 Ⅲ-6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천건, 십억원, 천명)

	2005년중		2006년중		2007년중		2008년중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조회서비스	231	-	366	-	598	-	898	-
자금이체	55	56.7	80	73.5	118	106.1	159	150.7
합 계	286	56.7	446	73.5	716	106.1	1,057	150.7
등록고객수	1,861		2,979		5,009		8,478	
IC칩 방식	1,861		2,979		4,412		4,694	
VM 방식	-		-		597		3,784	

제5절 카드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카드는 무현금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비현금 지급수단중 중요한 매체로 국민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 카드는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사전에 지급되는 선불카드(prepaid card), 구입시점에서 지급되는 직불카드(debit card) 및 체크카드(check card), 사후에 지급되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구분할 수 있다.

33) 2009년 상반기중 일평균 이용건수 및 금액은 각각 152만건 및 2,227억원을 기록하였다.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가맹점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에서 발행한 판매점카드가 시초이며 1980년대를 전후로 외환카드, BC카드, 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신용카드는 카드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뉘어진다. 대부분의 은행계 및 전문 신용카드회사는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Ⅲ-7 신용카드의 종류

			카 드 명
은행계			BC, 신한, 국민, 외환, 우리, 하나, 씨티, 산은캐피탈
비은행계	전문회사	국내	삼성, 현대, 롯데
		외국계	Diners Club, AMEX, JCB, VISA, MasterCard
	판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주) 2008년말 현재

신용카드 서비스는 초기에는 신용구매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BC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여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겸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겸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통신판매, 항공권예약, 보험가입, 특정 기업체와 연계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카드 발급 등으로 제공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카드로 사용한 후 월 1회 정산하는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도 일반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기능을 휴대전화에 IC칩 형태로 추가하여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신용카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서명 없이 단말기 접촉만으로 처리하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결제서비스도 이용되고 있다.

2.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다.

범용선불카드는 1994년 1월 「신용카드업법」(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발행 및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94년 9월부터 은행 및 전문카드사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동 카드는 그동안 주유소, 백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점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홍보 및 가맹점 부족 등으로 현재 발행 및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최근 들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백화점 등이 발행한 기존 상품권이 사용 장소가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기프트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프트카드는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며 할부,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통상 5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카드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3.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고,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며 연체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직불카드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결제하므로 예금에 일반적 구매력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매출채권이 즉시 현금화되는 장점이 있다. 발행기관의 경우도 창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수수료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 입력을 위한 단말기가 필요한 데다 가맹점이 적고 사용시간 및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등 단점도 있어 사용실적이 부진하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체크카드가 도입되었다. 체크카드는 은행예금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지만 고객 예금계좌에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인출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으로 인해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표 III-8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비교

	직불카드	체크카드
네트워크	직불카드공동망	신용카드망
발급기관	은행	은행 및 신용카드사
이용시간	08:00 ~ 23:30	24시간(하루 5분 정도의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사용불가)
사용장소	직불카드 가맹점(26만개)	신용카드 가맹점(246만개)
승인절차	PIN 입력 → 예금잔액 확인	예금잔액 확인 → 서명
가맹점자금 수취시점	D+1일 14:00	통상 D+2 ~ 3일 09:00 이전
발급기준	예금거래자(연령제한 없음)	예금거래자중 만 14세 이상 (CMA계좌 연계 카드 등은 만 18세 이상)
연회비	없음	없음
가맹점 수수료율	업종별로 1.0%, 1.5%, 2.0%	1.5~4.5%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1.5~3.6%)
수수료 분배구조	직불카드 발급은행 85%, VAN사업자 15%	VAN사업자 건당 120원 내외, 결제계좌보유 은행 0.5%, 나머지는 체크카드 발급기관
신용공여	불가능	신용 구매 및 현금서비스가 일정 한도내 가능 (통상 50만원 이내)
이용한도	예금잔액 범위내(최소한도 1,000원 이상, 최대한도 없음)	예금잔액 범위내(최소한도 없으며 일중 및 월중 최대한도 있음)
부가혜택	없음	포인트 또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 혜택 제공

출처: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09.5

표 Ⅲ-9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실적(일평균)

(천건, 억원, 만장)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직불 카드	이용건수	9.7	6.8	5.0	3.7
	이용금액	4.8	3.1	2.2	1.6
	발급장수(연말)	6,203	6,343	6,261	6,432
체크 카드	이용건수	536	901	1,400	2,029
	이용금액	213	338	517	732
	발급장수(연말)	1,962	2,680	3,935	5,446

제6절 기타 지급수단

1. 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중 일정이상의 범용성과 환금성³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용성 등의 기준으로 전자화폐와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지만 해외에서는 두 지급수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나 2008년말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K-Cash, VisaCash, Mybi 등 3종류의 전자화폐는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만 발행되고 있다.

34)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된다.

표 Ⅲ-10 국내 전자화폐 현황

전자화폐	발행기관	운영기관	최초발행
K-Cash	신한 · 우리 · 제일 · 기업 · 외환 · 하나 · 한국씨티 · 대구은행, 농협, 삼성카드(10개)	금융결제원	2000. 7월
VisaCash	외환 · 하나은행(2개)	한국스마트카드	2001. 5월
Mybi	외환 · 부산 · 광주 · 경남은행, 농협, 삼성 · 신한카드(7개)	마이비	2000. 9월

주) 2008년말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모두 IC카드형으로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플라스틱 카드에 내장된 IC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PC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급수단이다.

2008년중 전자화폐의 일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각각 31만건, 26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1%, 9.0% 감소하였다³⁵⁾. 이는 대중교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와 경쟁관계에 있는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가 전자화폐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데다 가맹점의 확산이 정체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표 Ⅲ-11 전자화폐 발급현황 및 이용실적(일평균)

(천장, 백만원, 천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발급 현황	발급매수(연말)	7,820	8,859	10,100	9,661
	발급잔액(연말)	11,574	10,539	10,549	11,215
이용 실적	이용건수	422	438	352	306
	이용금액	327	309	288	262

35) 2009년 상반기중 일평균 이용건수 및 금액은 각각 30만건, 255백만원을 기록하였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³⁶⁾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중 범용성과 환금성³⁷⁾이 전자화폐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표 Ⅲ-12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현황

구 분	발행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명칭)
IC카드형	한국스마트카드(T-money), 마이비(마이비카드), 카드넷(대경교통카드), 부산하나로카드(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하이플러스카드), 이비캐쉬(eB카드)
네트워크형	옥션(e-money), 인터파크(s-money), 인터파크지마켓(현금잔고),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캐쉬), 케이티(월드패스카드), SK텔레콤(S캐시)

주) 2008년말 현재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유자의 식별가능 여부에 따라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기명식 및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각각 200만원 및 50만원으로 제한³⁸⁾되어 있다.

36) 제5절에서 다른 은행계 및 전문신용카드사 발급 선불카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만을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37)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며,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예 : 80%)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38) 제5절의 선불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들어 T-money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지역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가능 업종 및 가맹점의 확대 등을 통해 그 범용성이 계속 확대되고 모바일카드 서비스 등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되면서 이용건수 및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외상매출채권(약칭 ‘전자채권’)은 현재 기업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한 전자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동 채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동 채권은 은행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무보증 채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채권은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만기가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하다.

4.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존의 기업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이다. 전자어음의 경우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발행, 할인, 수취, 배서, 상환 등 모든 절차가 실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 지정)인 금융결제원이 2005년 9월 전자

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발행·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어음의 효력은 실물어음과 거의 유사하나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특성상 실물어음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발행 및 배서의 방법, 배서 횟수, 만기 제한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모든 정보가 발행부터 만기결제시까지 원장에 전자적으로 저장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음을 작성, 유통, 보관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가 실명,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하고, 총 배서 횟수를 20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음의 만기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9일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³⁹⁾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실물어음 대신 전자어음만을 이용하도록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9) ①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③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표 III-13 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 분	실 물 어 음	전 자 어 음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 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발행등록	없음(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발행금액	제한 없음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가능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횟수 20회로 제한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일부지급	어음법상 허용(은행약관에서는 불허)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 지정)

출처: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09.5

제7절 지급수단 관련 금융보안사고 및 대책

1. 지급수단 보안사고의 특징

전자화된 지급수단 중심의 지급결제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전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키보드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전자화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불법자금 인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표방식의 지급수단 관련 금융사고는 대부분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는 데 비하여, 전자화된 방식의 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방식 거래에서는 사고당사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동일한 기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사기사건을 시도할 수 있어 금융사고의 대상 및 손실금액이 이전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자화된 지급수단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지급거래가 처리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 해당 지급수단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 기피로 관련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전자화된 지급수단의 경우 IT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방식의 접근매체 및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및 저장 단계에서 해킹 등의 불법적인 기술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동 불법기술의 개발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수단 관련 보안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수단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노력 외에도 지급수단 사용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노력, 금융기관의 보안방지대책 수립 등 지급수단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2. 전자금융보안사고의 유형

최근 지급수단이 장표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이행되면서 지급수단 관련 금융보안사고의 행태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장표 중심의 지급수단 환경에서는 주로 수표 등 해당 지급수단을 불법 위·변조하고 이를 상품대금의 지급에 이용함으로써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사고의 유형이었다. 그러나 전자화된 지급수단 활용이 일반화된 최근에는 정보의 불법적 취득이라는 형태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전자지급수단을 직접 공격하여 주요 정보를 절취하는 유형이다. 이는 고객 PC 등 지급수단과 관련한 주요 정보가 담긴 장치를 직접 해킹하여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주요 정보를 절취하고 이를 피해자 계좌의 불법 자금 인출에 이용하

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지급수단과 관련된 개인정보 취득을 위하여 관련 설비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통신선을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는 고객PC 등 개인접속장비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통신회사의 전산서버 등 다양한 전산시스템 간을 경유하는 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중간에서 절취 및 위변조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해킹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를 방해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한 거래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 보안대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거래이용수단을 규제하고 있다.⁴⁰⁾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의 경우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2등급 및 1등급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이용수단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자지급수단별로 자금이체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은 보안등급별로 이체한도가 서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CD/ATM 및 모바일뱅킹의 경우에는 보안등급에 관계없이 1회 이체한도 등이 정해져 있으며 1회 이체 및 인출규모는 소액으로 제한되고 있다.

40)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및 <별표 1>

표 Ⅲ-14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거래이용수단
1등급	보안카드 + HSM 방식 공인인증서 ¹⁾
	OTP(일회용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Channel 인증 ²⁾
2등급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SMS(거래내역통보)
3등급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주: 1) 금융정보추진협의회에서 제정한 금융IC카드 보안토큰표준인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방식 공인인증서의 기술사항을 정의한 표준에 해당. HSM은 공인인증서 복사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 USB 등의 저장장치를 의미

2)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팩시밀리 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표 Ⅲ-15 전자자금이체 한도

(천원)

구 분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CD/ATM	인출한도	1회	1,000			
		1일	6,000			
	이체한도	1회	6,000			
		1일	30,000			
텔레뱅킹	개인	1회		50,000	20,000	10,000
		1일		250,000	100,000	50,000
	법인	1회		100,000	20,000	10,000
		1일		500,000	100,000	50,000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0,000	50,000	10,000
		1일		500,000	250,000	50,000
	법인	1회		1,000,000		
		1일		5,000,000		
모바일뱅킹		1회	100,000			
		1일	500,000			

출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장 거액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1.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

1980년대 미국,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연차액결제(DNS; Designated-Time/Deferred Net Settlement)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는 일정기간(통상 영업일)중 참가기관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할 총금액과 수취할 총금액을 모아서 상계 처리한 차액을 일정 시점(대부분 마감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연차액결제(DNS)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상계한 차액만을 결제하면 되므로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으나 결제시점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거액결제시스템의 특성상 대규모 금융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거액의 자금이체거래를 건별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실시간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RTGS방식은 건별 자금이체지시에 대한 결제를 영업시간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별 자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결제의 완결성을 부여하여 일단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irrevocable)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RTGS시스

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의 장점과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RTGS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ystem)이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에 서로 지급하고 수취할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동시처리(상계처리)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다.

2. 한은금융망 개발 및 가동

한국은행은 1990년대초부터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RTGS방식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개발하여 1994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이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은행간 채권·채무를 지정시점에서 최종결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영업시간중에 자금이체거래를 연속적으로 최종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와 외환동시결제에 연계함으로써 증권 및 외환 거래에서의 결제리스크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한은금융망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와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은금융망에서의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 신청의 처리와 최종결제가 중앙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거액자금의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둘째, 한은금융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전국 본·지점의 자금수급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예측 및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자금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체할 수 있어 콜거래를 중심으로 한 초단기성 자금거래와 금리차를 겨냥한 재정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단기자금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단기금리가 안정되는 등 단기금융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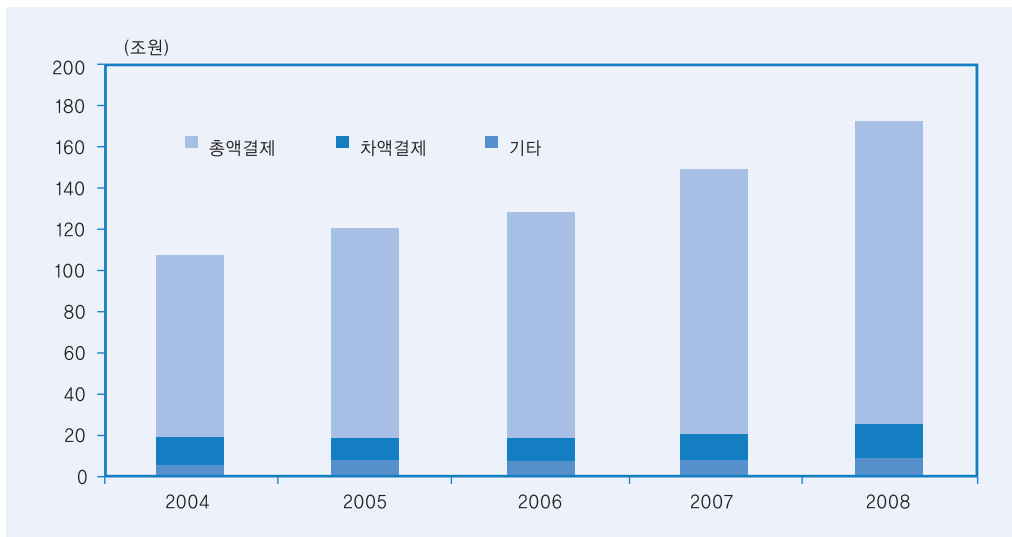
넷째,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증권브로커 및 딜러에 대해 한은금융망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국공채의 입찰, 발행, 등록, 양수도 및 상환 등 한국은행의 국공채 발행업무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통화신용정책 수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다섯째, 금융기관간의 자금흐름을 한은금융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화당국이 경제교란 요인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란요인이 발생한 시점과 정책당국이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점간의 인식시차(recognition lag)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간 대량의 거액자금 결제업무를 전자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결제업무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장표 및 서류의 작성, 전달 등 수작업 업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당좌예금잔액 및 자금이체, 수취현황 등에 대한 수시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당좌예금의 현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졌다.

한편 한은금융망의 결제규모는 가동초기인 1995년에는 일평균 18.9조원에 불과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이 팽창하면서 2008년에는 172.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RTGS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이체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났다.

그림 III-3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일평균)



주) 기타는 한은대출, 국공채 발행·상환 등을 포함

표 III-16 신한은금융망 자금종류별 결제규모(일평균)

(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총액결제	102,988	110,844	128,517	147,577
일반자금이체	62,100	58,874	72,768	81,347
콜거래시스템	31,786	32,610	30,108	24,648
DVP시스템	6,930	7,214	8,010	10,391
PVP시스템	338	609	793	1,452
수취인지정자금이체	1,835	11,536	16,837	29,739
차액결제	9,684	10,490	12,789	15,930
국고금 수급	2,493	2,899	3,012	3,703
한국은행 대출	873	920	720	652
국공채 거래 ¹⁾	4,627	3,594	4,058	4,936
원화자금결제계	120,665	128,747	149,096	172,798
외화자금결제(백만달러)	169	166	249	259

주: 1)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

3. 신한은금융망(BOK-Wire+) 개발 및 가동

한은금융망의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결제처리업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결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RTGS방식의 한은금융망에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단말기 접속방식 외에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을 추가한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 가동(서버간 직접접속 방식은 동년 6월)하였다.

신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순수 총액결제방식 외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추가하여 실시간 결제완결성과 일중 결제유동성 절약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 유형구분, 순지급한도제를 통해 참가기관이 자금이체 신청을 조기에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중 결제시간대의 조기화가 가능하다.

한편 신한은금융망의 서버와 금융기관 서버를 연결하는 서버간 직접접속 방식은 금융기관 자금이체업무의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체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한은금융망 가동으로 우리나라 거액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제고됨과 아울러 최근의 세계적인 거액결제시스템 발전 추세⁴¹⁾에도 부응하게 되었다.

41) 2000년대 들어 주요국은 자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순수 총액결제방식 외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MEPS⁺(2006년), 유럽의 TARGET2(2007년) 및 일본의 RTGS-Xg(2008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 총액결제시스템과 혼합형결제시스템의 구분 운영

신한은금융망의 결제시스템은 순수 총액결제방식만이 적용되는 총액결제시스템과 순수 총액결제방식과 혼합형결제방식(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이 모두 적용되는 혼합형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신한은금융망의 총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 대출 및 상환, 국공채 등의 거래관련 대금결제 등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자금결제업무를 주로 처리하면서 지정시점차액결제 관련 예약자금 이체, CLS자금 이체 등 동시처리의 필요성이 적은 일부 참가기관간 거래를 처리한다.

신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빈번한 상호 거래로 동시처리에 적합한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 포함) 및 콜거래시스템 거래 외에 DvP 거래(한국은행 RP거래 포함) 등 주로 참가기관간 자금결제 업무를 처리한다.

2. 결제전용예금 신설 및 계좌별 대상업무 구분

신한은금융망에서는 기존 당좌예금 외에 결제전용예금을 신설하여 2개의 결제계좌를 운영하는데 당좌예금은 총액결제시스템의 결제계좌로, 결제전용예금은 혼합형결제시스템의 결제계좌로 운영되며 당좌예금과 결제전용예금의 거래대상 업무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표 III-17 결제시스템 및 결제계좌별 대상업무

결제시스템 (결제계좌)	대상 업무	결제 방식
총액결제시스템 (당좌예금)	· 동일기관내 본지점간, 지점간 및 계정간 이체, CLS자금 이체 · 차액결제, 지정시점 차액결제관련 예약자금 이체 · 현금입출금, 당좌차기, 국공채 발행·상환, 국공채 단순매매, 한국은행 대출 · 신한은금융망 입력마감시간(17:30)후 일중당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등	순수 총액결제
혼합형결제시스템 (결제전용예금)	·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 자금이체 포함), 콜거래시스템 거래 · DvP 거래(한국은행 RP 포함)	순수 총액결제,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3. 지급지시 유형구분

신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 유형을 ‘신속지급지시’와 ‘보통지급지시’로 구분한다. 참가기관은 시급히 지급해야 할 거래나 동시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거래는 신속지급지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속지급지시는 입력시 대기파일에 다른 신속지급지시가 대기되어 있지 않고,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충분하면 건별총액방식으로 즉시 결제되고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기파일로 이동한다.

참가기관은 시급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의 경우 보통지급지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신규 입력된 보통지급지시는 결제전용예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단독으로 즉시 결제되지 않고 상대방 지급지시와 묶여 양자간 동시처리(상계결제)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편 시스템 마감시간대에는 결제유동성 절약보다 신속한 결제가 중요하므로 17시 이후에는 신속지급지시 입력만 허용되며, 대기파일에 남아있는 보통지급지시도 17시 05분에 신속지급지시로 일괄 전환된다.

4.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 적용

신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결제유동성 절약을 위해 적용하는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의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동시처리는 입력기관(A기관)이 신규 보통지급지시를 입력할 때마다 수행되는데 상대기관(B기관)의 대기 지급지시(신속 및 보통) 파일을 검색하고 해당 입력기관(A기관) 앞 지급지시를 추출하여 동시에 처리를 시도한다. 양자간 동시처리는 원칙적으로 신속, 보통지급지시 순으로 처리하며 신속지급지시는 선입선출법(FIFO), 보통지급지시는 우회선입선출법(By-pass FIFO)을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동시처리 결과 유동성이 유입되는 기관은 보통지급지시를 신속지급지시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고 신속지급지시에 대해서도 우회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양자간 동시처리로 유동성이 유출되는 기관의 예금잔액 부족 또는 순지급한도 초과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규 입력된 보통지급지시는 결제되지 않으며 대기파일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다자간 동시처리는 기본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수행되는데 모든 참가기관의 대기된 지급지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한 기관별 예상 유출입액을 계산한 후 기관별 예금잔액과 순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지급지시 모두를 동시에 결제한다. 다자간 동시처리시에도 신속지급지시의 보통지급지시에 대한 결제우선 원칙이 유지되며 FIFO원칙에 따라 입력시간순으로 결제한다. 예를 들어 다자간 동시처리시 특정기관의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 지급지시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한편 혼합형결제시스템의 대상업무중 DvP거래는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순수 총액결제방식으로만 처리한다.

5. 대기제도

신한은금융망에서 대기지급지시는 총액결제시스템과 혼합형결제시스템별로 구

분하여 관리한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지급 지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지시의 실행을 유보하였다가 5분 간격으로 대기파일에 대한 이체처리를 시도하여 우회선입선출(by-pass FIFO)에 따라 대기중인 지급지시를 처리한다.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의 대기제도는 보다 다양한데 지급지시 유형별로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고 참가기관이 결제상황에 따라 대기순서 조정, 대기된 지급지시의 유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대기순위와 관련하여 지급지시가 결제 전용예금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되지 못하고 대기파일로 이동하는 경우 보통지급 지시가 신속지급지시보다 조기에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신속지급지시보다 후순위에 대기된다. 동일 유형의 지급지시인 경우에는 입력시간 순서대로 대기파일에 위치하게 된다. 대기된 지급지시의 처리에 있어 신속지급지시는 상대방이 신규 보통지급지시를 입력할 때마다 양자간 동시처리를 통해 결제되거나 일정 시간(30 분)마다 다자간 동시처리를 통해 결제될 수 있다. 또한 결제전용예금 잔액 증가, 1 순위 대기순서 조정, 대기 지급지시 유형변경(보통→신속)과 같은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대기된 신속지급지시에 대하여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하여 총액결제를 시도하게 된다. 대기상태에 있는 보통지급지시는 양자간 동시처리나 다자간 동시 처리를 통해서만 결제될 수 있다. 보통지급지시가 신속지급지시와 함께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속지급지시보다 후순위로 해소되나 양자간 동시 처리 결과 유동성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신속지급지시보다 먼저 대기해소가 가능하다.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대기된 지급지시를 관리함에 있어 종전 한은 금융망보다 폭넓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결제완급 조절, 결제유동성 절약 등을 위하여 대기된 보통지급지시를 신속지급지시로 변경하거나 대기된 신속지급지시를 보통지급지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기중인 신속 및 보통지급지시의 대기순서를 해당 지급지시 유형 내에서 결제중요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시점처리제도

신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일중에 신청하는 거액의 자금이체거래는 접수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다자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여 한국은행에 결제 의뢰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등의 차액결제업무와 상환기일이 명시된 콜자금의 상환,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자금 회수 등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결제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한은금융망의 업무별 지정처리시점은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신한은금융망의 지정처리시점

구 분		처리시점	처리계좌
오전 차액결제	· 지로시스템, ·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직불카드공동망,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지방은행공동망, · 전자화폐(K-CASH)공동망, ·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전자금융공동망, · 서울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와 전자어음거래	11 : 00	당좌예금 계좌
오후 차액결제	· 서울지역 이외의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14 : 00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14 : 00	
콜자금 상환	· 오전 반일물 · 오후 반일물 · 1일물 이상	14 : 05 16 : 05 11 : 05	결제전용 예금계좌
예약자금이체 거래 실행	· 오전 예약자금이체 · 오후 예약자금이체	11 : 00 14 : 00	
외화자금 예치		16 : 00 ¹⁾	당좌예금 계좌

주: 1) 일본엔화에 대한 자금 예치는 익일 09:30분

지정시점처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처리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표 Ⅲ-19>과 같이 결제순위를 미리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시간대별 자금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큰 오전 및 오후 차액결제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거래를 차액결제와 동시에 완결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표 Ⅲ-19 지정처리시점에서의 결제순서

처리순위	처 리 대 상 거 래
1순위	참가기관간 차액결제, 어음교환시스템 참가기관간 및 어음교환 참가기관 본·지점간 예약자금이체
2순위	1순위의 예약자금이체를 제외한 다른 예약자금이체
3순위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제3절 신한은금융망의 일중 결제유동성 조절수단

1. 예약자금이체제도

신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 결제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예약자금이체, 반일물 콜거래, 일중당좌대출 및 순지급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금융망의 예약자금이체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당좌예금계좌에서 오전 또는 오후 차액결제시점에 자금을 이체하는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금융기관이 일중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일반 예약자금이체제도이다.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는 차액결제시점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사전에 예약하였다가 지정처리시점에 실제로 자금을 빌려 차액결제 부족자금을 충당하는 제도로 차액결제 순지급은행이 순수취은행으로부터 결제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반면 순수

취은행은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순수취자금이 입금되어야 동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일한 은행내에서도 지역간 차액결제 순수취·지급 자금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차액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를 활용하여 차액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는 신한은금융망의 모든 참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데 차액결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약자금이체신청의 입력시간대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오전(오후) 차액결제 신청문을 접수한 시점부터 해당 차액결제 시점전까지로 하고 있다.

일반예약자금이체는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 포함)나 콜거래시스템을 통한 콜자금 공급을 사전에 자신이 지정하는 일중 특정시점에 실행하는 것으로 16시 50분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2. 반일물 콜거래제도

반일물 콜거래제도는 금융기관간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일중에 상시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반일물 콜거래는 참가기관간 직거래방식은 물론 콜중개회사의 중개거래 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참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반일물 콜자금의 수취인은 1억원당 일정액(예: 200~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콜자금 상환시점이 되면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자동 상환된다.

반일물 콜거래는 오전반일물과 오후반일물의 2가지가 있다. 오전반일물은 신한은금융망 업무개시 시점부터 10시 50분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14시 05분에 자동 상환된다. 오후반일물은 11시 10분부터 13시 50분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16시 05분에 자동 상환된다.

3. 일중당좌대출제도

신한은금융망의 일중당좌대출은 총액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반되

는 장치로서 중앙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자금이체신청금액에 비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일정 한도 내에서 즉시 자동대출이 지원되어 영업시간중 연속적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방식이다. 일중당좌대출제도는 2000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되어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한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담보증권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일중 결제자금을 지원하였다. 2006년 9월부터는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20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대출대상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신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
대출한도	금융기관 담보 인정가액으로서 시장가격의 95~98%
대출담보	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
대출금리	3년물 국고채수익률 -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자유한도 초과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며 최저 0%)
자유한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
상환조건	상환마감시각(17:50)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의 자금조정 대출로 전환 지원
취급점포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4. 순지급한도

신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순지급한도는 참가기관이 보통 지급지시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유동성의 최대한도로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입력한 보통지급지시에 대하여 양자간 동시처리 수행시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일중 순지급규모가 사전에 설정된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면 결제되지 않고 대기파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대

기과일에 대기되어 있는 지급지시를 대상으로 다자간동시처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중 순지급규모가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면 결제되지 않는다.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는 보통지급지시는 결제되지 않으므로 참가기관은 결제유동성이 일정규모 이상 유출될 염려 없이 지급지시를 조기에 입력할 수 있다. 순지급한도는 특정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양자간 순지급한도와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총순지급한도 두 종류가 있다. 양자간 순지급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보통지급지시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특정 개별 참가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순지급액을 의미하며, 총순지급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보통지급지시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여타 모든 참가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순지급액을 말한다.

한편 17시 이후에는 신속한 결제를 위해 보통지급지시의 입력이 정지되고 순지급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4절 업무내용

신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금결제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금결제업무로는 일중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원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 및 국공채 발행·상환 등이, 기타 업무로는 한국은행 대출 및 국고금 수납 관련자료 송수신 등이 있다.

1. 원화자금이체

원화자금이체는 금융기관간 통상의 자금이체 등을 처리하는 일반자금이체, 금융기관간 직접 또는 중개에 의한 콜거래 정보를 근거로 콜자금 및 그 이자를 자동적으로 결제하는 콜자금 결제, 개인 및 기업이 참가기관을 경유하여 거액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장외 채권거래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증권대금동시결제, 소액결제시스

템의 차액결제, 동일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 원화자금이체)

원화자금이체는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및 각 지역본부에 개설되어 있는 결제계좌(당좌예금, 결제전용예금)를 통하여 참가기관간 또는 이들 본·지점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들 자금의 용도는 크게 콜자금, 증권매매자금, 외환매매자금, 기타자금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일반 원화자금이체는 당좌예금계좌의 개설기관 또는 거래주체에 따라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금융기관 본·지점간 자금이체의 2가지 종류로 세분된다.

(콜자금 결제)

콜자금 결제는 금융기관이 단기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을 한국은행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업무로서 모든 참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동 콜자금 결제는 기일물과 반일물거래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1일물 이상의 콜자금이 콜거래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일반 원화자금 이체시스템으로 수취된 경우에는 콜자금 상환시 콜자금 공급기관이 콜자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또는 일반 원화자금이체를 통해 콜자금 상환기관이 콜자금 공급기관 앞으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콜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다.

한편 신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이 입력한 콜거래 체결내역에 대하여 거래체결 순서대로 콜 공급 및 차입 기관별, 금리별, 기일물별 체결금액 등이 기록된 파일을 작성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신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기

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한국은행의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건별로 실시간 결제되므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어 거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송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 Ⅲ-21 신한은금융망의 취급업무

	자금결제업무	파일전송업무
원화자금이체	- 참가기관간, 참가기관 본·지점간 원화자금이체 - 콜자금의 공급·상환 -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 증권대금동시결제 -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의 차액결제 - 같은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
외화자금이체	- 참가기관간, 참가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 - 외화자금의 예치 및 인출 - 외화예탁 -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교환 차액결제	—
국공채 발행 및 상환	- 국공채 발행·양수도·환매·상환 자금의 결제 - 국공채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대금의 결제	—
한국은행대출	한국은행 대출의 실행 및 회수	한국은행 대출관련 자료의 송수신
현금지급	금융기관의 현금지급청구	—

(증권대금동시결제)

신한은금융망을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가 도입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에서 한국은행에 등록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지 않고 건별로 분리 결제되었다. 이처럼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먼저 결제를 이행한 거래기관이 결제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1999년 11월 종전의 한은금융

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우선 장외채권거래 및 환매 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이후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2001년 10월부터는 한국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의 주식거래 등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간의 결제(기관결제), 2003년 10월부터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 2004년 4월부터는 어음매매거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거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거래를 각각 추가하였다.

동 시스템에서는 증권매매거래가 체결되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채권매도자의 예탁자계좌에서 매수자의 예탁자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동시에 대금은 한국은행의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한국은행이 채권매도자 앞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표 Ⅲ-22 신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 확대 추이

	DvP 대상
1999.11월	· 장외 채권 매매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2001.10월	· 기관투자자간 증권 매매거래
2003.10월	·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
2004. 4월	· 어음 매매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교환차액이 계산되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최종결제되는 차액결제대상거래는 12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차액결제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별 순차액포지션을 산출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면 신한은 금융망에서는 지정처리시점에 이를 해당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좌예금계좌에서 출금한다.

한편 지방어음교환소에서 산출된 금융기관간 어음교환 차액은 해당 지역을 담

당하는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 등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동 차액결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지역별 교환수수취·지급 금액을 지정 처리시점에 맞추어 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금융망에서는 동일한 참가기관이 교환수수취 지역의 자금을 교환순지급 지역의 자금결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본·지점간 예약자금이체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도 지정 처리시점에서 일괄 결제되도록 하고 있다.

(동일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예금은 당좌예금,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조정예금, 금융기관간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결제 전용예금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동일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는 같은 한국은행 취급점(예: 금융결제국)내에서 동일 참가기관내 이들 계좌간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업무이다.

2. 외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국환은행의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간에 미달러화 및 일본엔화 표시의 외화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외화자금이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기관간 외화자금이체, 금융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 및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계좌에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외화자금이체)

금융기관간 외화자금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이체는 이체를 의뢰한 기관의 외화예수금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수취할 기관의 외화예수금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외화예수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금이체 신청내용을 대기파일에 수록하였다가 10분 간격으로 해당기관의 잔액을 확인하여 일괄 결제하

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국제국과 부산본부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수금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 본·지점간에 외화자금을 이체시키는 업무이다.

(외화자금 예치 및 인출)

외화자금 예치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계좌에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업무이다. 미달러화의 예를 들면, 신청기관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외화자금 예치를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마감시간(15시 55분)까지 모아서 지정처리시점(16시)에 일괄 처리한다. 이는 미달러화자금 예치가 한국은행의 환거래은행인 도이치뱅크트러스트은행 뉴욕(DBTC, NY)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뉴욕간의 시차로 인하여 실제 달러화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의 장부상 당일 예치된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자금 인출은 금융기관이 외화예수금계좌에서 외화자금을 출금하는 업무로서 마찬가지로 미달러화의 예를 들면, 신청기관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외화자금 인출을 신청하면 마감시간(15시 55분) 이내에서 신청 즉시 처리된다.

엔화자금의 예치 또는 인출은 전일 13시 30분까지 신청을 받아 당일 09시 30분에 결제처리하며, 실제 엔화자금의 입·출금은 한국은행의 환거래은행인 도쿄미쓰비시은행 동경(BOTM, TK)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출업체의 상품대금회수 안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외화차액결제 업무를 신한은금융망 취급업무에 추가하고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계좌를 통해 오전 11시 동 업무에 따른 차액을 결제처리하고 있다.

3. 국공채 발행 및 상환

국공채 발행 및 상환은 국공채 발행, 질권등록, 등록명의 변경(양수도), 환매 및

만기상환, 그리고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로 구성된다.

국공채의 발행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각종 국공채를 매입하는 기관이 그 대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국공채를 인수하는 업무이다. 국공채 경쟁입찰결과 국공채를 낙찰받은 금융기관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국공채 매출발행을 신청하게 되면 국공채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금결제와 동시에 해당 국공채를 한국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게 된다. 한편 입찰신청, 낙찰자 결정 등 국공채의 발행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업무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공채의 질권(부기) 등록은 등록 국공채 보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질권, 전질 또는 기타 담보에 관한 상황을 등록하는 업무이다. 등록 국공채 보유기관이 등록된 국공채를 담보로 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질권 등록을 청구한다. 질권이 설정된 국공채는 질권이 해지될 때까지는 이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국공채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한국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질권 등록 말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부기) 등록사항이 말소된다.

국공채 등록명의 변경은 등록 발행된 국공채가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이다. 국공채를 등록한 기관이 등록된 국공채를 양도할 경우 양수도를 청구하게 되며 이때 국공채 양수도 자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모두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대금결제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입력시켜야 한다.

한편 양수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도가 실행되지 않고 일단 대기파일에 수록되며, 마감시간까지 잔액부족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도 청구가 취소된다. 자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국공채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기관의 승인 절차 없이 양도기관 단말기의 입력만으로 양수도를 실행할 수 있다.

국공채 환매는 등록된 국공채를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업무로서 한국은행 금

용시장국이 선정한 환매대상 국공채 내역을 환매대상기관과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앞으로 통보하면, 국고증권실은 환매정보를 기관별로 입력하고 환매대상기관은 전용단말기에 환매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환매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환매 청구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채권원리금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환매대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등록 국공채의 상환시에도 상환당일 등록국공채 보유기관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국공채의 상환을 신청하면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이 해당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다.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는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업무이며 매매방법으로는 경쟁입찰방식과 상대매매방식이 있다.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의 업무처리절차는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입찰신청, 매매계약체결, 채권의 양수도 및 대금결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2006년 4월부터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으로 결제 처리하고 있다.

4.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신청서와 담보증권 제공신청서를 온라인방식으로 전송 받아 심사하고 대출 실행 및 만기 회수 등의 자금결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 등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기준이 되는 여신취급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업무는 일정기간동안 취합된 대량의 자료를 파일단위로 송수신하는 파일전송(file transfer) 방식에 의해 처리한다.

1. 참가기관

신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경영지도비율, 자금이체업무 담당 전문인력수, 신한은금융망 예상 이용건수,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Ⅲ-23 신한은금융망 가입기준¹⁾²⁾

구 분	가 입 기 준
당좌예금거래약정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
경영지도비율 ³⁾	가입신청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경영비율이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 충족
전문인력수	OTP 사용자, 단말기 사용자 및 대체직원 총 4명 이상
예상 이용건수	가입이후 1년간 월평균 50건 이상
기타	탈퇴후 3년이내 재가입 불허

주: 1) 2010년 1월 시행

2) 한국은행 업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자금중개, 은행공동망 참여, 증권결제 등과 관련하여 신한은금융망 이용이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중 이용건수기준 적용을 면제

3)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설기관의 경우에는 신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임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가동 초기의 115개 기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158개 기관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수가 감소하여 2009년 10월말 현재 127개 기관(은행 53개, 비은행 74개)으로 줄어들었다.

표 Ⅲ-24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수 추이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10
은행	61	57	54	52	54	53
(국내은행)	20	19	18	18	18	18
(외은지점)	41	38	36	34	36	35
비은행	65	66	68	70	75	74
합 계	126	123	122	122	129	127

주) 기말 기준

2. 전문의 입력시간

자금이체신청 전문의 입력시간은 기본적으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또한 일중당좌대출 상환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자금이체신청 전문은 17시 50분, 자금조정예금 입출금은 18시까지이다. 다만 동절기(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해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중 CLS은행이 이체의뢰기관 또는 수취기관이 되는 자금이체신청의 입력종료시각과 동 자금이체와 관련된 일중당좌대출의 상환종료시각은 18시 30분이며 CLS결제와 관련된 자금조정예금 입출금은 18시 40분까지이다. 한편 국채발행대금의 입금은 15시 50분까지이다.

한국은행 당좌예금잔액 등에 대한 조회업무, 한국은행대출 관련 파일의 송수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은 한국은행 관련부서장이 전산정보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신한은금융망의 장애, 자금결제의 지연 또는 집중,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입력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표 Ⅲ-25 신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추이

시기	변경내용
1994. 12.15	개시(09:30~16:30)
1999. 1.15	마감시각 30분 연장(09:30~16:30 → 09:30~17:00)
2008. 11. 3	마감시간 30분 연장(09:30~17:00 → 09:30~17:30)
2009. 4. 1	개시시각 30분 조기화(09:30~17:30 → 09:00~17:30)

주) 자금이체 입력시간 기준

3. 이용수수료

참가기관은 신한은금융망 이용시 한국은행이 정하는 수준의 이용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인건비 제외)중에서 신한은금융망의 가동으로 참가기관의 업무편의나 수익제고에 기여하는 비중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참가기관이 부담하도록 책정하고 있다.

현재 16시 30분까지 결제 완료되는 자금이체거래에 대해 낮은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16시 30분 이후에 결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며 17시 30분 이후 결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DVP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용수수료는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신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2009년 10월말 현재)

(원/건)

업 무 명	처 리 내 용	수수료 ¹⁾		
		16:30 이전	16:30 후~ 17:30 이전 ⁴⁾	17:30 후 ⁵⁾
원화자금 이 체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200	600	4,000
	참가기관 본지점간 자금이체			
	한국은행내 계좌간 자금이체 ⁶⁾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콜자금 공급			
	콜자금 상환			
	증권·대금 동시결제	150	450	4,000
	CLS결제자금 이체 ⁶⁾	3,900	4,300	4,300
외화자금 이 체	참가기관간 외화자금이체	200	600	4,000
	참가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			
국공채 등 거 래 ⁶⁾	부기등록신청	200	600	4,000
	국공채 등의 등록변경(양수도)신청			
기 타	취 소	800	800	4,000

주: 1) 국공채 등의 거래 및 기타업무를 제외한 자금이체업무의 이용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2)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및 국채의 발행·상환

3) 참가기관의 CLS은행 당좌예금계좌로의 자금이체에만 적용

4) 다음 각 목의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17:3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

가. 일중당좌대출 상환: 17:50 (18:30)

나.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18:00 (18:40)

* ()는 CLS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 해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적용

5) 한국은행 전산장애 및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사유로 17:30 후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6:30 후~17:30 이전 시간대 수수료를 적용. 다만, 한국은행 전산장애의 경우 장애가 16:30 이전에 발생하여 17:30 후에 복구된 때에는 전산복구 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이체에 대하여 16:30 이전 수수료를 적용

6) 동일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간 자금이체의 경우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면제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도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결제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금융위기 등에 따른 충격을 잘 흡수하고 특정거래 또는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근간이었던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왔다. 또한 법규 미비 등으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비해 왔다. 특히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발효되어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의 결제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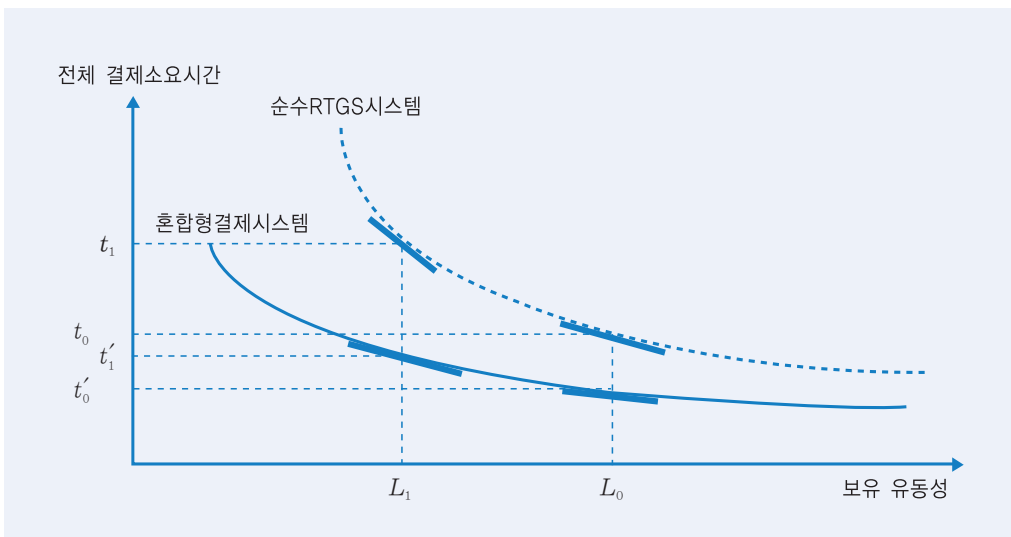
한편 한국은행은 2009년 4월부터 한은금융망을 개선한 신한은금융망을 가동하면서 결제리스크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신한은금융망에 도입된 혼합형결제방식의 경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통해 유동성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Ⅲ-4>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결제시스템 내의 보유유동성 수준과 결제시간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유동성 수준이 동일하다면(예: L_1) 보다 적은 유동성으로 많은 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혼합형 결제시스템의 전체 결제소요시간이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짧다($t'_1 < t_1$)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동성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여 결제시스템의 전체 결제소요시간⁴²⁾이 늘어나게 되는데 혼합형결

42) 개념적으로 일중 시스템에서 결제해야 할 자금이체 거래가 모두 처리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표화 한 것으로 금액가중 평균결제완료시간을 들 수 있다.

제시스템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이러한 결제소요시간 증가정도가 작다. 왜냐하면 혼합형결제시스템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동시처리(상계결제)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내 유동성 감소시($L_0 \rightarrow L_1$)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신속하게 ($t'_1 - t'_0 < t_1 - t_0$)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혼합형결제시스템의 유동성리스크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보다 낮고,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신한은금융망이 가동됨으로써 유동성 수축기에 보다 적은 유동성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결제지연이나 결제교착에 따른 금융시장내 불안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참가기관의 입장에서 결제자금 소요액 감소로 반일물콜 및 일중당좌대출 등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조달비용도 줄어 자금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겠다.

그림 III-4 결제시스템의 보유 유동성수준과 결제소요시간과의 관계



혼합형결제시스템과 함께 신한은금융망에 새롭게 도입된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의 경우 참가기관들이 대량의 자금이체 거래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누락이나 오류입력 등의 운영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관련 규정 개정시 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BIS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한은금융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체 평가하는 등 결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고 III-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미국)

미국에는 2개의 주요 거액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참가기관간 거액자금이체(Fedwire Fund Service)와 미국채, 정부보증채 등의 보관·결제(Fedwire Securities Service)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s)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국가간 미달러화 거래의 대부분이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인 CHIPS는 Fedwire와 달리 지급지시를 다자간 연속적으로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연속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는 영란은행, 14개 주요 은행 및 CLS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CHAPS Clearing Company Ltd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전산 시스템 운영은 영란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CLS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 Cheque and Credit Clearing 등을 통한 소액결제 등이 동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CHAPS는 1984년 차액결제방식으로 가동을 시작한 후 1996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재구축된 CHAPS sterling과 1999년 유로화 도입과 함께 구축된 CHAPS euro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CHAPS euro는 2008년 8월 15일 TARGET2의 3차그룹 가동

으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과 함께 RTGS 기반의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을 가동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는 이를 개선한 TARGET2를 운영하고 있다. TARGET이 16개국의 개별 RTGS시스템과 ECB의 결제시스템을 단순 연계한 분산형 시스템인 반면 TARGET2는 21개 참가국이 단일 공유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TARGET2의 운영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ECB 정책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EBA Clearing)이 운영하는 연속차액결제방식의 EURO1도 유로화 자금이체를 위한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거액결제시스템인 BOJ-NET(Bank of Japan Financial Network System)은 거액의 자금이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일본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결제시스템과 국채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자금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외환거래 및 전은시스템을 통한 소액결제의 최종 결제를 제공하며, 국채결제시스템은 국채의 보관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01년 1월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BOJ-NET을 전면개편하여 2008년 10월부터 당좌예금결제시스템에 유동성 절약기능을 도입한 혼합결제 방식의 차세대거액결제시스템(RTGS-Xg)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장 소액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에는 다수의 은행이 관련되어 은행간 자금 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갑이 A은행을 통해 B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을에게 송금을 하였다면, B은행은 을에게 지급한 자금을 A은행에 청구하게 된다. 이때 은행간 자금결제를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총액결제, 일정기간(통상 영업일)동안 은행간 거래에 따른 대차(貸借)금액을 모두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차액결제라 하는데, 소액대량 결제를 처리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에서는 주로 차액결제방식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이 없는데, 은행계 카드는 카드회사가 매일의 은행간 결제차액을 계산하면 각 은행이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전문회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제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어음교환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수취인에 대한 지급이 허용되므로 은행간 신용공여(overnight credit)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

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등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은행간 차액은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최소한 1일간의 은행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이므로 참가은행이 차액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결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결제리스크의 관리나 결제불이행 사태시 사후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1997년 9월 한국은행이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표 Ⅲ-27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구 분	결 제 대 상	도입연도	결 제 방 식
어음교환	어음·수표 및 제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 등 수납, 급여이체	1977	장표 및 전자방식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타행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전자방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방식
CMS공동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전자방식
지방은행공동망	예금 입·출금, 송금	1997	전자방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송금	2001	전자방식
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지급결제	2002	전자방식
G2B 지급결제시스템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2	전자방식
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소액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어음교환(clearing)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중 타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 은행이 수납한 어음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라 한다. 이러한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듬해인 1911년에는 인천, 부산에도 어음교환소가 설치되었다. 어음교환소의 설치는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어음의 대상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해 어음·수표 및 제 증서(우편환증서 등 16종)로 정해져 있다.

1. 참가기관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참가은행, 특별참가은행 및 대리교환참가은행으로 구분된다.

일반참가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 은행인데 이들 은행은 금융결제원 가입과 동시에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 자격을 상실한 때 탈퇴하게 된다. 특별참가은행은 일반참가은행 이외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심사위원회 심의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상 특별참가은행으로 지정되어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 참가은행 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

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참가은행에 대리교환을 위탁함으로써 어음교환에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교환참가은행이라 한다.

2. 업무처리절차

어음교환은 기본적으로 각 참가은행의 어음교환원이 어음교환소에 모여 타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해당 지급은행 어음교환원에게 건네주고 자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받은 후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처리절차는 교환대상어음을 기계교환과 수(手)교환으로 병행처리하는 서울어음교환소와 전량 수교환으로만 처리하는 지방소재 어음교환소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가. 서울어음교환소

서울어음교환소는 1979년까지는 교환대상어음 전체를 수교환으로 처리해 왔으나 어음교환량이 늘어나면서 수교환 처리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어음교환업무의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1980년 1월 어음판독분류기(R/S; Reader and Sorter)를 도입하여 서울시내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기계교환을 실시해오다 동년 11월 이를 서울시내 전 점포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울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업무 처리능력이 다시 한계에 달함에 따라 1982년 12월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는 교환량이 많은 은행은 자체 R/S기를 도입하여 자행 수납어음을 자행에서 직접 분류·처리하도록 하고, R/S기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처리하는 어음교환 분산처리체제로 전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985년 8월에는 어음교환소에서 처리하는 교환과 별도로 R/S기 보유은행들이 야간에 교환을 실시하는 야간교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은행중

과거 1년간 교환장수가 전 참가은행 교환장수의 1% 이상인 은행은 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간교환은행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어음교환소는 어음교환의 기계처리를 위하여 어음·수표의 통일양식을 제정하는 한편 발행번호, 금액, 지급은행 및 점포번호 등 일련의 정보를 어음·수표의 표면에 자기문자(MICR; 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로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절차는 아래와 같다.

(수납은행의 교환회부)

어음교환 참가은행은 영업시간중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어음을 기계교환 대상어음과 수교환 대상어음으로 구분하여 R/S기 보유은행의 영업점은 자행 본부로, R/S기 비보유은행의 영업점은 어음교환소로 교환에 회부한다. 기계교환 대상어음이란 어음표면에 정보를 MICR 방식으로 인쇄하여 기계처리가 가능한 어음을, 수교환 대상어음은 MICR 방식으로 인쇄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기계처리가 불가능한 어음을 말한다.

(교환회부어음의 처리)

R/S기 보유은행 본부는 자행 영업점으로부터, 어음교환소는 R/S기 비보유은행으로부터 교환에 회부할 어음을 제출받아 이를 지급은행별로 분류하여 해당은행 앞으로 제시하고 자행이 지급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을 수취한 후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결제한다. 그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R/S기 보유은행 본부는 자행 영업점에서 제출한 교환회부어음을 기계교환어음과 수교환어음으로 구분 접수한다. 기계교환어음은 자체 R/S기를 이용하여 지급은행별로 분류하고 수교환어음은 수작업에 의해 지급은행별로 분류 취합하여 계수보고표 등과 함께 어음교환소에서 R/S기 보유은행 상호간에 야간교환을 실시한다. 또한 R/S기 비보유은행 앞 제시어음은 어음교환소 앞으로 제출하고 R/S기 비보유은행이 어음교환소에 제시한 어음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은 어음

교환소로부터 수취한다. 다음으로 어음교환소는 R/S기 비보유 은행으로부터 수납한 교환회부어음을 지급은행별로 분류 처리한 후 지급지가 R/S기 보유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은 야간교환시(영업종료 2시간후) 해당은행 앞으로 교부한다. 그리고 어음교환소는 R/S기 보유은행이 자체 분류하여 제시한 어음중 R/S기 비보유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수납하여 이를 지급은행별, 영업점별로 분류 처리한 후 R/S기 비보유 은행에 교부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R/S기 보유은행 및 어음교환소로부터 수취한 어음중 지급지가 자행이 아닌 어음 즉 혼입(混入)어음을 교환한다. 혼입어음은 별도로 분류하여 교환소의 혼입어음 교환시간(다음 영업일 영업개시 1시간 전)에 상호교환하고 필요시 어음교환소에 통지하여 교환관련 제 계수를 정정한다. 혼입어음 교환으로 어음 실물에 대한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어음교환소는 교환어음차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여 한국은행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며 동 교환차액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오전 11시에 최종 결제된다.

(고객의 자금인출과 미결제어음 통보)

미결제어음통보제도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어음의 경우 해당 어음 제시인이 은행간 어음교환차액 결제 당일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환어음 지급은행이 수취어음중 결제가 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하여 영업종료 2시간전, 즉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인 14시까지 제시은행 앞으로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1983년 12월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제시은행은 미결제통보를 받은 어음에 대하여 자금인출이 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입력하는 한편 미결제통보되지 아니한 어음, 즉 결제된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제시인이 14시 20분 이후 교환결제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미결제통보되지 아니한 어음은 부도반환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장은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 및 제재)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하며,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는 부도반환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 무거래
- 형식불비(인감 누락, 서명 또는 기명 누락, 인감 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 위배,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불비, 인수없음, 약정용지 상위)
- 안내서 미착
- 사고신고서 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 위조, 변조
-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 인감·서명 상이(서명 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 지급지 상위
-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

(부도어음의 통보)

지급은행은 어음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교환일 영업마감시각까지 제시은행에 유선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부도어음통보/확인서”를 팩시밀리로 송부하며 제시은행은 동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은행에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또한 지급은행은 교환일 21시 30분까지 부도어음내역을 어음교환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동 부도어음을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과 함께 다음영업일의 어음교환을 통해 제시은행에 반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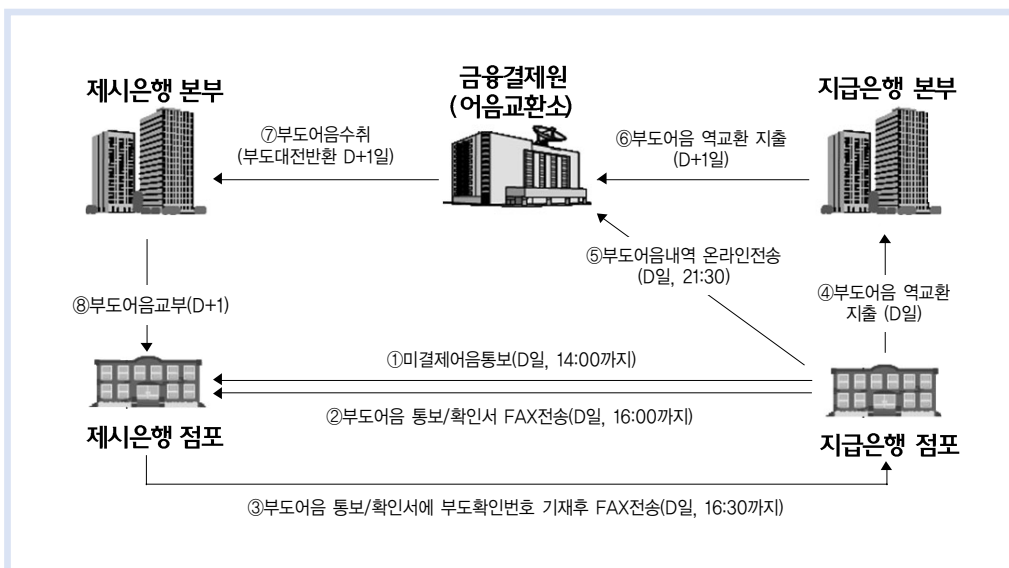
부도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부도어음 발행인은 교환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에 동 대금을 어음 제시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이 경우 제시은행은 입금일 21시 30분까지 부도어음대전 입금내역을 어음교환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사고어음의 처리)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고신고 또는 위·변조 신고시, 신고자는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이 교환당일 입금되어 있을 경우 지급은행은 부도어음내역에 동 입금사실을 등록하여 어음교환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며, 사고 및 위·변조어음의 부도반환 후 교환 다음영업일의 영업시간중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부도어음대전 입금내역을 작성하여 어음교환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사유가 위·변조인 경우 소정의 증빙자료를 교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교환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⁴³⁾

그림 III-5 부도어음 업무처리절차



43)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해설」(2005.12), pp. 269~280.

한편 어음교환소는 교환소를 통한 교환대상 어음·수표중 약속어음, 환어음, 당좌수표 및 가계당좌수표 등의 부도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어음 지급의무자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당일자로 어음교환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정지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예금부족의 부도로서 부도어음대전의 입금통보가 없는 경우
-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 또는 위·변조 신고어음으로서 입금통보가 없는 경우
- 어음금액 해당자금의 별단예금 입금이 면제된 위·변조어음으로서 관계증빙 자료를 15일 이내에 어음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 부도발생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내 입금통보된 예금부족,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어음발행인이 당좌거래약정이 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지정한 경우
-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 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였을 경우

그리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어음교환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어음교환 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의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즉시 해지하고 미사용 어음·수표용지를 전부 회수하는 한편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불허한다.

어음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현저히 신용을 회복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어음의 부도 또는 거래정지처분까지의 절차가 관련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거래정지처

분이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위·변조 등에 기인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동 처분을 취소해 줌으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나. 지방어음교환소

(운 영)

지방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업무는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동 규약시행세칙」 등에 의해 통일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되 어음교환시각 등 일부 사항은 금융결제원 사원 및 준사원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각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어음교환소에서의 어음교환 관련 사무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결제원 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부운영위원회는 어음교환소 참가기관에 대한 제재, 불량거래처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교환소별 상호교환 실시요령의 제정 등 해당지역의 어음교환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나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 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 무)

지방어음교환소는 서울어음교환소와 달리 모든 어음교환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방어음교환소 소재 지역 금융기관은 영업시간중 고객이 제시한 어음을 은행별로 분류하여 다음 영업일 오전 어음교환소에서 어음교환 참가은행간 교환을 실시한 후 어음교환차액을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통해 결제하고 있다. 교환완료어음에 대한 미결제어음통보, 부도반환 및 거래정지처분 등의 절차는 서울어음교환소와 동일하다.

(어음교환소간 상호어음교환)

경제규모의 확대,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역간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자금결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3월부터 어음유통량이 많은 인근 어음교환소간에 상호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중 동일 어음교환소 참가은행 점포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은 수납한 다음 영업일에 해당 어음교환소에 교환 제시하여 결제되나 지급점포가 동일 어음교환소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점포 앞으로 직접 추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의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결제기간이 약 4~5일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추심료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어음·수표의 수취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신속·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하여 어음교환소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지역 어음을 상호교환하여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는 상호어음교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호교환은 2009년 5월말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강릉, 대전, 목포 등 8개 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3.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

(전자정보교환제도 추진 현황)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장표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수납장표 처리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수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처리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납장표 처리업무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는 이러한 장표처리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 및 장표의 물리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과다한 인적·물적 비용 및 분실·도난 등의 사고위험 증대, 빈번한 오류

발생 및 업무종료 지연 등으로 창구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금융기관 수납장표 처리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보교환제도의 도입을 공동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수납기관 및 한국전산원 등을 중심으로 실무전담반이 구성되어 1997년 5월 「OCR지로용지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 7월에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은행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제1단계 사업으로 2000년 5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이 실시되었고,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지로장표가, 11월에는 한국통신 발행 지로장표가 추가되었으며 2002년 9월부터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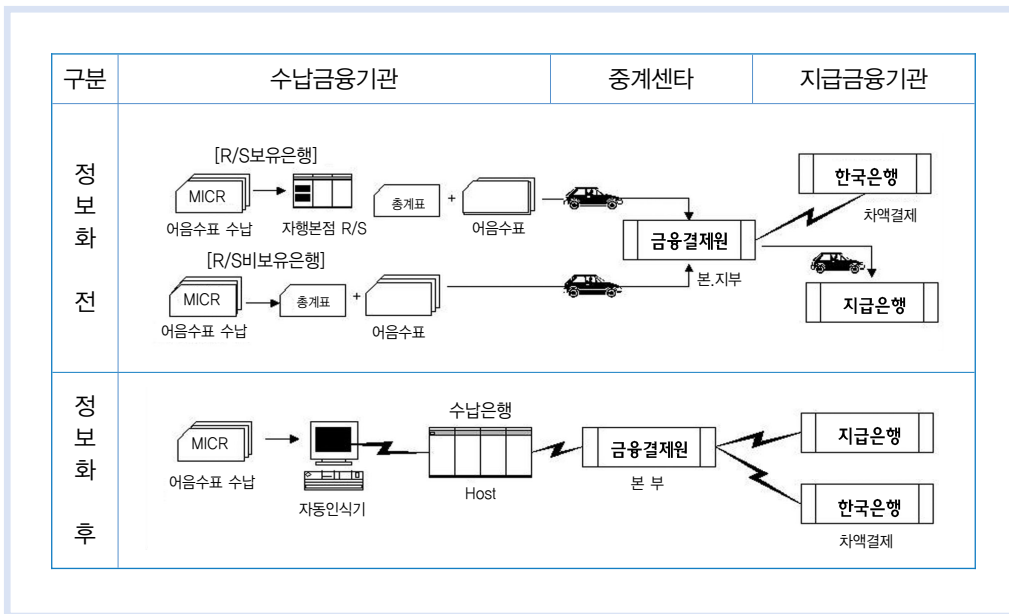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 업무처리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기관의 각 수납점에서 자동인식기 등의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을 전산데이터로 전환한 후 장표실물은 자체 보관하고 전환된 전산데이터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본부의 주컴

표 Ⅲ-28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시행

단계	부 문	대 상 장 표	추진(시행)시기
제 1 단계	어음·수표	자기앞수표	2000.5월 서울, 2002.9월 전국
	지로장표	전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OCR장표	2000. 7월
		전기 OCR장표	2000.11월
		금융결제원 일반OCR장표	2004.12월
제 2 단계	어음·수표	어음, 기타 수표(당좌, 가계)	2009.4/4분기 서울 및 서울상호 교환지역, 2010.4/4분기 전국
	지로장표	국세, 지방세	각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금융결제원 기타장표	2004.12월

퓨터로 전송한다. 본부에서는 전송받은 전산데이터를 다시 금융결제원 중계센터로 전송하고 중계센터는 각 금융기관의 전산데이터를 취합, 분류한 후 수납기관 앞으로 전송하며 징수기관은 전송받은 전산데이터로 수납대사 업무를 처리하고 수납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어음교환 업무의 경우 종전에는 각 금융기관 직원들이 어음·수표 실물을 가지고 금융결제원에 모여 교환하였으나 전자정보교환제도 도입 이후 교환에 회부될 어음·수표의 전산데이터만을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교환업무가 처리된다.

그림 III-6 어음·수표 교환업무 흐름 비교



(어음 및 가계·당좌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추진현황)

제2단계 사업인 어음 및 가계·당좌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은 전자정보에 의한 지급제시의 법적 근거 미흡 등으로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어음법」·「수표법」이 개정(2007년 5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어음교환소는 2009년 7~9월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물교환과 전자정

보교환을 병행 실시 후 서울지역은 2009년 10월, 서울상호교환지역은 2009년 12월부터 전자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타 지역은 2010년 4/4분기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보교환 대상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영수증 등 정보교환 가능한 제증서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보는 이미지정보와 텍스트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지정보는 컬러이미지로 해상도 200dpi 이상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텍스트정보에는 현행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항목과 동일하게 제시점코드(7자리), 보관점코드(6자리), 색인번호(12자리), 어음·수표번호(8자리), 지급점코드(6자리), 권종(2자리), 금액(12자리)을 수록할 예정이다.

표 Ⅲ-29 이미지 정보표준(안)

이미지 Type	해상도 (dpi)	압축방식	File Format ¹⁾ (확장자명)	이미지의 크기 ²⁾
Color	200dpi	JPEG2000	JP2	앞·뒷면 합계 140KB이하 (부전지 첨부시 200KB이하)

주: 1) 최초 스캔한 *.BMP 파일을 *.JP2 파일로 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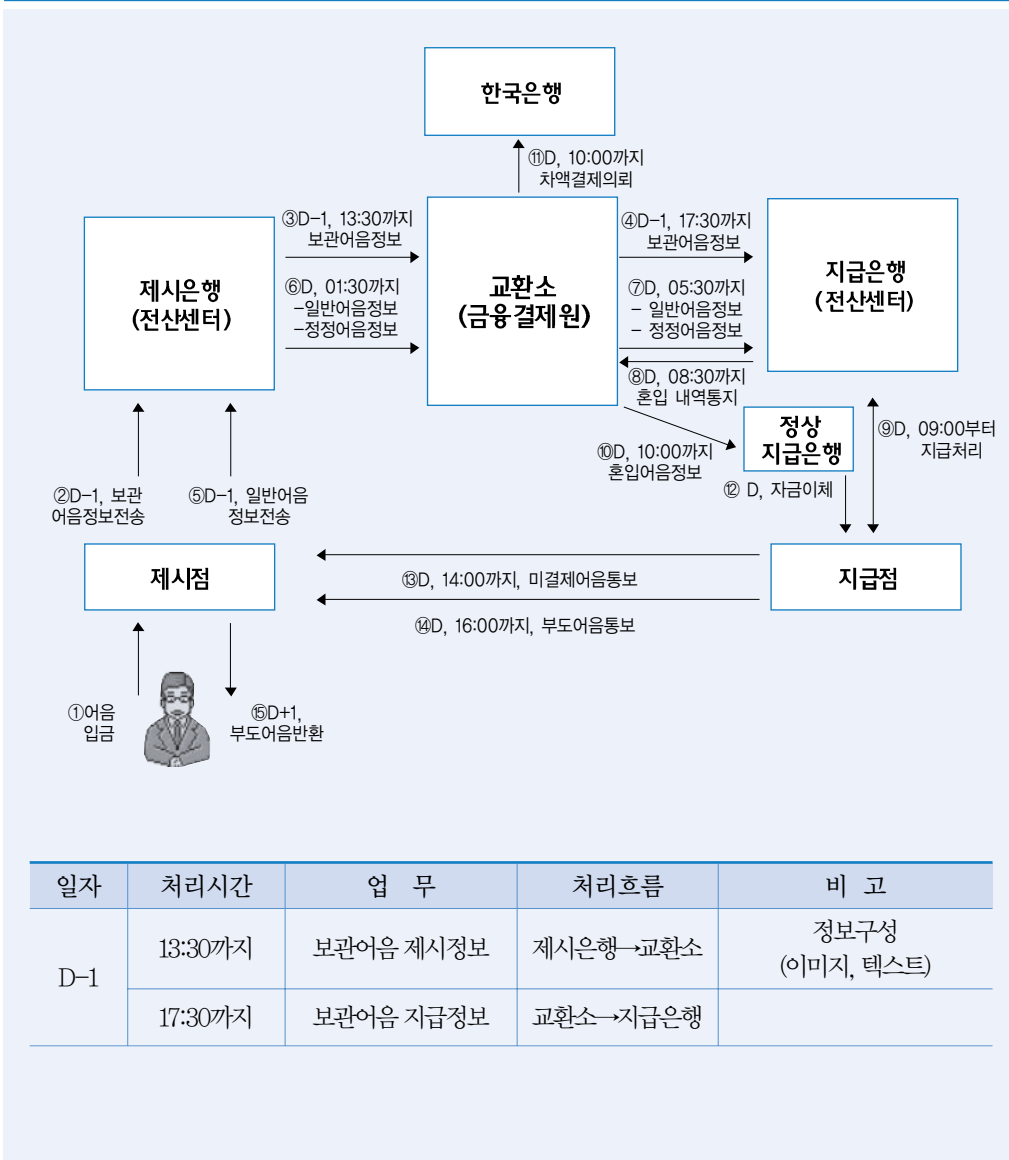
2) 한면의 크기는 앞 뒷면 다르게 적용가능 (예시: 앞면100KB, 뒷면 40KB)

어음·수표는 지급은행에서 실물 없이 전자정보 조회만으로 지급처리되므로, 기본적으로 전자정보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지급은행이, 전자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납은행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니게 된다. 어음실물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수납은행에서 원본 또는 전자정보로 5년간 보관하되 전자정보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의거 원본은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정보교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어음을 수납한 은행(제시은행)은 어음의 이미지 및 텍스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각 은행의 제시정보를 지급은행별로 분류하여 각 은행별 지급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해당

지급은행별로 전송한 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앞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해당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 지급은행은 제시은행에게 미결제어음과 부도어음을 통보하고, 부도·오류대금 청구정보를 전송하며, 제시은행은 소지인 앞으로 부도실물을 반환한다.

그림 III-7 전자정보교환 업무흐름



일자	처리시간	업 무	처리흐름	비 고
D-1	13:30까지	보관어음 제시정보	제시은행→교환소	정보구성 (이미지, 텍스트)
	17:30까지	보관어음 지급정보	교환소→지급은행	

D 교 환 일	01:30까지	일반어음 제시정보 보관어음 제시취소 정정어음 제시정보	제시은행→교환소	전영업일 부도·오류 대금 회수 정보 포함
	05:30까지	일반어음 지급정보 보관어음 지급취소 정정어음 지급정보	교환소→지급은행	차액결제 내역 포함
	08:30까지	혼입내역 통지(FAX)	오류지급은행 →교환소	자금정산 (5천만원 이상: 당일 5천만원 미만: 익일)
	10:00까지	혼입어음정보 전송	교환소 →정상지급은행	
	10:00까지	차액결제 의뢰	교환소→한국은행	차액결제(11:00)
	14:00까지	미결제어음통보	지급은행→제시은행	현행과 동일
	16:00까지	부도어음통보	지급은행→제시은행	
D+1	01:30까지	부도·오류대금 회수정보 전송	지급은행→교환소	일반어음 제시정보에 포함
	05:30까지	부도·오류대금 회수정보 전송	교환소→제시은행	
	09:00부터	부도표시 및 실물반환	제시점 →입금(소지)인	

제3절 지로제도

우리나라 지로제도의 효시는 1910년 도입된 우편대체계좌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지로제도는 1977년 2월 서울지역 전기요금 수납업무의 지로화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전기요금 수납 외에 제한적인 급여이체와 정부공사대금 등 국고 세출금의 채권자계좌이체를 취급해 오다 1981년 대상거래를 크게 확대하여 보험료, 상품판매대금, 각종 사용료, 학자금, 통합공과금 등의 대량수납업무를 일반이체의 대상에 편입하고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대량지급업무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등에 대한 자동이체업무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지로제도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지로실시지역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3월부터는 실물 지로장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서비스를 금융결제원 및 개별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지로 대상업무 및 실시지역의 지속적 확대로 지로이용실적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중 이용 건수 및 금액이 11억 641만건, 153조 5,250억원에 이르고 이용기관수도 2008년말 현재 28,393개에 달하였다.

표 Ⅲ-30 지로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기준	928,115	941,917	993,744	1,060,723	1,106,413
일반이체	432,141	386,376	358,322	342,781	331,201
자동이체	452,725	504,129	582,130	648,909	664,766
대량지급	20,814	21,457	23,973	43,764	59,902
납부자자동이체	22,435	29,955	29,319	25,269	50,544
금액 기준	122,254	122,822	132,853	143,322	153,525
일반이체	61,426	59,057	59,694	59,814	62,752
자동이체	33,052	35,541	42,308	52,271	55,731
대량지급	20,915	22,032	23,667	24,709	27,741
납부자자동이체	6,861	6,192	7,184	5,528	7,301

1. 참가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지로업무가 취급되기 시작한 1977년부터 사단법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가 동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89년 11월 금융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전국의 지로 실시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 각 점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송부한 장표, 또는 지로 이용기관이 제출한 입·출금명세 등을 컴퓨터로 집중 처리하여 해당은행에 입·출금지시를 하는 한편 지로거래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간 대차차액의 결제를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등 자료의 분류처리 및 자금결제 지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지로 이용신청기관에 대한 지로번호 부여, 대량지급 및 자동이체거래 승인, 신규 지로확대 실시지역내의 지로 설명회 개최 등 지로제도의 일상적 운영과 관련한 제반 행정사무와 지로이용 홍보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 및 준사원은행은 지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원은행 또는 준사원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지로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사원총회의 승인으로 지로사업에 특별참가할 수 있는데 1993년 씨티은행이, 2002년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참가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일부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참가 승인을 얻어 2009년 7월부터 지로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직접 지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로 실시지역내 각 영업점 창구에서 지로이체의뢰서의 접수, 금융결제원과 지로거래자료의 접수 및 발송, 거래당사자 예금계좌에의 입·출금 처리 등 제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업무의 유형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로 일반이체와 지방세이체 업무가 있으며, 전자지로업무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다.

(일반이체)

일반이체는 의뢰인의 신청에 의거 의뢰인의 현금 또는 예금 잔액을 재원으로 하

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로서 개인간의 일반송금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등의 대량수납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대량수납거래의 경우 기업체, 공공기관 등 대량수납기관이 기계처리가 가능한 특수장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면 납부자는 이를 이체대금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결제원 본부 및 지부는 동 장표를 집중하여 R/S기로 처리한 후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일괄 입금이체하고 있다. 대량수납업무의 취급으로 종래 은행 수납대행제도를 통하여 수납되던 공공요금의 상당부분이 지로제도로 흡수되었다. 현재 일반이체를 이용한 대량수납거래는 전기·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보험료, 도시가스요금, 학자금, 상품판매대금, 회비, 사용료, 부금, 신문구독료 등이다.

한편 지로장표는 영수증, 의뢰서, 통지서의 3매 1조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수납은행의 수납확인을 받아 납부자가 보관하고 의뢰서는 수납은행이 보관하며 통지서는 금융결제원이 처리한 후 수납기관에 송부한다.

지로장표는 이용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장표, 정액OCR장표, MICR장표 및 표준OCR장표와 참가은행이 제조하여 은행창구에 비치해 놓은 장표로 A장표가 있다. 이용기관이 발행하는 장표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장표구비요건에 따라 인쇄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OCR장표는 컴퓨터프린터를 이용하여 장표상의 수납내역(지로번호, 고객번호, 금액)을 규정된 활자체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장표이다. 이 장표는 장표발행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장표로 이용건수가 많은 기관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액OCR장표는 신문대금, 학자금 등과 같이 수납할 금액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장표이다. 장표의 전산처리부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로번호와 금액 등을 OCR문자로 장표 조제시 미리 인쇄하고 납부자 내역을 이용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표로 고객관리를 전산적으로 할 수 없는 기관에서

주로 사용한다.

MICR장표는 이용건수가 소량이며 수납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소규모 이용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표이다. 지로장표 조제시 장표 하단에 MICR문자로 지로번호를 미리 인쇄하고 납부자 내역은 이용기관에서 주로 수기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A장표는 지로번호가 있는 수취인에게 개별적으로 송금하거나 납부자가 지로장

그림 III-8 각종 지로장표

(일반OCR장표)

금융결제원 승인 제 102689호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OCR 지로번호 6353890 금액 54,250 원

지로번호 6353890+ 계좌번호 00000200804090101034+ 금액 542500< <11<

(대영ITS) * 이 용어는 '금융통지'로 처리되므로 구제지거나 하에 남의 미결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통 호 ()월분 납부자번호 :

납입기한 : 2008 년 5 월 31 일

위의 금액을 청구하오니 기일내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SH공사 방화9단지 관리사무소 수납인

(A장표)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A 지로번호 금액 원

기입요령 : 정해진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해야 하며 정지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11234567890

통신란

보내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납인

(수신1844, 152.4x88.5, OCR: 90g/㎡, 96, 11 지정) (3-1)

* 이 용어는 '금융통지'로 처리되므로 구제지거나 하에 남의 미결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정액OCR장표)

금융결제원 승인 제 106904호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OCR 지로번호 6365697 금액 3,000,000 원

지로번호 6365697+ 계좌번호 44444+ 금액 30000009< <12<

(대영ITS) * 이 용어는 '금융통지'로 처리되므로 구제지거나 하에 남의 미결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취지명 : 신청취지명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세무공고, 신용, 상환지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명 : 2009 대한민국 축제 대상 참가신청서

납입내역 : 대한민국 축제 대상 운영사무국 (주)아이앤알플러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0-28 서초빌딩 4F Tel : 02-5408-7800~4 / FAX : 02-5505-7081

2009.03.18 수납인

(표준OCR장표)

KT 수납통지서 (정보처리용)

표준OCR 분류 710400118 납기일 20090727 납부금액 31350 원

납부자 10356168140200907107 납부금액 31350 원

710400118103561681402009071071788

09072780000000313505000000313505

0112090710000114 전자납부번호 (고액번호)

0210356168140004

0300000000313504 (주)케이티

178 8 8 5 5

(MICR장표)

금융결제원 승인 제 100000호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MICR 지로번호 7688946 금액 20000 원

지로번호 7688946+ 계좌번호 00000200804090101034+ 금액 20000000< <11<

(대영ITS) * 이 용어는 '금융통지'로 처리되므로 구제지거나 하에 남의 미결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구 분

기 수

성 명

평택신한중고총동문회

경기도 평택시 동성동 763-21 동원빌딩 4층 TEL : 02-658-6851, 651-9171

(대영ITS) * 이 용어는 '금융통지'로 처리되므로 구제지거나 하에 남의 미결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지 로 번 호 Code

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장표로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다.

표준OCR장표는 2002년 7월부터 4대 공과금(전기, 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수납장표정보화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장표이다. 컴퓨터 처리부분(Read Band)은 2줄로 구성(총 66자)되며 기관코드(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납기일, 납기전·후 금액을 OCR문자로 인쇄하여 고지한다. 수납된 장표는 수납점에서 자동인식기 등을 통하여 직접 장표를 처리하거나 금융결제원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일반이체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부자 :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지로특수장표(고지서)를 현금, 수표 또는 예금청구서와 함께 지로창구에 제출한다.
- 금융기관 : 당일 수납한 지로장표에 대해 장표종류별 지로일계표를 작성하여 수납 지로장표와 함께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지로수납대금은 자행 지로계정에 입금한다. 한편 지급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지로입금지시서에 의거 수취인계좌에 입금한다. 수취인계좌 입금일은 서울, 경기 및 서울 상호어음교환지역 수납분과 인터넷지로 및 전자수납분의 경우 수납일로부터 제2영업일, 여타 어음교환 실시지역 수납분 및 정보화업무분의 경우 수납 후 제3영업일, 어음교환 미실시지역의 경우 수납 후 제4영업일이다.
- 금융결제원 :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지로통지서를 전산입력한 후 동 입력자료를 지급은행 및 수취인 별로 정리하여 파일전송방식으로 지로입금지시서는 지급은행에, 지로입금통지서는 전산처리가 완료된 지로통지서와 함께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아울러 은행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온라인으로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하게 되는데 차액결제일은 수취인계좌 입금일과 동일하다.

표 Ⅲ-31 일반이체 이용현황(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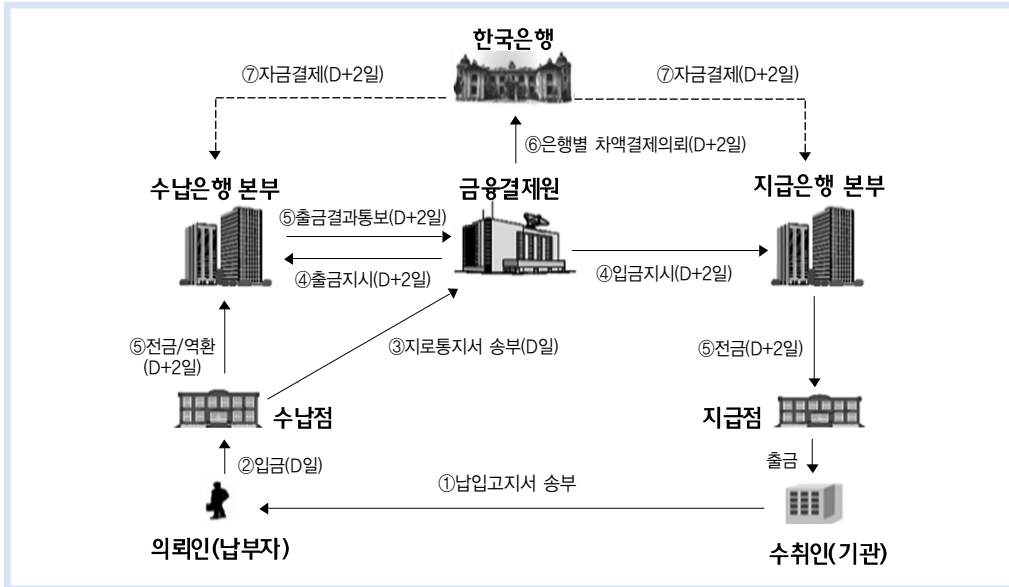
(천건)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기준	432,141	386,376	358,322	342,781	331,201
KT통신요금	55,571	47,133	43,569	42,707	42,864
전기요금	67,886	61,826	58,908	58,600	59,331
건강보험료	33,361	30,437	27,812	28,044	27,063
국민연금보험료	13,046	10,665	9,083	8,292	8,110
보험료	6,958	5,013	3,549	2,992	2,934
상품대금	36,463	26,829	20,350	19,591	19,946
가스요금	61,069	49,262	39,433	41,805	51,026
서비스이용료	107,391	112,727	121,651	62,579	17,831
부금적금	1,244	1,190	1,117	1,276	1,556
회비	14,623	12,813	10,170	10,531	11,561
교육비	1,788	957	524	579	622
신문대금	32,699	27,510	22,138	23,414	25,265
통신요금	-	-	-	28,479	62,954
기타	42	14	18	13,892	138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액기준	61,426	59,057	59,694	59,814	62,752
KT통신요금	3,354	3,185	3,172	2,828	2,835
전기요금	12,944	12,648	13,006	13,298	13,827
건강보험료	8,952	9,415	9,954	10,871	12,364
국민연금보험료	12,168	11,793	11,706	11,649	11,860
보험료	1,757	837	665	613	627
상품대금	6,285	4,807	3,770	3,366	3,457
가스요금	4,669	4,517	4,221	4,612	6,066
서비스이용료	8,820	9,817	11,628	8,141	5,812
부금적금	514	519	361	713	1,741
회비	1,005	899	738	962	1,307
교육비	355	253	172	197	241
신문대금	551	365	298	318	394
통신요금	-	-	-	971	2,206
기타	2	2	3	1,275	15

그림 III-9 일반이체 업무처리절차¹⁾



주: 1) 서울, 경기지역 및 서울 상호어음교환지역 수납분(면지역 제외)

(지방세이체)

지방세이체업무는 일반이체와 그 내용 및 처리절차가 유사하나 수납기관 및 수납대행 금융기관과 수납기관 주거래은행(금고은행)간의 개별적인 수납대행계약에 의해 처리되며 금고은행이 처리센터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세이체는 국민의 납부편의를 위한 일환으로 1986년 5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지역 재산세 수납업무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금고은행 대행처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1년 1월 서울시의 지방세 지로이용 해지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납업무의 지로이용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117개 시·군 지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처리하고 있다.

(자동이체)

자동이체(direct debit)는 정기적으로 각종 대금을 수납하는 수납기관과 납부자 및 금융기관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납부자의 개별적인 이체의뢰 없이도 수납기관

자동이체 이용 수납기관은 지로사업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영업점을 수납창구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청구내역에 대한 결제여부를 통보받으므로 미납자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고 납부자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한 이체대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대량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납부자도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납부기일 자동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동이체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and Compensation Fund (KDIC) for a deposit withdrawal. The process involves several parties: the Korea Deposit Insurance and Compensation Fund (한국은행), the Requesting Bank (의뢰인 거래은행 본부), the Receiving Bank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 the Requesting Bank Branch (의뢰인 거래은행 점포), the Receiving Bank Branch (수취인 거래은행 점포), the Requester (의뢰인(납부자)), and the Receiver (수취인(수납기관)).

The process steps are as follows:

- ① 자동계좌이체 거래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Contract for automatic account transfer)
- ② 납부액 사전통지(D-5일 이전) (Advance notice of payment (D-5 days or earlier))
- ③ 출금의뢰(D-1일) (Withdrawal request (D-1 day))
- ④ 출금지시(D-1일) (Withdrawal instruction (D-1 day))
- ⑤ 전금/역환(D일) (Full payment/reversal (D day))
- ⑥ 출금결과통보(D+1일) (Withdrawal result notification (D+1 day))
- ⑦ 입금지시(D+3일) (Deposit instruction (D+3 days))
- ⑧ 입금결과통보(D+3일) (Deposit result notification (D+3 days))
- ⑨ 전금/역환(D+3일) (Full payment/reversal (D+3 days))
- ⑩ 은행별차액결제의뢰(D+3일) (Request for settlement of bank-specific differences (D+3 days))
- ⑪ 자금결제(D+3일) (Settlement of funds (D+3 days))

The flowchart shows the flow of funds and documents between these parties, with arrows indicating the direction of the process. The Requester (의뢰인(납부자)) initiates the process by providing advance notice (②) and making a withdrawal request (③). The Requesting Bank (의뢰인 거래은행 본부) then issues a withdrawal instruction (④) and provides a full payment/reversal (⑤). The Receiving Bank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 issues a deposit instruction (⑦) and provides a full payment/reversal (⑨). The Korea Deposit Insurance and Compensation Fund (한국은행) handles the settlement of funds (⑪) and the request for settlement of bank-specific differences (⑩).

140_Ⅲ. 지급수단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청을 한다. 거래은행에 제출한 자동납부신청은 해당 은행의 확인 및 전산입력을 거쳐 금융결제원에 송부되고 이는 다시 수납기관별로 분류되어 수납기관으로 온라인 전송 또는 직접 송부된다.

- 수납기관 : 거래은행을 경유하거나 직접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거래 승인신청서 및 지로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납기마다 자동이체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납기일전 제5영업일까지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한편 자동이체청구명세를 인터넷 또는 파일전송 등으로 작성하여 납기기일전 제1영업일까지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 금융기관 : 납부자(의뢰인)의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에서 송부한 출금지시명세에 따라 해당 납기일 영업마감시각에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로계정에 입금하고 동 출금결과명세를 다음영업일 09시(전산매체인 경우 12시)까지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한편 수납기관 거래은행은 자금결제일(납기일에 이은 제3영업일)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송부된 지로입금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의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다.
- 금융결제원 : 수납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청구명세에 의해 납부자 거래은행별로 출금지시명세를 작성하여 납기일전 제1영업일 21시 30분까지 해당은행에 송부하며 납부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출금결과명세가 송부되어 오면 이를 전산처리하여 납기일에 이은 제3영업일 08시 30분까지 수납기관 거래은행으로 지로입금지시를 송부하는 동시에 수납기관에 자동이체결과명세를 발송한다. 아울러 은행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표 Ⅲ-32 자동이체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기준	452,725	504,129	582,130	648,909	664,766
KT통신요금	128,167	144,792	165,183	168,453	161,107
전기요금	66,800	67,800	72,244	70,526	68,047
건강보험료	50,222	50,606	51,395	55,414	57,059
국민연금	-	-	7,936	31,195	31,353
카드요금	15	4	3	3	3
보험료	59,736	63,895	68,184	39,453	6,468
부금적금	1,542	1,928	2,323	1,584	708
상품대금	60	55	46	56	54
서비스이용료	-	-	-	3,755	5,941
가스요금	36,835	44,077	50,321	63,567	75,932
회비	-	-	-	4,614	10,009
신문대금	-	-	-	1,984	3,838
통신요금	58,761	69,657	78,216	113,183	154,079
지방세	-	-	-	1,021	2,121
상하수도요금	9,667	11,648	13,269	14,191	16,137
국세	-	-	-	1	3
채신보험	-	-	-	34,560	71,907
통합공과금	1,273	2,573	16,456	14,265	-
리스료	2,057	2,529	3,715	2,245	-
기타	37,590	45,134	52,839	28,8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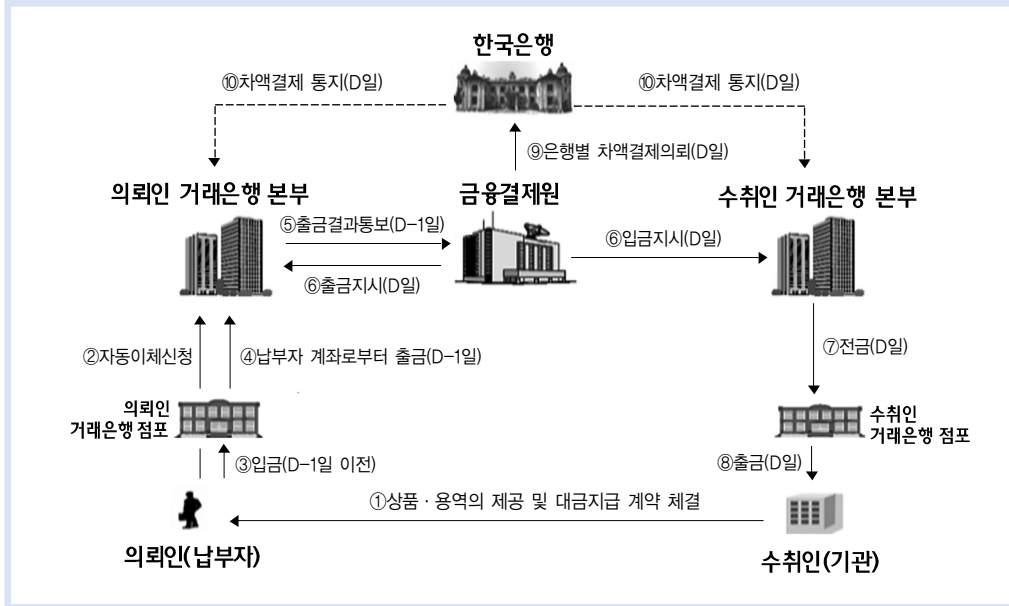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액기준	33,052	35,541	42,309	52,271	55,731
KT통신요금	6,621	7,075	7,408	7,276	6,647
전기요금	11,960	11,495	12,628	12,190	12,050
건강보험료	5,073	5,921	7,043	8,733	10,520
국민연금	-	-	2,120	9,287	10,247
카드요금	4	1	1	1	1
보험료	3,054	3,095	3,121	2,026	683
부금적금	133	201	275	251	195
상품대금	1	1	1	1	1
서비스이용료	-	-	-	354	726
가스요금	1,952	2,620	3,418	4,262	5,753
회비	-	-	-	77	176
신문대금	-	-	-	20	42
통신요금	2,053	2,399	2,741	3,345	3,965
지방세	-	-	-	79	180
상하수도요금	878	1,087	1,315	1,481	1,676
국세	-	-	-	1	3
채신보험	-	-	-	1,424	2,866
통합공과금	14	30	265	227	-
리스료	261	306	340	182	-
기타	1,048	1,310	1,632	1,054	-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고객이 거래은행(급여이체계좌 보유은행 등)이 아닌 타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한 자동이체서비스 확충방안의 하나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 또는 상호부금 급부금 등의 대출원리금, 적금 불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납부자자동이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납부자 : 고객이 거래은행에 이체금액, 이체일자, 수취은행, 입·출금계좌번호 등을 지정하여 납부자자동이체를 신청한다.
- 금융기관 : 거래은행은 고객의 신청내용을 고객관리원장에 기록한 다음 자금이체 지정일 전일에 이체금액을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로계정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동 출금내역을 20시까지 파일전송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한다. 한편 수취은행은 자금이체 지정일 오전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자자동이체 입금내역에 의거 수취계좌에 입금한다.
- 금융결제원 :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출금내역을 수취은행별로 분류하여 입금내역을 작성하고 자금이체 지정일 05시 30분까지 동 내역을 수취은행에 전송한다. 아울러 은행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온라인으로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그림 III-11 납부자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대량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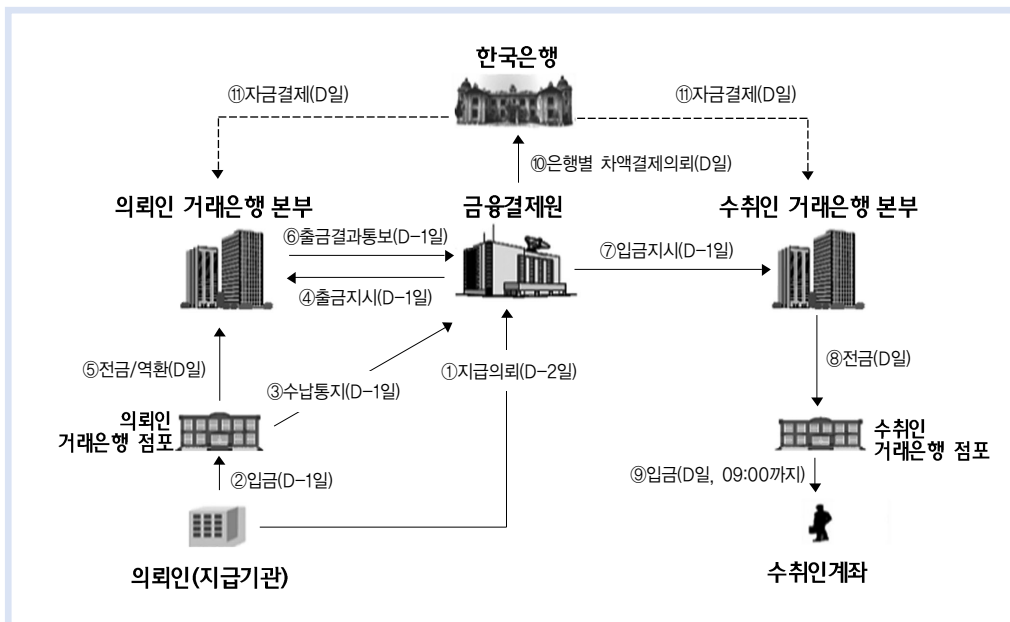
대량지급(direct credit)은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지급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대량지급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급기관 : 수취인의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 대량지급이체의뢰내역을 인터넷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송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이를 이체의뢰건수와 금액 등을 기입한 대량지급이체의뢰서와 함께 이체지정일전 제2영업일까지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이체지정일전 제1영업일 16시까지 이체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 수취인 : 금융기관에 결제성 예금계좌 또는 개인연금 관련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 금융기관 : 지급기관(의뢰인)의 거래은행(지급은행)은 대량지급이체의뢰서와 함께 이체자금을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금을 지로계정에 입금하는 한편 이체자금 수납결과를 이체지정일전 제1영업일에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한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입금지시내역을 전송받은 수취은행(수취인 거래은행)은 지정이체일 09시부터 출금이 가능하도록 수취인계좌에 입금한다.
- 금융결제원 : 지급기관(의뢰인) 거래은행(지급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수납내역에 의해 수취은행(수취인 거래은행)별로 입금지시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이체일전 제1영업일 19시까지 수취은행으로 온라인 전송한다. 또한 은행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이체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한다.

그림 III-12 대량지급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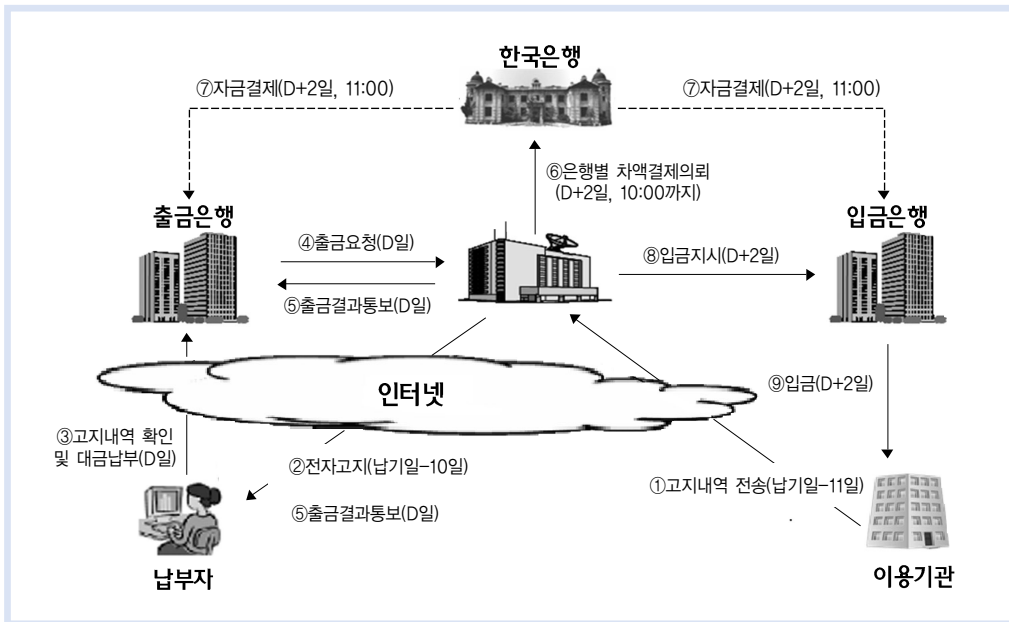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업무는 인터넷(www.giro.or.kr)을 통하여 지로 이용기관이 납부자

에게 대금 청구내역을 전자고지하고 납부자가 인터넷상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금을 지로이용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서비스로 2000년 3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지로대금 납부가능시간은 영업일중 09:00~22:00이나 일부 지로대금은 연중 납부할 수 있다. 2008년말 현재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일반지료요금 등 약 2만 8천여개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약 400여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는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용업체는 종이 고지서의 발행 및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수납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인터넷납부에 따른 창구수납업무 및 처리비용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III-13 인터넷지로 업무처리절차



1.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은행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은행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당일중 자금이체를 통한 지급결제업무의 신속화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2009년 9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금융투자회사 등 50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현금 송금, 자기앞수표 송금, 추심대금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현금 송금은 고객의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송금대금을 은행공동망을 통해 수취인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송금이 가능하며 현재 1회 송금한도는 1억원이다.

추심대금 송금은 추심결제대금을 어음발행인의 거래은행(지급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추심은행(어음소지인의 거래은행) 앞으로 즉시 입금처리 해주는 서비스이며, 자기앞수표 조회는 고객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조회를 의뢰받은 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동 수표의 발행은행 앞으로 수표 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객에 대한 타행환 업무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

다. 한편 금융기관의 내부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타행환공동망의 운영 종료시각은 고객에 대한 타행환업무 종료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 후로 되어 있으며 전산장애 등으로 타행환공동망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이 1시간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타행환공동망의 대고객수수료는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단일체계를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은행별로 자율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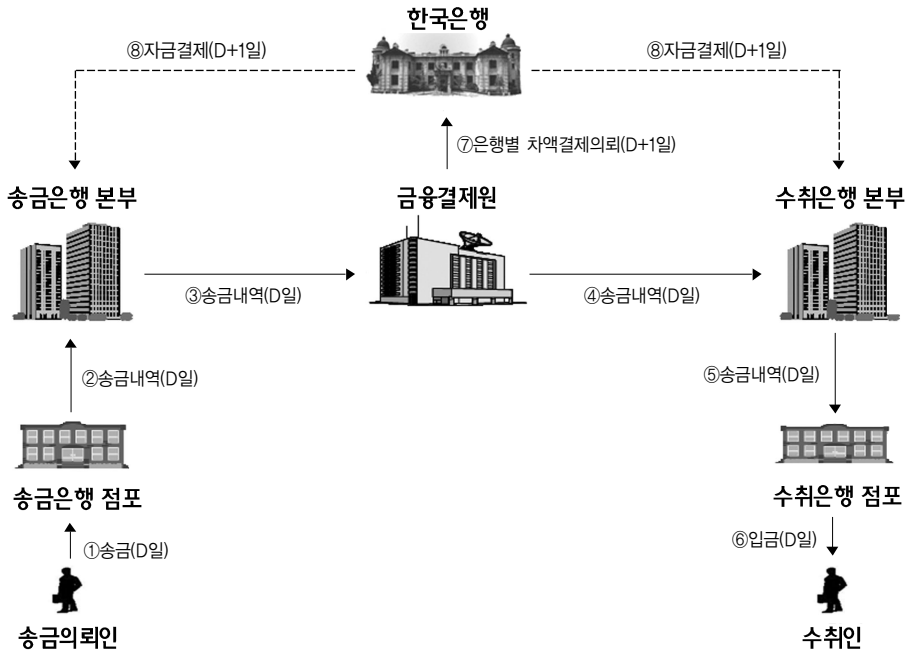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의뢰은행에 서면으로 송금지시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에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는 동 전문내용에 따라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타행환 송금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11시에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되며,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 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다. 한편 타행환 송금거래에 따른 지급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자간 차액결제시 결제차액에 대하여 자금이득을 얻은 은행이 콜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2008년중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실적은 건수기준으로 135백만건, 금액기준으로 812조원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심대전 송금의 이용실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용수수료가 낮고 이용시간 제약이 없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그림 III-14 창구의뢰시 타행환업무 처리절차



- ① 송금 의뢰인 : 송금 의뢰은행 점포에 송금액과 타행환입금의뢰서를 제출
- ② 송금 의뢰은행 점포 : 은행 본부에 송금의뢰내역 전송
- ③ 송금 의뢰은행 본부 :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동 송금내역을 전송
- ④ 금융결제원 :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로 동 송금내역을 전송
- ⑤~⑥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 : 수취인 계좌에 입금처리(당일 인출가능)
- ⑦ 금융결제원 :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D+1일)
- ⑧ 한국은행 : 은행간 차액결제 실시(D+1일)

표 Ⅲ-33 타행환공동망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연 중	현금송금		추심대전 송금		자기앞수표 조 회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1	380,462	1,487,244	0.005	0.007	490	380,952	1,487,244
2002	315,092	1,097,725	0.015	0.037	547	315,639	1,097,725
2003	259,682	895,919	-	-	622	260,304	895,919
2004	223,434	801,925	-	-	601	224,035	801,919
2005	179,940	788,183	16	168	681	180,637	788,351
2006	181,770	805,890	19	190	736	182,525	806,080
2007	163,899	812,024	17	181	735	164,651	812,205
2008	134,530	812,376	15	179	949	135,494	812,555

2.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은 은행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특정 은행 고객이 타 은행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가동으로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이용고객은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점용 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참가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영업이 조기에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 9월말 현재 CD공동망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HSBC은행 국내지점, 금융투자회사 15개 등 39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CD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는 현금(10만원권 자기앞수표 포함) 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조회, 지로대금 납부, 현금입금 등이며 이용 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투자예탁금 등이 있다.

현금인출업무는 고객이 타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9년 6월 현재 1회 인출한도는 100만원, 1일 인출한도는 600만원이며 이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예금계좌 개설은행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최근 CD/ATM의 계좌이체 기능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1년 이상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하여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현금서비스업무는 고객이 CD/ATM을 통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93년 9월 CD공동망업무로 추가되었다. 현금서비스한도는 거래은행의 CD/ATM을 이용한 현금서비스한도와 동일하며 이는 각 은행이 자행 고객의 신용에 따라 정하고 있다.

계좌이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거래은행내 계좌이체를 하거나 거래은행의 본인계좌로부터 타 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1994년 2월 실시되었다. 현재 1회 이체가능금액(600만원 이내) 및 1일 이체가능금액(3,000만원 이내)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각 은행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고객들이 CD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23시 55분(지로납부는 07시~22시)이며, 23시 30분부터 익일 07시 까지의 운용여부는 참가기관 자율로 정하고 있다.

고객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는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은행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단일체제로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타 은행 CD/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시 카드발급은행이 CD/ATM 보유은행에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는 참가은행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CD공동망을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업무가 실시됨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금융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은행들은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금이나 고액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고객간 지급결제가 가능해져 지급결제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표 Ⅲ-34 CD공동망 운영시간 변경 추이

시 기	변경내용
1995. 9	영업일 08:00~22:00으로 확대
1996. 9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스 휴일로 확대
1998.12	계좌이체서비스 휴일로 확대
2001.11	연중무휴 08:00~23:30으로 확대
2005. 3	연중무휴 07:00~23:30으로 확대
2006.12	연중무휴 00:30~23:30으로 확대
2007.12	연중무휴 00:05~23:55(23시간 50분)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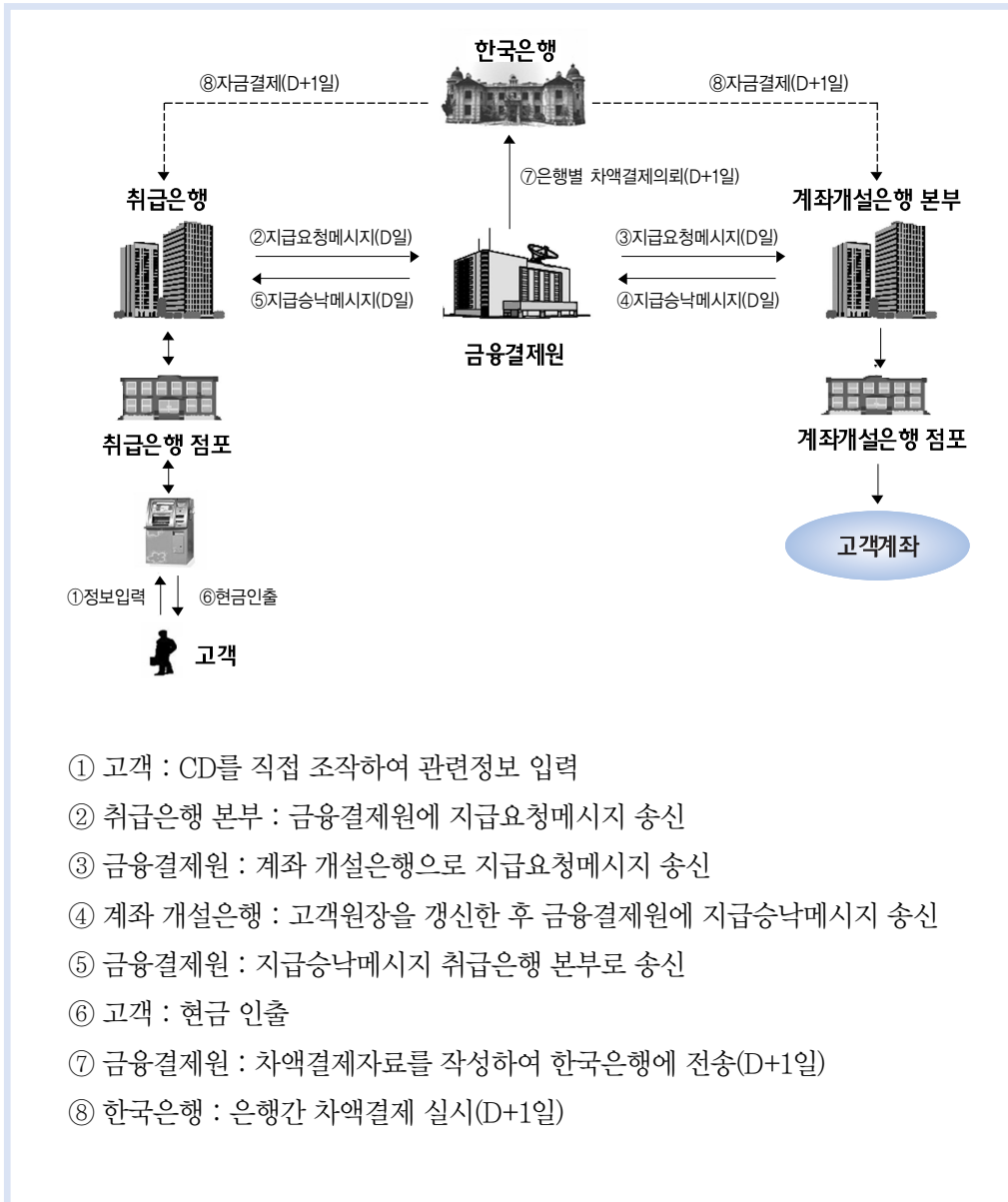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CD공동망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고객이 CD/ATM의 화면지시에 따라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거래전문이 금융결제원 처리센터를 경유하여 계좌 개설은행으로 송신된다. 개설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취급은행(CD/ATM설치은행) 지급요청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취급은행에 지급승낙 메시지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취급은행이 CD/ATM을 통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또한 CD공동망업무 취급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타행환공동망과 마찬가지로 거래 다음 영업일 11시에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의 각 은행 당좌예금계

정에서 차액결제된다. 한편 CD공동망 거래에 따른 취급은행과 계좌 개설은행간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CD공동망 거래차액에 대해 콜금리에 의한 이자지급방식의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15 CD공동망의 현금인출 업무처리절차



CD공동망 이용실적은 2008년중 630백만건, 240조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유형별로는 현금지급과 계좌이체 건수가 전체 이용거래건수의 각각 39.3%, 34.7%를 차지하였다.

표 Ⅲ-35 CD공동망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

연 중	총이용건수 (A+B+C)	현금인출 ¹⁾		계좌이체		잔액조회 (C)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2001	586,583 (19.4)	329,655 (20.5)	78,693 (31.2)	119,715 (15.7)	125,902 (22.3)	137,213 (20.1)
2002	656,931 (12.0)	369,603 (12.1)	94,170 (19.7)	128,384 (7.2)	152,114 (20.8)	158,944 (15.9)
2003	571,052 (△13.1)	301,410 (△18.5)	66,602 (△29.3)	132,145 (2.9)	145,653 (△4.2)	137,497 (△13.5)
2004	539,773 (△5.5)	283,344 (△6.0)	58,254 (△12.5)	123,325 (△6.7)	125,499 (△13.8)	133,104 (△3.2)
2005	554,396 (2.7)	278,032 (△1.8)	56,041 (△3.7)	141,026 (14.4)	143,353 (14.2)	135,338 (1.7)
2006	569,190 (2.7)	274,474 (△1.3)	55,558 (△0.9)	165,784 (17.6)	169,344 (18.1)	128,932 (△4.7)
2007	593,593 (4.3)	254,481 (△7.3)	51,131 (△8.0)	192,488 (16.1)	190,219 (11.0)	146,624 (13.7)
2008	630,398 (6.2)	247,701 (△2.7)	49,886 (△2.4)	218,456 (13.5)	189,930 (△0.2)	164,241 (12.0)

주: 1)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편 CD공동망 가동 이후 CD/ATM 설치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9만 8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기기종류별로는 CD가 4만 6천여대, ATM이 5만 2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 및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무인자동화점포의 설치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ATM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I-36 CD/ATM 설치현황

(연말기준, 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설치대수	52,954	66,059	80,153	80,834	82,972	86,333	93,728	98,216
C D	36,619	42,492	46,556	44,908	45,112	44,491	46,229	46,090
ATM	16,335	23,567	33,597	35,926	37,860	41,842	47,499	52,126

(점포외 CD공동망)

19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포외 CD공동망은 한국전자금융(주)가 지하철역구내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한 CD를 통해 참가은행이 고객에게 연중무휴로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스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12월부터는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계좌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뿐 아니라 영업시간 이후에도 개별은행의 365일 자동화코너 이외에 점포외 CD공동망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점포외 CD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인출한도는 1회 70만원이며 1일 인출가능 횟수는 각 참가은행이 CD공동망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 이용대상 예금은 CD공동망 이용대상 예금과 동일하며 CD의 설치 및 운영은 한국전자금융(주)가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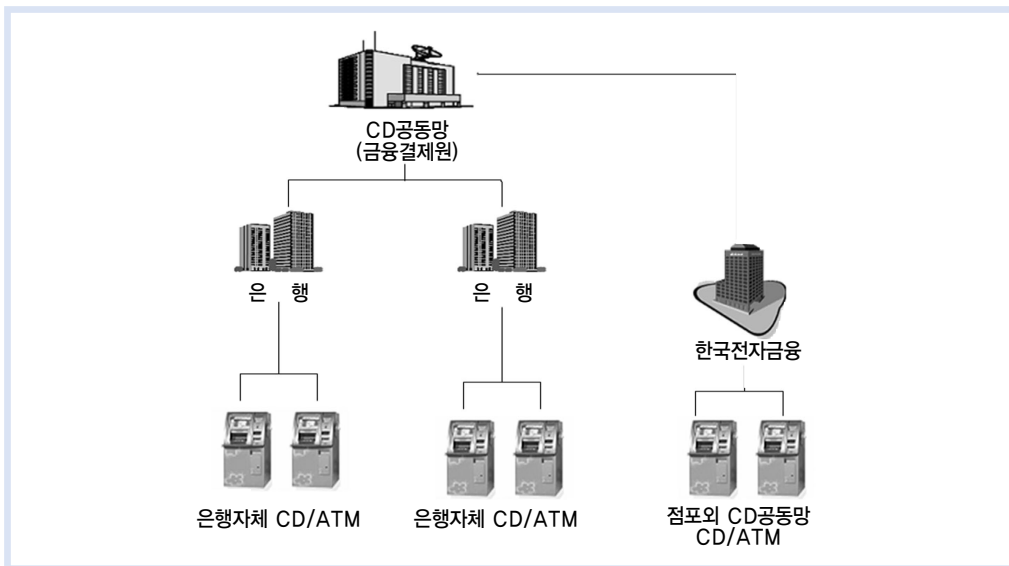
점포외 CD는 서울 및 경인지역, 부산, 대구 등의 주요 지하철역 및 백화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08년말 현재 전국에 4,6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고객 출입이 빈번한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점포외 CD 설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외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업무의 전문교환방식은 CD공동망과 동일하다. 한편 점포외 CD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주)는 매일 CD를 통하여 인출·지급된 은행별 예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 명세를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은 이를 한국전자금융(주) 거래은행의 교환순수취자금으로 간주하여 CD공동망의 은행간 자금결제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주)는 거래은행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CD/ATM 운영에
충당하고 있으며 1개월마다 각 은행에 대해 수수료 청구명세를 작성·송부함으로
써 각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의 구성은 네트워크의 신규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참가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이미 구축·운영중인 CD공동망에서 이용되
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업무처리절차를 수용하면서 CD운영을 담당하
는 한국전자금융(주)를 금융결제원에 접속시킨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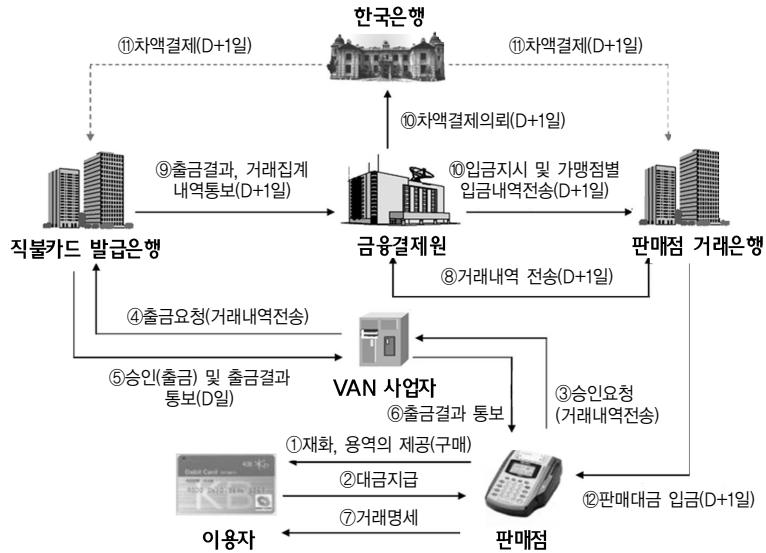
그림 III-16 점포외 CD네트워크 구성도



3.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EFT/POS망)은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 소
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카
드소지자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에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
으로 1996년 2월 가동되었다. 2009년 9월말 현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

그림 III-17 직불카드공동망 업무처리절차



- ① 직불카드 가맹점 : 상품 · 서비스 제공(D일)
- ② 직불카드 소지자 :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D일)
- ③ 직불카드 가맹점 : VAN사업자에 거래승인 요청(거래내역 전송)
- ④ VAN사업자 : 직불카드 발급은행앞 출금 요청(거래내역 전송)
- ⑤ 직불카드 발급은행 : 사용자 계좌에서 직불카드 사용대금을 바로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후 VAN사업자에 통보(D일)
- ⑥ VAN사업자 : 거래승인 및 출금결과를 통보
- ⑦ 직불카드 가맹점 : 사용자에게 거래명세 제공
- ⑧ VAN사업자 : 당일(08:00~23:30)의 거래내역을 D+1일 06:00까지 금융결제원과 가맹점 거래은행에 M/T로 제출
- ⑨ 직불카드 발급은행 : 거래별 출금결과 및 거래집계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통보 (D+1일 09:00까지)
- ⑩ 금융결제원 : 가맹점 거래은행에 가맹점별 입금내역 전송하고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 의뢰(D+1일 10:00)
- ⑪ 한국은행 : 은행간 차액결제 실시(D+1일 11:00)
- ⑫ 가맹점 거래은행 : 가맹점 계좌에 판매대금 입금(D+1일 14:00)

외한 16개 국내은행과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주), 한국신용정보(주), KIS정보통신(주), 코벤, KSNET 등 6개 VAN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즉시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일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직불카드는 고객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불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업종별로 판매액의 1~2%로 직불카드 발급은행이 수수료의 85%, VAN사업자가 15%를 각각 배분받게 된다.

4.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공동망은 1996년 5월부터 가동되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는 대량자금 이체업무중 출금이체(3일) 및 입금이체 서비스만 제공되었으나, 2009년 10월 12일부터 출금이체에 당일 처리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CMS 이용기관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결제서비스 내용)

CMS공동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업무에는 대량자금이체, 실시간 업무 등이 있다.

대량자금이체는 다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로 구분되는데 출금이체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 또는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계좌이체와 유사하다. 입금이체는 각종 상품 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

출하여 타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 대량지급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2002년 4월부터 CMS 부가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실시간 업무는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의 계좌 존재여부 조회와 이용기관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등록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편 CMS서비스 이용기관은 CMS공동망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대량자금이체인 입금이체와 출금이체를 중심으로 CMS공동망 업무처리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이 출금이체 청구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한 후 출금의뢰내역을 수납 전영업일 금융결제원 CMS센터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은 출금의뢰내역을 참가기관별로 분류하여 출금기관(납부자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출금기관은 납부자의 계좌에서 해당자금을 인출하여 미결제환대차계정에 입금하고 출금결과내역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한다. 금융결제원이 출금결과내역을 근거로 입금지시전문을 작성하여 수납 다음 영업일 입금기관(이용기관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하면 입금기관은 출금금액에서 고객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미결제환대차계정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결제원은 출금기관별 출금결과내역을 종합하여 이용기관별 출금내역을 다음 영업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입금이체의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입금의뢰내역을 이체 전영업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고객수수료를 포함한 지급총액을 지급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결제원은 출금지시전문을 작성하여 출금기관(이용기관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출금기관은 고객수수료와 출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출금하여 미결제환대차계정에 입금하고 출금통보전문을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입금의뢰내역을 입금기관(수취인 계좌 보유 참가기관)별로 분류하여 입금이체 전영업일 입금기관으로 전송한다.

입금기관은 입금의뢰내역에 따라 미결제환대차계정에서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입금결과내역을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금융결제원은 입금기관별 입금결과내역을 종합하고 이용기관별 입금결과내역을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전송한다.

한편 CMS공동망업무 가운데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는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이다. 출금이체의 경우 자금결제일은 출금이체일의 다음 영업일이며 입금이체는 입금이체일 당일이다. 자금결제절차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금융결제원이 자금결제일 10시까지 참가기관별 차액결제금액 및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간 차액결제금액을 11시에 해당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결제하고 이를 해당 참가기관에 통보한다.

2008년중 CMS공동망 이용실적은 7억 91백만건, 110조원이며 이중 출금이체가 건수의 89.7%, 금액의 76.5%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Ⅲ-37 CMS공동망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합계		입금이체		출금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630,765	72,711	65,776	20,875	564,989	50,837
2005	709,929	80,000	62,455	20,821	647,474	59,179
2006	790,498	89,847	62,827	20,560	727,671	69,287
2007	849,607	101,922	71,052	22,135	778,555	79,787
2008	791,486	109,952	81,567	25,880	709,918	84,072

그림 III-18 CMS출금이체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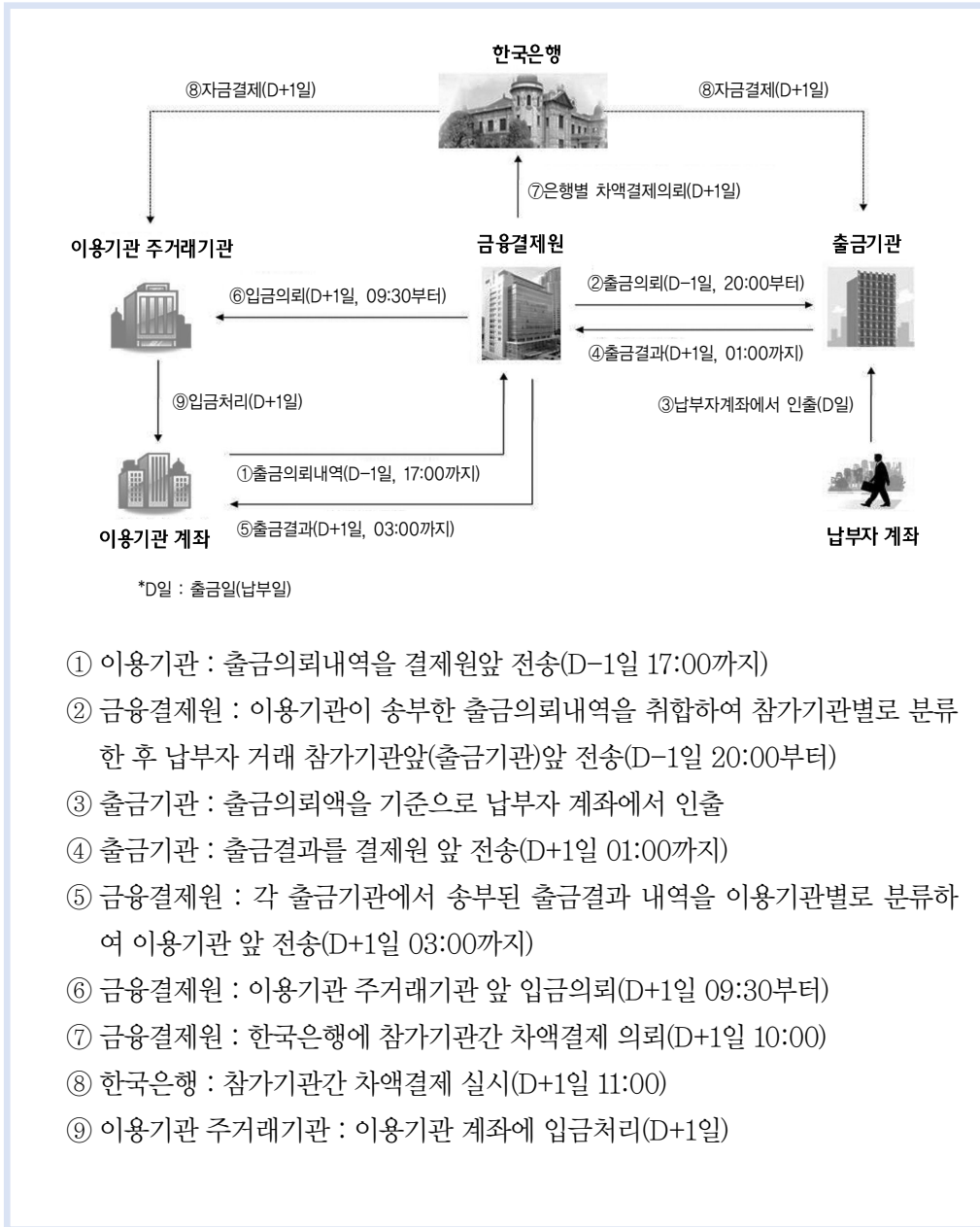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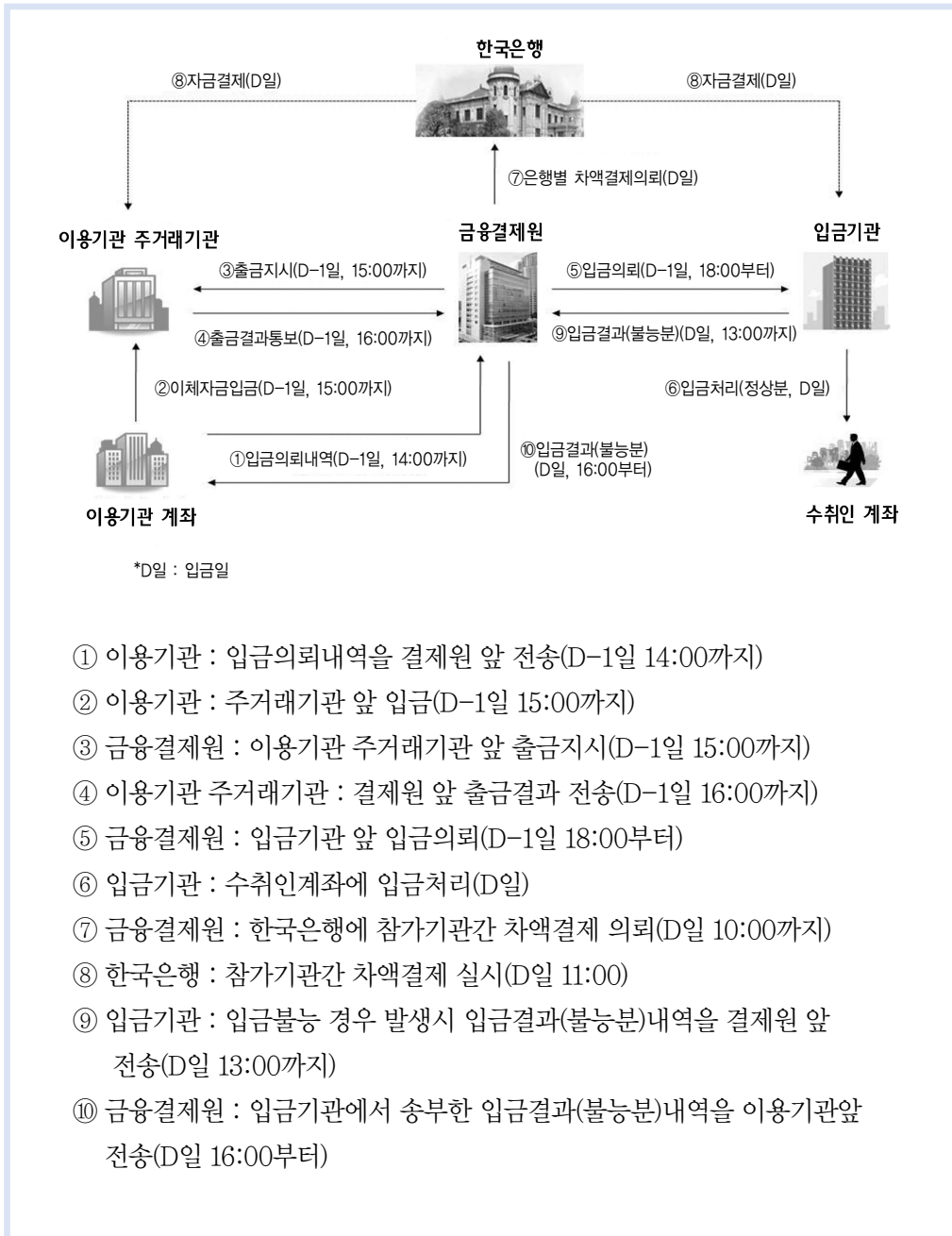


그림 III-19 CMS입금이체 업무처리절차



5.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Bankline)은 당초 10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자유롭게 예금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banc라인 업무를 위해 참가은행과 금융결제원을 연결하는 공동망으로서 1997년 6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9월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자금의 출납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금거래와 조회 등의 기타거래로, 자금거래는 다시 입금과 출금거래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공동망과 유사하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의 업무와 유사하다.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다. 그러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방은행공동망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고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banc라인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지방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banc라인 상품의 기본계좌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의 결제성예금 계좌가 있으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 등 기한부예금 계좌와의 연결처리도 가능하다.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서면 또는 대고객 전산망을 통해 의뢰은행에 입금지시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 본부는 전문에 따라 수

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의 운영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11시에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되며,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 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공동망을 통한 입·출금업무에 따른 의뢰은행과 지급은행간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은행간 결제차액에 대하여 이자지급방식으로 자금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6. 전자화폐(K-CASH)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시 발생한 금융기관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전자화폐란 ‘금융IC카드표준’에서 정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카드에 일정액의 화폐가치를 전자기호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대체 지급수단을 말한다.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서 관리하게 되며,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결제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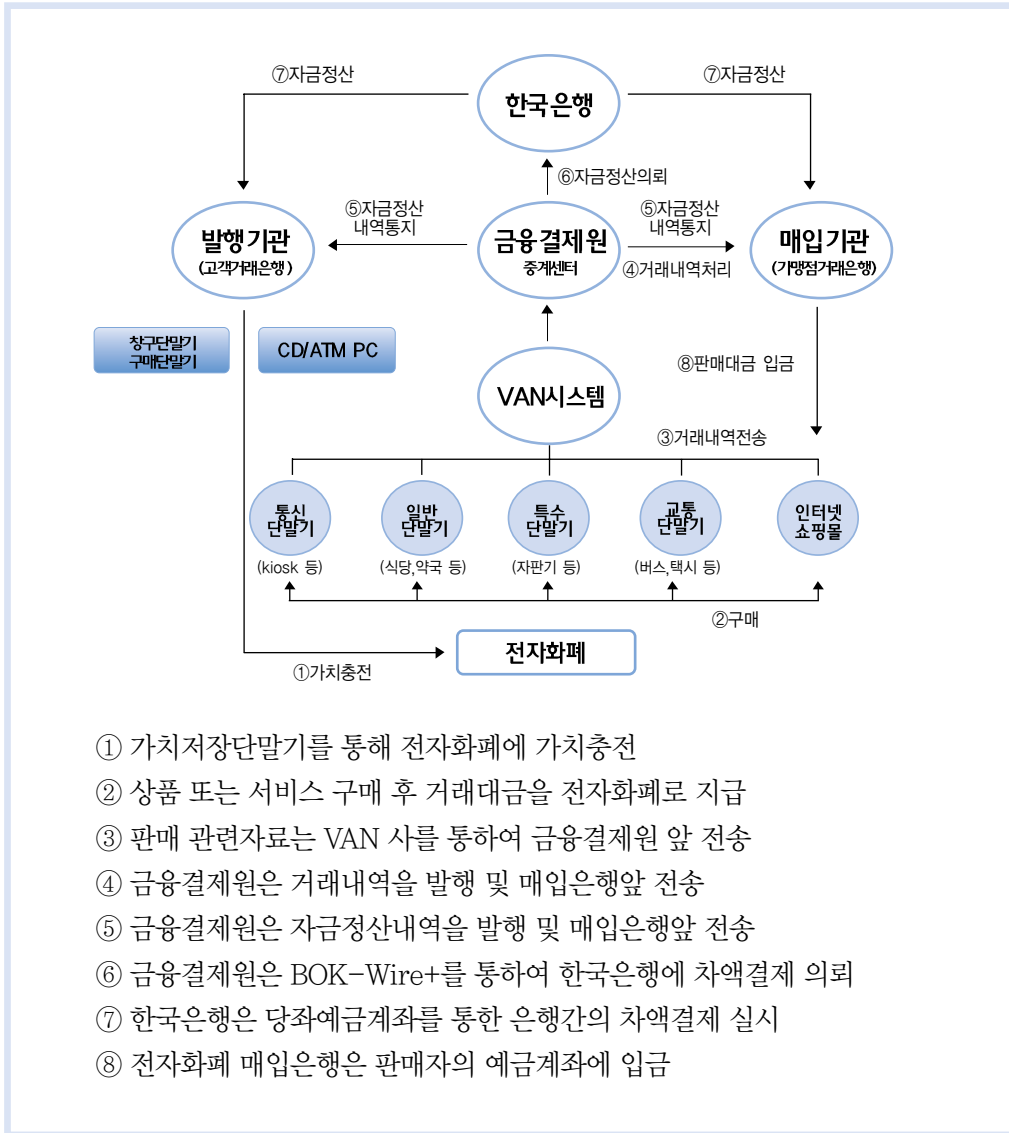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된다.

발행은행은 전자화폐 소지자의 주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전자화폐 거래에 대한 정당성 확인 및 지급보증의 책임을 진다. 매입은행은 단말기 운영자의

주체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며 단말기 운영자는 전자화폐의 가치를 대가로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단말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VAN사업자는 단말기 운영자의 구매단말기에서 발생한 구매거래내역을 수집하여 금융결제원의 전자화폐공동망센터로 전송하는 법인이다.

한편 금융결제원 전자화폐공동망센터는 VAN사업자로부터 전송된 구매거래내역을 검증한 후 은행별로 분류하여 해당 발행은행 및 매입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하며 시스템 전반의 보안책임을 진다.

2009년 6월 K-CASH는 춘천, 원주, 횡성, 김해, 포항, 안동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 20여개 대학교, 군부대, 기업체,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2,911개 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국 군부대에는 K-CASH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함에 따라 K-CASH의 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6월말 현재 K-CASH는 678만장이 발급되었으며, 이용금액은 2009년 상반기중 약 27억원 정도이다.



7.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1989년 4월 도입된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ARS 업무뿐만 아니라 그간 별도의 자체시스템 없이 타행환공동망 또는 CD공동망을 통해 제공되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한 전

자금용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결제서비스 내용)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 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사고수표 신고업무 및 환율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계업무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은행의 타행 이체한도는 건당 10억원으로 CD공동망(6백만원) 및 타행환공동망(1억원) 이체한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업무처리절차)

전자금융공동망의 대고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PC,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금융공동망 중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계좌, 수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조회 또는 계좌이체를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동 조회 또는 계좌이체 요청을 계좌개설 은행에 송신하고 결과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통지한다. 계좌이체에 따른 참가은행 상호간의 자금결제는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자유로운 이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타행환과 CD/ATM 이용고객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중 1,402백만건, 7,173조원에 이르렀다.

그림 III-2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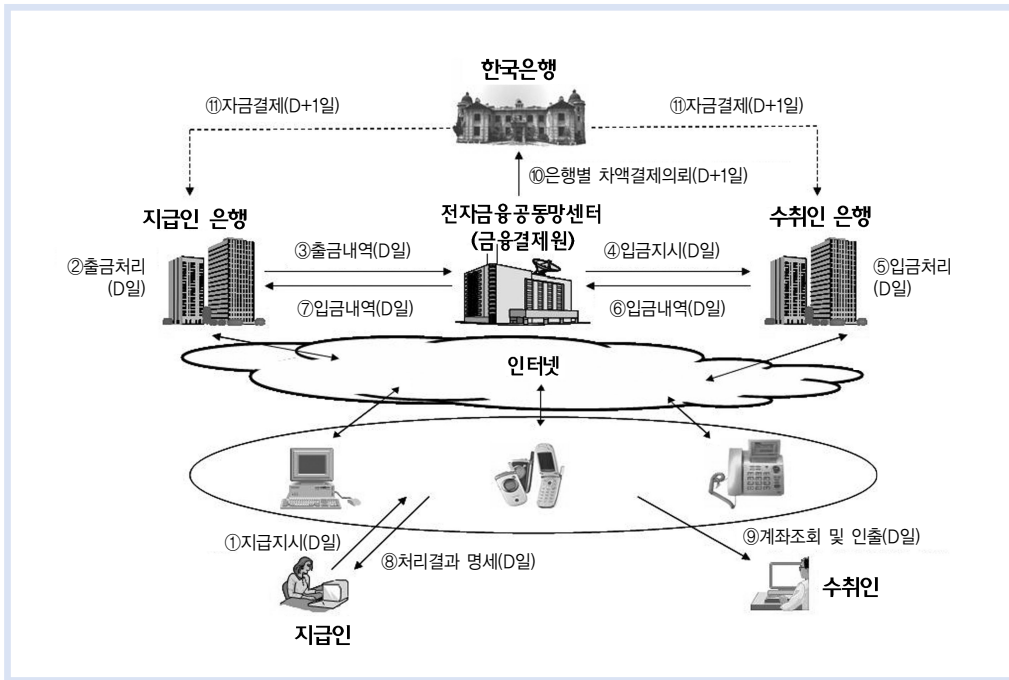


그림 III-22 전자금융공동망 이용현황(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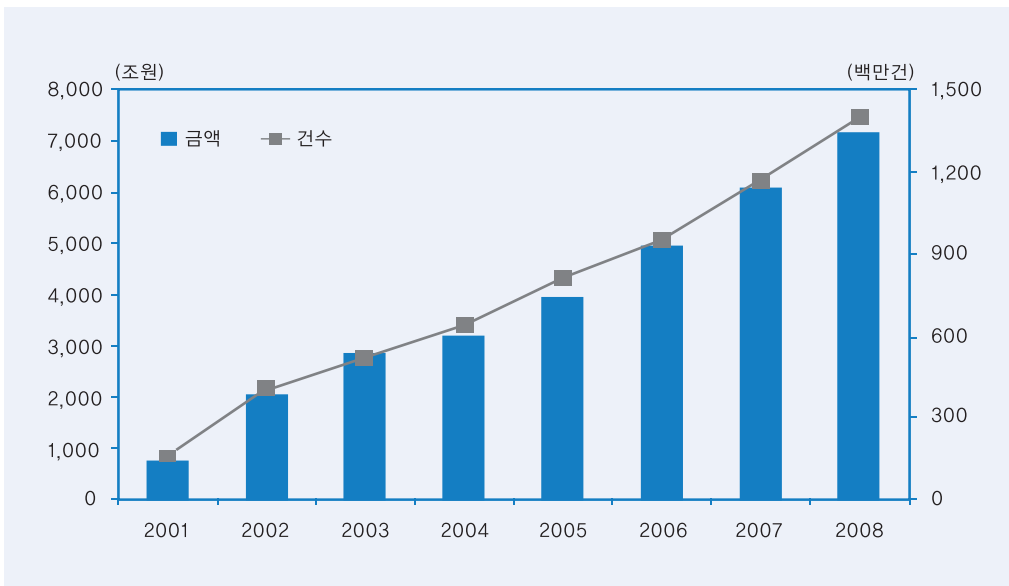


표 III-38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 추이(연간)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뱅킹	1,640	2,075	2,538	3,018	3,545
텔레뱅킹	384	389	393	401	400
핀뱅킹	625	954	1,476	2,185	2,879
모바일	3	9	12	16	20
기타	527	498	520	465	329
합계	3,179	3,926	4,939	6,086	7,173

제5절 신용카드결제시스템

1. 결제서비스 내용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위하여 구축된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시불 및 할부거래 등 신용구매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revolving) 등 대출서비스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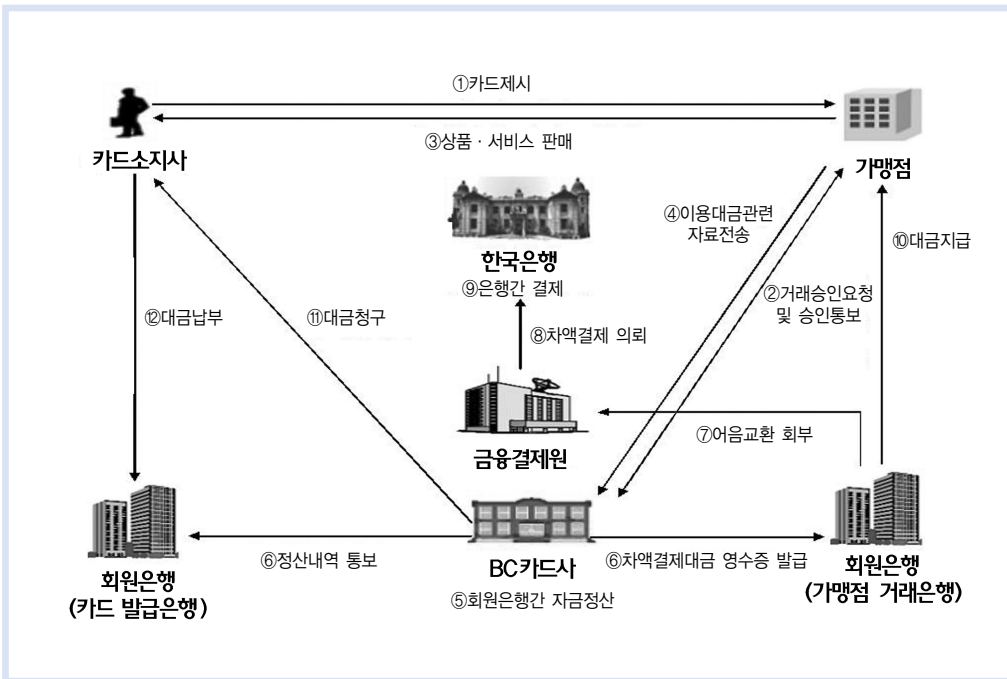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이용고객 및 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이용고객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구매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구매의 효과를 누리고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긴급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데다 포인트 제공, 가격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카드 가맹점 측에서는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제공으로 고객 확보에 유리하고 판매대금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업자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확보하고 할부나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예금취급기관이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유치하여 저원가성 예금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 업무처리절차

(BC카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BC카드사를 거쳐 카드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카드발급은행은 거래승인여부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거래가 승인되면 가맹점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가맹점은 거래은행에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거래은행은 매출전표를 BC카드사에 송부하면 BC카드사는 회원은행간 거래내역을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정산한 후 받을 금액이 있는 회원은행에 차액결제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거래은행은 어음교환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가맹점에 지급한다. 이후 BC카드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대금을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결제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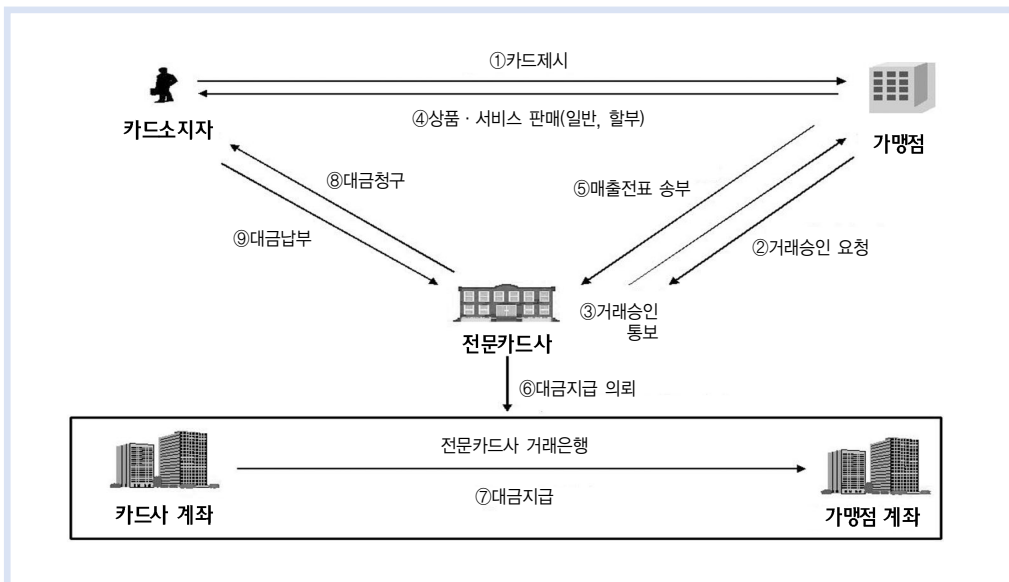
그림 III-23 BC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전문카드사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카드사로 전송되고 카드사는 승인여부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거래가 승인되면 가맹점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후 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매입요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는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카드사의 거래은행에 지급의뢰를 한다. 이때 거래은행은 카드사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준다. 카드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대금을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결제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그림 III-24 전문카드사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3. 이용현황

2008년중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41억건, 이용금액은 45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9.4%, 1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용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는 건수와 금액이 각각 20.0%, 15.7% 증가하였으며, 현금서비스 이용은

건수는 7.5%, 금액은 3.5% 증가하였다. 2008년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9,624만장으로 전년말보다 10.4% 증가하였다.

표 Ⅲ-39 신용카드 이용현황(연간)

(천건, 십억원, 만장)

	상품 및 서비스구매		현금서비스 이용		합 계		발급장수 ¹⁾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4	2,068,186	225,932	203,485	126,574	2,271,671	352,506	8,600
2005	2,493,606	255,476	174,823	105,223	2,668,429	360,699	8,647
2006	2,970,140	279,009	159,515	91,949	3,129,655	370,958	9,247
2007	3,317,301	317,648	155,173	85,985	3,472,474	403,633	8,877
2008 ²⁾	3,980,643 (20.0)	367,439 (15.7)	166,763 (7.5)	88,982 (3.5)	4,147,406 (19.4)	456,421 (13.1)	9,624 (8.4)

주 : 1) 연말 기준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제6절 기타 소액결제시스템

1.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하 'B2B 결제시스템')은 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위한 지급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현재 동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전자채권')이다. 금융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중계센터 및 전자채권의 중앙관리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에는 전자채권결제, 담보대출, 매매보호(escrow)서비스가 있다. 우선 전자채권결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채권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인 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담보로 전자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이다. 이는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발행시 담보대출을 위한 양도를 사전 승낙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은 발행일로부터 만기 2영업일전까지 가능하고 전자채권금액 한도내에서 부분대출도 가능하다.

매매보호서비스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품의 인도와 구매대금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인도전에 전자채권 발행은행이 판매기업 앞으로 은행보증 전자채권의 발행, 위탁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산업,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SC제일, 신한, 하나,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15개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2B 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지만 일부 업무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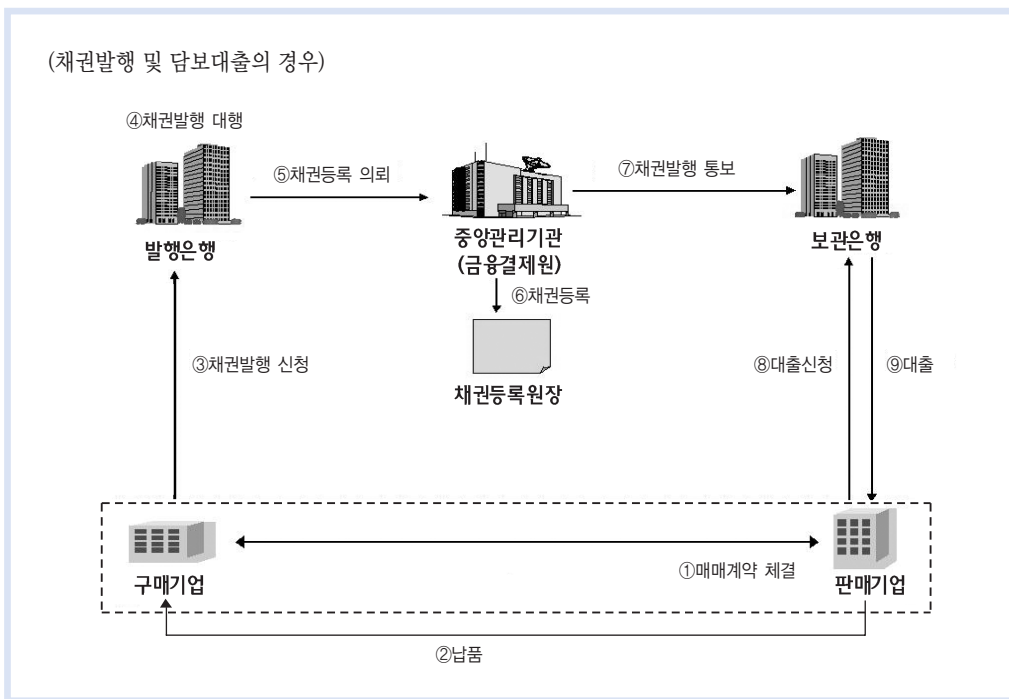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기업간 상거래에서 전자채권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전자채권 발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채권 발행대행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전자채권의 보관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채권 발행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전자채권 발행한도정보 등 약정정보를 금융결제원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은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거래은행 앞으로 전자채권의 발행을 신청하고, 거래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동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업별 약정 내용(사업자번호, 채권발행한도 등)과 함께 발행은행이 전송한 건별 채권발행내역을 전자채권등록원장에 집중 등록하는 한편 이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인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상기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금융결제원은 동 내역을 구매 및 판매기업의 거래은행 앞으로 각각 통보하여 채권 결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거래 다음날 11시에 신한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III-25 전자외상매출채권 업무처리절차



2. 정부·기업간(G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하 'G2B 결제시스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업무중 지급결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모든 조달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창구단일화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의 “나라장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G2B 결제시스템으로는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납품대금지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입찰수수료 및 보증금 납부 업무는 공공기관의 결제계좌를 G2B 결제시스템과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조달업체가 G2B 결제시스템을 통해 입찰수수료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납품대금지급 업무는 조달업체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접수한 공공기관이 G2B 결제시스템을 통해 조달업체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2009년 6월말 현재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외환, 한국씨티, 하나, 기업, 농·수협중앙회,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등 17개 은행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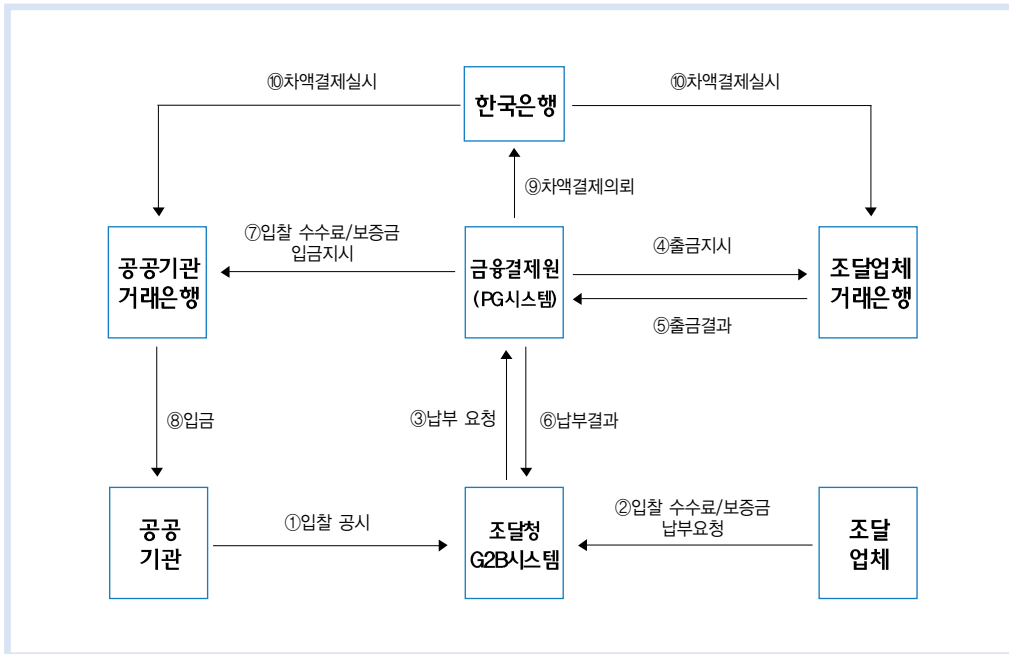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G2B 결제시스템의 모든 서비스는 은행공동으로 구축된 금융결제원의 PG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업체가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G2B시스템을 통해 입찰수수료 및 보증금의 납부를 요청하면 이는 금융결제원의 PG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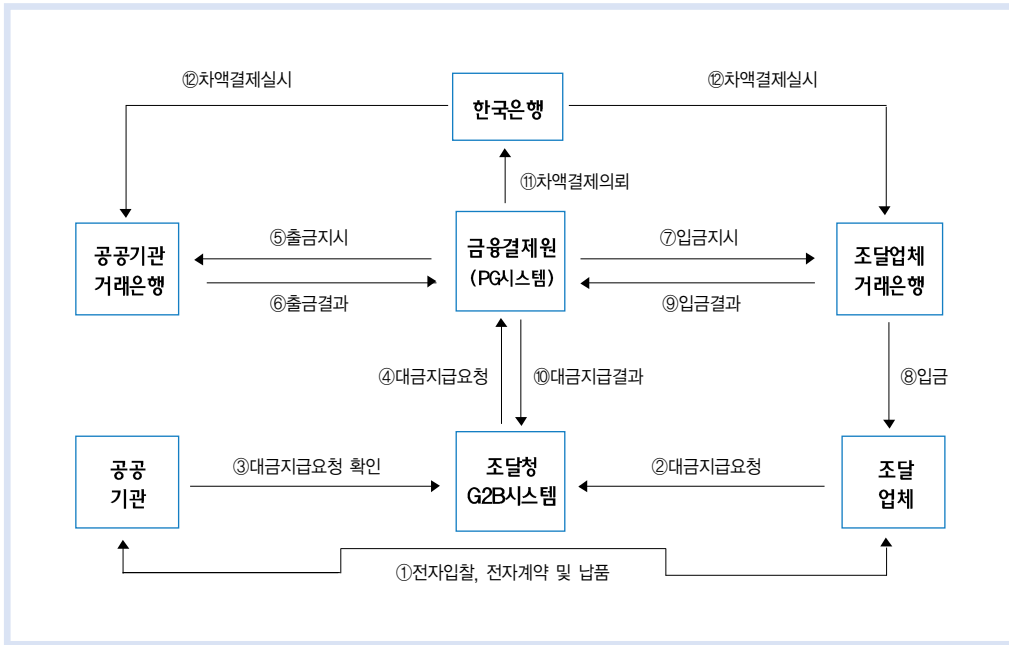
업체 거래은행으로 전송된다. 동 요청에 의거 입찰업체 거래은행에서 입찰수수료와 보증금이 출금되어 공공기관이 미리 G2B시스템에 등록한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금융결제원이 납부결과를 조달청 G2B시스템에 통보하면 공공기관은 G2B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6 입찰 수수료·보증금 납부 서비스 절차



납품대금 지급처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출관이 대금지급 대상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를 요청하면 금융결제원 PG시스템으로 계좌이체요청서가 송신되고 금융결제원은 계좌이체를 처리한 다음 동 이체결과를 G2B시스템에 통보한다. 공공기관은 G2B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7 납품대금 지급서비스 절차



3.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앞서 살펴본 B2B 및 G2B 결제시스템과는 달리 B2C결제⁴⁴⁾시스템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오픈마켓 등에서 소매거래를 목적으로 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신용카드PG, 계좌이체PG, 통신과 금서비스(유·무선전화결제)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PG의 경우 연계된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사용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PG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전자상거래업체 등 가맹점이 PG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나. 업무처리절차

(신용카드 PG)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를 통해 지급결제절차가 수행된다.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과 VAN사업자 사이에서 거래 및 승인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며 이후의 절차는 오프라인에서의 VAN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 지급결제절차와 동일하다. 통상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대략 3~10일 정도 소요된다.

(계좌이체 PG)

현재 은행과 직접 연계하여 계좌이체 PG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 LG데이콤, 이니시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며 그 외의 PG업자들은 동 4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좌이체P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정산대행 업무 없이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LG데이콤 등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각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한 정산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III-28 신용카드PG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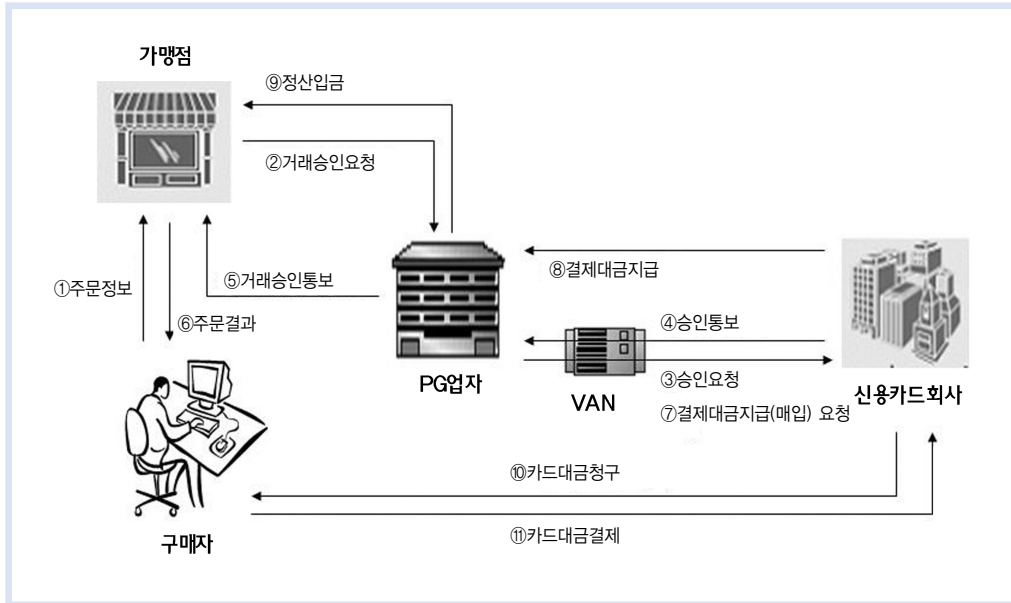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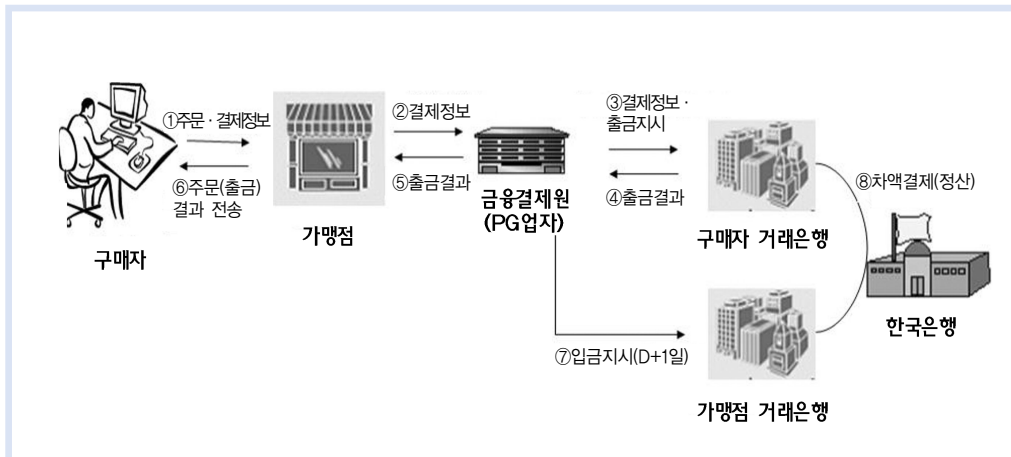


그림 III-29 계좌이체PG(금융결제원)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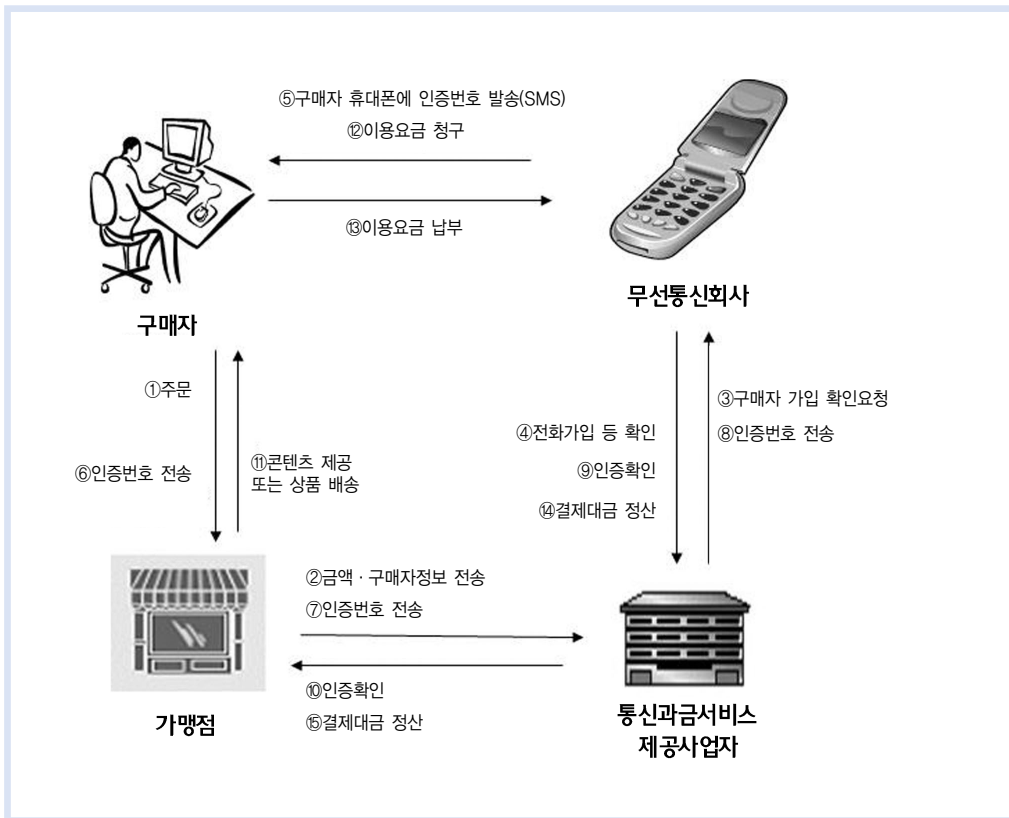
(통신과금서비스)

2008년 3월 이전까지 유·무선전화결제 PG로 불리던 통신과금서비스는 구매자가 상품구매 대금을 유·무선 전화료 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에 합산하여

결제하고, 전화결제 PG업자는 통신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구매대금이 통신요금에 합산 고지되어 납부되므로 정산 완료까지 많은 시일(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무선전화결제방식,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제절차를 수행하는 ARS결제방식,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결제하는 폰빌(phone bill)결제방식, 초고속인터넷 ID 사용료에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초고속인터넷 ID 결제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I-30 통신과금서비스(무선전화결제)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미국)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연금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대량거래 관련정보를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미국의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이다. ACH를 통해서 입금이체, 출금이체, 기업거래 및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판매대금자동결제망(POS) 관련 은행간 자금이체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지역별 ACH 운영주체는 12개 지역 연준(FedACH)과 The Clearing House가 운영하는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이다.

(영국)

영국의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은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이다. BACS는 BACS Ltd.가 1968년부터 운영하는 전자방식 소액결제시스템으로서 급여, 연금 등의 정기적인 경비와 기업거래대금 등 비정기적인 비용 등을 처리하는 입금이체 그리고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대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출금이체 등을 수행한다. 한편 2008년 5월에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을 통한 개인간 소액거래의 청산 및 결제가 당일에 이루어지는 FPS(Faster Payments Servic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SIT(French Interbank Teleclearing house)는 프랑스은행, 주요 상업은행 및 우체국에 의해 설립된 은행간 자동화청산그룹(GSIT; French Interbank Clearing Consortium)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자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서 연속적으로 교환되는 은행간 지급지시를 다자간 차감하여 거래결제시스템에서 최종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SIT는 출금이체, 자동이체, 전자환어음, 카드결제 등의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

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2월부터는 어음교환소에서 처리하

던 수표의 교환업무를 SIT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부터 유로지역의 SEPA 도입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인 CORE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SIT를 대체하였다.

(독 일)

독일연방은행은 1970년대 초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인 RPS(Retail Pay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RPS는 비용효율적인 소액결제시스템으로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지급지시를 결제한다. RPS는 입금이체, 출금이체 및 수표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없으며 현재 약 200개 이상의 은행과 독일연방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여타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전은(全銀)시스템으로 동경은행협회의 내국환운영기구가 197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고객간 자금이체, 급여 등의 대량지급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은행간 차액결제는 일본은행이 운영하는 저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 당일 오후에 이루어진다.

제7절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 개 관

차액결제시스템은 일정기간중 일어난 참가기관간 자금이체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 처리한다. 차액결제는 두 참가기관간 거래 차액을 결제하는 양자간 차액결제(bilateral net settlement)와 다수 참가기관간 거래 차액을 동시에 결제하는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 settlement)로 나뉜다.

차액결제는 참가기관간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특히 소액대량결제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은 거래일 영업마감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즉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상대방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한 참가기관은 자금지급시점부터 은행간 차액결제 종료시점까지 상대방 참가기관에게 일중 신용 또는 1일물 신용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양자간 차액결제의 경우 차액결제 상대방이 한 개 기관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나 다자간 차액결제의 경우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참가기관간에 상쇄되어 보다 고도의 리스크 관리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차액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재교환(unwinding)이다. 이는 결제불이행 참가기관을 차액결제에서 제외하고 남은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포지션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압력과 잠재적인 손실을 여타 참가기관에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제불이행 참가기관으로부터 순채권을 가지고 있는 참가기관은 예상하지 못한 결제불이행으로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교환은 모든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시스템리스크의 규모가 작은 소액 차액결제에 주로 적용될 수 있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총액결제시스템과는 달리 신용리스크는 물론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90년 11월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위원회는 국가간, 복수통화간 차액결제시스템에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Lamfalussy 기준)

을 마련하였는데 동 기준은 현재 각국이 차액결제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6가지 항목의 Lamfalussy 기준⁴⁵⁾중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의 최대 결제채무자의 결제불이행시에도 결제를 적시에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제불이행 사태가 일단 발생하면 신용공여한도 또는 손실공동분담 등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결제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제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 원칙」 제4항에서는 결제시차에 따른 리스크 감축을 위해 결제시스템은 결제일의 영업시간중에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영업종료시까지의 결제를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최대 결제채무자의 결제불이행 상황에서도 당일의 차액결제를 적시에 완료하는 것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최대 결제채무자 2개 기관이 동시에 결제불이행 상태에 처하더라도 당일의 차액결제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모범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의 차액결제시스템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보면 금융기관간 미결제잔액을 감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신용한도 설정, 결제시차 축소 등이 있으며, 결제이행 확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사전담보제, 손실공동분담제 등이 있다.

45) 1990년 11월 BIS가 발표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일명 Lamfalussy 보고서)에서는 차액결제시스템에 관한 6개 항목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6개 항목은 ①차액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②차액결제 참가자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이해, ③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④최대 순결제채무 보유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결제 완결성, ⑤공정하고 공개된 시스템 참가기준, ⑥시스템의 기술적 운영 신뢰성이다.

(신용한도 설정)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참가기관간 차액결제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참가기관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채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신용한도의 설정은 참가기관의 자본금, 차입능력, 거래실적 등을 기초로 참가기관의 일중 순채무한도 또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지시를 허용함으로써 미결제채무를 일정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는 동 신용한도 범위내로 축소된다.

신용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총액의 상한을 정하는 다자간 순채무한도(multilateral net debit caps) 설정방식과 개별 참가기관의 다른 참가기관들 각각에 대한 순신용공여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상대순신용한도(bilateral net credit limits) 설정방식이 있다.

다자간 순채무한도 설정은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시 시스템 전체가 직면하게 되는 손실을 미리 정한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대순신용한도 설정은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시 신용 공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사전담보제)

신용한도 설정만으로는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에 직면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

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 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 담보제는 손실공동분담제에 의해 산출된 각 참가기관의 손실분담액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손실공동분담제)

손실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제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가기관들의 손실분담방식은 공동분담의 주체에 따라 결제불이행 기관이 분담하는 방식(defaulters pay)과 결제이행 기관 또는 생존기관이 분담하는 방식(survivors pay)으로 나눌 수 있다.

2.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차액결제시스템은 다수 금융기관간의 복잡한 대차관계를 상계한 금융기관별 순차액포지션을 지정시점에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최종 결제하고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결제규모의 증가 등으로 시스템내 결제리스크가 급속히 증가되는 가운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의 확대도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급속

히 악화될 가능성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되어 소액결제시스템 및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1997년 9월 순채무한도의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예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액결제대행제도를 2009년 2월에 도입하였다.

(순채무한도제)

전자금융공동망 등 일부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 이전에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참가기관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액결제거래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각 참가기관이 해당거래로 인한 미결제순채무액⁴⁶⁾의 상한 즉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미결제순채무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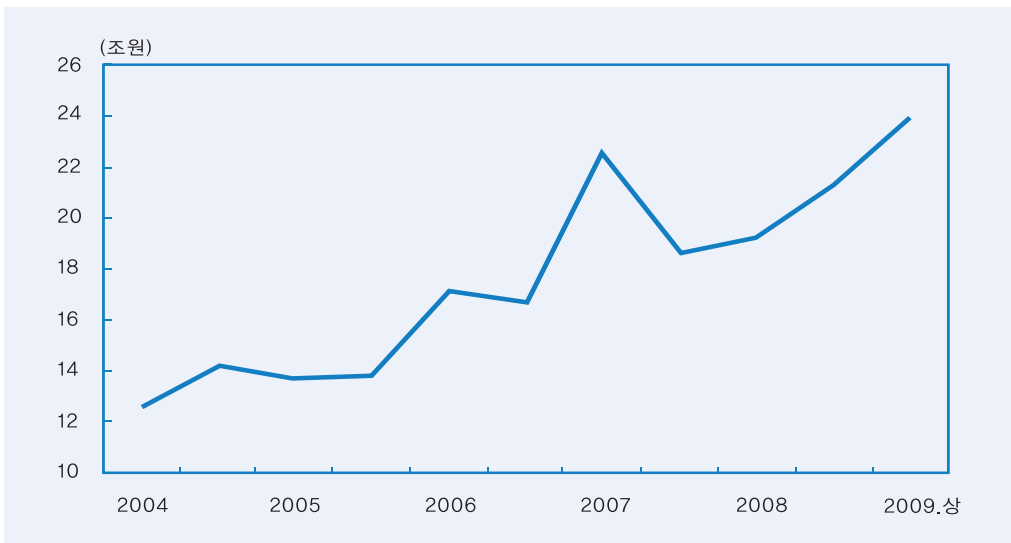
순채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보다 고객 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MS공동망 및 B2C·B2B 전자상거래의 일부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에서

46) 한 참가기관이 영업시간중 다른 참가기관들에게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채무)에서 다른 참가기관들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채권)을 차감한 금액

제외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순채무한도제와 함께 상대순신용한도제를 실시함으로써 각 참가기관에 대한 다른 참가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해당기관의 순채무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각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순채무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미결제순채무의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순채무한도액을 기관별로 납입해야 할 담보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순채무한도를 설정한 이후에는 각 기관이 금융공동망을 통하여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함으로써 일중 미결제순채무액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는데 일중 미결제순채무액이 자신의 순채무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순채무한도 적용 대상거래의 지급지시를 다른 참가기관에게 송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순채무한도 초과로 고객의 자금이체의뢰 요구가 취소될 경우 고객의 불편은 물론 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한도초과가 빈번히 발생하는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순채무한도를 증액토록 지도하고 있다.

그림 III-31 순채무한도 설정규모 추이¹⁾



주: 1) 반기말기준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⁷⁾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담보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순채무한도액을, 다른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중의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을 각각 담보산정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각 참가은행의 결제불이행 금액이 순채무한도 이내이며, 여타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개별은행이 야기하는 차액결제리스크는 해당 결제시스템에서의 교환순지급금액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납입비율은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순채무한도의 30%, 순채무한도 대상외거래에 대해서는 직전 반기 중 교환순지급이 발생한 영업일의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로 설정되어 있다.

표 Ⅲ-40 담보증권 납입비율 변경 추이

	1997.9	2001.8	2002.8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거래	10%	20%	30%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외거래	30%	30%	30%

한편 한국은행은 2000년 7월부터 은행의 경영건전성, 지급결제집중도, 외환동시

47) 현재 한국은행에 사전담보 납입 의무가 있는 참가기관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은행이며, 저축기관 중앙조직과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를 대행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한국은행에 사전담보를 납입할 의무는 없다.

결제거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담보비율을 은행별로 상하 각 1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이 납입한 담보증권에 대해서는 매일 시가평가를 통해 담보의 가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시점에 특정 은행의 결제자금의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은행으로부터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결제부족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의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

표 Ⅲ-41 담보증권 납입규모 추이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필요담보증권규모	5.9	4.3	5.2	5.8	6.8
담보증권 납입규모	6.1	4.5	5.4	6.2	7.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차액결제시점에 특정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의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결제부족자금 보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종결하게 된다. 결제부족자금의 참가은행별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결제불이행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의 실행여부는 결제불이행 은행의 담보규모 및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공동분담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은행별 공동분담금과 결제시점을 결정하여 참가은행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차액결제거래중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거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는 제외)는 재교

환함에 따라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별 공동분담금 내역과 결제시간을 통보받은 금융결제원은 통보받은 은행별 공동분담금을 포함하는 차액결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결제시점 전까지 한국은행에 송부하며 각 공동분담 은행은 결제시점까지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재작성하여 송부한 차액결제 청구서를 근거로 지정된 결제시점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데 만일 공동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담보증권 처분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동 부족분을 다른 은행들이 재분담하도록 한다.

한편 여타 은행들의 공동분담으로 차액결제가 종료된 경우 결제불이행 은행은 한국은행 최고여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공동분담은행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차액결제대행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중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지정 차액결제시점에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른 참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관⁴⁸⁾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및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BIS자기자본비율 및 원화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은 차액결제를 위탁한 기관의 차액결제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자신의 순차액포지션뿐만 아니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차액포지션을 합산한 교환차액을 결제한다. 또한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48) 2009년 10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는 19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있다.

관리를 위한 의무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설정한 순채무한도와 순채무한도 대상외 거래에 대한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며,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고유분담분에 더해 위탁기관의 분담분을 합산한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은행의 차액결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에 상응하여 위탁기관과 대행은행간 차액결제대행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를 대행은행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탁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대행은행이 여러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차액결제 및 리스크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시스템리스크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대행은행의 수탁가능 차액결제대행한도가 해당 위탁기관 업종에 대한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의 3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위탁기관과 대행은행간 차액결제대행계약에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에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후 그날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차액결제대행은행이 신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중지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재해,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차액결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이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Ⅲ-42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차 액 결 제 대 행	주업무	대행은행이 위탁기관의 차액 결제 채무를 이행	위탁기관을 대신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채무를 이행
	결제 리스크 관리 업무	순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	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관리
		사전 담보 납입	대행은행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추가 담보납입 책임 부담
			위탁기관은 차액결제대행한도의 100% 해당금 액 이상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대행은행의 유동성 공급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대행은행이 결제유동성을 공급
직접 결제	긴급시 직접 차액결제 허용		대행은행에 전산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위탁 기관의 직접차액결제를 허용

제4장 증권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1. 의의

증권결제란 유가증권 매매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결제는 처리 절차에 따라 청산(clearance)과 협의의 결제(settl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청산이란 매매거래 후 매매체결 확인, 오류자료 수정, 차감을 거쳐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협의의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결제자료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교환하여 매매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그림 III-32 증권결제 흐름도



증권결제 방법은 차감여부, 차감방식 및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전량 또는 차감 결제, 상대 또는 다자간 차감결제, 특정일 또는 연속 차감결제, 동시 또는 분리 결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Ⅲ-43 증권결제 방법의 분류

분류기준		결제방법	내 용
차감유무		전량결제	매매건별로 결제
		차감결제	매도·매수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결제
차 감 방 식	결제상대 지정유무	상대차감결제	거래상대방별로 상호 차감한 순포지션을 결제
		다자간차감결제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 대한 매도·매수의 순포지션을 결제
	차감연속 여부	특정일차감결제	해당 일자별로 차감 결제하고 미결제분은 결제불이행 처리
		연속차감결제	일자별로 차감하고 미결제분은 익일로 이연하여 재차감 결제
대금지급 조건		동시결제	증권과 대금의 동시 결제
		분리결제	증권과 대금의 분리 결제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이란 이러한 증권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증권거래의 매매확인, 청산, 결제 및 증권의 보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장치들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 및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권결제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증권결제의 특징

증권결제는 대금이체만 이루어지는 자금결제와는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결제보다 복잡하다. 증권결제와 자금결제의 구체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결제는 단순히 자금이 결제되는 단순형 결제인 반면 증권결제는 증권 인도와 대금지급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가치교환형 결제⁴⁹⁾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간에 시차(time lag)가 있으면 증권을 인도했지만 그 대가를 수취하는 못하는 원금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측면과 자금측면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참고 III-3

증권대금동시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은행의 자금이체시스템과 중앙예탁기구의 증권계좌대체(book-entry)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손실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국제적으로도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표준이 되고 있다.

BIS의 CPSS는 1992년 9월 발간한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i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보고서에서 증권 및 대금의 결제를 총액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아니면 차액기준으로 실행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DvP 방식	증권결제	대금결제
DvP I	건별 총액(실시간)	건별 총액(실시간)
DvP II	건별 총액(실시간)	차액(지정시점)
DvP III	차액(지정시점)	차액(지정시점)

49) 2개 통화간의 거래에 따르는 결제인 외환결제도 가치교환형 결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둘째, 자금결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인 반면 증권결제의 대상은 국공채, 회사채, 주식, CP,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증권은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발행되고 있으며, 그 거래도 거래소, 장외시장 등 상이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증권에 따라 거래단위, 시장참가자, 시장관행 등이 상이하며 증권의 상품별로도 결제제도가 상이할 수 있다. 증권은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국채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다르면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도 증권결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는 달리 내용과 당사자를 변경해 가면서 다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최종 결제까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3. 증권시장 및 증권결제 관련기관

증권시장은 표준화된 거래규칙이 정해진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은 유가증권시장(주식, 국채, 일반채권 등), 코스닥시장(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장외시장에서는 주로 채권, RP, CD, 기업어음 등이 거래된다.

표 III-44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및 거래대상 증권

시장구분	대상증권
장내시장	
(유가증권시장)	주식, 국채, 일반채권, RP
(코스닥시장)	주식
(파생상품시장)	선물, 옵션
장외시장	국채, 일반채권, CD, CP, RP

증권결제 관련기관으로는 청산기관, 중앙예탁기구 및 결제은행 등이 있다. 이들은 장내·외 시장의 증권결제시스템에서 증권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산기관(clearing house)은 매매확인과 거래당사자간 증권과 대금에 대한 채권과 채무의 내용을 산정하는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 결제시스템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장외시장 결제시스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청산기관은 증권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산기관을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 Party)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 증권결제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가 CCP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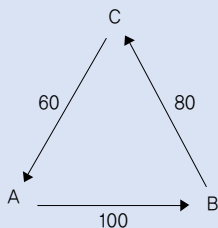
참고 III-4

C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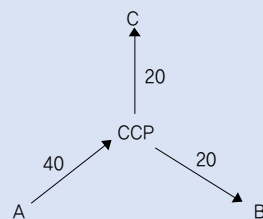
CCP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거래당사자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리스크와 결제리스크 관리책임이 중앙거래당사자로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거래당사자의 리스크관리 실패는 증권결제시스템은 물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총액결제 모형과 CCP 모형의 차이

(총액결제 모형)



(CCP 모형)



중앙예탁기구(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예탁자계좌부상의 기재(계좌대체, book-entry)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파생상품시장을 제외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중앙예탁기구로서 증권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참고 III-5

CSD

CSD는 증권을 집중예탁받고 계좌대체에 의하여 증권거래에 따르는 소유권 이전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협의의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다.

CSD에 의한 계좌대체 방식의 결제는 현물을 기초로 한 실물증권의 이전에 의한 결제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고 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 등의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결제방법이다.

CSD가 증권을 보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실물증권으로 발행된 증권을 CSD에 집중예탁하여 증권의 실물이동을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을 부동화(immobilization)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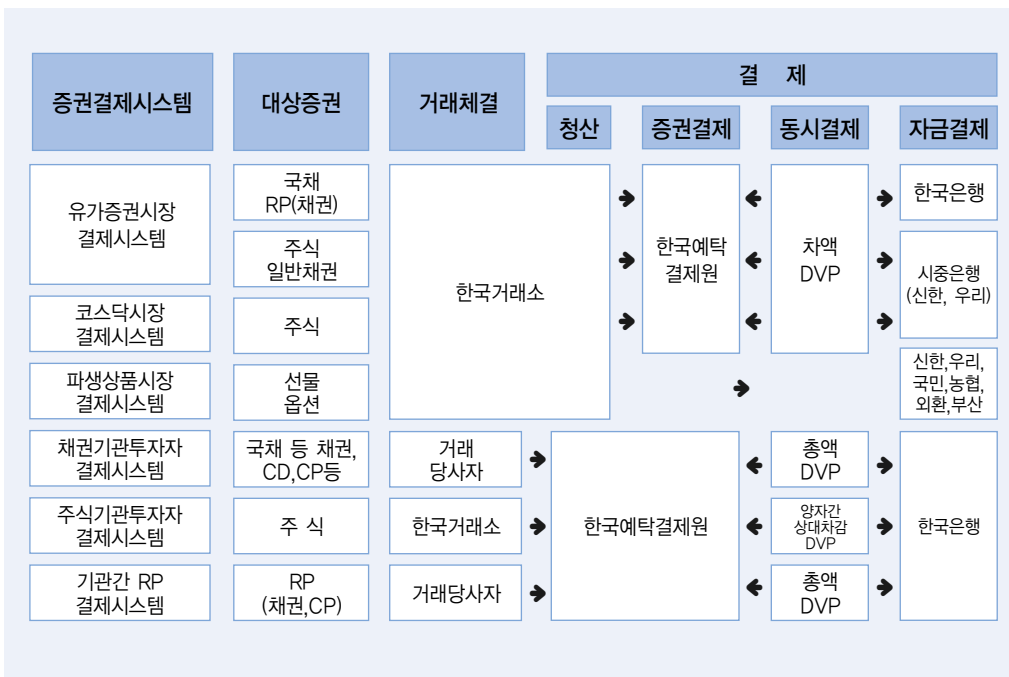
둘째는 물리적인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적인 기록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권화(dematerialization)라고 한다. 무권화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부동화방식보다 더 선진화된 제도로 할 수 있다.

CSD는 주로 국내 증권의 결제를 수행하는 NCSD(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와 해외에서 발행되는 유로채 등을 결제하는 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로 구분된다. NCSD는 한 기관이 모든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 CSD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ICSD로는 Euroclear, Clearstream 등이 대표적이다.

결제은행(settlement bank)은 증권거래와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장내시장(국채 및 RP) 및 장외시장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의 대금결제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일반채권 및 파생상품의 대금결제는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중앙예탁기구, 청산기관(또는 CCP) 및 결제은행 등의 회원으로 참가하는 참가기관이 있다. 각 증권결제 관련기관의 참가기관이 아닌 여타 기관은 참가기관을 통하여 증권결제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그림 III-33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시스템 개요



1. 개요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상장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되며, 채권시장은 회사채, 소액국공채, 주식관련사채 등이 거래되는 일반채권시장과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 등이 거래되는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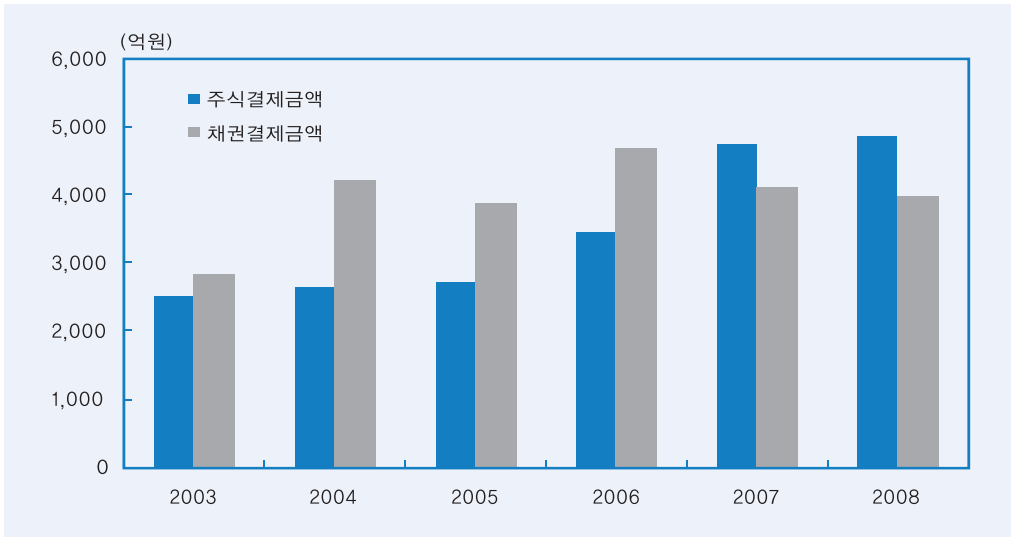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CCP로서 매매확인, 채무인수, 청산, 결제이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CSD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를 맡고 있다. 시장별 결제방식은 유사하나 주식시장과 일반채권시장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대금은 한국은행의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이체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표 III-45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개요

구 분	주식시장	채권시장		
		일반채권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RP시장
대상증권	상장주식	주식관련사채 일반채권 등	국채 등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채권 및 일부 회사채
청산기관	한국거래소			
결제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결제방식	다자간 차액결제방식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계좌부상 계좌대체 (매도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매수기관)			
대금결제	시중은행 (매수기관 → 예탁원 → 매도기관)		한국은행 (매수기관 → 예탁원 → 매도기관)	
결제일	T+2일	T일	T+1일	T일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은 2008년말 현재 주식 926 종목, 채권 9,303 종목의 유가증권을 결제하고 있으며, 2008년중 일평균 결제규모는 주식이 4,860억원, 채권이 3,980억원 수준이다.

그림 III-34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2. 시장별 결제방식

가.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결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호가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매매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는 계약내용을 매매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착오매매를 정정한 후 각 결제회원의 포지션을 확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확정된 포지션에 따라 CCP로서 매매당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⁵⁰⁾한

50) 채무의 면책적 인수란 결제회원들이 상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한국거래소에서 인수하는 한편 결제회원들은 거래소에서 인수한 것과 동일한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것으로 회원간의 모든 매매계약을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의 매매계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후 거래소와 결제회원이 동일한 결제일에 동일한 종목 또는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각 결제회원별로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한다. 확정된 최종결제내역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각 결제회원에게 통지된다.

통지 내역에 따라 결제일(T+2일)에 증권을 납입해야 할 결제회원은 대상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한다.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회원은 대금 결제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로 대금을 납부한다. 증권 및 대금이 납부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과 대금을 수령해야 할 결제회원의 계좌로 동시에 대체(이체)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 짓는다.

나.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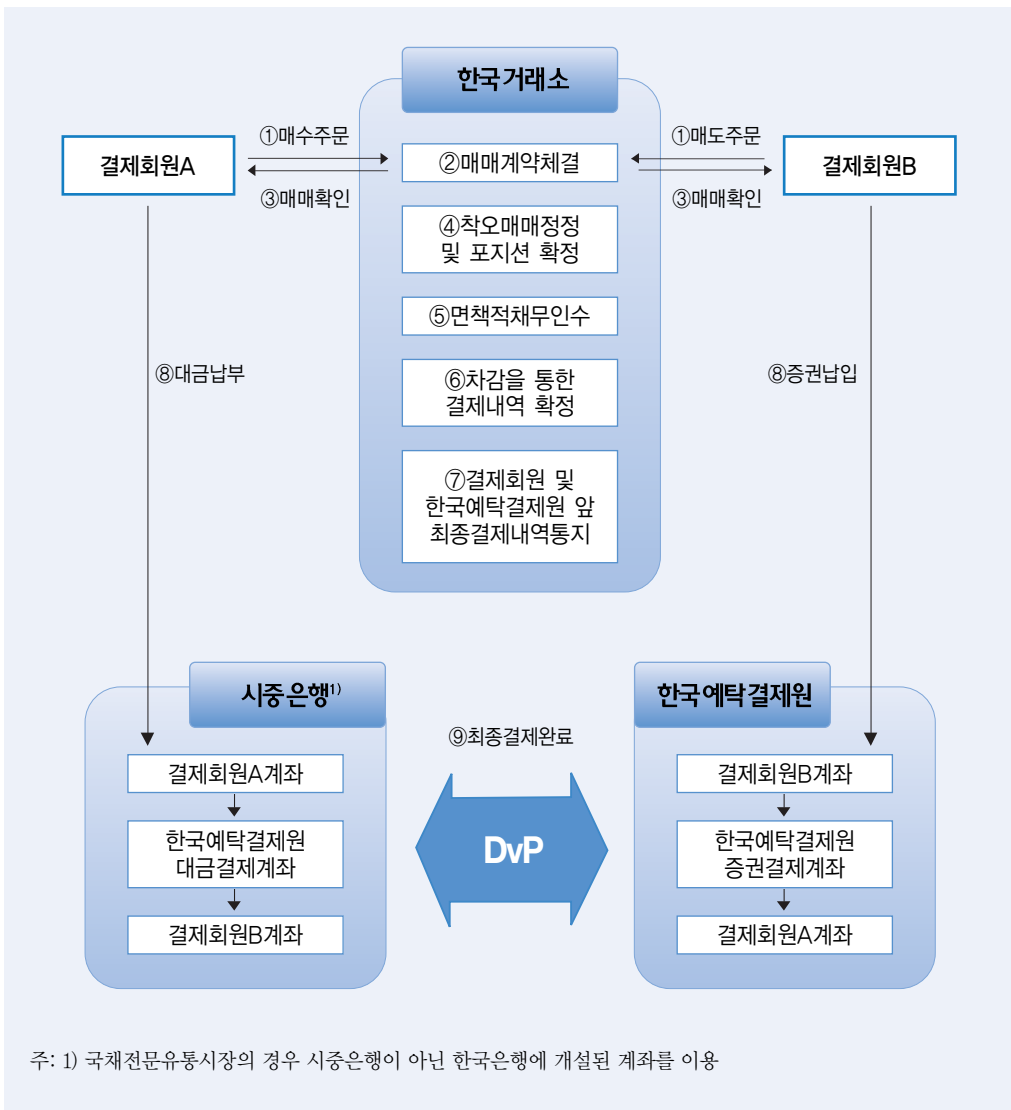
(일반채권시장)

일반채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채권거래의 결제과정도 최종적인 결제가 거래당일(T일)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식시장의 결제과정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거래소는 매매확인 및 착오매매정정 후 매도자·매수자의 포지션을 확정한다. 포지션이 확정되면 한국거래소는 매매당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상호 차감하여 각 결제회원이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된 후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내역을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면 결제회원은 납입해야 할 증권 및 대금을 각각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금의 납부가 완료되면 이를 수령해야 할 결제회원의 계좌로 대체(이체)하여 결제과정을 종결한다.

(국채전문유통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과정은 주식 및 일반채권시장의 결제과정과 거의 같다. 다만 최종적인 결제가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T+1일)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금의 결제가 시중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간의 이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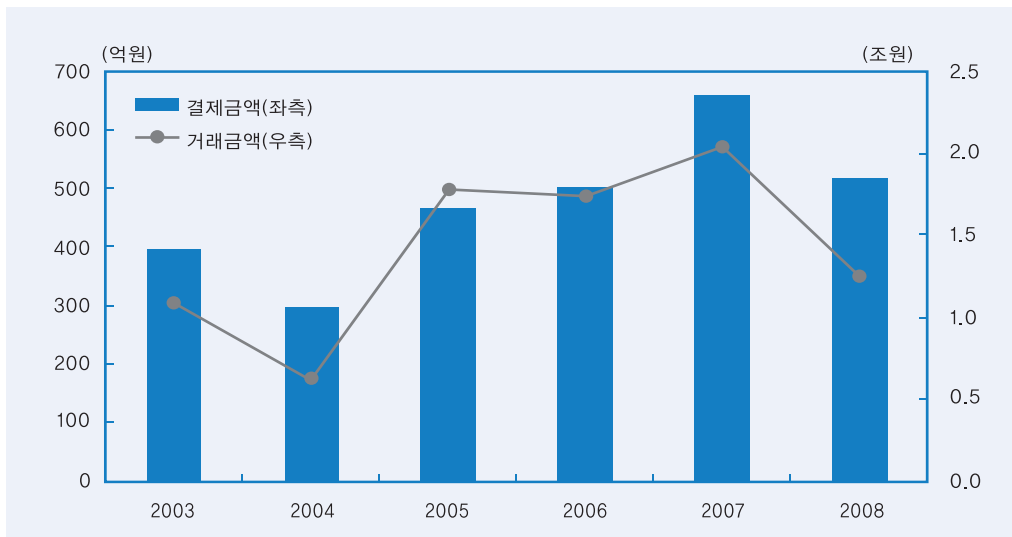
그림 III-35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



1. 개요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서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코스닥시장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008년 말 현재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해 1,049종목의 주식이 결제되고 있으며, 2008년중 일평균 결제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그림 III-36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 결제방식

코스닥시장에서의 결제과정 역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한 주식결제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매매시스템을 통해 매매체결 및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청산과정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주식과 통합하여 처리된다. 결제대금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당해 결제회원의 총매수대

금과 총매도대금을 통합한 후 차감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와 청산기관, 증권 및 대금 결제기관, 결제방법, 결제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제4절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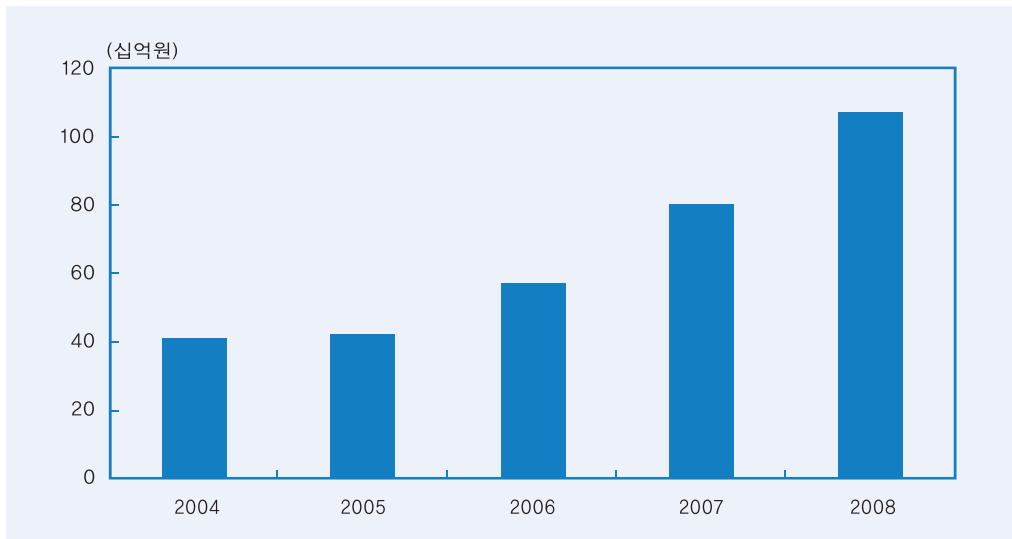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 주가지수, 금리, 통화 및 기타 일반상품(돈육, 금 등)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은 이들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및 기초자산의 수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채권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결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 영업일 마다 일일정산을 통해 정산차금을 수수하고 있으며, 최종결제시에는 실물의 교환 없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환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또한 최종결제일 이전 시점에 보유한 포지션의 반대매매를 통해 결제를 종결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여타 증권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에서도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가 계약당사자인 회원간의 거래를 인수하여 각각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맡고 거래의 이행을 책임진다. 한국거래소는 결제 회원과 한국거래소가 상호 수수해야 할 정산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대금 등 현금과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최종 결제내역을 산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결제규모는 2008년중 1,070억원 수준이며, 2006년 이후 결제규모가 매년 평균 30%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37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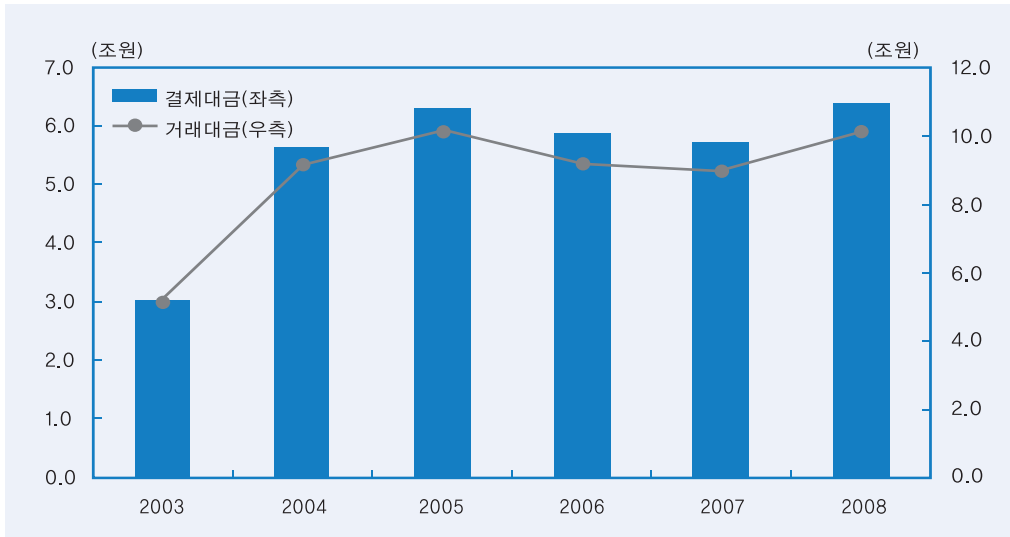
제5절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1. 개요

채권기관투자자결제란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간에 이루어진 채권, CD, CP 등의 거래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신한은금융망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결제 규모는 2008년중 일평균 6.4조원 수준으로 장내시장을 통한 결제규모(0.4조원)를 크게 상회하여 우리나라 채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38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 결제방식

장외시장에서 체결된 채권거래는 거래일 다음날⁵¹⁾(T+1일) 영업시간 중에 거래건별로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이 때 증권의 소유권이 전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를 통해, 대금지급은 신한은금융망의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도기관과 매수기관이 거래에 합의하면 동 내용은 실시간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양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매도기관 각각의 결제내역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매수기관과 매도기관은 동 결제명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결제증권을 예탁하고, 한국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납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일 영업시간 중에 예탁잔량 충족여부 등 매도자의 결제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결제내역을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매수자는 해당 내역을 조회 후 대금이체를 청구하며, 이에 따라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매수자 → 한국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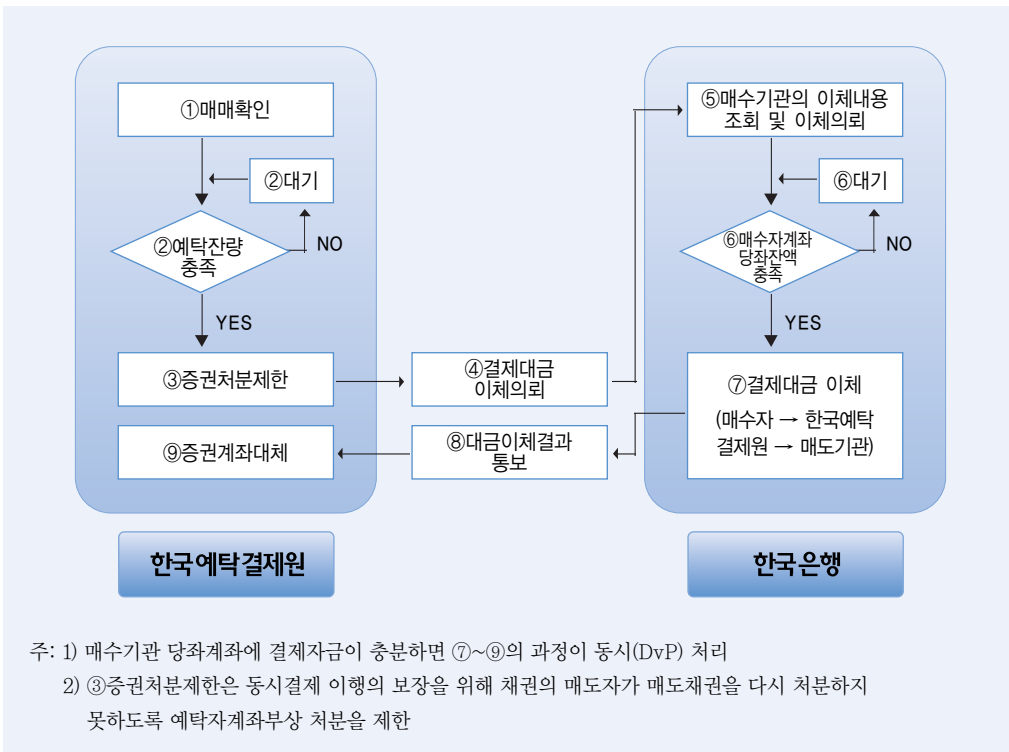
51) CD, CP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거래 당일(T일)에 결제된다.

결제원 → 매도자의 순으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대금결제가 완료되면 한국은행은 그 결과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증권을 매도자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매수자의 계좌로 대체함으로써 증권대금동시결제(DvP)를 완료한다.

표 III-46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개요

	채권	CD · CP 등
청산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결제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	한국은행	한국은행
증권결제계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DvP방식	DvP I(건별충액결제)	DvP I(건별충액결제)
결제일	T+1일	T일

그림 III-39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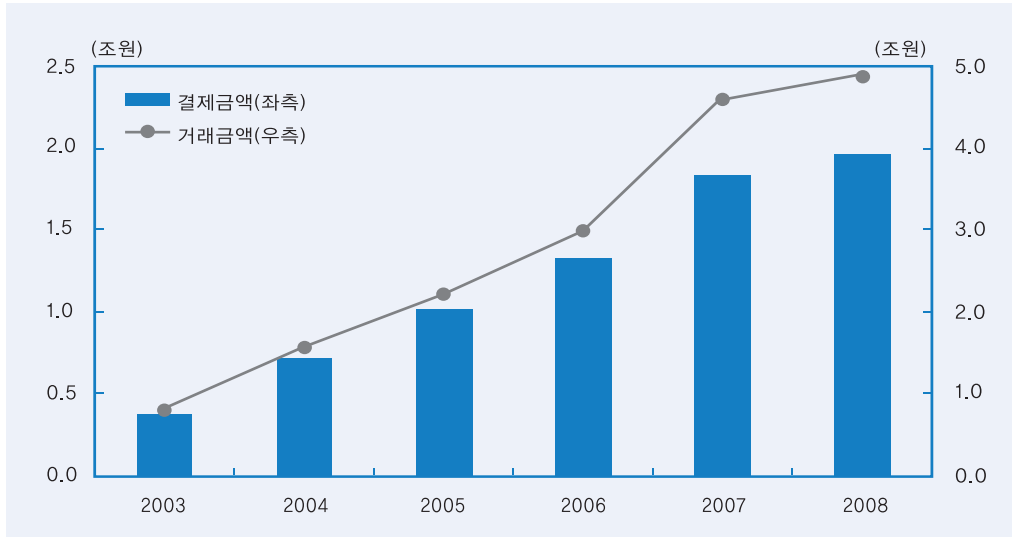
1. 개요

주식기관투자자결제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또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수반되는 외국인의 보관기관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결제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고객의 위탁매매에 따른 주식과 대금의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와 그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고객과 관련된 결제는 거래의 자금이 이동하는 등 일반 주식시장 결제와는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 결제를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또는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기관투자자가 관련된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주식과 대금의 청산·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규모는 2008년중 일평균 2조원 수준으로 2005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규모는 4.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규모(6.5조원)에 미치지 못하나 양자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제규모는 장내시장결제(0.5조원)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I-40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 및 거래규모 추이



2. 결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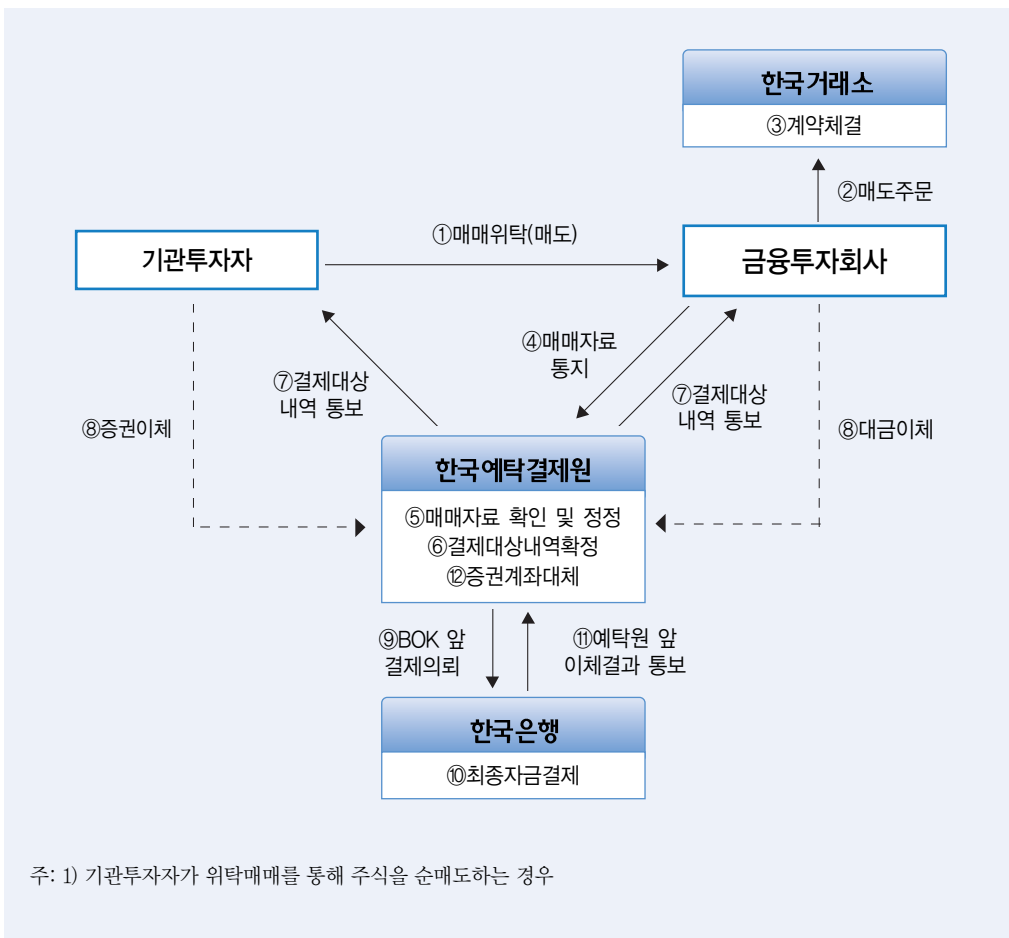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의 결제과정은 장내시장결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와 비교하여 청산기관, 대금결제기관, 대금 및 주식의 차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장내시장결제와 달리 매매확인, 차감 등의 청산절차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며 대금결제도 시중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III-47 주식기관투자자결제와 장내시장결제간 비교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장내시장결제
청산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차감방식	양자간 상대차감	다자간차감
대금결제	한국은행	시중은행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일	T+2일	T+2일

주식기관투자자결제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제과정을 거친다. 기관투자자의 위탁거래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체결되면 금융투자회사는 매매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내역을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확인한 후 상호간의 증권 및 대금 결제내역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양 거래당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통보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대상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며, 증권 및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증권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납부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결제과정이 마무리된다.

그림 III-41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결제 흐름도¹⁾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장내시장결제시스템은 각각 운영되는 별개의 시스템이 아니며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내시장의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매도할 증권 또는 매수할 증권의 대금을 납입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인수한 증권 및 대금을 장내시장결제시스템에 납입한 후 장내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수 증권 및 매도 증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과 장내시장결제시스템중 어느 한 쪽이라도 결제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 전반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절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결제시스템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운용 및 조달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 거래⁵²⁾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기관간 RP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기관간 RP거래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매매되는 장외 기관간 RP거래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은 장외 기관간 RP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⁵³⁾.

장외시장에서 체결된 기관간 RP 거래의 개시 및 환매 결제⁵⁴⁾는 한국은행의 신한

52)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볼 수 있지만 대상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RP매도자에게 반환되고 환매의 이행보증을 위해 거래증권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부담하며 환매시 계약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는 점을 고려할 때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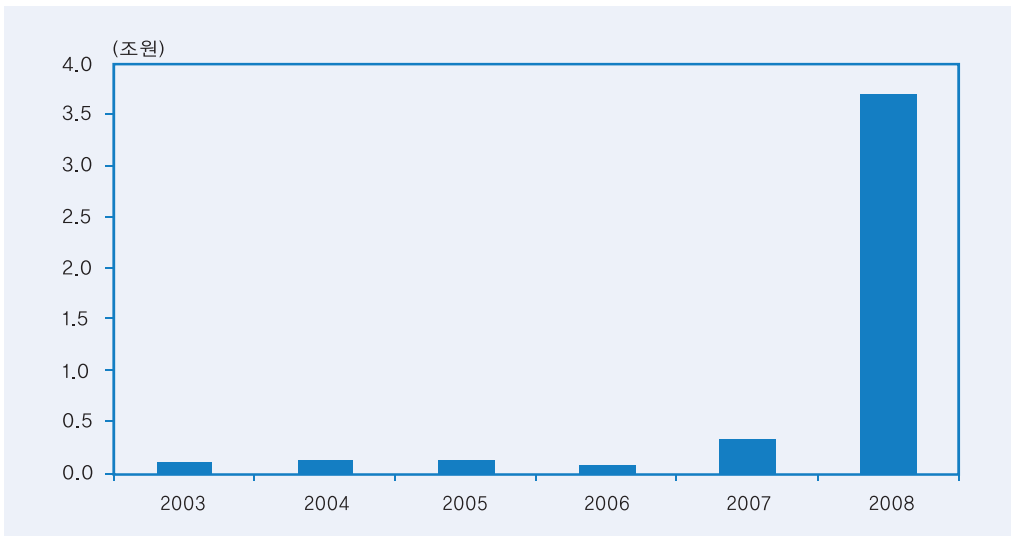
53) 장내 기관간 RP거래는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54) RP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증권을 인도받고 매도자에게 대금을 이체하는 것을 개시결제, 환매당일 매수자가 증권을 반환하고 매도자가 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환매결제라 한다.

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의 결제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관간 RP거래는 거래당일(T일)⁵⁵⁾에 결제가 완료되고, 계약기간중 거래대상 유가증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일일정산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채권기관투자자결제와 차이가 있다.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결제규모는 2006년까지 1,000억원 내외였으나 2007년부터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조 7,119 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을 콜시장에서 RP 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RP거래 이용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I-42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 추이



55) 환매거래의 경우 예정된 환매일 또는 거래당사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요국의 증권결제시스템

(미국)

미국에서는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자회사인 NSCC(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와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가 매매확인, 채무인수, 청산 및 결제이행보증 등의 증권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NSCC는 주식, 회사채, 지방채, 뮤추얼펀드, 연금증서 등을 취급하며, FICC는 미국채, 정부보증채 및 MBS에 대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는 DTCC의 또다른 자회사인 DTC(Depository Trust Company)가 수행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증권거래는 대부분 LSE(London Stock Exchange)에서 이루어진다. 장내에서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LCH.Clearnet Ltd¹⁾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결제는 Euroclear UK & Ireland(EUI)에 의해 소유·운영되는 CREST 시스템을 통해 종결된다. 장외거래의 경우 청산 및 결제 업무가 모두 EUI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프랑스의 장내 증권거래는 Euronext Paris(파리증권거래소) 및 국채 거래를 위해 설립된 MTS France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청산 업무는 LCH.Clearnet SA가, 장외거래의 청산 업무는 Euroclear France²⁾가 수행하고 있다.

증권의 예탁 및 최종 결제 등도 프랑스의 중앙예탁기구인 Euroclear France에서 맡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3국의 중앙예탁기구(CSD)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ESES³⁾를 통해 증권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독일)

독일의 청산기관은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Eurex exchange의 자회사인 Eurex Clearing AG이며, Eurex Clearing AG는 Eurex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 Eurex Bond를 통한 국채거래 및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 등과 관련된 청산 및 채무인수 업무를 수행한다. Clearstream Banking AG Frankfurt는 독일의 중앙예탁기구로서 증권의 예탁, 최종결제 업무 및 장외시장에 대한 청산업무를 맡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 거래된 증권의 청산 및 결제기관은 대상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JSCC(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가 동경, 오사카 등 주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거래 및 동경증권거래소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 및 채무인수 업무를 담당한다.

JASDEC(Japan Securities Depository Center)는 일본의 중앙예탁기구로 국채를 제외한 증권의 예탁,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장외 주식기관결제에 대한 청산업무⁴⁾도 수행한다. 국채의 청산·대체 업무는 JGBCC(Japan Government Bond Clearing Corporation)가 맡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국채의 보관 및 대체 업무를 수행한다.

주: 1) 2004년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던 LCH(London Clearing House)와 Clearnet SA가 LCH.Clearnet Group으로 합병되었으며, 그 자회사로 LCH.Clearnet Ltd(영국) 및 LCH.Clearnet SA(프랑스)를 보유

2) Euroclear France는 Euroclear SA/NV의 자회사로 Euroclear SA/NV는 EUI, Euroclear Belguim, LCH.Clearnet Group 등 각국의 CSD 및 Euroclear Bank를 자회사로 보유

3) Euroclear Settlement of Euronext-zone Securities의 약자.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합한 통합 증권결제시스템이며, 2007년 11월부터 기존의 Euroclear France 증권결제시스템을 대체

4) 일본 법률에 따라 JASDEC의 업무가 증권의 보관 및 대체로 한정됨에 따라 자회사인 JDCC(JASDEC DVP Clear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동 업무를 수행

1. 개관

증권결제리스크는 증권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으로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매매시점과 결제시점간의 괴리로 인한 증권가격의 변동성, 결제수단의 비효율성, 거래당사자 및 결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증권결제는 자금이체만 이루어지는 자금결제와는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으며 리스크의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증권인도가 대금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증권매도자가 원금리스크에 노출되고 대금지급이 증권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증권매수자가 원금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증권결제리스크를 축소하는 관건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결제리스크는 거래대금 또는 증권을 매입 및 매도 거래의 차액만을 교환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교환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차액결제방식은 결제 건수 및 금액을 축소시켜 결제참가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거래당사자와 결제당사자가 다르고 결제불이행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총액결제방식은 매매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규모의 증가로 효율성은 다소 낮고 유동성리스크의 가능성이 있지만 매매당사자와 결제당사자가 동일하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해 시스템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증권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수단도 증권결제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나 중앙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는 증권인도와 동시에 종료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나 상업은행 계좌간 자금이체는 증권인도시점에 대금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매도자는 원금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증권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대체는 민간 결제기구가 담당하더라도 대금결제는 결제종료성을 보장하는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증권결제리스크의 유형 및 관리방안

증권결제시스템에서도 자금결제를 담당하는 일반 지급결제시스템과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가 주요 관리대상이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체비용리스크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성과 관계를 가진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 외에 결제완결성 확보도 증권결제리스크 관리와 관계가 있다. 증권결제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이 취소되는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손상된다.

증권결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크기의 측정, 배분, 모니터링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증권결제시스템의 각 참가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결제기금의 적립과 같은 사후적인 장치보다 예방적 차원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I-48 증권결제리스크의 유형 및 관리

구분	발생원인	주요 관리방안
원금 리스크	- 대금지급과 증권인도의 시차 - 거래상대방의 파산 - 결제규모	- 동시결제 - 결제회원 모니터링 - 중앙은행 결제계정 이용
대체비용 리스크	- 결제대상증권의 가격변동 - 결제규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결제지연	- 결제기간의 단축 - 차액결제 - 결제회원 모니터링
유동성 리스크	- 증권 또는 자금 확보의 용이성 - 결제규모 - 거래상대방의 결제지연	- 증권대차, 일중신용 제공 - 차액결제 - 결제회원 모니터링

3. 증권결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준

가. 제정 배경

1987년 뉴욕 증시폭락사태(Black Monday)를 계기로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증권관련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G-30⁵⁶⁾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증권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의 도입이었다. 1995년에는 국제증권업협회⁵⁷⁾(ISSA)가 G-30안에 대한 수정권고를 발표하였는데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되 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Lamfalussy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9년 G-30의 권고가 국제적 모범관행 역할을 해 오던 가운데 동시결제 외에도 증권결제의 법적 기초, 투명성, 참가기준, 지배구조와 규제 및 감시 등을 포함한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6) G-30은 1978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회원은 주로 민간금융계와 중앙은행 및 학계의 고위층 대표로 구성된다. 국제경제 및 금융문제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시장참가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57) ISSA(International Securities Services Association)는 세계 각국의 증권결제, 보관 등 증권후선업무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1979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IOSCO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2001년 11월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를 발표하였다. 동 기준은 선진국 및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회사채, 국채 및 단기금융시장상품 등 모든 증권을 결제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인 BIS의 CPSS와 각국 증권규제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IOSCO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기관이 정한 국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각 회원국의 금융부문 안정성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증권결제시스템이 동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과 권고를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또한 CPSS-IOSCO는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CP에 의한 위험관리 실패는 증권시장, 증권결제시스템 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CCP에 대한 국제표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2004년 11월에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를 발표하였다.

나. 주요 내용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CPSS-IOSCO의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는 2001년 1월 CPSS가 공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과 G-30 등 민간부문 권고를 기초로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스템리스크를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정되었다. 권고의 내용을 보면 i) 증권실물거래 및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12개 리스크 관리기준(1항~12항), ii) 국가간(cross-border) 증권거래의 안전성과 관련된 2개 기준(16항, 19항), iii) 증권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규제·감시 등에 관한 기타 5개 기준(13항

~15항, 17항, 1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9개 기준중 10개는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반영하였고 아래의 나머지 9개 기준은 증권결제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증권결제 전 단계의 거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거래당사자는 매매확인을 거래당일(T)중 완료해야 하며 기관투자자 등 간접참가자도 최소한 다음 영업일(T+1)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결제주기(settlement cycles)는 연속결제(rolling settlement)방식으로 T+3일 이내에 결제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중앙거래당사자의 도입여부는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거래당사자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증권대차제도(또는 RP 등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증권결제 단계에서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증권은 최대한 부동화(不動化) 또는 무권화(無券化)하여 중앙예탁기구의 계좌대체(book-entry)방식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 ② 중앙예탁기구는 증권과 대금을 동시결제하는 방법으로 증권대체와 대금이체를 연결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한다.
- ③ 증권보관기관(custodian)은 고객증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과 보관절차를 채택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증권은 증권보관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셋째, 국가간(cross-border)거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2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국제적인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② 중앙예탁기구가 국가간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외국소재 중앙예탁기구와 연계할 경우에는 국가간 결제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표 Ⅲ-49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의 비교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1. 법적 근거의 명확성	핵심원칙 I
2. 매매확인이 거래일(T)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3. 최종결제가 거래일(T)+3일 이내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4. 중앙거래당사자(CCP)의 도입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5. 증권대여 가능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6. 실물증권의 발행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7.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도입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8. 결제완료의 신속성	핵심원칙 IV
9. 차액결제시스템의 결제 완결성	핵심원칙 V
10. 결제자산의 안전성	핵심원칙 VI
11. 보안성 및 운영의 신뢰성	핵심원칙 VII
12. 보관업무의 신뢰성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13. 지배구조의 투명성	핵심원칙 X
14. 참가기준의 공정성	핵심원칙 IX
15. 이용의 편의성 및 경제성	핵심원칙 VIII
16. 국제적 통신규약과 표준 채택 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17.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핵심원칙 II
18. 규제 및 감시 여부	핵심원칙의 부칙격인 중앙은행의 책무
19. 국가간 거래처리 가능여부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성 반영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는 CPSS-IOSCO가 2001년 11월 발표한 「증권결

제시스템에 대한 권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위험관리에 대해 상세하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 15개 기준중 9개는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반영하였고, 아래의 6개 기준은 CCP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CCP는 참가자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 ② CCP는 증거금요건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CCP는 명확한 결제불이행 처리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처리절차의 핵심사항은 대외에 공개되어야 한다.
- ④ CCP는 가급적 원금손실 없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보관하

표 Ⅲ-50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의 비교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1. 확고한 법적 근거	핵심원칙 I
2. 참가기관의 건전성 및 참가기준의 공정성	핵심원칙 IX
3. 신용리스크 노출규모의 측정 및 관리	핵심원칙 III(CCP의 특성 반영)
4. 증거금 요건	핵심원칙 III(CCP의 특성 반영)
5. 자원 유지	핵심원칙 V
6. 결제불이행 처리절차	CCP의 특성 반영
7. 보관 및 투자 리스크관리	핵심원칙 VI(CCP의 특성 반영)
8. 운영리스크 관리	핵심원칙 VII
9. 자금결제의 완결성	핵심원칙 IV
10. 증권 등 실물인수도 관련 리스크관리	핵심원칙 II(CCP의 특성 반영)
11. CCP간 연계 관련 리스크	CCP의 특성 반영
12. 효율성	핵심원칙 VIII
13. 지배구조	핵심원칙 X
14. 투명성	핵심원칙 IX
15. 규제와 감시	핵심원칙의 부차적인 중앙은행의 책무

여야 한다.

- ⑤ CCP는 실물의 인수도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동 의무에서 발생하
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⑥ 국내외 다른 CCP와 연계할 경우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
스크의 원천을 평가하고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증권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대금동시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증권결
제리스크중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으며 「통합도산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거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증권거래의 결제처리가 국제기준(T+3일
이내) 이내로 완료(주식 : T+2일, 채권 : T+0~1일)되고 있어 대체비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결제시스템의 경우 특정 자격을 보유한 회원들이 참가하는 장내시장의 특징 때문
에 장외시장 거래를 처리하는 증권결제시스템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해야 하므
로 일정 기준⁵⁸⁾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시
장에서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이행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산중 일부를 결제적
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증권매매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또는 회원은 증거금을 징구하고 있다.

58) 재무요건(결제회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80% 이상 및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매매전문회원: 영
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이상)을 충족할 것,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사
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임의탈퇴한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표 Ⅲ-51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구 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결제	파생상품시장 결제	장외시장결제
결제이행 보증책임	한국거래소		해당사항 없음
결제회원제도 ¹⁾	결제회원 58개 매매전문회원 3개	결제회원 63개	
손해배상 공동기금	1,000억원	1,000억원	
결제적립금	1,000억원		
증거금	위탁증거금 ²⁾	위탁증거금 ²⁾ 거래증거금 ³⁾	
DvP 유형	DvPⅢ	DvPⅢ	DvP I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 보장		

주: 1) 2009.6월말 현재 2)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에 납부 3)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

제5장 외환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매매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외환의 매도 및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매매거래 등에 따른 외화자금의 이체(foreign currency funds transfers)는 각 지역에 소재한 주요 은행간 환거래네트워크(correspondent banking network)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환거래네트워크는 외국환은행들이 세계 주요국의 국제은행들과 환거래계약에 따라 당좌예치금계정(nostro account)이나 당좌예수금계정(vostro account)을 설정하고 상호간 지급지시 등에 관한 전문 교환을 위해 국제통신기관인 SWIFT 등에 가입함으로써 형성된다.

은행간 외환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외환결제방식은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으로서 거래된 외환(예: 미달러화)이 해당국 금융시장(예: 뉴욕)에서 건별로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방식 이용시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BIS의 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방식⁵⁹⁾을 도입한 CLS시스템이 2002년 9월 가동되어 운영중이다.

59) 외환동시결제 방식으로는 CLS시스템 외에도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이 2000년 9월부터 운영중인 홍콩달러/미달러화 동시결제시스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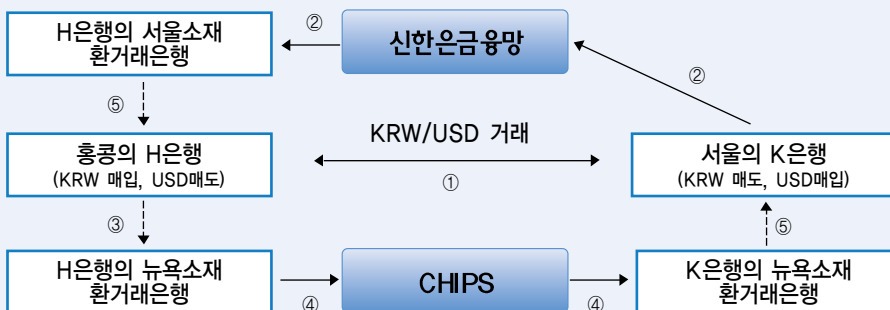
제2절 외환결제의 유형

1.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

이 방식은 거래 통화별로 지정된 환거래은행에 거래 건별로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해당 환거래은행은 해당 통화의 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CLS시스템이 외환결제의 표준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전세계 은행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외환결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K은행(미달러화 매입, 원화 매도)과 홍콩의 H은행(미달러화 매도, 원화 매입)의 거래를 가정한 결제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43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



- ① 양 거래은행은 SWIFT 메시지 교환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상호 확인
- ② K은행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원화 매도분을 H은행의 서울소재 환거래은행앞 이체
- ③ H은행은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에 미달러화 지급지시를 전송
- ④ H은행의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은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미국의 민간운영 거액결제시스템)를 통해 미달러화 매도분을 K은행의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앞 이체
- ⑤ K은행 및 H은행의 환거래은행은 미달러화 및 원화의 입금내역을 각각 해당은행에 통지하고, K은행 및 H은행은 이를 자행이 관리하는 계정(shadow account)과 환대사하여 결제를 종료

2. 외환동시결제

외환매매거래시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간 시차로 인해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결제시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은행 A가 홍콩소재 외국은행 B와 일본엔화 매도 및 미달러화 매입 거래를 한 경우 일본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엔화를 지급하는 시간과 미국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미달러화를 수취하는 시간간에는 최소한 14시간의 차이가 발행하게 되며 은행 A는 동 시간동안 외국은행 B가 파산할 경우 거래원금을 모두 잃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Herstatt은행의 외환결제실패⁶⁰⁾ 등을 계기로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앙은행들은 BIS의 CPSS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민간부문의 대응방안중 하나로 복수통화 결제서비스(multi-currency services)를 제공하는 민간결제기구를 설립하여 외환동시결제(PvP) 방식을 구현할 것을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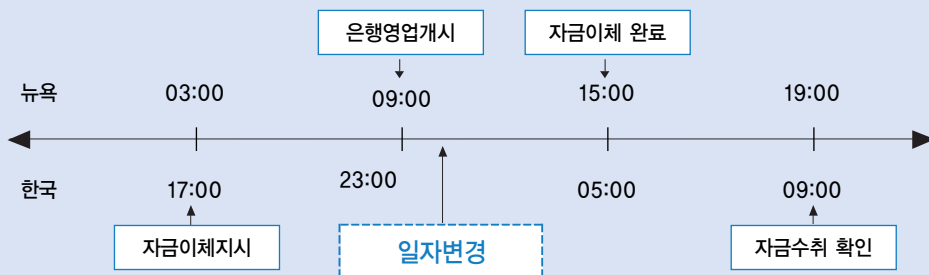
60) 1974년 6월 26일 독일 금융감독당국은 헤르스타트(Herstatt)은행의 파산을 결정했다. 그런데 동 은행과 거래를 한 미국소재 은행들은 독일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마르크 화를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며, 미달러화는 Herstatt은행의 뉴욕소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수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바로 그 시간(뉴욕시간 오전 10시30분경) 뉴욕에서 Herstatt은행과 관련한 미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거래은행들은 미달러화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후 외환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Herstatt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국내기관간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등에 따른 외국통화의 이체에는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 외에도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이체의 경우 해당 지역간 시차가 큰 경우 1 영업일내 결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이 미국내 환거래은행앞으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양국간 14시간의 시차로 인해 주로 익일 새벽시간(한국시간 기준)중 결제처리가 완료되며 수취은행도 익영업일에 자금이체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이체 처리시간(예시)



반면 다수의 은행이 외화예수금계좌를 개설해 놓은 국내 결제은행의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의 이체를 동일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거래를 결제한 후 부족한 자금만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결제은행에 입금할 수 있어 결제유동성 및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한 이체시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이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외환은행 시스템의 경우 2008년말 현재 60개 국내 외국환은행과 50여개 역외

은행을 대상으로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20개 통화에 대해 실시간 외화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CLS시스템

1. 개요

CLS시스템⁶¹⁾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시에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이다.

CLS시스템은 CLS그룹지주회사 산하의 CLS은행 및 CLS서비스(CLS Services Ltd.) 등 운영기관과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 및 제3자고객(third-party) 등 참가기관, 그리고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CLS그룹지주회사는 CLS그룹 전반의 경영전략수립을 담당하는 최상위 지배기관으로서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말 현재 19개국 69개 주요 민간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⁶²⁾ 1999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⁶³⁾하여 설립된 CLS은행은 CLS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감독당국에 대한 협조 및 참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CLS서비스는 1997년 7월 런던에 설립되어 CLS

61)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란 동 시간대중 CLS은행내 결제회원 계좌간 가상결제와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과 CLS은행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Continuous)으로 연계(Linked)되어 일어남을 의미한다.

62)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이 각각 493만 달러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주주자격을 취득하였다.

63)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거 미국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예금수취 및 미국이외 지역으로의 대출 등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면허이다.

시스템의 초기개발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CLS시스템과 관련한 전산설비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CLS은행은 2002년 9월 미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7개 통화를 대상으로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3년에 싱가포르 달러,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를, 2004년말에 한국 원, 홍콩 달러, 뉴질랜드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를, 그리고 2008년에는 이스라엘 셰켈 및 멕시코 페소를 결제통화로 추가 지정하여 총 17개 통화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중이다.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 가능한 금융거래의 범위는 기존에는 전통적 외환거래(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에 국한되었으나 CLS은행이 2006년말 미국의 증권거래 청산·결제기구인 DTCC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시스템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신용파생상품(CDS) 거래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7년 12월에는 역외선물환(NDF)거래의 결제도 개시하였다.

2009년 7월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외환거래의 일평균 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57만건, 금액으로는 3조 3천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일 최대(peak) 결제처리 실적은 155만건(2008년 9월 17일) 및 10조 3천억달러(2008년 3월 19일)에 이른다. CLS 결제통화국내 전체 외환거래중 CLS은행을 통해 결제되는 비중은 BIS CPSS의 서베이 결과⁶⁴⁾ 약 55%(2006년 4월 기준)로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CLS가 외환결제방식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6월말 현재 결제회원인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을 포함한 17개 국내은행과 6개 외은지점이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9년 상반기중 일평균 약 270억달러로 전체 외환거래액의 약 70%에 달한다.

64) BIS CPSS, Progress in reducing Foreign Exchange Settlement Risk, 2008. 5

표 III-52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추이

(십억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액	국내은행	104.3	8,516.8	2,243.9	3,507.5	4,669.8
	외은지점	19.3	1,007.1	258.9	479.7	1,311.5
	합 계	123.6	9,523.9	2,502.8	3,987.2	5,981.2
	일 평 균	5.4	38.1	10.1	16.7	25.1

표 III-53 CLS시스템 참가현황

은 행 명	참가시기	은 행 명	참가시기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2004. 12월	HSBC, BOA	2004. 12월
하나은행, 신한은행	2005. 1월	BNP Paribas	2005. 6월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수출입은행	2005. 2월		
대구은행, 부산은행	2005. 3월		
전북은행	2005. 4월		
경남은행	2005. 5월		
산업은행	2005. 6월		
기업은행, 우리은행	2005. 9월		
SC제일은행	2006. 1월	SMBC	2006. 3월
제주은행	2007. 3월	UBS	2007. 10월
		ING	2008. 7월

2. CLS시스템의 외환동시결제 구조

(참가기관)

CLS은행의 참가기관은 2009년 6월말 현재 59개 결제회원과 약 5,300개의 제3자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회원⁶⁵⁾은 CLS그룹지주회사의 주주로서 CLS은행

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자기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고객의 거래도 수탁·결제한다. 제3자고객은 CLS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고 결제회원은행을 통하여 외환결제를 위탁·처리한다.

이외에도 결제통화국 중앙은행도 CLS시스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CLS은행이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에 CLS은행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결제회원들과 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제 절차)

CLS시스템의 결제는 CLS은행과 결제회원간에 복수통화(매입통화 및 매도통화) 자금을 각 결제통화국 RTGS시스템을 통하여 주고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일 중 단 1건의 거래만 결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과정은 <그림 Ⅲ-44>와 같다.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지역간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⁶⁶⁾)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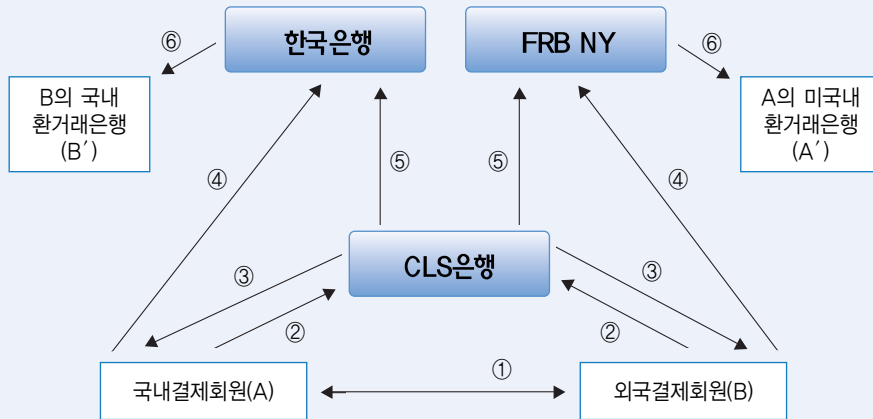
한편 CLS은행내 결제회원 계좌간 가상결제는 다자간 상계방식으로 이루어진 후 이에 따른 차액만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실제로 결제되므로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⁶⁷⁾가 있다.

65) 결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CLS그룹지주회사에 출자(은행당 493만달러)하여 주주가 되어야 하고 CLS은행이 정하는 자기자본 및 장·단기 신용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66)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화에 대해서는 해당 RTGS시스템의 운영마감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통결제시간대를 중부유럽시간(Central European Time; CET)기준 07:00~10:00(국내시간 기준 14:00~17:00)로 단축·운영하고 있다.

67)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결제시 결제회원이 CLS은행앞으로 실제 납입(Pay-in)하는 금액은 거래액의 약 1.2% 수준이다.

그림 III-44 CLS시스템의 원/달러거래 결제과정(예시)



- ① 국내 결제회원 A(달러매입, 원화매도)와 외국 결제회원 B(달러매도, 원화매입)의 거래계약 체결
- ② 거래내역의 CLS은행앞 전송
- ③ CLS은행은 다자간 차액계산후 은행 A 및 B앞 자금납입(pay-in) 요청
- ④ 은행 A 및 B는 각각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의 CLS은행 계좌로 매도통화 자금납입
- ⑤ CLS은행은 납입된 자금의 확인 후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에 은행 A 및 B앞 매입 통화 지급(pay-out)을 요청
- ⑥ 한국은행 및 뉴욕연준은 매입통화 자금을 각각 은행 A 및 B의 환거래은행(은행 A' 및 B')앞 입금처리

1. 외환결제리스크의 개념

외환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foreign exchange settlement risk)는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지급결제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으로 인해 리스크의 발생 과정 및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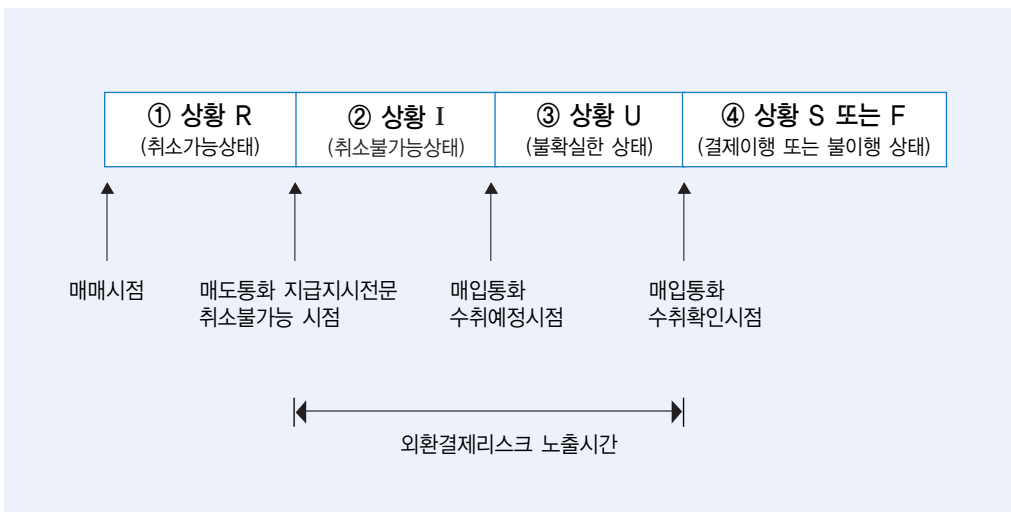
외환거래과정에서는 원인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외환결제리스크란 통상적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진 후 매도통화는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말하며, 이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와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이 고객에 대한 대출을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결제과정에서도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주로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에서 국가간 영업시간대 불일치로 인해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결제실패로 결제일까지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연결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유동성리스크도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한 은행의 결제 불이행이 여타 은행으로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며,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외환결제리스크의 측정

BIS CPSS에서는 외환거래의 결제과정에 있어서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 (foreign exchange settlement risk exposure)은 매입통화의 총금액과 같고 이는 매도통화의 지급지시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시점부터 매입통화의 최종수취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결제리스크 노출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환결제과정을 상황 R(취소가능(Revocable) 단계), 상황 I(취소불가능(Irrevocable) 단계), 상황 U(불확실한(Uncertain) 단계), 상황 F(실패(Fail) 단계), 상황 S(결제완료(Settled) 단계)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결제리스크 노출상황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45 외환결제과정에서의 결제리스크 발생단계



위 그림에서와 같이 외환거래과정에서 각 시점과 단계들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수취예정시점이 도래하는 즉시 매입외환의 최종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은 리스크 노출시간이 상황 I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매입통화의 수취예정시점과 수취확인시점간에 시차가 있어 상황 U에서도

지속적으로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방안

외환결제리스크는 지역간 시차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CLS시스템과 같이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결제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CLS 결제통화가 아닌 통화 또는 거래상대방이 CLS 시스템 참가기관이 아닌 경우의 외환거래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외환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외환결제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적절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우선 결제시간대를 변경하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최대한 늦추고 매입통화의 수취확인시점을 앞당기면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외환거래를 건별로 각각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 대신에 외환거래가 많은 은행과 통화별로 결제일이 동일한 외환거래에 대하여 지급·수취액을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외환결제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잔존하는 외환결제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대별 또는 일별 외환결제리스크 노출규모를 정확히 측정하여 동 리스크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매매거래의 체결 단계부터 결제, 리스크 평가, 한도관리, 신용공여 등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고위관리자에게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IS CPSS의 외환결제리스크 서베이 결과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산하 외환결제리스크 소위원회(Subgroup on Foreign Exchange Settlement Risks)에서는 전세계 외환결제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환결제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1996년 및 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2006년도 서베이에서는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서비스 개시(2002년)에 따른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외환결제리스크 감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총 26개국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참여한 동 서베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6개 은행이 참여하였다.

서베이 결과 전세계 외환거래의 약 55%가 CLS은행을 통해 결제되어 외환결제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통적 방식으로 결제되어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되는 금액의 비중은 약 32%로 1997년 서베이 당시의 85%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CLS 외환동시결제제도 도입을 통해 상당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방식별 금액 및 비중

(십억달러, %)

결제방식		금액	비중
CLS 결제		2,091	55
양자간 차액결제(bilateral netting)		304	8
자기계좌 결제	리스크 노출	53	1
	리스크 비노출	112	3
기타 동시결제(other PVP)		38	1
전통적방식 결제(gross non-PVP)		1,224	32
합 계		3,821	100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외환결제 규모가 여전히 일평균 1.2조달러에 달하는 데다

개별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베이 참가기관중 외환결제리스크의 규모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이를 신용리스크에 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약 34%에 불과하여 1997년 서베이 당시의 3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거래별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시간도 평균 26시간으로만 하루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CLS시스템 이용시 전통적 방식의 결제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데다 개별기관이 자발적으로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하려는 유인도 적어 외환결제리스크의 재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BIS CPSS는 외환결제리스크 규모의 추가 감축, 잔존 리스크의 관리 및 외환결제리스크의 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관련업계 및 중앙은행 등 각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우선 개별 금융기관들은 CLS시스템 이용을 확대하고 외환결제업무 처리절차 수립시 각 결제방식별로 비용뿐만 아니라 리스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업계에서는 CLS은행 등 결제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국 외환시장 참가기관간 협의회 등에서도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환결제리스크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외환결제방식의 이용현황과 외환결제리스크의 재확산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CLS 등 외환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IV.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 제1장 개 요
- 제2장 감시업무

제1장 개요

제1절 감시의 의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⁶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감시의 일차적 목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간 경쟁 촉진, 시스템이용자 보호 등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동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독점적,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장집중, 부(負)의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은 중앙은행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비교

68) BIS CPSS,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

적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 진전으로 지급결제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내는 물론 국가간에도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이 국가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G-10 중앙은행들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참고 IV-1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장실패

지급결제시스템은 초기 구축비용이 크지만 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규모의 경제) 독과점 형태의 시장집중구조가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집중으로 인해 소수의 시스템 운영기관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서 지급결제서비스의 질 저하, 시스템 참가비용 상승 등의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지급결제시스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유형은 외부효과이다.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일부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함으로써 여타 참가기관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순채 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결제를 불이행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은 기처리된 수많은 개별 거래들을 재교환(rewind)하거나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새로 가입하면 기존 참가기관들은 보다 많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 경우 신규가입으로 인한 추가이익이 신규 참가기관 차원보다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더 커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신규 참가기관은 자신의 사적 비용·편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 및 기존 참가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별 참가기관간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던 중, 2001년 1월 이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BIS의 CPSS는 전세계 지급결제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요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에 필요한 10개 항목의 핵심원칙과 동 핵심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4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4대 책무에서 CPSS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핵심원칙의 충족여부를 감시할 것과 감시기능의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앞서 IMF는 1999년 7월 제정한 「통화 및 금융감독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각국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게 되었다.

이같이 중앙은행의 감시가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제도화 이전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연유하여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

첫째, 중앙은행은 결제의 완결성 면에서 어느 지급결제수단보다도 우위에 있는 법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데다,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거래대금의 결제는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앙은행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징후(결제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등)를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둘째,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금융시장은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정책수단이 집행되고 그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중요하다.

셋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의 결제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분석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넷째,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권과 무제한 공급 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대해 소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하여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최종대부자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건실한 설계 및 운영상황의 점검 등 감시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해 왔다.

각국 중앙은행간 감시범위의 차이는 안전성 및 효율성 목표중 어디에 정책적 중점을 두느냐 여부, 각국 지급결제제도의 차이, 대형 환거래은행 및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증가와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한다. 이러한 중앙은행간 감시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BIS의 CPSS에서 2005년 5월 발표한 아래의 일반적 감시원칙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감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A. 투명성: 중앙은행은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요구사항이나 기준, 감시대상 시스템의 요건 등의 감시정책을 대외에 공표하여야 한다.
- B. 국제기준: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 C. 효과적인 권한 및 능력: 중앙은행은 감시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D. 일관성: 감시기준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비교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 E. 타 정책당국과의 협조: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타 관련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표 IV-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과의 차이점

	지급결제제도 감시	금융기관 감독
정책목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통한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감시·감독 대상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전 금융기관
감시·감독 내용	-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 지급결제통계 수집 및 분석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와 필요시 시스템 개선 권고	- 금융기관 인·허가 -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감독 및 검사 - 지급수단의 취급조건, 수수료 등 규제 - 금융사고 방지 및 제재 - 소비자 보호
제재내용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제한, 개선권고, 부정적 의견 공표	- 금융기관 영업제한 및 관련 임직원 문책요구 - 금융기관 인·허가 취소 등
근거법률	한국은행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제기준	- BIS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 BIS-IOSCO의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등	BIS의 '신자기자본기준',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 등
업무수행 방식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정, 운영 기관과의 협의, 도의적 권유 등	감독규정 제정, 검사, 제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정책목표로 하는 금융기관 감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 감독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상태이나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다. 둘째, 금융기관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치중하지만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개별 기관의 도산 등이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되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금융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상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등 감독과정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등 도덕적 권유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최근 들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감시와 감독은 정책목표에서부터 대상, 제재권한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감시의 법적근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한국은행법」과 동 법의 하위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내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수행해 오다가 2003년 9월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어 2004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공적 규제의 내용을 규정한 유일한 법률로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제28조와 제81조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권고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설정하였다. 감시대상의 포괄범위는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각 시스템별 결제규모, 결제성격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한 자료,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급결제 관련자료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밖에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시 적용할 평가기준, 평가시기,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였고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이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밖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공동검사 권한이 규정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감시가 가능해졌다.

제3절 감시대상

한국은행의 감시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이분화하였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 국가에서 유일한 결제시스템이거나 건별 결제액 또는 총액 결제규모면에서 중요한 결제시스템, 금융시장거래 또는 다른 결제시스템의 결제에 이용되는 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한은 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IV-2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구 분	운영기관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신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타행환·전자금융 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CLS시스템	CLS은행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CD·CMS·B2C 및 B2B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직불카드·지방은행 공동망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신용카드시스템의 경우 총 결제건수나 결제금액은 크지만 신용카드사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결제규모는 다른 소액결제시스템에 비해 작은 데다 비은행계 신용카드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거래은행에 개설된 신용카드사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결제가 이루어져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제외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CPSS, CPSS-IOSCO 등이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절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참고 IV-2

지급결제시스템 상호의존성

은행간시장과 자본시장의 발달 및 세계화,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 증가하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결제불이행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여타 결제시스템과 시장으로 신속하게 전이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의존성 증가로 인해 시스템구조가 복잡해져 리스크 분석 및 관리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부(負)의 외부효과도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

므로 지급결제시스템 상호의존성에 대한 감시기관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된다.

지급결제시스템 상호의존성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먼저 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의존성을 들 수 있다. 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의존성이란 거래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거래결제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파급되는 관계를 말한다. 둘째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의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기관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셋째로 국내 및 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간 경제통합, 금융 및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의 높아진 상호의존관계를 말한다.

제2장 감시업무

제1절 모니터링

감시업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급결제동향을 수집 및 분석(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필요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다.

모니터링은 감시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내 자금결제상황, 결제유동성, 긴급상황 발생여부 등을 관찰하고 거시적으로 금융시장발전에 따른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주시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개별 참가기관의 결제동향과 결제리스크 정보를 축적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만 동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개선권고 등의 여타 감시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하며 그 주기에 따라 실시간, 정기,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한국은행이 각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운영현황,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전산시스템 설비교체 또는 장애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체 운영상황 및 개별 참가기관의 세부 결제현황을 관찰하고 시스템 및

참가기관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결제지연, 참가기관의 파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관련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는데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모니터링 업무를 주기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신한금융망의 경우 시간대별 자금결제내역, 결제대기발생현황, 일중당좌대출발생현황, 결제마감지연현황 등의 결제정보를 시스템전체 및 개별 참가기관별로 구분하여 신한은금융망 운영시간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별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소진 현황, 차액결제지연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일일 모니터링의 경우 한국은행의 신한은금융망,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일일결제정보에 신한은금융망내 결제대기발생금액, 일중당좌대출발생금액,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마감시간연장여부 등 거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현황정보를 추가한 「일일지급결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일중 지급결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월별 모니터링의 경우 신한은금융망, 소액결제시스템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신용카드시스템 등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일부에 대해 월중 지급결제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리스크를 유동성리스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지급결제 뉴스레터 발간업무를 통해 지급결제관련 최신 뉴스를 수집하고 관련기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분기 모니터링은 중앙은행간 협조감시체제에 의한 감시로 대체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중요·기타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용, 유동성, 법률, 운영리스크 면에서 분기중 발생한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여부를 점검

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사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한국은행은 그 즉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게 된다.

참고
IV-3

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예시)

■ 긴급상황 발생요인

- ◎ 시스템 작동 오류 또는 장애
- ◎ 통신회선 장애 또는 전력공급 중단
- ◎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및 기타 경영상의 문제

■ 긴급상황 발생내용

- ◎ 참가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또는 처리지연, 지급지시 송수신 수행불능 또는 지연, 결제자금 입금 불능 또는 지연 등
- ◎ 운영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및 처리지연, 차액정산 처리 불능 및 지연 등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직접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채무한도의 과다소진, 차액결제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지원하거나 부족자금의 조기입금 지도, 마감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급결제 통계자료로 이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통계 편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되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동향 파악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모니터링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될 경우에는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수시평가업무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시간 및 절차의 변경이나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모니터링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할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관 등에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지급결제통계 수집 및 분석

한국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전자화폐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급결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지급결제통계를 작성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 단위로 신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인 ‘회계시스템통계’를 익일 공표한다. 월 단위로는 BIS기준통계, 신한은금융망, 은행공동망, 지로시스템, 신용카드 통계를 공표하며 분기별로는 전자금융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지급결제통계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으며 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등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매년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통계를 여타 주요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3 지급결제통계 현황

작성 주기	통 계 명	세 부 항 목
일	회계시스템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오전/오후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월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통계, 지급수단별통계
	신한은금융망	원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
	은행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지로시스템	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신용카드	개인/법인 및 일반/할부/현금서비스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발급장수, 가맹점수
분기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제3절 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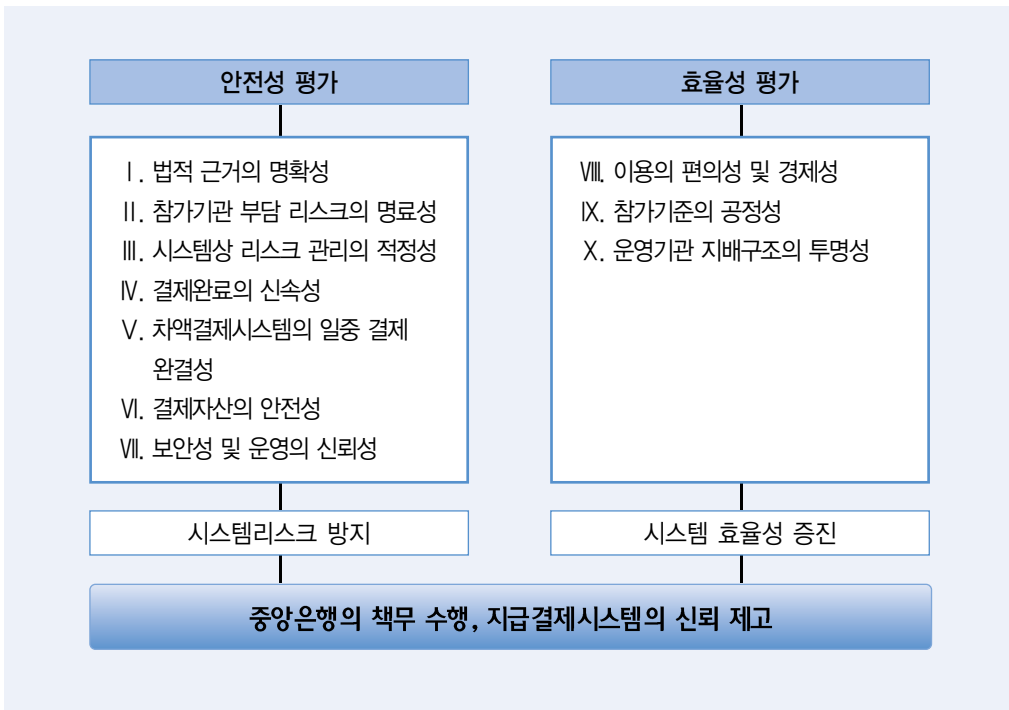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이나 지급결제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 지급결제동향 파악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리스크 관리방법,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지배구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기술적 측면의 감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위기 등에 따라 특정 거래 또는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효율성 평가는 지급결

제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급결제 관련 지배 구조, 시장구조, 관리제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관한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대내외에 공표되므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 참가기관 등의 노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금융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BIS가 제정하여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이다. 증권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BIS와 IOSCO가 공동으로 정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및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국제기준을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그림 IV-1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에 있어 법적·제도적 현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 기준 이외에도 운영기관의 실제 운영현황⁶⁹⁾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시기를 달리 운용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별로 평가시기를 차등화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평가역량을 집중하여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표 IV-4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주기

구 분	정기평가	수시평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2년	-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⁷⁰⁾
기타지급결제시스템	—	(상 동)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시 평가기준의 대항목별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평가 항목별로 충족수준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다음 이를 종합한 대항목별 충족수준을 다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평

69) 결제규모 추이분석, 결제리스크 관련 지표분석, 제도 운영상황, 운영절차·수수료·서비스내용의 적절성 등

70) 정기평가시기를 전후로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로 정기평가를 갈음한다.

가기준 및 세부평가항목 등을 평가대상시스템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동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항목을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본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한국은행은 동 평가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에 전년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를 수록하여 대외 공표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투명성 및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IV-2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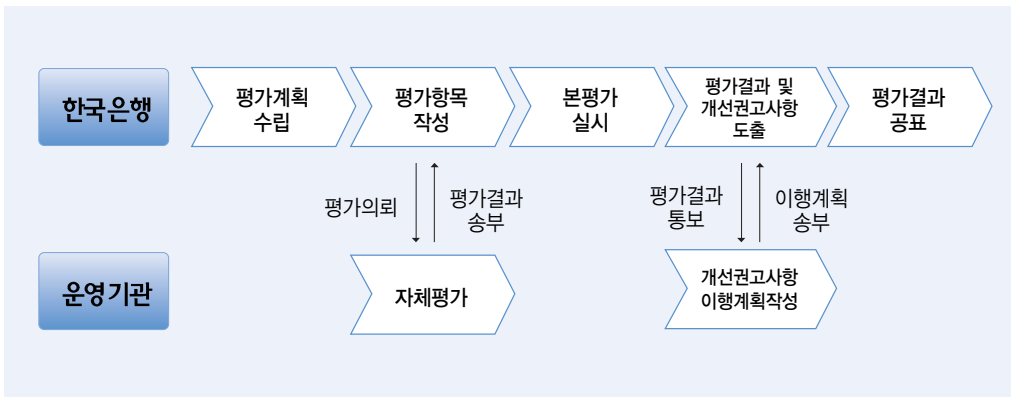


표 IV-5 평가등급의 구분

평가등급	의 미
충족	특별한 문제점 없이 평가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충족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경우
일부 충족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충족	평가기준의 충족도가 매우 낮아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불가능	구조적 · 법적 · 제도적 여건을 감안할 때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4절 개선권고 등의 조치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문제를 발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선을 요청받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시급성) 및 이행 난이도에 따라 분류되며, 이를 감안한 이행시기를 구체화하여 이행도 및 이행 시기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IV-6 개선권고사항 분류

시급성		이행 난이도	분류	비고 ¹⁾
I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행이 용이한 사항	I-1	단기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정하거나 제도 변경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내 이행이 어려운 사항	I-2	중기
II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제도 개선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	II-1	중기
		이해당사자간 의견 상충, 심각한 제도적 변경 수반 등으로 중·단기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사항	II-2	장기

주 : 1) 단기는 1년 이내, 중기는 2~3년 이내, 장기는 4년 이상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 절차,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를 한국은

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관련 참가기관의 일시적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소속직원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와 관련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기관의 신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평가관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시스템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운영기관간 업무협조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V.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 제1장 개 요
- 제2장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제1장 개 요

제1절 개 념

지급결제제도는 금융기관, 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므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려면 금융기관, 금융시장,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급결제제도는 각 시스템의 전산화 진전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산시스템 의존도가 커지면서 동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핵심 업무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가동중단 사태의 사전 예방과 사후대비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업무지속계획은 각 지급결제시스템에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내부장애가 발생하거나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합의된 수준으로 업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IS가 2001년 1월 제정 공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은 고도의 보안성과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일의 결제처리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

제시스템의 업무지속수행 대책의 목적을 시스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 요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전 합의된 서비스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절 필요성

최근 들어 지급결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정보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다른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데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재해·장애가 빈번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업무지속계획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화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신속하고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금이체의 지연 또는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해당 시스템은 물론 지급결제제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한 Y2K문제(1999년), 미국의 9/11테러(2001년), 북미 북동부의 정전사고(2003년) 등이 해당국 결제시스템을 일시 마비시키거나 그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업무지속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파업, 각종 전산장애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지속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요인들은 전쟁, 지진 등 전통적 의미의 재해뿐만 아니라 사스(SARS),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감염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속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업무지속계획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효과적으로 업무지속계획이 운영될 수 있다. 업무지속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립·운영된다.

1. 업무지속계획의 범위 설정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지속계획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업무지속계획 수립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명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발생가능한 재해·장애의 파악 및 평가

지급결제업무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재해·장애의 유형 및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단계이다. 발생 가능한 재해·장애의 유형은 기술결함(technical defects), 인재(man-made errors), 사고(accidents), 공격(attack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장애 발생시의 대처방안 및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한다.

3. 업무영향분석

재해·장애 발생으로 각종 지급결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내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의 중요도를 정하는 단계이다. 동 분석을 기초로 업무별 복구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 및 복구우

선순위 등을 설정한다.

4. 복구전략 수립

재해·장애 발생으로 중단된 지급결제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동 전략에는 백업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 백업 및 소산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5. 계획 수립

지급결제업무 중단사태의 사전예방과 재해·장애 발생시의 사후대비를 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업무지속계획에는 사전예방조치, 재해·장애 발생시의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비상시 업무처리 절차, 대외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내부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6. 모의훈련 및 계획의 유지·개선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은 조직별, 업무별로 배포하여 지급결제업무 담당자가 숙지토록 하여 재해·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하여 업무지속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의 효율적·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모의훈련 결과 업무지속계획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업무여건의 변화로 동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노력이 요구된다.

제2장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제1절 신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1999년 8월 Y2K 문제에 대응하여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한국은행 전산백업센터의 가동(2001년 11월) 및 금융기관과의 정기적인 모의훈련 등에 대한 IMF와 World Bank의 권고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02년 8월에 이 계획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에 대응하여 2004년에는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신한은금융망이 가동됨에 따라 명칭을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으로 변경하고 신한은금융망 및 서버간 접속시스템 가동에 따른 변동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감염으로 업무가 중단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

1.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체계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기존 비상계획을 전면 보완한 기본계획과 그 하부구조로서 팀별 업무지속계획, 참가기관용 업무지속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전략 등의 기본사항과, 비상상황별 대응·복구계획, 모의훈

련 및 유지·보수계획 그리고 비상연락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지속계획에는 기본계획 외에 수작업지침, 비상연락망, 대체수행자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기관별 업무지속계획은 기본사항, 비상상황별 행동지침, 모의훈련 계획 및 비상연락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전산과 관련하여 비상대응 지원업무지침, 전산시스템 종합비상계획, 재해복구절차서 등이 있다.

2. 기본사항

(업무지속계획의 영역 및 위험예방)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영역은 인지된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예방 영역과 비상상황별로 수립하는 비상대응·복구계획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한은금융망 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행 위험예방대책을 평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개선을 의뢰하고 있다.

(비상상황의 구분)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종전 비상계획의 5단계에서 7단계로 비상상황을 세분화하였는데 한국은행 본부에 재해가 발생하여 대체근무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상황Ⅵ과 한국은행 본부와 주전산센터가 있는 곳에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상황Ⅶ이 추가되었다.

(긴급운영체제)

신한은금융망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요 의사결정 및 비상대응·업무복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 V-1 비상상황의 구분

구 분	내 용
상황Ⅰ	참가기관 단말기, 주전산기 또는 통신회선에 장애 발생
상황Ⅱ	신한은금융망 중계기기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 발생
상황Ⅲ	한국은행 주전산기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 발생
상황Ⅳ	한국은행 주전산센터의 신한은금융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
상황Ⅴ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및 전산백업센터의 신한은금융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
상황Ⅵ	한국은행 본부에 재해 발생
상황Ⅶ	한국은행 본부와 주전산센터에 재해가 동시에 발생

(운영전략)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복구조직의 구성 및 복구인력의 백업(인력), 비상시 대언론 대응 및 대내외 의사소통(의사소통), 대체근무장소내 전화 및 네트워크 통신회선 설치(통신), 주요문서 및 기록의 유지 관리, 대체근무장소(문서/자료), 업무공간과 복구자원 확보(시설/자원) 등 5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복구목표시간 및 복구우선순위)

지급결제업무 관련 33개 단위업무중 복구목표시간(3시간)내 복구되어야 할 15개 업무를 지정하고 단위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팀내 우선순위도 설정하고 있다.

(대체근무장소)

상황Ⅵ과 상황Ⅶ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으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재개를 위한 대체근무장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대체근무장소에서

의 원활한 업무재개를 위하여 사무공간 및 PC, 전화 등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

(상황별 업무전환결정 및 보고 체계)

비상상황 발생 및 종료시 업무전환 결정권자와 보고체계를 상황별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업무전환 결정권자는 근무지 이동 여부 또는 전산백업센터로의 전환여부 등을 결정한다.

3. 비상상황시 대응 및 복구·복원 처리절차

장애 또는 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한은금융망 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및 복구·복원 처리절차를 따르고 있다.

(비상대응단계 처리절차)

신한은금융망 운영부서와 전산지원 부서는 장애 또는 재해 발생사실을 상호 통보하고 복구예상시점 등을 협의하며 장애·재해 유형 및 피해범위에 따라 업무전환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피 및 비상반출을 수행하고 장애·재해 발생사실, 피해상황 등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협의하고 결정한 뒤 이행상황을 지시하고 비상대책실무위원회와 유관부서는 참가기관 앞으로 행동지침을 통보하고 비상연락을 취하며 상황 VI, VII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실무위원회의 통할에 따라 대체근무장소로 이동한다.

(업무복구단계 처리절차)

업무재개를 위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입력대행, 수작업처리, 전산백업센터로의 전환, 대체근무장소에서의 업무처리 등 업무전환을 준비하고 업무전환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정당반영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인력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전환을 통한 지급결제업무 재개시에는 업무재개 사실을 참가기관 앞으로 통보한다.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행동지침을 이행하고 참가기관협의회는 필요시 참가기관간 결제업무처리절차 및 비상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협의한다.

(업무복원단계 처리절차)

전산지원 부서는 장애 또는 재해 상황 종료사실을 신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앞으로 통보하고 비상대책실무위원회는 장애·재해 상황 종료사실을 관련부서 앞으로 통보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 또는 재해 상황 종료사실 등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복원진행절차 등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비상대책실무위원회와 유관부서는 복원진행절차 등을 이행하고 참가기관 앞으로 관련사항을 통보하며 참가기관협의회는 필요시 복원진행관련 참가기관 협조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상업무체제로의 전환 결정, 본부로의 복귀 및 업무복원을 결정하고 비상대책실무위원회는 참가기관 앞으로 신한은금융망 정상가동 내용, 본부에서의 업무복원 내용 등을 통보한다.

4. 모의훈련 계획

신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취약점 파악 및 결제업무담당 직원들의 비상대응 능력 제고 등을 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되 모의훈련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훈련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에서는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식 모의훈련에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회의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종합모의훈련에서는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업무지속계획에 따른 상황

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종합모의훈련은 비상상황별로 훈련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하는데 상황Ⅱ,Ⅲ,Ⅳ의 경우 전산지원부서 주관하에 비상대응·복구훈련을, 상황Ⅴ의 경우 신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수작업 훈련을, 상황Ⅵ,Ⅶ의 경우 신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대체근무지로 이동하여 업무재개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 유지보수 계획

업무지속계획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는 업무지속계획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유지보수는 주기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정기 유지보수와 환경 변화 등에 의한 비정기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6. 비상연락체제

신한은금융망의 장애 및 재해 발생시 참가기관 행동지침,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연락수단으로는 신한은금융망 단말기, 전화, 이메일(e-mail), 한국은행 홈페이지,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제 전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참가기관 전체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비상상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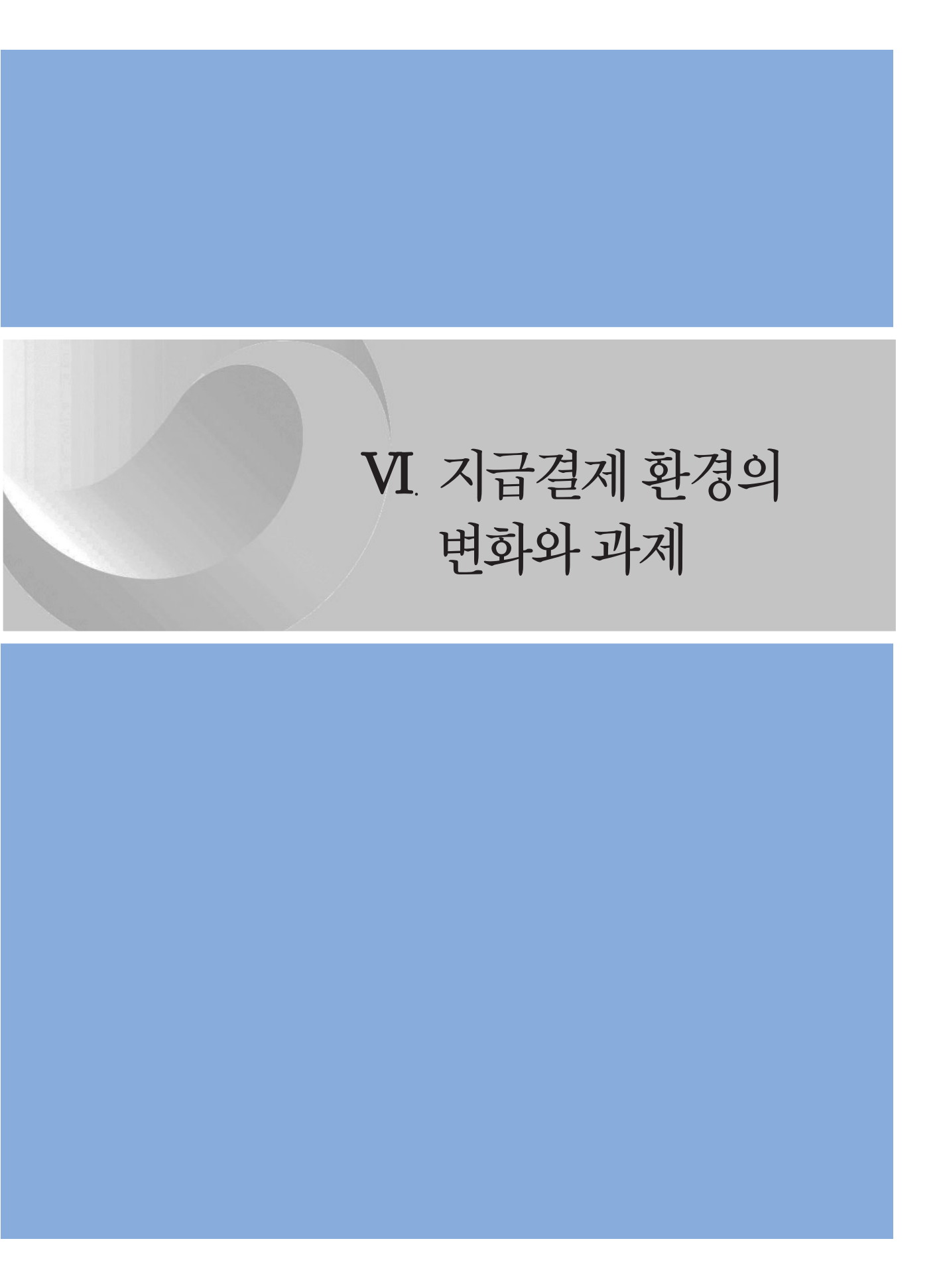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지급결제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우선 지급결제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자금이체의 실시간(real time) 처리가 확대되었으며,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자금과 증권의 적시 결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참가자에 거래가 집중되고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의 영향이 여타 연계된 시스템으로 전이되면서 큰 충격이 발생하는 사례가 현실화되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 고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의 비상상황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중 하나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없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협조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기존 지급결제 관련 BCP는 이러한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BCP는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기관 BCP간 정합성에 대한 상호체크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급결제 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 BCP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비상상황에 대하여 연계되어 있는 운영기관의 BCP에 대응방안이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거나, 한 기관의 BCP에만 대응방안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여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 운영기관의 BCP를 수정·보완하여 BCP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VI.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와 과제

전세계 지급결제시스템은 지난 20년간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이에 따른 거래비용의 축소 등을 토대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1. 거액결제시스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주로 영업종료시점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결제가 실행되는 이연차액결제(DNS)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DNS의 경우 영업종료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가기관간 신용리스크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금융 및 실물거래의 증가와 함께 지급결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제리스크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결제리스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부터 RTGS(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거액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건별 결제하는 RTGS시스템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즉, 금융거래 건별로 즉시 은행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결제가 종료되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지급결제 완결시간이 단축되었고 신용리스크도 크게 줄어들었다.⁷¹⁾

RTGS를 도입한 국가는 1980년대말 3개에서 1995년 16개로, 2006년말에는 전세계 174개 중앙은행중 절반 이상(93개)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RTGS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하였다.

71)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자간 자금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자금을 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에 비해 신용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표 VI-1 주요국의 RTGS시스템 도입 시기

국 가	거액결제시스템 ¹⁾	RTGS 도입 시기
미국	Fedwire	1982년
스위스	SIC	1987년
독일	EIL-ZV	1988년
한국	BOK-Wire	1994년
홍콩	CHATS	1996년
영국	CHAPS	1996년
벨기에	ELLIPS	1996년
프랑스	TBF	1997년
이탈리아	BIREL	1997년
네덜란드	TOP	1997년
싱가포르	MEPS	1998년
호주	RITS	1998년
일본	BOJ-Net	2001년

주: 1) RTGS 도입 당시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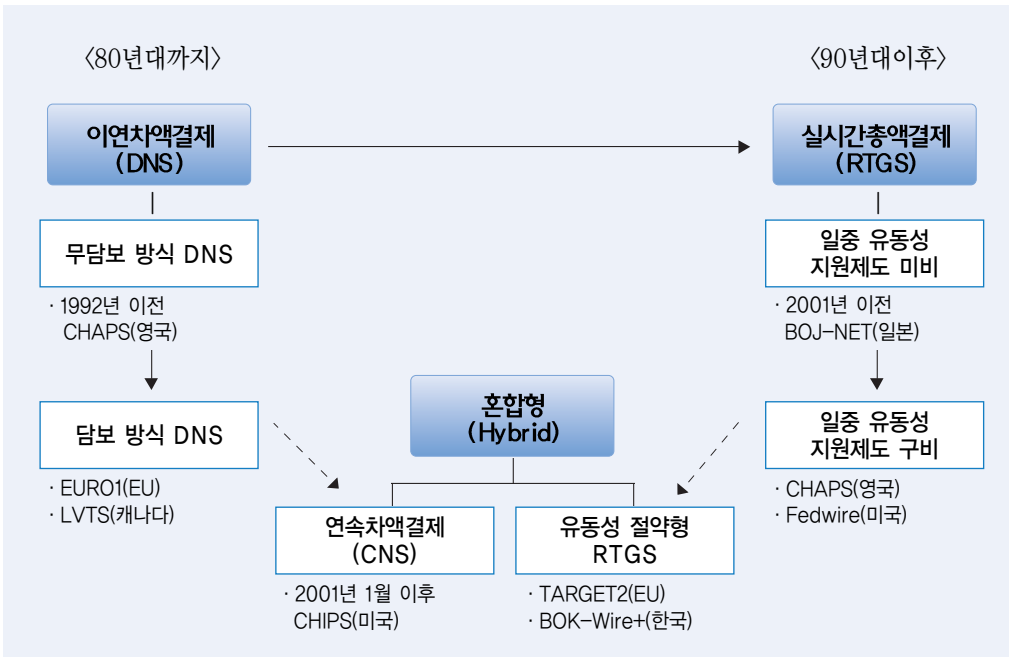
거액결제시스템의 발달로 국가간 금융거래방식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거래 및 교역 증가로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가간 거액결제시스템이 기존의 환거래은행을 이용한 외화결제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국가간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이 활성화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자금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존의 TARGET을 개선한 TARGET2에는 2008년말 현재 21개 RTGS시스템이 연계되어 747개 금융기관이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일평균 37만건, 2.7조 유로를 결제하고 있다.

한편 RTGS시스템 내에서는 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소요자금을 상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자간 차액계산한 후 순채무금액만을 결제하는 DNS시스템에 비해 유동성조달부담이 크다. 각국 중앙은행은 일중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유동성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참가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대출담보증권의 조달을 위

한 비용부담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최근에는 RTGS시스템의 영업시간중 결제종료를 통한 결제리스크 방지효과와 DNS시스템의 유동성 절약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연속차액결제(CNS; Continuous Net Settlement)시스템과 유동성 절약형 RTGS(queue-augmented RTGS)시스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CNS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DNS시스템과 달리 영업시간중 지속적으로 차감 및 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CHIPS(2001년 1월 가동)가 대표적이다. 한편 유동성 절약형 RTGS시스템은 참가자의 지급지시가 동시에 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법적으로는 각 참가자의 지급지시가 총액기준으로 결제되지만,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유동성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동성 절약형 RTGS시스템의 사례로서는 EU의 TARGET2(2007년 11월 가동)를 들 수 있다.

그림 VI-1 거액결제시스템 발전 과정



2001년 11월 독일연방은행이 기존의 RTGS시스템에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합하여 RTGS^{plus}를 가동하였으며 싱가포르(MEPS⁺)는 2006년 12월, 일본(RTGS-Xg)은 2008년 10월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4월 기존의 RTGS시스템에 일중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신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하였다.

표 VI-2 주요국의 혼합형결제시스템 도입 사례

국 가	결 제 시 스 템	도입 시기
캐나다	LVTS	1999년 2월
프랑스	PIS(PNS 및 TBF) ¹⁾	1999년 4월
독일	RTGS ^{plus} ¹⁾	2001년 11월
이탈리아	new BIREL ¹⁾	2004년 4월
싱가포르	MEPS ⁺	2006년 12월
EU	TARGET2	2007년 11월
일본	RTGS-Xg	2008년 10월
한국	BOK-Wire+	2009년 4월

주: 1) TARGET2 도입으로 현재 가동을 중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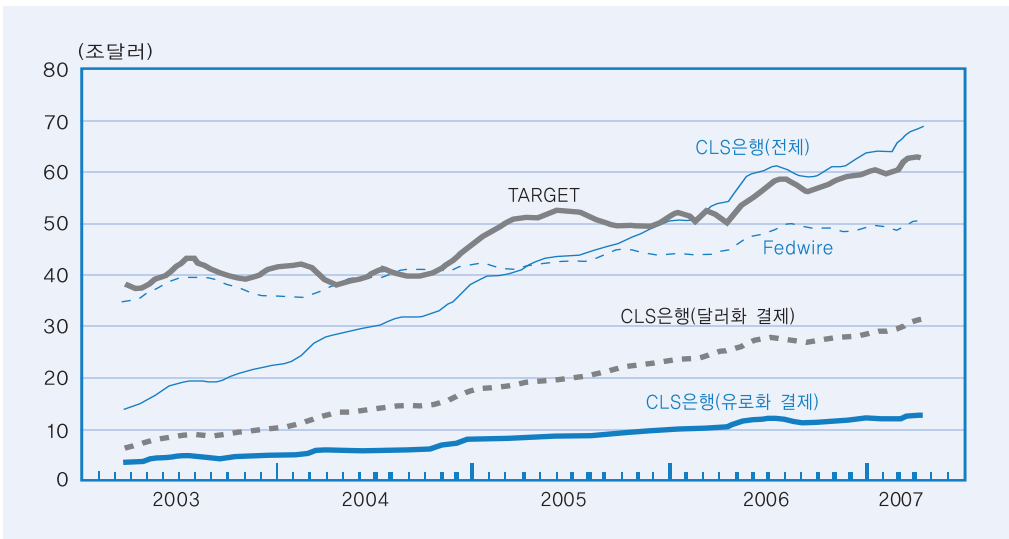
2. 증권 및 외환 결제시스템

증권거래는 그 결제규모가 거액이기 때문에 리스크감축을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결제와 자금결제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중앙예탁기구(CSD)가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과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럽은 ECB에서 국가간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를 기반으로 한 역내 단일증권결제시스템(TARGET2-Securities)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증권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을 하나의 청산기관에 집중하여 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가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결제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증폭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 설립 및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외환거래 역시 RTGS시스템의 도입으로 외환동시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환 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시켰다. CLS은행은 2002년 9월 국제상업은행들의 외환 거래대금 결제를 위하여 설립된 이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9년 6월 현재 미달러화, 유로화 등 17개 통화가 CLS은행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어 있고, CLS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규모는 2005년 하반기에 이미 TARGET과 Fedwire의 결제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림 VI-2 CLS은행의 결제규모 추이(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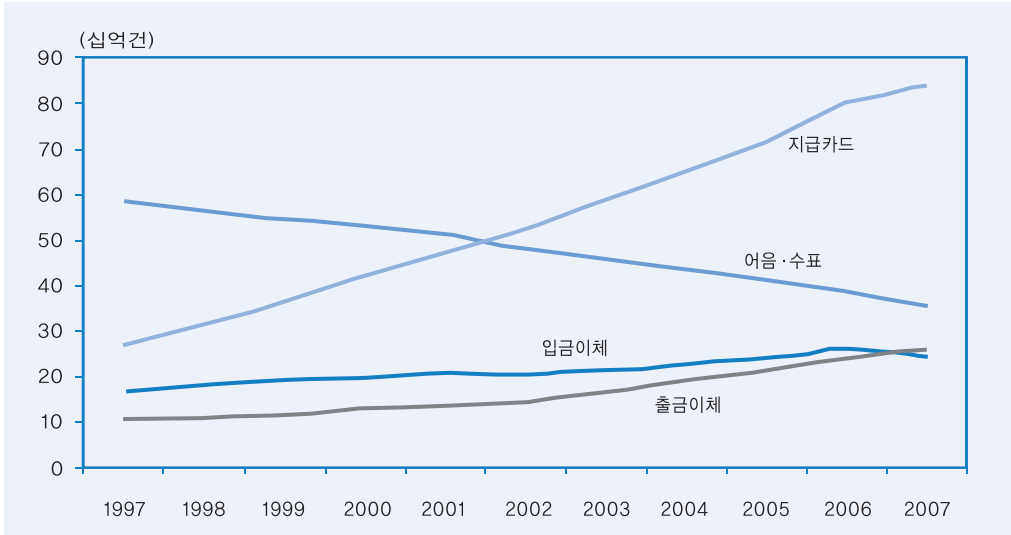


3. 소액결제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현금이나 어음·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및

CD/ATM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고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전자화폐, 우편으로 이루어지던 대금 고지 및 납부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대체할 전자 고지·납부 등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하였다.

그림 VI-3 주요국¹⁾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규모 추이



주: 1) BIS CPSS 회원국 기준

자료: BIS,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각호

1980년대 ATM의 도입 및 은행계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시작된 지급결제서비스의 네트워크화는 1990년대 이후 더욱 가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지급결제 네트워크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초기와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이전의 지급결제서비스는 폐쇄된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기관간의 정보이전이었으나 현재는 개방화된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과거 지급결제서비스 수요자는 정해진 시간에 ATM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은행의 메인컴퓨터와 ATM간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한 반면, 현재의 지급결제서비스 수요자는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

어나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이전의 지급결제서비스는 ATM, 온라인 자금이체 등과 같이 특수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예금, 대출, 증권투자, 보험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즉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서비스를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예금조회 및 자금이체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IC카드나 컴퓨터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여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전자화폐, 휴대용 단말기를 매체로 증권 시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거나 매매 주문을 낼 수 있는 모바일트레이딩,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보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와 보험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마케팅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개인고객에 대한 결제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고객에 대한 결제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효율적인 대금 수납을 위해 은행 또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결제정보와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금융EDI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거래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상거래 전자문서(e-invoice) 양식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EDI는 금융기관이 상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하부구조 역할을 함에 따라 물적·인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대금지급시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지급결제 네트워크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간 자금이체 및 카드사용 등 지급거래와 관련된 처리절차 및 제도를 표준화하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SEPA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유로 전지역에서 하나의 은행계좌로 유로화 이체가 가능하고 하나의 카드로 지급거래 및 현금인출거래가 가능해져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인접국

가간 교류 및 상주인구의 증가로 현지화폐의 인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간 CD/ATM망 연계를 목표로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 결제서비스의 발전은 SWIFT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SWIFT는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여 벨기에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간 메시지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전 세계 209개국 9,057개 금융기관이 일평균 15백만건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3월 2일부터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WIFT는 은행간 자금이체를 환거래은행에 지시하는 업무, 은행간의 외화자금 매매거래를 확인하는 업무, 신용장 개설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다. SWIFT로 인해 금융기관은 주요 국제은행과의 접속이 용이해졌고 국가간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VI-1

유로지역의 SEPA 추진배경 및 현황

유로지역에서는 유로화 도입을 전후하여 국내 거래에 비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아 비효율적인 국가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은행들을 중심으로 SEP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EU집행위원회 및 ECB가 이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럽 은행들은 2002년 6월 SEPA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할 조직(EPC; European Payment Council)을 설립하였고, EU집행위는 역내 은행들의 국가간 송금 수수료를 국내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¹⁾을 제정하였으며, ECB는 SEPA 프로젝트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상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다

SEPA 프로젝트는 설계, 실행, 이행의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설계단계(2004.1월~2006.6월)에서는 새로운 입금이체·출금이체 제도와 카드 및 청산·결제 하부구조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어지는 실행단계(2006.7월

~2007.12월)에서는 SEPA 지급수단, 표준 및 하부구조의 실행을 준비하고 각 참가국은 자국내 SEPA의 실행 및 이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행단계(2008.1월~2010.12월)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1월 SEPA 입금이체(credit transfer), 2009년 11월 SEPA 대량출금이체(direct debit)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유럽지역의 다양한 카드지급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일하는 SEPA 카드 서비스를 2010년말 개시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국가별 독자적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1) Regulation No. 2560/2001, Regulation on cross-border payments in euro

제2절 지급결제관련 국제기준의 신규 제정 및 강화

BIS의 CPSS는 2001년 1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대한 핵심원칙」을 제정한 이후 전세계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준 또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CPSS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가간 송금서비스에 관한 일반원칙」⁷²⁾을 발표하였다. 전세계 이주노동자에 의한 국가간 송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전하고 투명한 국가간 송금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일반원칙이 제정되었다. 첫째, 송금서비스 시장은 투명해야 하며 적절한 소비자 보호책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송금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하부구조의 개선을 촉진하여야 한다. 셋째, 송금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공정하여야 한다. 넷째, 송금서비스 산업내에서 국내 지급결제 하부구조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등 경쟁적 시장여건 조성이 촉

72) BIS CPSS,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2007.1

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은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CPSS는 2006년 1월 지급결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⁷³⁾을 제시하였다. 14개의 지침은 크게 i) 결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은행의 적극적 역할, ii)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 기획과 실행, iii)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iv)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촉진자, 감시자 및 이용자인 중앙은행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의 주축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CPSS는 2005년 5월 발간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보고서⁷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는 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감시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한편 9/11 테러사태 등을 계기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중 하나⁷⁵⁾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감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핵심원칙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 장애발생시 2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것을 모범관행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초 CPSS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이 2시간 이내 시스템 복구를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주요 참가기관들이 신속한 시스템 복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

73) BIS CPSS, 「General guidance for national payment system development」, 2006.1

74) BIS CPSS,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

75) 핵심원칙 제7항에 따르면, 시스템은 고도의 보안성과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일의 결제처리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을 분산 관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PSS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설계에 필요한 준칙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불안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CPSS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주요 국제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2009년에는 장외파생상품의 CCP제도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2004)」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2001)」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2001)」 등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제3절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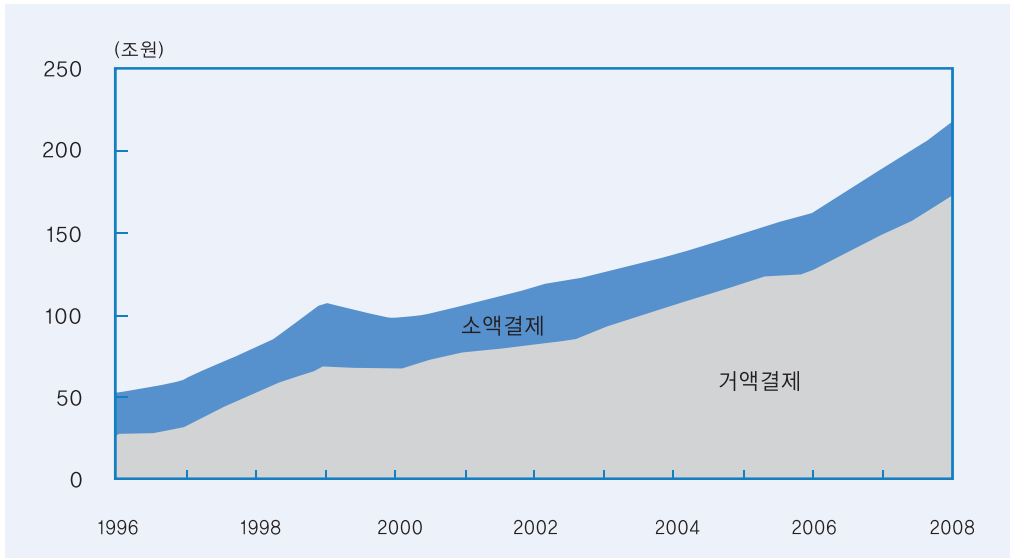
1. 향후 발전방향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의 겸업화 및 금융·비금융간 융합화 현상의 진전, 국내외 금융·외환거래 및 결제규모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 거래 및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지급결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식, 채권 등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의 증가에 따른 거래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자금거래가 점점 더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6년중 일평균 52.4조원이었던 지급결제규모는 2008년중 일평균 219.3조원으로 4.2배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인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였던 현금의 이용이 꾸

그림 VI-4 지급결제 규모의 증가 추이(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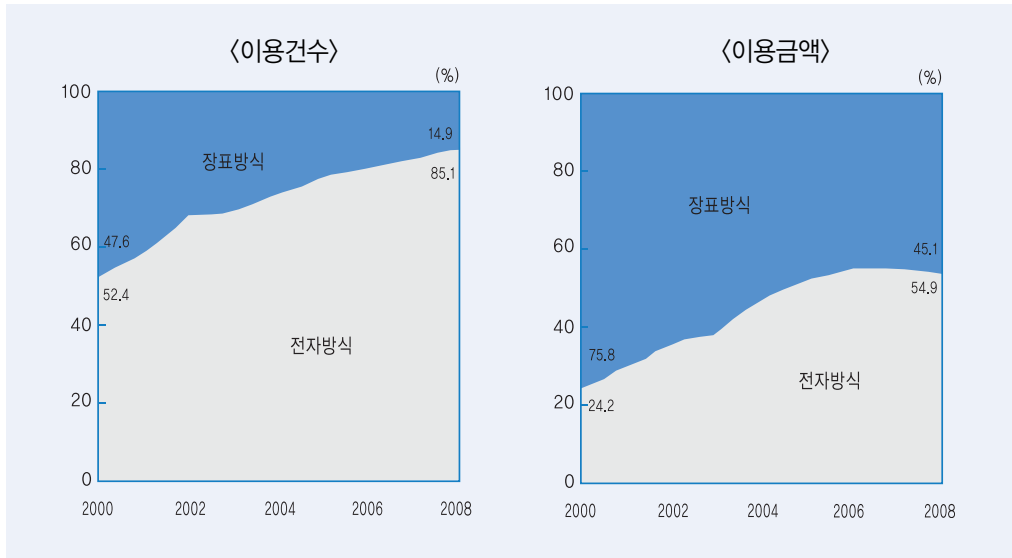


준히 줄어드는 대신⁷⁶⁾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어음·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을 지속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이용건수 뿐만 아니라 이용금액 측면에서도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는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이 편리성, 효율성, 신속성 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지급채널의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은 최근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전달채널이 전자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및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일관처리절차의 확립 등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의 전자화가 금융기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76) 현금이용 규모의 대용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보유 현금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말 3.2%에서 2008년말에는 2.3%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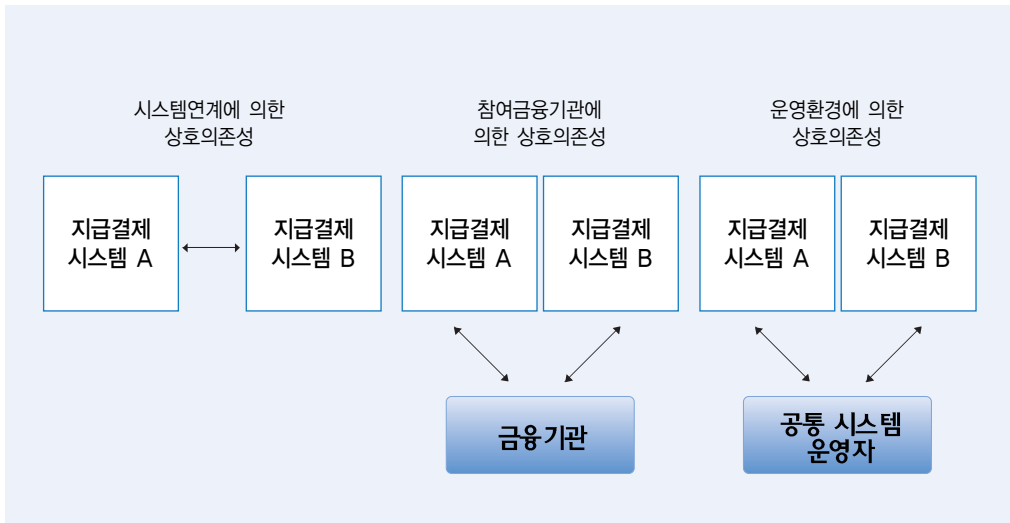
그림 VI-5 장표방식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비중 추이



이와 함께 새로운 지급수단 및 전달채널의 등장,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의 전자화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VAN사업자, 선불카드 발행업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내 경쟁 심화와 눈부신 기술혁신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처리절차도 복잡해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을 둘러싼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로 인한 세계화와 지역통합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의한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 증대는 개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스템간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가 새로이 발생하여 시스템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나 재해발생시 전체 지급결

그림 VI-6 상호의존성의 유형



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지급결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도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이 커져 운영리스크 등으로 인한 결제리스크가 파급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2. 향후 과제

이러한 지급결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정책당국과 민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급결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액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한은금융망을 2009년 4월 27일 혼합형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신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하면서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첨단의 거액결제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는 신한은금융망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한은금융망의 결제유동성 절약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마감시간대 결제 집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체지시의 조기 입력 등의 형태로 참가기관들의 자금결제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산장애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결제시스템간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별 운영기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업무지속계획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공조하여 지급결제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지속계획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결제시스템)

전자방식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수단의 출현, 어음·수표의 전자정보화 진전,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등으로 결제리스크의 규모가 커지는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점의 조기화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시에도 최종결제가 순조롭게 완료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각종 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수단에 대한 사기, 위변조, 해킹 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별 지급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질 경우에는 이들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지급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기피 카드의 IC칩 카드로의 전환, 각종 보안장치의 도입 및 보급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결제시스템)

우리나라 증권결제방식의 개선을 통한 증권결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국제 증권결제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증권실물의 발행 없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증권의 무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내외시장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결제지연 또는 결제교착 등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증권결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증권대금결제에 필요로 하는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의 역할 강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하부구조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시정지시 및 제재 권한 등을 폭넓게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및 감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지원·촉진하는 기관(catalyst)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VI-2

영·미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 강화 내용

2008년부터 금융위기의 주요 발생지역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보완하고 있다.

(영 국)

영국에서는 그동안 지급결제제도 감시에 관한 영란은행의 책임 및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1997년 영란은행·재무부·금융감독청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관한 영란은행의 책임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지급결제제도의 견실한 설계 및 운영이 금융안정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월 영란은행, 재무부 및 금융감독청이 마련한 “금융안정 및 예금자보호 강화방안”(Financial stability and depository protection; strengthening the framework)을 토대로 상·하원의 논의를 거쳐 2009년 2월 「2009 은행법」(Banking Act 2009)이 제정되었다.

2009 은행법은 영란은행법을 개정하여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영란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책무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감시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면서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나 산업전반 및 국가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은 정부(재무부)가 가지고 있으나 영란은행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원칙(principles)을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범(code of conduct)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권 및 운영규정 개정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영란은행은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현장조사권, 시정지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기관이 영란은행의 시정지시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스템 운영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 국)

미국 정부(재무부)는 기존 금융감독체계가 최근 금융위기의 예방과 해결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해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9년 8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축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은행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하던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안⁹⁾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다양한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미 연준은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 및 관련 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미 연준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없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규정, 절차의 개정에 대한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시스템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주: 1)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부 록

- 1.지급결제제도 연대표
- 2.국제기준
- 3.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 4.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부록1 지급결제제도 연대표

시행일자		주요내용
1910.	7. 1	사설 경성수형(手形)교환소 개설
1928.	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발족(경성수형교환소 운영)
1932.	1. 1	조선거래소 설립
1943.	7. 1	조선증권거래소 개설(1946년 1월 폐쇄)
1944.	9. 1	내국환집중교환제도 실시
1948.	3.	자기앞수표제도 도입
	9. 1	경성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집회소로 개칭(경성수형교환소 → 서울수형교환소)
1950.	6. 12	한국은행 설립
1956.	2. 10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3. 3	증권거래소, 서울증권시장 개장
1959.	4. 1	거래정지처분제도 실시
1961.	7. 3	「부정수표단속법」 제정
1962.	1. 15	「증권거래법」 및 「이자제한법」 제정 및 공포
1963.	5. 3	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로 개칭
	12. 31	「어음법」 및 「수표법」 제정
	12. 31	서울수형교환소를 서울어음교환소로 개칭
1969.	1. 4	사고신고예탁금제도 실시
	7. 1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발급개시
1970.	7.	정액자기앞수표 발행(1, 3, 5, 10만원권의 4종)
1972.	2. 14	한국증권거래소, 보통거래 결제일 단축(5일 → 3일)
1973.	7. 3	한국증권거래소, 주식매매결제일을 3일로 단일화
1974.	5. 10	한국증권거래소,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전환
	12. 16	한국증권대체결제 설립
1975.	1. 4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개시
	4. 1	사단법인 서울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협회로 개칭
	7. 1	금융기관 콜거래실 설치
	7. 18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 매매결제업무 개시
	10. 1	사단법인 금융기관 전자계산소 설립
	11. 1	서울은행협회를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시행일자		주 요 내 용
1977.	2. 1	서울지역 전기요금수납 이체업무의 지로제 실시
	3. 2	상호어음교환제도 실시
	6. 22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를 사단법인 지로관리소로 개편
	7. 1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 설치
1978.	4. 10	외환은행,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VISA카드 발급 개시
1979.	4. 1	서울지역 채권자계좌 이체업무의 지로제 실시
1980.	1. 4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집중예탁제도 도입
	1. 11	서울어음교환소 기계처리(R/S) 실시
	9. 25	국민은행, 국민카드 발급
1981.	3. 1	서울지역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
	7. 1	서울지역 지로 대량지급업무 실시
	7. 1	가계수표제도 도입
	7. 1	30만원권 및 5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8. 1	서울지역 지로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
	8. 7	가계수표제도 변경 - 정액식 가계수표 폐지, 기입식(발행한도 10만원 이하)으로 통일
1982.	1. 1	가계수표 이용자격 대폭 확대 - 1개월 이상의 가계수표 협력상점(대월한도: 50만원)
	2. 1	서울지역 전기요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3. 2	한국증권거래소, 채권 당일결제거래 실시
	5. 19	은행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로제 실시
	6. 7	5개 시중은행, 은행신용카드협회 설립 및 BC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업무 개시
	7. 1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에 수도권 10개 도시 추가
	7. 1	서울지역 전화요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1. 21	자기앞수표 발행 · 수납은행간 자금조정제도 도입(3.8 시행)
	4. 1	거래정지처분기간 연장(만 1년 → 만 2년)
1983.	4. 7	보험료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9. 5	5개 시중은행 공동출자로 BC카드사 설립 - 종전의 은행신용카드협회를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
	10. 1	통합공과금 수납대행에 관한 지로제 실시 - 실시지역 : 서울(용산, 동작구), 대전, 경주시

시행일자	주요내용
1984.	10. 21 지로장표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처리 실시 1. 4 부도발생익일 입금시 거래정지처분유예기준 완화(연 1회 → 연 2회) 1. 16 미결제어음통보제도 실시 5. 9 전국은행협회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5. 9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 제정 5. 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6. 1 신용카드 취급기관 확대(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추가) 7. 23 “금융전산망 추진기본방향” 수립 10. 19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1985.	3. 25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은행과 직접 거래시 10만원 → 30만원) 6. 1 신용카드 취급기관 확대(대구, 부산, 경기, 경남, 충청은행) 8. 1 지로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업무 실시지역 확대 -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 전지역 8. 3 서울어음교환소 야간교환 및 혼입어음교환 실시 8. 3 어음교환 분산처리제도 도입(8개 시중은행 자체 기계처리) 10. 5 외국은행 국내지점, 어음교환 직접 참가
1986.	3. 25 원화여행자수표 발행 3. 25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은행과 직접거래시 한도 폐지) 5. 1 지방세(재산세) 수납업무의 지로제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경기도내 12개시 5. 12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6. 2 금융결제관리원 발족(지로관리소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통합) 7. 1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CD공동이용시스템 개발 위탁 9. 24 현금카드 규격표준화(JIS II → ISO 규격) 및 ISO 카드용 CD기 표준화 12. 3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87.	1. 5 미결제어음통보제도 확대 실시(토요일 포함) 1. 5 사고신고예탁금제도 개선 - 명칭 변경(사고신고예탁금 → 사고신고담보금) - 환급청구권 및 환급사유 구분·명시 3. 6 “CD공동이용시스템 실시계획” 확정 5. 27 “전산망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시행일자	주요내용
5. 30	「신용카드업법」 제정
6. 3	어음교환제도 개선(7. 1 시행) - 격지의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결제소요시간 단축(종전 4~7일 → 1일) 및 정액자기앞수표(10만원, 30만원, 50만원권)의 대지급제도 도입
6. 16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6. 30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CD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9. 8	「신용카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9. 22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ARS시스템 개발 위탁
12. 30	국민은행, 펌뱅킹자금이체 실시
1988. 2. 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ARS시스템 공동운용 시행계획” 확정
2. 5	금융결제관리원 총회, CD공동이용업무 경비분담기준확정
2. 19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타행환시스템 개발 위탁
2. 26	금융결제관리원 이사회, “CD공동이용업무규약” 제정
3. 3	한국증권거래소, 매매체결전산화시스템 가동
3. 16	서울지역 자동차세의 지로수납 실시
4. 6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4. 20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CD공동이용업무 세부처리지침” 제정
7. 1	CD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현금인출, 잔액조회 - 실시은행: 8개 시중은행, 4개 특수은행 등 12개은행
7. 14	금융결제관리원 이사회, “타행환시스템 추진계획” 확정
8. 1	전기 및 전화요금의 지로 자동계좌 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 - 전기요금: 경기도 전역 - 전화요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1989. 1. 4부터 제주도 포함)
8. 31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제도 도입
10. 20	CD공동망 실시은행 확대(10개 지방은행 참가)
10. 25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ARS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11. 1	전기요금 지로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일반계좌이체업무 전지역 실시)
1989. 4. 19	ARS공동망 가동(서울 지역) - 대상업무: 조회, 안내, 신용카드업무 - 실시은행: 8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등 13개 은행

시행일자	주요내용
6. 1	축협중앙회, CD공동망 참가
7. 8	신한은행, 야간교환 참가
7. 20	서울지역 통합공과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8. 31	동화은행, 금융결제관리원 준사원 가입
10. 16	금융결제관리원, 자금중개실 설치
10. 24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타행환공동망 세부처리지침” 제정 및 타행환공동망 업무수수료 확정
10. 27	대동은행 · 동남은행, 금융결제관리원 준사원 가입
11. 1	금융결제관리원을 금융결제원으로 개칭
11. 30	은행신용카드업무의 지로제 적용 폐지
11. 30	금융결제원 이사회,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제정
12. 5	금융결제원, 외화콜거래증개업무 개시
12. 16	타행환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현금송금,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조회 - 실시은행: 4개 시중은행, 4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등 13개 은행
1990. 2. 17	한국외환은행, 야간교환 참가
3. 2	대동은행, CD공동망 참가
3. 8	동남은행, CD공동망 참가
4. 4	타행환공동망 실시은행 확대(조흥은행 등 11개 은행 참가)
7. 17	한국장기신용은행 · 서울신탁은행 · 한국외환은행, 타행환공동망 참가
7. 20	조흥은행, 자행CD기 휴일가동 개시
11. 1	서울지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지로수납 실시(1991.4.1 해지)
12. 1	한국증권대체결제, 기관결제업무 개시
12. 3	CD공동망 참가은행에 대한 일괄전송시스템 가동(조흥은행 등 11개 은행)
12. 10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추진 기본계획” 수립
12. 1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구축 추진기구 설치
12. 22	ARS공동망업무 실시지역 확대 - 실시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마산, 제주, 전주 - 실시은행: 수협, 지방은행 등 14개 은행 추가
12. 31	「신용카드업법」 개정
1991. 1. 4	서울시 지방세(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재산세) 지로이용 해지

시행일자	주요내용
1. 23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 확정
1. 25	불법주차 과태료의 지로수납 전국확대 실시
2. 1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및 할부금융기간 단축 - 현금서비스 50만원 → 30만원, 할부구매 200만원 → 150만원 할부금융기간 36개월 → 24개월
2. 28	수협중앙회, CD공동망 참가
3. 13	한국은행, 24개 국내은행 및 24개 외은지점의 SWIFT 가입
3. 30	수협중앙회, 타행환공동망 참가
4. 1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신청업무 개시(11개 BC카드 회원은행)
5. 11	농협중앙회, 야간교환 참가
5. 27	외환은행, 24시간 현금인출서비스 실시
6. 1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및 할부금융기간 단축 - 일반구매 300만원 → 200만원, 할부구매 150만원 → 100만원, 할부금융기간 24개월 → 12개월
6. 7	한국장기신용은행, CD공동망 참가
6. 24	금융결제원 총회, “금융결제원가입에 관한 지침” 제정 - “금융결제원 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으로 변경(1992. 6. 27)
7. 11	하나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8. 26	보람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9. 11	광주은행, EFT/POS 자금이체 실시
10. 21	금융결제원, 지로 OCR장표 보관제도 실시
11. 6	동화은행, CD공동망 참가
11. 30	하나은행, 타행환·CD공동망 참가
11. 30	국민은행, 홈뱅킹 실시
11. 30	ARS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업무 지방확대 실시(지방 10개 도시)
11. 30	ARS FAX 통지업무 실시 - 실시지역 및 은행 : 서울지역, 12개 은행(지방은행 제외)
11. 30	하나은행, ARS공동망 참가
12. 13	보람은행, 타행환·CD·ARS공동망 참가
12. 23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구축종합계획” 확정
12. 28	금융기관 자체CD기에 의한 비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업무 대행(LG, 위너스카드)

시행일자	주요내용
12. 30	ARS FAX통지업무 지방 확대 실시(9개 지방은행(충북은행 제외) 추가)
12. 30	서울지역 ARS PC통지업무 실시
1992. 1. 20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업무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 서울 : 평일 및 토요일 09:30~24:00 - 지방 : 평일 09:30~18:00(토요일 17:00)
1. 20	동행 동일인 및 타인명의 계좌이체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2. 17	충북은행, ARS공동망 참가
2. 21	한국컴퓨터(주), CD기를 통한 24시간 현금서비스 실시
2. 25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전산망 2단계 기본계획(1992~96)” 확정
2. 26	한국장기신용은행, ARS공동망 참가
2. 27	한국산업은행, 타행환공동망 참가
3. 2	신한은행, CD기를 이용한 자기앞수표(10만원권)인출 실시
3. 5	하나은행 · 보람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겸영 내인가
3. 27	한국증권대체결제, 장외등록주식의 매매결제업무 개시
5. 23	동화은행, 야간교환 참가
5. 26	재무부, 한국컴퓨터의 24시간 현금서비스관련 온라인체제 구축 및 현금서비스수수료의 기간별 차등화실시 결정
6. 1	부산시 지방세(재산세)의 지로이용 해지
6. 13	한미은행, 야간교환 참가
6. 27	외국은행의 금융결제원사업 참여허용을 위한 절차 마련 - “금융결제원 정관”, “금융결제원사원 ·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결제원 사업 참여 배제조항 삭제 - 금융결제원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별 특별참가제도 신설
7. 1	상호어음교환제도 개선, 정액자기앞수표의 당지교환 회부
10. 17	금융결제원 이사회,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제정
10. 28	평화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10. 3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대고객전산망 추진계획” 수정 - 대고객전산망내에서 홈뱅킹시스템과 펌뱅킹시스템의 구분 폐지 - 대고객전산망내에서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을 별도의 망으로 분리
11. 8	서울지역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업무

시행일자	주요내용
12. 30	재무부, 제휴카드 발행허용
1993. 1. 15	씨티은행, 지로사업 특별참가(4. 12 지로업무 실시)
2. 1	평화은행, 타행환 · CD · ARS공동망 참가
2. 11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
2. 24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
4. 1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 - 우량자영업자 100만원 → 200만원, 기타 30만원 → 50만원
4. 24	지방 10개 도시, PC서비스 및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 사고신고 접수업무 공휴일 서비스 실시(평일, 토요일, 공휴일 : 09:30 ~ 24:00)
4. 26	국세 자동이체의 지로제 시범 실시(서울시 중부 · 반포세무서 관할지역)
5. 1	재무부, 신용카드 금액 및 기간한도 자율화
5. 10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 24시간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6. 3	행정쇄신위원회, “우체국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 이용방안” 확정
7. 1	CD기 현금인출한도 상향조정(30만원 → 70만원)
7. 1	부도발생익일 입금시 거래정지처분 유예기준 완화(연 2회 → 연 3회)
7. 16	타행환 송금한도 인상(1,000만원 → 3,000만원)
7. 26	보람은행, 은행보증가계수표 발행
8. 12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8. 20	당좌거래정지처분 해제의 활성화조치 실시 - 해제요건 명확화, 해제심의 신속화(월 1회 → 주 1회), 해제제도 악용 방지장치 마련
9. 1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 - 우량자영업자 200만원 → 500만원, 기타 50만원 → 100만원
9. 1	타행CD기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BC카드) 현금서비스업무 실시 (11. 29 외환비자카드 추가)
10. 2	한국은행 본 · 지점 ·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방법 개선 - 현금결제 → 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에서 대차결제
10. 8	점포외 CD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 실시은행 : 10개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3개 지방은행
11. 27	5개 시중은행, 은행공동보증 가계수표제도 도입(10, 50, 100, 200만원권의 4종)
11. 30	「부정수표단속법」 개정

시행일자		주요내용
1994.	1. 3	- 선의의 부정수표 발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적용 - 금융기관직원의 고발의무시한 연장(선의의 부정수표에 한하여 48시간 → 30일)
	1. 17	어음교환에 회부된 회사채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상 제외
	1. 25	씨티은행, 직불카드 발행
	2. 5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가동 - 무역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상호연결로 수출입업무 관련 EDI서비스 제공
	2. 19	CD기를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업무 실시
	2. 22	- 실시은행 : 13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4. 1	재무부, 선불카드 시행방안 확정
	4. 6	씨티은행, 어음교환사업 특별참가: 국내 11개 전지점(종전에는 서울지점만 참가)
	4. 25	부산권역 지로 분산처리 실시
	4. 25	상품권 발매 개시(금액권<1, 3, 5, 10만원권> 및 용역권)
	4. 27	국세 자동이체의 서울지역 확대 실시
	4. 27	증권예탁원 개원
	4. 27	대구시·인천시 지방세(재산세)의 지로 이용 해지
	4. 27	씨티은행, 타행환공동망 특별참가
	4. 27	금융결제원 이사회, 은행공동망 서비스이용 수수료 자율화 결정(5.2 실시)
	4. 30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실시 - 대상업무 : 대출원리금, 적금불입금, 신탁적립금, 각종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은행불입금 - 실시은행 : 14개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등 26개 은행
	5. 12	재무부, 신용카드업계의 선불카드 발행 인가(5천, 1, 2, 3만원권의 4종)
	5. 31	재무부, 은행의 선불카드 발행 허용
	6. 11	타행환 송금한도 인상(3,000만원 → 5,000만원)
	7. 1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은행 확대 - 충청, 경남, 광주, 제주은행 및 씨티은행
	7. 15	증권예탁원, 외화증권 예탁·결제업무 개시
	7. 21	신세계백화점, 선불카드 발행 개시(5, 10만원권 2종)
	9.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운영규정” 제정(8. 1 시행) 금융결제원 이사회, 부도어음 반환방식 변경 - 변경전 : 지급은행이 부도어음 실물을 교환당일중 제시은행 점포 앞 직접반환

시행일자	주요내용
	- 변경후 : 부도어음 실물을 부도발생 익영업일 해당은행간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반환(역교환 방식)
10. 4	우체국, 자기앞수표자금조정 참가
10. 10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한 가계수표 사고신고 및 조회제도 실시 - 대상업무 : 가계수표 분실 · 도난 · 피사취 등의 신고 및 조회 - 참가은행 : ARS시스템 참가 31개 은행중 실시준비가 완료된 30개 은행 - 이용방법 : 전화, PC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10. 14	한국은행, 우체국 어음교환차액의 결제방법 일부 변경 - 지점(사무소 포함)의 경우에도 본점과 같이 지정처리시점에서 우체국의 교환 승 · 부금액을 자동적으로 국고부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하여 결제토록 함
12. 1	지로 자동납부신청서 접수기관 확대(은행점포 → 은행점포 및 각종 대금수납기관)
12. 5	타지 비정액자기앞수표의 당지 교환결제 실시
12. 5	금융결제원 이사회, 어음부도 처리방법 개선 및 제재 강화 〈어음부도 처리방법 개선〉 - 당좌거래정지처분 취소대상에 전자결제시스템 장애 포함 - 거래정지처분효력 일시 정지제도 도입을 통한 당좌 거래 정지처분 취소의 신속화 - 지급자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과 합의하여 지급 〈어음부도 제재강화〉 -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사유로 부도 발생시 당좌거래 정지처분 유예회수 축소(연 2회 → 연 1회) - 가계수표 사고신고담보금 상향 조정(장당 최고발행한도 내에서 발행금액 전액으로) - 사고신고서가 접수되었더라도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사고신고담보금 미입금 및 예금잔액 부족시 부도사유를 ‘사고신고서접수’ 가 아닌 ‘예금부족’ 으로 처리하여 형사고발대상에 포함
12. 12	“지로업무 이용안내”의 ARS서비스 실시
12. 15	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가동 - 참가기관 : 한국은행 당좌예금 거래기관중 138개 기관(은행 85, 비은행금융 기관 53) - 취급업무 :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 국공채거래, 한국은행대출, 국고, 통화금융정보 수집업무 - 가동시간 : 자금이체 및 국공채 거래는 09:30 ~ 16:30, 한국은행대출, 국고업무

시행일자	주요내용
	관련 파일전송은 18:30 ~ 익일 09:00
12. 26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 지로 일반계좌이체에서 일반계좌이체 또는 자동계좌이체로 분산처리
1995. 1. 9	한국은행 · 전국은행연합회, 위 · 변조 수표(어음) 식별장치 개선 - 은화(무궁화 무늬)의 선명도 제고 - 수표(어음) 이면의 위 · 변조 수표(어음) 식별요령을 인쇄 - 잠상무늬의 변경 및 크기 확대
1. 21	서울중앙우체국, 야간교환 참가
3. 2	국고금 채권자계좌이체제도 폐지 - 지로일반계좌이체 방식에서 타행환 등으로 분산처리
4. 26	한국산업은행, CD공동망 참가 - 취급업무 : 현금지급,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6. 1	지로 실시지역의 전국 확대 - 전국 73개시 98개군중 용진군, 울릉군 등 5개 원격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6. 7	금융기관과 판매대금자동결제망(EFT/POS) 사업자간의 전산망 접속 승인 - 금융결제원과 5개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사업자간의 접속 승인 - BC · 국민카드 연합 VAN, 한국부가통신,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
6. 24	우체국과 농 · 수 · 축협 회원조합의 금융전산망 서비스 실시 - 우체국 : 타행환 · ARS공동망 - 농 · 수 · 축협 회원조합 : 타행환 · CD · ARS공동망
6. 24	무역자동화망 접속 운영시간 연장 - 09:30 ~ 16:30(토요일 13:00까지) → 09:30 ~ 19:30(토요일 16:30까지)
6. 25	점포외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08:00 ~ 21:00 → 08:00 ~ 22:00)
6. 28	금융전산망추진위, 금융기관 IC카드 제1단계 표준 제정 - IC카드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9. 4	증권예탁원, SWIFT를 통한 국제예탁결제통신망 구축
9. 14	금융전산망추진위, 금융기관 IC카드 제2단계 표준 제정
9. 27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 09:30~16:30 → 08:00~22:00
12. 7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금융결제망 가입

시행일자	주요내용
1996. 12. 23	타행환 송금대상 확대(타행 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추가)
1. 17	씨티은행, CD공동망 특별참가
2. 1	직불카드(EFT/POS)공동망 가동
5. 3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장
5. 23	타행환공동망 이용시간 연장(09:30 ~ 17:00 → 09:00 ~ 17:20)
5. 28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가동
7. 1	코스닥증권시장 개장
7. 12	우체국, 무역자동화망 접속 특별참가
9. 23	무역자동화망 접속업무추가 :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
10. 4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 자동화코너, CD 통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스 공휴일 확대 - 계좌이체서비스 : 09:30 ~ 17:00 → 08:00 ~ 22:00
10. 31	씨티은행, 무역자동화망 접속 특별참가
11. 23	타행환 수취계좌 확대(보통예금 → 적금 및 신탁계정 추가)
12. 16	타행환 송금한도 확대(5천만원 → 1억원)
12. 18	ARS공동망 대상지역 확대 : 여수 및 강릉 추가
1997. 1. 27	한은금융망 제도 개선 - 어음교환 차액결제시각 변경 : 15:00 → 14:30 - 대기거래제도 변경 : 선입선출방식(FIFO) → 우회선입선출방식(by-pass FIFO)
2. 1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강화방안” 제정
4. 1	증권예약원, CD예약업무 개시
5. 26	홍콩상하이은행(CD · 타행환공동망) 및 시티은행(CMS공동망) 특별참가
6. 17	지방은행공동정보망(BANKLINE) 가동
7. 7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7. 23	국공채 매매 및 통안증권, 국채발행 경쟁입찰 시스템 구축
9. 1	한국은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 순채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9. 1	“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 조치규약” 제정
9. 1	증권예약원, CD 예약업무 개시
10. 6	타행 발행 일반자기앞수표의 타행환 송금업무 실시
10. 20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시행일자	주요내용
	- 현금서비스 : 09:30 ~ 17:00(토요일 13:30) → 08:00 ~ 22:00(연중무휴)
10. 3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2000년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지침 제정
11. 25	증권예탁원, 코스닥시장의 결제이행 및 보증기구로 지정
1998. 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신용카드업법」 폐지)
1. 13	선물거래법 제정
2. 2	ARS공동망 서비스 실시지역 확대 : 충주, 군산, 구미, 목포
2. 21	ARS공동망(PC)을 통한 지로대금 납부서비스 실시
2. 23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영수증 자기앞수표 자금조정대상 추가
3. 30	증권예탁원, 어음예탁 개시
10. 20	CD공동망 계좌이체 이용시간 연장
	- 09:30 ~ 22:00(평일, 토요일) → 08:00 ~ 22:00(연중무휴)
10. 21	홍콩상하이은행, 어음교환 특별참가
12. 5	한국증권거래소, 토요일 주식시장 휴장
1999. 1. 1	금융결제원, 외환중개업무의 수익사업 전환
1. 4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실시
1. 1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1. 15	한은금융망 제도 개선
	- 자금이체업무 입력종료시각 연장 : 16:30 → 17:00
	- 오전 반일물 콜자금 상환시점 조정 : 13:00(토요일 13:30) → 14:30(토요일 13:00)
	- 외화자금예치 지정처리시점 조정 : 16:00 → 16:30
4. 20	증권예탁원, 금보관·결제업무 개시
4. 22	도이치은행, 타행환공동망 특별참가
4. 23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6. 26	CD공동망의 제3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서비스 실시
9. 3	인터넷뱅킹시스템 서비스 개시(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한국통신 공동개발)
9. 6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시행
9. 30	금융결제원, ARS공동망 특수번호(1369) 서비스 실시
10. 8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 명칭(K-CASH) 확정
11. 1	한은금융망을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제도 시행
	- 대상유가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등 채권
	- 대상거래: 장외시장의 일반채권매매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시행일자	주요내용
11. 1	증권예탁원, 채권장외결제제도 도입 및 제3자간 RP업무 개시
12.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 시범사업 실시 결정 및 금융기관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일정 조정
12. 11	Y2K문제 발생 대비 범금융부문 최종테스트 완료
2000. 3. 27	주택청약 계좌관리업무 실시
3. 29	증권예탁원, 제3시장 결제업무 개시
3. 31	인터넷 지로업무 실시
4. 12	금융결제원을 전자거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5. 20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 실시(대상지역: 서울)
5. 27	축협중앙회, 야간어음교환 참가
7. 24	타행환업무 개시시각 변경(09:00 → 08:00)
7. 26	전자화폐 시범사업 실시(7.26 ~ 12.31)
8. 16	전국어음교환소 규약 및 시행세칙 통합 제정
8. 31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환어음정보교환 결제시스템 구축
9. 30	한은금융망 일중당좌대출시스템 구축 및 일중당좌대출제도 시행
11. 13	ABN암로은행, 타행환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1. 18	평화은행, 지방은행공동망업무 참가
11. 30	상와은행, 타행환공동망업무 및 CMS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2. 22	농협·수협, CMS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2. 26	금융결제원, 전자상거래 지급결제(PG)업무 실시
12. 27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원화자금중개업무 승인
2001. 3. 12	전자방식 차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자금조정방식 개선
4. 16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가동
6. 1	한은금융망 원화자금이체시스템 자금코드 변경
6. 15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실시
7. 1	한은금융망 대기제도 및 일중당좌대출제도 변경
8. 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 담보증권 제공비율 조정: 순채무한도의 10% → 20%
9. 20	서민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 승인
10. 4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거래대상 확대

시행일자	주요내용
	- 대상거래 : 주식거래의 기관결제
10. 15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한도 확대(건당 5억원 → 10억원)
10. 15	한은금융망 반일물결거래시스템 변경
10. 29	국민연금보험료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실시
11. 1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변경
11. 9	CD공동망 365일 자동화코너 운영시간 확대(08:00 ~ 22:00 → 08:00 ~ 23:30)
11. 27	한은금융망 재해복구시설(백업센터) 가동
12. 27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정
	- 규정 제정목적 변경 :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일반적 규정 - BIS의 핵심원칙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을 명시 - 감시수단 확보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및 내용을 확대
12. 29	증권예탁원, 전자장외시장(ECN시장) 결제업무 개시
2002. 2. 4	상호신용금고연합회, CD/ATM, 타행환, CMS공동망 참가
2. 1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CD/ATM, 타행환, CMS, 전자금융공동망 및 지로 참가
2. 2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의 시간대별 차등폭 확대
	- 이용수수료를 16:00기준으로 차별화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이용수수료 인하
3. 4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지로 참가
3. 4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시범가동
3. 18	증권예탁원, 개별주식옵션 결제업무 개시
6. 4	「증권예탁결제정보 공유시스템」 가동
7. 22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 담보증권 제공비율 조정 :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거래 : 20% → 30% -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 평균상환금액의 75%
8.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한은금융망 운영 중지
8. 1	한은금융망 최적화 대기관리방식 도입
8. 13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인 「TrusBill」 실시
9. 6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 전국 확대 실시
9. 25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가동

시행일자	주요내용
2003. 12. 24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자동수납시스템 시범 가동
2003. 1. 2	국고자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전면 실시
1. 2	재정자금 전자수납 및 전자이체서비스 실시
1. 24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간 상호연동 실시
3. 14	K-CASH 기반 서귀포시 교통시스템 개통
4. 21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및 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 가동
6. 1	한국증권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 국고채 결제일 변경(당일 → 익일)
6.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CLS 공동망 구축 추진 결의
6. 25	인터넷지로를 통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실시
7. 14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방식 개선 - 한은금융망 콜거래 이용대상을 전 참가기관으로 확대 - 회수보장장치 강화 - 콜만기연장제도(roll over) 도입
7. 24	CLS은행 이사회, 원화를 CLS은행의 결제통화로 지정 승인
8. 11	소액 국고자금 지급방식을 금융기관별 일괄처리방식으로 변경
9. 3	「한국은행법」 개정(2004.1.1시행)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 및 감시역할 명시
9. 5	원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정보교환 실시
9. 24	인터넷 GiroMail 서비스 실시
9. 30	국민은행 · 한국외환은행, CLS그룹지주회사에 출자 및 주주자격 취득
10. 14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대상거래 확대 - 대상거래: 담보콜거래
10. 27	금강산 관광시설내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12. 1	관세환급금의 실시간 전자이체 지급제도 도입 - 관세환급금을 1일 2회에서 실시간 전자이체방식으로 전환
12. 24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 전면 개정 -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마련 -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강화
2004. 3. 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5.1.1시행) 제정
3. 31	한은금융망, CLS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4. 6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대상거래 확대

시행일자	주요내용
	- 어음(CP) 매매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간접투자증권 판매·환매 거래
4. 6	간접투자재산예탁결제시스템 개통
6. 2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세칙」 개정 - 자기앞수표 현금지급서비스의 결제리스크 관리대상 추가 - 한은금융망 장애발생시 금통위 보고조항 신설
6. 25	지로 입금내역 인터넷 조회·통지 서비스 실시
7. 1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제도 변경(자금적수보전방식 → 이자조정방식)
7. 1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
7. 1	은행 자기띠(M/S)현금카드의 금융IC카드 전환 시범사업 실시
8. 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채권 통합차감결제 시행
8. 5	은행공동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Ubi) 시범 실시
8. 6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9. 9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 CLS시스템을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핵심지급결제시스템으로 규정
9. 24	CLS은행과의 당좌예금거래약정 및 한은금융망 가입약정 체결
9. 30	금융결제원, CLS공동망시스템 구축 완료
10. 18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 신용장 결제업무 실시
11. 2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12. 3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
12. 6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가동
12. 6	한은금융망 시스템 재구축 완료 -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설치 - 통신망 재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2005. 1. 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등을 규정
1. 17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 세부 운영방안 마련 - 2004.12월 수립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 담당자 운영지침」 제정
1.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식 출범
3. 7	적수보전에 의한 은행간 자금조정방식 완전 폐지 - 2001.3월 CD 공동망 등 전자방식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2004.7월 자기앞수표의

시행일자	주요내용
	교환결제에 이어, 2005.3.7일 자기앞 영수증에 대한 은행간 자금조정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제정 -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은총채가 지정하는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그와 관련된 결제는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특칙을 포함하여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조정 - 이용수수료를 시간대별 및 거래종류별로 차등화
4. 11	한은금융망 재구축추진반 설치 - 유동성 절약형 거래결제시스템의 도입 업무를 전담
9. 22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 수출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등록,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9. 27	전자정보교환 방식 어음·수표의 차액결제시점 조기화 - 대상: 전자정보의 교환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자기앞수표, 기업구매자금어음 및 내국신용장어음 - 결제시점: 오후시점(14:30) → 오전시점(11:30)으로 변경
9. 27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구축 - 어음 관련 업무가 전자적으로 수행
2006. 1.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
2. 13	증권예탁결제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STP체계 구축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시행
4.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
6. 20	외화표시채권 동시결제업무 개시
8. 10	한국은행,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 한은금융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8. 24	한국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체계 개편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분류체계: 3단계 → 2단계 - 평가주기: 매년 → 격년

시행일자	주요내용
9. 1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제도 개선 - 일중당좌대출 이용한도 폐지 -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자 부과
12. 8	금융결제원, CD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 변경전 : 07:00 ~ 23:30 → 변경후 : 00:30 ~ 23:30
12. 15	금융결제원, 타행 CD/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실시
2007. 1. 25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규정」 및 「동 세칙」 제정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부여받은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에 대한 세부규정 및 세칙 마련
3. 9	오전차액결제시점에서의 예약자금이체 허용(2007.4.2 시행) - 정보교환 자기앞수표의 차액결제시점 조기화로 오전차액결제 규모 대폭 확대에 따라 동 시점에서의 예약자금이체를 허용
3. 16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 업무의 처리결과 통보시각 단축 - 변경전: 익일 10:00 → 변경후: 익일 03:00
5. 17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2007.11.18 시행) - 어음정보 및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정보교환을 통해 어음·수표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7. 27	「새마을금고법」 개정(2007.8.27 시행)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 마련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수행 근거 마련 -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가능
8. 22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07.8.27 시행) -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9. 4	금융결제원,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실시
9. 20	금융결제원, CD 공동업무 계좌이체 한도 축소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07.9.13)에 따라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한도 축소

시행일자	주 요 내 용
	- 변경전: 1천만원 → 변경후: 6백만원
9. 2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를 추가
10. 16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절차 및 이용수수료 체계 개편 - 마감시각 연장사유 구체화 - 종료시각 후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수작업이체 수수료 일원화 (건당 4,000원, 단 CLS거래 제외)
10. 19	금융결제원, CD/ATM기 및 인터넷뱅킹 등 운영시간 연장 - 23시간(00:30 ~ 23:30) → 23시간 50분(00:05 ~ 23:55)
11. 30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보안토큰 규격」 제정 -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정보 유출 방지
11. 30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표준」 개정 - RF방식의 CD/ATM 거래 등을 표준대상에 추가
12. 14	한국은행, 어음교환 차액결제 및 콜자금 상환시점 조기화(2008.1.11 시행) - 대상: 서울지역 어음교환 차액결제, 1일물 이상 콜자금 상환 - 변경전: 오후차액결제시점(14:30) → 변경후: 오전차액결제시점(11:30)
12. 14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자금이체 대기시간 제한 폐지(2008.1.11 시행) - 콜자금 상환만 현행 1시간 대기시간 제한을 유지, 나머지 거래에 대한 대기시간 제한은 폐지
12. 18	타행 CD/ATM기의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12. 20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실시
12. 21	「예금자보호법」 개정(2007.12.21 시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예금자보호기금 부보대상기관으로 추가 -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보대상에 포함
2008. 1. 8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근거 마련(2008.1.8 시행)
1. 17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008.1.17 시행)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는 사항에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을 보장
1. 24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도입(2008.3.7 시행) - 유동성조절대출 및 일시부족자금대출 제도는 폐지

시행일자	주요내용
1. 24	한국은행, CLS은행의 결제서비스 제공대상 거래 확대 허용(2008.3.7 시행) - CLS은행이 외환동시결제 외에 NDF 및 신용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결제서비스를 제공
1. 25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상환 마감시각 조기화(2008.3.7 시행) -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신청마감시각이 일중당좌대출의 상환 마감시각후 10분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중당좌대출 상환의 종료시각 조정(17:30 → 17:20)
2. 5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근거 마련(2008.2.5 시행)
2. 25	증권예탁결제원, 통합 SAFE 시스템 오픈
2. 29	새마을금고,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3. 20	금융결제원, CD공동망 1회 현금인출 한도 변경(70만원 → 100만원)
3. 24	상호저축은행,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4. 7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보안토큰 규격」 개정 - 인터넷뱅킹에만 이용되던 금융IC카드 보안토큰을 공인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
5. 22	한국은행, 차액결제 미결제순채무액 계산방식 변경(2008.7.30 시행) - 차액결제 미결제순채무액 계산기준 변경 - 거래일 00:00 ~ 24:00 → 거래일 00:00 ~ 결제일 11:30 중
5. 30	한국은행,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대한 규정」 개정(2008.6.1 시행) -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변경(재정부장관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문위원 소속기관 범위 확대(금융유관기관 포함)
7. 1	ING은행, CLS시스템 참가
7. 9	한국은행, 순채무한도 설정대상 변경(2008.8.1 시행) - B2C 전자상거래중 차액결제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실시간 송수신되는 거래를 포함
8. 1	신용협동조합,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9. 1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 다수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USIM칩에 주입하여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제정

시행일자	주요내용
10. 1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업무 실시 - 납부자가 세무관서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10. 9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2008.11.3 시행) - 09:30 ~ 17:00(7시간 30분간) → 09:30 ~ 17:30(8시간)
12. 19	금융결제원, 휴대전화를 이용한 CD/ATM 서비스 실시 - 3세대 휴대전화에 계좌정보를 탑재하여 CD/ATM 이용
2009. 1. 2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09.2.4 시행) - 차액결제대행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를 체계화
2. 4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호 변경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2. 25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포함
3. 23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청산결제제도 개선 - 증권결제계좌를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단일화 및 종목별 결제방식 도입 - 결제이행보증금제도 신설(2009.5.4 시행) - 결제지연 손해금 도입(2009.7.6 시행)
3. 26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개정(2009.4.27 시행) - 시스템 명칭을 '신한은금융망' 으로 개정 - 혼합형결제시스템 도입근거를 마련
4. 27	신한은금융망(BOK-Wire+) 가동 - 상계결제 기능이 추가된 혼합형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 일중유동성 조달부담 경감
5.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1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 서버간직접접속시스템 가동 - 참가기관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자금이체지시를 서버간직접접속을 통해 일관처리하게 됨으로써 업무부담이 경감
7. 3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시작 - 2009.7.3일부터 25개 금융투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제공 (7월중 1개, 8월중 13개, 9~12월중 2개, 10월중 1개, 2010.2월중 8개 예정)

시행일자	주 요 내 용
7. 24	한국은행,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가입 - CPSS는 BIS의 3대 위원회 중 하나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관련 국제기준 및 원칙 제정,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 한국을 포함하여 9개국 중앙은행이 신규가입하여 회원국은 22개국

부록2 국제기준

〈기준 1〉

Lamfalussy 기준

(BIS CPSS,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1990. 11)

I. 다자간 결제시스템은 모든 사법관할 내에서 잘 정비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 Netting schemes should have a well-founded legal basis under all relevant jurisdictions.
II. 다자간 결제시스템의 참가자는 특정 시스템이 차액산출절차에 의해 각각의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II. Netting scheme participants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he particular scheme on each of the financial risks affected by the netting process.
III. 다자간 결제시스템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처리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는 차액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참가자 각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처리절차는 모든 참가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각 리스크를 관리하고 억제하는데 적절한 유인과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참가자별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신용노출의 최대수준에 대한 한도설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III. Multilateral netting systems should have clearly define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of credit risks and liquidity risks which specify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netting provider and the participants. These procedures should also ensure that all parties have both the incentives and the capabilities to manage and contain each of the risks they bear and that limits are placed on the maximum level of credit exposure that can be produced by each participant.

IV. 다자간 결제시스템은 최소한 최대 순채무 포지션을 가진 참가자의 결제불능시에도 적시에 그 날의 결제종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V. 다자간 결제시스템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를 허용하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참가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VI. 다자간 결제시스템은 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일 매일의 처리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백업시설을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IV. Multilateral netting systems should, at a minimum, be capable of ensuring the timely completion of daily settlements in the event of an inability to settle by the participant with the largest single net-debit position.

V. Multilateral netting systems should have objective and publicly-disclosed criteria for admission, which permit fair and open access.

VI. All netting schemes should ensure the operational reliability of technical systems and the availability of back-up facilities capable of completing daily processing requirements.

〈기준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BIS CPS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2001.1)

I. 지급결제시스템은 관련된 모든 사법관할 내에서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시스템 참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융리스크를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III.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 운영자와 참가자 각각의 책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억제하는 데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된 리스크관리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IV.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일에 신속한 최종결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영업시간중, 최소한 영업시간 종료시점까지는 최종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V.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은 최소한 가장 큰 결제 채무를 지고 있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에도 적시에 일중결제를 완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I. The system should have a well-founded legal basis under all relevant jurisdictions. II. The system's rules and procedures should enable participant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impact on each of the financial risks they incur through participation in it. III. The system should have clearly define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liquidity risks, which specify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system operator and the participants and which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 to manage and contain those risks. IV. The system should provide prompt final settlement on the day of value, preferably during the day and at a minimum at the end of day. V. A system in which multilateral netting takes place should, at a minimum, be capable of ensuring the timely completion of daily settlements in the event of an inability to settle by the participant with the largest single settlement obligation.

Ⅵ. 결제에 이용되는 자산은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바람직하나, 다른 자산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Ⅵ. Assets used for settlement should preferably be a claim on the central bank; where other assets are used, they should carry little or no credit risk.

Ⅶ. 지급결제시스템은 고도의 보안성과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일의 결제처리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Ⅶ. The system should ensure a high degree of security and operational reliability and should have contingency arrangements for timely completion on a daily processing.

Ⅷ. 지급결제시스템은 그 이용자에게는 실용적이고 경제에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Ⅷ. The system should provide a means of making payments that is practical for its users and efficient for the economy.

Ⅸ. 지급결제시스템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를 허용하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참가기준을 운용하여야 한다.

Ⅸ. The system should have objective and publicly-disclosed criteria for participation, which permit fair and open access.

Ⅹ. 지급결제시스템의 지배구조는 효과적이며 대외적 책임성이 있고 투명하여야 한다.

Ⅹ. The system's governance arrangements should be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적용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

A.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및 주요 정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B.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 핵심원칙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핵심원칙을 충족하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기능 수행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D. 중앙은행은 핵심원칙 적용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다른 나라 중앙은행 및 국내외 관련 정책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A. The central bank should define clearly its payment system objectives and should disclose publicly its role and major policies with respect to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B. The central bank should ensure that the systems it operates comply with the core principles. C. The central bank should oversee compliance with the core principles by systems it does not operate and it should have the ability to carry out this oversight. D. The central bank, in promoting payment system safety and efficiency through the core principles, should co-operate with other central banks and with any other relevant domestic or foreign authorities.

〈기준 3〉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BIS-IOSCO,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2001.11)

1. 법적구조

증권결제시스템은 해당 사법관할권 내에 잘 수립된 명확하고 투명한 법률체계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1. Legal framework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should have a well founded, clear and transparent legal basi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s.

2. 매매확인

직접 시장참가자간의 매매확인은 거래종료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일(T+0)을 넘겨서는 안 된다. 기관투자자 등 간접 참가자의 매매확인은 가능한 한 T+0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어도 T+1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2. Trade confirmation

Confirmation of trades between direct market participants should occur as soon as possible after trade execution, but no later than trade date (T+0). Where confirmation of trades by indirect market participants(such as institutional investors) is required, it should occur as soon as possible after trade execution, preferably on T+0, but no later than T+1.

3. 결제주기

모든 증권시장에서 연속결제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 최종결제는 적어도 T+3일 이내에 일어나야 하며, T+3일 이하로 결제주기를 단축시키는 경우의 편익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3. Settlement cycles

Rolling settlement should be adopted in all securities markets. Final settlement should occur no later than T+3. The benefits and costs of a settlement cycle shorter than T+3 should be evaluated.

4. 중앙거래당사자(CCP)

CCP 도입의 편익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CCP가 도입되는 경우 CCP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엄격하게 통제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Central counterparties (CCPs)

The benefits and costs of a CCP should be evaluated. Where such a mechanism is introduced, the CCP should rigorously control the risks it assumes.

5. 증권대여

증권대여(또는 RP거래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거래)는 증권거래의 결제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결제를 위한 증권대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5. Securities lending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or repurchase agreements and other economically equivalent transactions) should be encouraged as a method for expediting the settl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Barriers that inhibit the practice of lending securities for this purpose should be removed.

6. 중앙예탁기구(CSD)

증권은 가능한 한 부동산화 또는 무권화되어야 하며, CSD의 계좌대체방식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6.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CSDs)

Securities should be immobilised or dematerialised and transferred by book entry in CSD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7. 증권대금동시결제

CSD는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증권이체시스템을 대금이체시스템과 연계하여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7. Delivery versus payment (DVP)

CSDs should eliminate principal risk by linking securities transfers to funds transfers in a way that achieves delivery versus payment.

8. 최종결제시기

최종결제는 늦어도 결제일 영업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리스크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중 수회 또는 실시간 방식으로 최종결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8. Timing of settlement finality

Final settlement should occur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settlement day. Intraday or real-time finality should be provided where necessary to reduce risks.

9.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CSD의 리스크관리

차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CSD를 포함하여, 참가자에게 일중 신용을 제공하는 CSD는 최소한 최대 결제채무자가 결제 불이행이 되는 경우에도 적시 결제를 보장하는 리스크 관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신뢰할만한 리스크 관리대책은 담보와 신용한도설정을 조합하는 것이다.

10.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자산

증권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결제하는데 이용되는 자산은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중앙은행 자금을 결제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은행의 파산에 따른 잠재적 손실과 유동성 압박으로부터 CSD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 운영의 신뢰성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시스템, 통제장치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해야만 하며, 적절하고 확장가능한 용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복구하고 결제과정을 원활히 종료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과 백업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9. CSD risk controls to address participants' failures to settle

CSDs that extend intraday credit to participants, including CSDs that operate net settlement systems, should institute risk controls that, at a minimum, ensure timely settlement in the event that the participant with the largest payment obligation is unable to settle. The most reliable set of controls is a combination of collateral requirements and limits.

10. Cash settlement assets

Assets used to settle the ultimate payment obligations arising from securities transactions should carry little or no credit or liquidity risk. If central bank money is not used, steps must be taken to protect CSD members from potential losses and liquidity pressures arising from the failure of the cash settlement agent whose assets are used for that purpose.

11. Operational reliability

Sources of operational risk arising in the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 should be identified and minimis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systems, controls and procedures. Systems should be reliable and secure, and have adequate, scalable capacity. Contingency plans and backup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for timely recovery of operations and completion of the settlement process.

12. 고객증권의 보호

증권보관기관은 고객의 증권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회계처리실무와 안전보관장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보관기관 채권자의 청구권으로부터 고객 증권 보호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지배구조

CSD와 CCP의 지배구조는 공공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소유자와 이용자의 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4. 참가기준

CSD와 CCP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를 허용하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참가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효율성

증권결제시스템은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한편,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용대비 효율적이어야 한다.

16. 통신절차와 표준

증권결제시스템은 국가간 거래의 효율적인 결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제통신절차와 표준을 이용하거나 채택하여야 한다.

12. Protection of customers' securities

Entities holding securities in custody should employ accounting practices and safekeeping procedures that fully protect customers' securities. It is essential that customers' securities be protected against the claims of a custodian's creditors.

13. Governance

Governance arrangements for CSDs and CCPs should be designed to fulfil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and to promote the objectives of owners and users.

14. Access

CSDs and CCPs should have objective and publicly-disclosed criteria for participation that permit fair and open access.

15.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safe and secure operation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should be cost-effective i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users.

16. 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should use or accommodate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in order to facilitate efficient settlement of cross-border transactions.

17. 투명성

시장참가자가 CSD와 CCP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은 참가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감독과 감시

증권결제시스템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과 증권감독기관은 상호간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9. 국가간 거래관련 리스크

국가간 거래의 결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CSD는 국가간 거래 결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7. Transparency

CSDs and CCPs should provide market participant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m to identify and evaluate accurately the risks and costs associated with using the CSD or CCP services.

18. Regulation and oversight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should be subject to transparent and effective regulation and oversight. Central banks and securities regulato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 relevant authorities.

19. Risks in cross-border links

CSDs that establish links to settle cross-border trades should design and operate such links to reduce effectively the risks associated with cross-border settlements.

〈기준 4〉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BIS-IOSCO,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2004, 11)

1. 법률리스크

CCP는 모든 관련 사법관할 내에 잘 정비되고 투명성과 이행강제력이 구비된 법적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2. 참가요건

CCP는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CCP는 참가자의 참가기준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CCP는 참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수립·공표하여야 하며, 참가희망기관에 대한 참가허용 여부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신용리스크 노출규모의 측정 및 관리

CCP는 참가자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최소한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CCP는 증거금 요건, 다른 리스크 관리수단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 시장 상황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잠재적 손실규모를 관리하여, CCP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결제이행 참가기관들이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손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Legal risk

A CCP should have a well founded, transparent and enforceable legal framework for each aspect of its activities in all relevant jurisdictions.

2. Participation requirements

A CCP should require participants to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robust operational capacity to meet obligations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CCP. A CCP should have procedures in place to monitor that participation requirements are met on an ongoing basis. A CCP's participation requirements should be objective, publicly disclosed, and permit fair and open access.

3.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credit exposures

A CCP should measure its credit exposures to its participants at least once a day. Through margin requirements, other risk control mechanisms or a combination of both, a CCP should limit its exposures to potential losses from defaults by its participants in normal market conditions so that the operations of the CCP would not be disrupted and nondefaulting participants would not be exposed to losses that they cannot anticipate or control.

4. 증거금 요건

CCP는 증거금 요건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우 증거금요건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거금 요건을 정하는데 이용되는 모형과 파라미터는 리스크를 기초로 작성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5. 자원

CCP는 극단적이지만 개연성이 있는 시장상황에서 최대채무를 가진 한 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하여 담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결제불이행 처리절차

CCP는 명확한 결제불이행 처리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며 동 처리절차에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CCP가 손실 및 유동성 압력을 부담하면서 CCP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제불이행 처리절차 중 핵심사항은 대외에 공개되어야 한다.

7. 보관 및 투자 리스크

CCP는 가급적 원금손실 없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보관하여야 한다. CCP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가 가장 낮은 상품에 자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4. Margin requirements

If a CCP relies on margin requirements to limit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those requirements should be sufficient to cover potential exposures in normal market conditions. The models and parameters used in setting margin requirements should be risk-based and reviewed regularly.

5. Financial resources

A CCP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withstand, at a minimum, a default by the participant to which it has the largest exposure in extreme but plausible market conditions.

6. Default procedures

A CCP's default procedures should be clearly stated, and they should ensure that the CCP can take timely action to contain losses and liquidity pressures and to continue meeting its obligations. Key aspects of the default procedures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7. Custody and investment risks

A CCP should hold assets in a manner whereby risk of loss or of delay in its access to them is minimised. Assets invested by a CCP should be held in instruments with minimal credit, market and liquidity risks.

8. 운영리스크

CCP는 운영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스템, 통제수단 및 처리절차를 개발하여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CCP는 시스템 운영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처리용량을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은 적시에 업무복구가 이루어지고 CCP로서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9. 자금결제

CCP는 결제은행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참가자 및 결제은행과 자금결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CP에 대한 자금이체는 실행시점에서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0. 증권 등 실물인수도

CCP는 증권 등 실물의 인수도와 관련한 CCP의 의무사항을 참가자에게 밝혀야 하며, 동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 CCP간 연계 관련 리스크

CCP는 증권 등의 매매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내외 다른 CCP와 연계될 때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원천을 평가하고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제기관과 감시기관 간의 협조와 조화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8. Operational risk

A CCP should identify sources of operational risk and minimise them through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systems, controls and procedures. Systems should be reliable and secure, and have adequate, scalable capacity. Business continuity plans should allow for timely recovery of operations and fulfilment of a CCP's obligations.

9. Money settlements

A CCP should employ money settlement arrangements that eliminate or strictly limit its settlement bank risks, that is, its credit and liquidity risks from the use of banks to effect money settlements with its participants. Funds transfers to a CCP should be final when effected.

10. Physical deliveries

A CCP should clearly state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physical deliveries. The risks from these obligations should be identified and managed.

11. Risks in links between CCPs

CCPs that establish links either cross-border or domestically to clear trades should evaluate the potential sources of risks that can arise, and ensure that the risks are managed prudently on an ongoing basis. There should be a framework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relevant regulators and overseers.

12. 효율성

CCP는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3. 지배구조

CCP의 지배구조는 공익에 합치되면서도, 소유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CCP의 리스크 관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14. 투명성

CCP는 참가자들이 CC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와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규제와 감시

CCP는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으로부터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은 국내 외적으로 상호간은 물론 다른 관련기관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12.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safe and secure operations, CCPs should be cost-effective i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ticipants.

13. Governance

Governance arrangements for a CCP should be clear and transparent to fulfil public interest requirements and to support the objectives of owners and participants. In particular, they shoul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a CCP's risk management procedures.

14. Transparency

A CCP should provide market participant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m to identify and evaluate accurately the risks and costs associated with using its services.

15. Regulation and oversight

A CCP should be subject to transparent and effective regulation and oversight. In both a domestic and an international context, central banks and securities regulato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 relevant authorities.

〈기준 5〉

전자금융리스크 관리원칙

(BIS, 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2003.7)

A.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감시

1.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에 의해 실효성있는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감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실효성있는 감시에는 전자금융에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부여, 정책 및 통제절차의 마련도 포함된다.
2.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은행의 보안통제 절차중 중요 사안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3.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전자금융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의존도 및 아웃소싱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심사 및 감독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B. 보안통제

4. 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의 신분 및 권한부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1.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should establish effective management oversight over the risks associated with e-banking activ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ccountability, policies and controls to manage these risks.
2.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should review and approve the key aspects of the bank's security control process.
3.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ongoing due diligence and oversight process for managing the bank's outsourcing relationships and other third-party dependencies supporting e-banking.

B. Security Controls

4. Bank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uthenticate the identity and authorisation of customers with whom it conducts business over the Internet.

5. 은행은 거래부인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정당성 확인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5. Banks should use transaction authentication methods that promote nonrepudiation and establish accountability for e-banking transactions.
6.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 관하여 직무책임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Banks should ensure that appropriate measures are in place to promote adequate segregation of duties within e-banking systems, databases and applications.
7.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승인통제 및 접근권한을 마련해야 한다.	7. Banks should ensure that proper authorisation controls and access privileges are in place for e-banking systems, databases and applications.
8. 은행은 전자금융 거래 · 기록 · 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Banks should ensure that appropriate measure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data integrity of e-banking transactions, records and information.
9. 은행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명확한 감사기록을 남겨야 한다.	9. Banks should ensure that clear audit trails exist for all e-banking transactions.
10. 은행은 핵심적인 전자금융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밀유지를 위한 대책은 데이터베이스에 송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비밀정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Bank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key e-banking information. Measures take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sensitivity of the information being transmitted and/or stored in databases.

C. 법률리스크와 평판리스크 관리

11. 은행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고객이 전자금융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은행의 정체성과 규제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은행은 전자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적용되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요건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3. 은행은 전자금융시스템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래처리용량, 업무의 연속성 및 비상계획 등에 관해 효과적인 계획수립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14. 은행은 내·외부로부터의 보안침해 등 전자금융시스템 및 서비스를 방해할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관리·억제·최소화할 수 있는 장애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 Legal and Reputational Risk Management

11. Banks should ensure that adequate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ir websites to allow potential customers to make an informed conclusion about the bank's identity and regulatory status of the bank prior to entering into e-banking transactions.
12. Bank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dherence to customer privacy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jurisdictions to which the bank is providing e-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13. Banks should have effective capacity, business continuity and contingency planning processes to help ensure the availability of e-banking systems and services.
14. Banks should develop appropriate incident response plans to manage, contain and minimise problems arising from unexpected event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attacks, that may hamper the provision of e-banking systems and services.

부록3 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국내 기관	한국은행	www.bok.or.kr
	금융결제원	www.kftc.or.kr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한국거래소	www.krx.c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제 기구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ww.bis.org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세계은행(World Bank)	www.worldbank.org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www.iosco.org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www.emeap.org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 (SEACEN; The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www.seacen.org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eral Reserve)	www.federalreserve.gov
	뉴욕 연방준비은행	www.newyorkfed.org
	연준 금융서비스 (Federal Reserve Financial Services)	www.frbfinancialservices.org
	CHIPS (The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www.chips.org
	NACHA (The Electronic Payments Association)	www.nacha.org
	증권예탁기관 (DTCC; 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www.dtcc.com

구 분	기 관 명	웹사이트
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www.boj.or.jp
	일본은행협회	www.zenginkyo.or.jp
	청산기구 (JSCC; 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www.jscc.co.jp
	증권예탁원 (JASDEC; Japan Securities Depository Center)	www.jasdec.com
	국채청산소 (JGBCC; Japan Government Bond Clearing Corporation)	www.jgbcc.co.jp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www.fsa.go.jp
	증권결제제도개혁추진센터 (Reform Promotion Center for Securities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www.kessaicenter.com
유로 지역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www.ecb.int
	Europa	europa.eu
	EBA Clearing	www.ebaclearing.eu
	증권예탁기관(Euroclear)	www.euroclear.com
	증권거래소(Euronext)	www.euronext.com
	청산소(LCH, Clearnet group)	www.lchclearnet.com
	European Payments Council(EPC)	www.europeanpaymentscouncil.eu
프랑스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www.banque-france.fr
	국채거래소(MTS France)	www.mtsfrance.com
	은행간청산협회 (GSIT; French Interbank Teleclearing System)	www.gsit.fr
	은행간자금이체센터 (CRI; Center for Interbank Funds Transfers)	www.cri.fr

구 분	기 관 명	웹사이트
독일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www.bundesbank.de
	중앙예탁기구(Clearstream banking AG Frankfurt)	www.clearstream.com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	www.bankofengland.co.uk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www.fsa.gov.uk
	CHAPS(CHAPS Clearing Company Ltd)	www.chapsco.co.uk
	증권예탁기관(EUI)	www.crestco.co.uk
	UK Payments Administration	www.ukpayments.org.uk
	증권거래소(LSE; London Stock Exchange)	www.londonstockexchange.com
이탈리아	이탈리아중앙은행(Banca d'Italia)	www.bancaditalia.it
	중앙예탁기관(Monte Titoli)	www.montetitoli.it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	www.bankofcanada.ca
	지급결제협회 (CPA;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www.cdnpay.ca
	증권예탁원 (CDS; Canadian Clearing and Depository Securities Inc.)	www.cds.ca
호주	호주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	www.rba.gov.au
	금융감독청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www.apra.gov.au
	증권위원회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www.asic.gov.au
	지급결제협회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www.apca.com.au

부록4 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가. 지급결제수단별 결제건수

(연간 총건수)

(천건)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음·수표 ¹⁾	872,322	820,847	1,152,953	1,186,499	1,104,383
계좌이체	2,564,543	2,799,932	3,108,877	3,473,618	3,688,711
입금이체	1,546,830	1,648,329	1,799,077	2,045,554	2,314,028
(신한은금융망)	(1,716)	(1,986)	(2,084)	(2,254)	(2,541)
(지로입금이체) ²⁾	(475,664)	(434,000)	(411,799)	(423,566)	(444,899)
(전자금융공동망)	(639,725)	(810,197)	(950,119)	(1,166,907)	(1,401,747)
(타행환공동망)	(223,431)	(179,054)	(181,785)	(163,916)	(134,544)
(CD/ATM계좌이체)	(123,328)	(141,026)	(165,784)	(188,756)	(218,456)
(CMS입금이체)	(65,776)	(62,455)	(62,827)	(71,052)	(81,567)
(지방은행공동망)	(414)	(326)	(237)	(200)	(168)
(전자상거래공동망)	(16,776)	(19,284)	(24,442)	(28,903)	(30,107)
출금이체	1,017,713	1,151,603	1,309,800	1,428,064	1,374,683
(지로출금이체) ³⁾	(452,724)	(504,129)	(582,129)	(648,909)	(664,765)
(CMS출금이체)	(564,989)	(647,474)	(727,671)	(779,155)	(709,918)
카드	2,356,461	2,878,382	3,476,367	4,004,354	4,912,109
신용카드	2,271,668	2,668,429	3,129,655	3,472,474	4,147,405
(물품 및 용역구매)	(2,068,185)	(2,493,606)	(2,970,141)	(3,317,299)	(3,980,641)
(현금서비스)	(203,483)	(174,823)	(159,514)	(155,175)	(166,763)
직불카드	1,106	3,533	2,465	1,834	1,335
체크카드	77,632	195,516	328,896	510,877	742,592
선불카드	6,056	10,903	15,352	19,169	20,777
전자화폐	158,112	153,876	159,797	128,574	111,932
계	5,951,206	6,653,037	7,897,993	8,793,045	9,817,134

주: 1) 2006년부터 발행창구에 직접 지급제시되어 결제되는 어음·수표(발행창구제시어음)를 포함

2) 지로 일반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3) 지로 자동계좌이체

(일평균 건수)¹⁾

(천건)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음·수표 ²⁾	3,489.3	3,283.4	4,738.0	4,803.6	4,435.3
계좌이체	9,269.6	9,976.8	11,062.0	12,251.2	12,695.5
입금이체	5,198.8	5,370.3	5,780.6	6,469.5	7,174.7
(신한은금융망)	(6.9)	(7.9)	(8.4)	(9.1)	(10.2)
(지로입금이체)	(1,902.7)	(1,736.0)	(1,660.5)	(1,714.8)	(1,786.7)
(전자금융공동망)	(1,747.9)	(2,219.7)	(2,603.1)	(3,197.0)	(3,829.9)
(타행환공동망)	(893.7)	(716.2)	(733.0)	(663.6)	(540.3)
(CD/ATM계좌이체)	(337.0)	(386.4)	(454.2)	(517.1)	(596.9)
(CMS입금이체)	(263.1)	(249.8)	(253.3)	(287.7)	(327.6)
(지방은행공동망)	(1.7)	(1.3)	(1.0)	(0.8)	(0.7)
(전자상거래공동망)	(45.9)	(53.0)	(67.1)	(79.3)	(82.4)
출금이체	4,070.9	4,606.4	5,281.5	5,781.6	5,520.8
(지로출금이체)	(1,810.9)	(2,016.5)	(2,347.3)	(2,627.2)	(2,669.7)
(CMS출금이체)	(2,260.0)	(2,589.9)	(2,934.2)	(3,154.5)	(2,851.1)
카드	6,438.4	7,886.0	9,524.3	10,970.8	13,421.1
신용카드	6,206.7	7,310.8	8,574.4	9,513.6	11,331.7
(물품 및 용역구매)	(5,650.8)	(6,831.8)	(8,137.4)	(9,088.5)	(10,876.1)
(현금서비스)	(556.0)	(479.0)	(437.0)	(425.1)	(455.6)
직불카드	3.0	9.7	6.8	5.0	3.6
체크카드	212.1	535.7	901.1	1,399.7	2,028.9
선불카드	16.5	29.9	42.1	52.5	56.8
전자화폐	432.0	421.6	437.8	352.3	305.8
계	19,628.7	21,567.7	25,762.0	28,377.9	30,857.7

주: 1) 전자금융공동망, CD/ATM계좌이체, 카드, 전자화폐는 월력일수, 여타 수단은 영업일수 기준

2) 2006년부터 발행창구제시어음 포함

나. 지급결제수단별 결제금액

(연간 총금액)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음·수표 ¹⁾	3,700,291	3,605,613	5,829,797	6,712,513	7,852,678
계좌이체	31,243,571	35,228,386	38,073,231	44,166,834	51,472,334
입금이체	31,159,687	35,133,671	37,961,640	44,034,781	51,332,536
(신한은금융망)	(26,936,417)	(30,166,234)	(31,929,139)	(36,826,610)	(43,026,770)
(지로입금이체) ²⁾	(89,207)	(87,284)	(90,546)	(94,175)	(98,039)
(전자금융공동망)	(3,179,252)	(3,925,528)	(4,938,793)	(6,085,677)	(7,172,981)
(타행환공동망)	(801,925)	(784,571)	(806,080)	(812,205)	(812,556)
(CD/ATM계좌이체)	(125,499)	(143,353)	(169,344)	(186,690)	(189,929)
(CMS입금이체)	(21,875)	(20,821)	(20,560)	(22,135)	(25,880)
(지방은행공동망)	(2,404)	(1,854)	(1,739)	(1,577)	(1,379)
(전자상거래공동망)	(3,108)	(4,025)	(5,439)	(5,712)	(5,003)
출금이체	83,884	94,716	111,591	132,053	139,798
(지로출금이체) ³⁾	(33,048)	(35,536)	(42,304)	(52,266)	(55,726)
(CMS출금이체)	(50,837)	(59,179)	(69,287)	(79,787)	(84,072)
카드	355,473	369,175	384,130	423,490	484,300
신용카드	352,506	360,699	370,959	403,632	456,421
(물품 및 용역구매)	(225,932)	(255,476)	(279,009)	(317,648)	(367,439)
(현금서비스)	(126,574)	(105,223)	(91,949)	(85,985)	(88,982)
직불카드	70	174	113	79	57
체크카드	2,637	7,774	12,330	18,855	26,802
선불카드	260	528	728	923	1,020
전자화폐	125	119	113	105	96
계	35,299,460	39,203,293	44,287,270	51,302,942	59,809,408

주: 1) 2006년부터 발행창구에 직접 지급제시되어 결제되는 어음·수표(발행창구제시어음)를 포함

2) 지로 일반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3) 지로 자동계좌이체

(일평균 금액)¹⁾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음·수표 ²⁾	14,801.2	14,422.5	24,045.0	27,176.2	31,536.9
계좌이체	120,887.8	135,785.3	146,918.2	170,602.8	197,262.7
입금이체	120,552.3	135,406.5	146,468.2	170,068.1	196,701.2
(신한은금융망)	(107,849.0)	(120,664.9)	(128,746.5)	(149,095.6)	(172,798.3)
(지로입금이체)	(356.8)	(349.1)	(365.1)	(381.3)	(393.7)
(전자금융공동망)	(8,686.5)	(10,754.9)	(13,530.9)	(16,673.1)	(19,598.3)
(타행환공동망)	(3,207.7)	(3,138.3)	(3,250.3)	(3,288.3)	(3,263.3)
(CD/ATM계좌이체)	(342.9)	(392.7)	(464.0)	(511.5)	(518.9)
(CMS입금이체)	(87.5)	(83.3)	(82.9)	(89.6)	(103.9)
(지방은행공동망)	(9.6)	(7.4)	(7.0)	(6.4)	(5.5)
(전자상거래공동망)	(12.3)	(15.8)	(21.5)	(22.4)	(19.3)
출금이체	335.5	378.9	450.0	534.6	561.4
(지로출금이체)	(132.2)	(142.1)	(170.6)	(211.6)	(223.8)
(CMS출금이체)	(203.3)	(236.7)	(279.4)	(323.0)	(337.6)
카드	971.2	1,011.4	1,052.4	1,160.2	1,323.2
신용카드	963.1	988.2	1,016.3	1,105.8	1,247.1
(물품 및 용역구매)	617.3	699.9	764.4	870.3	1,003.9
(현금서비스)	345.8	288.3	251.9	235.6	243.1
직불카드	0.2	0.5	0.3	0.2	0.2
체크카드	(7.2)	(21.3)	(33.8)	(51.7)	(73.2)
선불카드	(0.7)	(1.4)	(2.0)	(2.5)	(2.8)
전자화폐	0.3	0.3	0.3	0.3	0.3
계	136,660.6	151,219.6	172,015.9	198,939.5	230,123.0

주: 1) 전자금융공동망, CD/ATM계좌이체, 카드, 전자화폐는 월력일수, 여타 수단은 영업일수 기준

2) 2006년부터 발행창구제시어음 포함

다.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건수

(연간 총건수)

(천건)

	2004	2005	2006	2007	2008
거액결제시스템 ¹⁾	1,716	1,986	2,084	2,254	2,541
원화자금이체	1,491	1,764	1,863	2,041	2,320
(총액결제)	(1,331)	(1,619)	(1,743)	(1,935)	(2,211)
(차액결제)	(160)	(145)	(120)	(106)	(110)
국고금수급	212	209	208	201	208
한국은행대출	6.7	6.8	6.7	5.8	5.6
국공채거래 ²⁾	5.5	6.0	5.7	6.2	6.5
소액결제시스템	3,745,146	3,924,369	4,219,774	4,557,996	4,714,940
어음교환시스템	872,322	820,847	810,294	805,228	747,547
지로시스템	928,388	938,129	993,928	1,072,475	1,109,664
은행공동망	1,944,436	2,165,393	2,415,552	2,680,293	2,857,729
(전자금융공동망)	(639,725)	(810,197)	(950,119)	(1,166,907)	(1,401,747)
(타행환공동망)	(223,431)	(179,054)	(181,785)	(163,916)	(134,544)
(CD공동망)	(432,219)	(443,071)	(466,007)	(468,326)	(498,343)
(CMS공동망)	(630,765)	(709,929)	(790,498)	(850,207)	(791,486)
(지방은행공동망)	(414)	(326)	(237)	(200)	(168)
(전자상거래공동망)	(16,776)	(19,284)	(24,442)	(28,903)	(30,107)
(직불카드공동망)	(1,106)	(3,533)	(2,465)	(1,834)	(1,335)
계	3,746,862	3,926,356	4,221,858	4,560,250	4,717,481

주: 1) 신한은금융망

2)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거래

(일평균 건수)¹⁾

(천건)

	2004	2005	2006	2007	2008
거액결제시스템 ²⁾	6.87	7.95	8.40	9.12	10.20
원화자금이체	5.97	7.06	7.51	8.26	9.32
(총액결제)	(5.33)	(6.48)	(7.03)	(7.83)	(8.88)
(차액결제)	(0.64)	(0.58)	(0.48)	(0.43)	(0.44)
국고금수급	0.85	0.84	0.84	0.81	0.84
한국은행대출	0.03	0.03	0.03	0.02	0.02
국공채거래 ³⁾	0.02	0.02	0.02	0.03	0.03
소액결제시스템	13,599	14,089	15,150	16,273	16,456
어음교환시스템	3,489	3,283	3,267	3,260	3,002
지로시스템	3,714	3,753	4,008	4,342	4,456
은행공동망	6,396	7,053	7,875	8,671	8,997
(전자금융공동망)	(1,748)	(2,220)	(2,603)	(3,197)	(3,830)
(타행환공동망)	(894)	(716)	(733)	(664)	(540)
(CD공동망)	(1,181)	(1,214)	(1,277)	(1,283)	(1,362)
(CMS공동망)	(2,523)	(2,840)	(3,187)	(3,442)	(3,179)
(지방은행공동망)	(1.66)	(1.30)	(0.95)	(0.81)	(0.67)
(전자상거래공동망)	(46)	(53)	(67)	(79)	(82)
(직불카드공동망)	(3.02)	(9.68)	(6.75)	(5.02)	(3.65)
계	13,606	14,097	15,159	16,282	16,466

주: 1)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월력일수, 한은금융망 및 여타 공동망은 영업일수 기준

2) 신한은금융망

3)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거래

라.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금액

(연간 총금액)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거액결제시스템 ¹⁾	26,936,417	30,166,234	31,929,139	36,826,610	43,026,770
원화자금이체	25,267,868	28,168,134	30,090,783	34,902,521	40,713,300
(총액결제)	(22,322,646)	(25,747,122)	(27,489,280)	(31,743,648)	(36,746,621)
(차액결제)	(2,945,223)	(2,421,012)	(2,601,503)	(3,158,872)	(3,966,680)
국고금수급	614,337	623,135	718,943	743,987	922,148
한국은행대출	220,497	218,247	228,041	177,733	162,285
국공채거래 ²⁾	833,716	1,156,718	891,373	1,002,369	1,229,036
소액결제시스템	8,068,320	8,726,418	9,960,656	11,782,771	13,652,423
어음교환시스템	3,700,291	3,605,613	3,758,121	4,388,977	5,153,210
지로시스템	122,255	122,820	132,850	146,442	153,765
은행공동망	4,245,775	4,997,985	6,069,685	7,247,352	8,345,448
(전자금융공동망)	(3,179,252)	(3,925,528)	(4,938,793)	(6,085,677)	(7,172,981)
(타행환공동망)	(801,925)	(784,571)	(806,080)	(812,205)	(812,556)
(CD공동망)	(186,304)	(201,833)	(227,674)	(240,181)	(243,519)
(CMS공동망)	(72,711)	(80,000)	(89,847)	(101,922)	(109,952)
(지방은행공동망)	(2,404)	(1,854)	(1,739)	(1,577)	(1,379)
(전자상거래공동망)	(3,108)	(4,025)	(5,439)	(5,712)	(5,003)
(직불카드공동망)	(70)	(174)	(113)	(79)	(57)
계	35,004,737	38,892,652	41,889,795	48,609,381	56,679,192

주: 1) 신한은금융망

2)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거래

(일평균 금액)¹⁾

(십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거액결제시스템 ²⁾	107,849	120,665	128,747	149,096	172,798
원화자금이체	101,175	112,673	121,334	141,306	163,507
(총액결제)	(89,394)	(102,988)	(110,844)	(128,517)	(147,577)
(차액결제)	(11,781)	(9,684)	(10,490)	(12,789)	(15,930)
국고금수급	2,457	2,493	2,899	3,012	3,703
한국은행대출	882	873	920	720	652
국공채거래 ³⁾	3,335	4,627	3,594	4,058	4,936
소액결제시스템	28,006	29,704	33,485	39,423	45,307
어음교환시스템	14,801	14,422	15,154	17,769	20,696
지로시스템	489	491	536	593	618
은행공동망	12,716	14,790	17,796	21,061	23,993
(전자금융공동망)	(8,686)	(10,755)	(13,531)	(16,673)	(19,598)
(타행환공동망)	(3,208)	(3,138)	(3,250)	(3,288)	(3,263)
(CD공동망)	(509)	(553)	(624)	(658)	(665)
(CMS공동망)	(291)	(320)	(362)	(413)	(442)
(지방은행동망)	(9.6)	(7.4)	(7.0)	(6.4)	(5.5)
(전자상거래공동망)	(12)	(16)	(21)	(22)	(19)
(직불카드공동망)	(0.2)	(0.5)	(0.3)	(0.2)	(0.2)
계	135,855	150,368	162,232	188,519	218,105

주: 1)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월력일수, 한은금융망 및 여타 공동망은 영업일수 기준

2) 신한은금융망

3)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거래

색 인

- 1.국문색인
- 2.영문색인

색인 국문색인

ㄱ

가계수표	68
가치교환형 결제	4, 196
감독	247
감시	243
감시대상	249
개선권고	261
거래정지처분	125
거액결제시스템	8, 43, 88, 115
결제	4
결제리스크	18, 22
거액결제리스크	113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186, 190
결제완결성	34, 35
결제유동성	88, 98
결제은행	6, 200
결제이행보증	198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체	189
결제적립금	225
결제전용예금	93
결제회원	47
경영지도비용	109, 191
계좌대체	48, 199
계좌이체 PG	178
교환순지급금액	32
국공채 발행 · 상환	106
국제결제은행(BIS)	16

국제증권업협회(ISSA)	219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16
금융결제원	46
금융보안사고	84
금융투자회사	6, 54
금융EDI	285
기계교환	120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72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62
기타지급결제시스템	249
기프트카드(gift card)	76

ㄴ

납부자자동이체	143
내국신용장	63, 106

ㄷ

다자간 순채무한도	185
다자간 차감계산	8, 195
당좌예금계좌	4, 6, 10, 93
당좌수표	66
대기제도	95
대량지급	134, 144
대리교환	119
대리교환 참가은행	119
대체결제	48

대체비용리스크	19, 20
동시처리	89, 93, 95
다자간 동시처리	95
양자간 동시처리	95

□

매매보호서비스(escrow)	173
매매전문회원	47
모니터링(monitoring)	253
모바일뱅킹	58, 72, 73
모바일뱅킹서비스(IC칩 방식)	73
모바일뱅킹서비스(VM방식)	73
모바일신용카드	76
무권화	199, 294
미결제순채무액	187
미결제어음통보제도	122

ㅂ

반일물 콜거래	99
발행한도	68, 82
밴(VAN)사업자	57, 157, 164
법률리스크	21, 35, 113
법화(법정통화)	11, 42, 245
별단예금	65, 124
보안사고	84
보이스피싱	86, 151
보통지급지시	94
부도어음	123

부도반환사유	123
부도어음 업무처리절차	124
부동화(immobilization)	199
부의 외부효과	243, 244
분리결제	195
비은행금융기관	32, 291

ㅅ

사고어음	124
사고신고담보금	124
사전담보제	19, 185, 193
상계결제	43, 94, 114
상대순신용한도	185
상호의존성	251
서민금융기관	50, 54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50, 54, 65, 189
서버간 직접접속	92, 114
서울어음교환소	120
선물거래소	47
선불전자지급수단	56, 81
선불업자	56
선불카드	55, 56, 76
소액결제시스템	9, 46, 117, 181
손실공동분담제	186
손해배상공동기금	224
수교환	120
수납장표	127
수취인지정자금이체	102
수표	64
수표법	27, 33, 64, 119

순수취은행	98
순지급은행	98
순지급한도제	100
순채무한도	187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	32, 187
시스템리스크	21
시장집중	243
신속지급지시	94
신용공여	62, 78, 82, 117
신용리스크	19, 88, 183, 235
신용카드	33, 55, 75, 169
신용카드 PG	56, 178
신용카드 뱅(VAN)사업자	57
신한은금융망	43, 89, 92
실시간(총액)결제	8, 19, 280



안전성	243
야간교환제도	120
약속어음	62, 82
양자간 차감계산	8
어음	62, 119
어음교환	119
어음교환소	119
어음교환심사위원회	120
어음교환업무규약	119, 123
어음법	27, 33
어음판독분류기	120
업무지속계획	265
업무처리규정	7

역외선물환	231
영란은행(Bank of England)	12, 37, 295
예약자금이체	98
예약자계좌부	49, 199
외부효과	244
외화자금이체	49, 105
외화자금이체시스템	49, 229
외환결제리스크	235
외환결제리스크 소위원회	238
외환동시결제	5, 49, 228, 230
요구불예금	53
요식증권	63, 65
우편대체계좌제도	132
우회선입선출법(by-pass FIFO)	95
운영리스크	21
원금리스크	20
원화자금이체	101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201
유동성리스크	20
유동성 절약형 RTGS시스템	281
융통어음	63
은행공동망	46, 147
은행연합회	63
은행지로관리소	46
은행 뱅(VAN)업자	57
이연차액결제	8, 88
이용수수료	111
이자정산방식	66
이체한도	87
인식시차	90
인터넷뱅킹	72, 166

인터넷지로	133, 145
일관처리(STP)	92
일중당좌대출	98, 99
입금이체	68, 70, 162

스

자금관리서비스(CMS)	70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158
자기문자(MICR)	121, 135
자기앞수표	65
자동이체	69, 132, 1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32, 247
자본시장법	32, 46, 54, 224
자유한도	100
장표방식 지급수단	5, 61
재교환(unwinding)	183
적수보전방식	65
전자금융거래법	27, 33, 57, 249
전자금융공동망	166
전자금융보조업자	57
전자방식 지급수단	61, 118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72, 175, 177
전자어음	62, 82
전자어음관리기관	82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82, 172
전자정보교환	127
전자채권 보관은행	173
전자자금이체	27, 147
전자지급결제대행	177

전자화폐	79, 164
전자화폐공동망	164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	57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75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210
중앙거래당사자(CCP)	198, 222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222
중앙예탁기구(CSD)	48, 199
중요지급결제시스템	33, 44, 184, 249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184
증권거래소	47
증권결제	194
증권결제시스템	194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220
증권계좌대체	48, 49, 199
증권대금동시결제	5, 103
증권보관기관(custodian)	221
지급	4
지급결제	3
지급결제 참여기관	6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6, 45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협의회	262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16, 184, 238
지급결제중계센터	69
지급서비스	6, 53
지급수단	3, 5
지급준비금	14, 191
지급지시	4, 68, 94
지로	69, 132
(지로) 일반계좌이체	69, 134

(지로) 자동계좌이체	69, 139
지로시스템	117, 132
지방어음교환소	126
지방은행공동망	163
지정시점결제	8
직불카드	77
직불카드공동망	156
진성어음	63
질권등록	106
집중예탁	48, 199

ㄷ

차감	8, 24
차액결제	8, 32, 191
차액결제 참가기관	31
차액결제대행	32, 19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182, 186
차액결제시스템	8, 182
차액결제위탁기관	32, 191
차액계산	4
참가기관	46, 119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207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2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35
청산	4, 47, 48
청산기관	6, 198
체크카드	74, 77
충액결제	8
충액결제시스템	8, 88, 93
최종대부자	11, 15, 42
추심	68, 147

출금이체	68, 71, 161

ㄹ

코스닥증권시장	47, 197, 205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205
콜거래시스템	93, 102
콜자금 결제	102

ㄴ

타행환	70, 147
타행환공동망	147
텔레뱅킹	71
통신과금서비스	179
통합도산법	34, 35
특별참가은행	119

ㄷ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197, 206
펌뱅킹서비스	70
평가	243, 257

ㄹ

한국거래소	47
한국예탁결제원	48
한국은행 대출	93, 101, 108
한국은행법(한은법)	28
한국전자금융	57, 155

한국증권대체결제	48
한은금융망	19, 43
헤르스타트(Herstatt)	22, 228
현금	3, 5, 61
혼입어음	122
혼합형결제시스템	8, 89, 93
환거래네트워크	226
환거래은행	106, 226, 227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	213
환어음	63
환업무	53

색인 영문색인

A

A장표	135
ACH(Automated Clearing House)	38, 181
ARS공동망	166
ATM(Automated Teller Machine)	57, 70, 150

B

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72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	181
Bank of England	12
Bankline	163
Banktown	72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265
bilateral net credit limits	185
bilateral net settlement	182
BIS	16, 183
BOJ-Net	116
BOK-wire+	92
book-entry	5, 196
By-pass FIFO	95

C

CD(Cash Dispenser)	70, 150

CD/ATM	70, 150
CD공동망	150
CHAPS	115
check card	74
CHIPS	115
clearing	4
clearing house	4, 119, 198
Clearstream Banking AG Frankfurt	216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230, 281
CLS 참가기관	232
CLS 서비스	230
CLS 시스템	230, 233
CLS 은행	230
CMS(Cash Management Service)	70, 71
CMS 입금이체	70, 162
CMS 출금이체	71, 161
CMS공동망	158
CNS(Continuous Net Settlement)	281
collateral requirements	185
correspondent banking network	226
CPSS	16
credit card	74
credit risk	19
credit transfer	68, 287
Crest	215
CSD(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199
custodian	221
CVM(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76

D

debit cap	185
debit card	74
debit transfer	69
defaulters pay	186
deferred net settlement	88
dematerialization	199
direct debit	139, 287
DNS(Designated-time Net Settlement)	88
DTC	215
DTCC	215
DvP(Delivery versus Payment)	196

E

EBA(Euro Banking Association)	23, 116
ECB(European Central Bank)	9, 116, 282
escrow	173
ECU(European Currency Unit)	2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144, 285
electronic money	79
EMEAP	16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	181
EUI	215
Eurex clearing AG	216
Eurex exchange	216

Euroclear France	215
Euronext Paris	215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13, 38

F

FedACH	181
Fedwire	7, 115
FICC	215
free of payment	217

G

G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75
G-30	219
GIRO	69

H

Herstatt	22, 228
HSM 방식 공인인증서	87
hybrid system	8, 89

I

ICSD	199
immobilization	199
interdependency	251
IOSCO	16, 220

ISSA	219	Mybi	79
J		N	
JASDEC	216	NCSD	199
JGBCC	216	netting	4, 8, 24
JSCC	216	nostro account	226
K		NSCC	215
K-cash	79, 117	O	
K-cash공동망	117, 164	OCR	135, 136
L		operational risk	19, 21
Lamfalussy 기준	183, 184, 219	OTP(One-Time Password)	87, 109
LCH, Clearnet Ltd.	215	overnight credit	117
LCH, Clearnet SA	215	oversight	243
legal risk	19	P	
liquidity risk	19	paperless	61
loss-sharing	186	PG(Payment Gateway)	56, 177
LSE(London Stock Exchange)	215	PG서비스	177
M		PG업자	56
MICR	121, 135	phone bill	180
Monetary Control Act	13, 38	principal risk	19, 235
MTS France	215	PSTN	71
multilateral net debit caps	185	PvP	5, 226, 238
multilateral net settlement	182	R	

각 장별 집필자

I. 지급결제제도 개관

제1장	결제연구반	과장 오석은
제2장	결제연구반	과장 장강봉
제3장	결제연구반	조사역 최강욱

II. 지급결제제도 관련법규 및 참여기관

제1장	결제안정팀 결제정책팀	차장 김영일 조사역 강정미
제2장	결제정책팀	과장 조재현

III. 지급수단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제1장	결제운영팀 전자금융팀	차장 성순현(제1~3절) 과장 김정규(제4~7절)
제2장	한은망재구축추진반	과장 최진만
제3장	결제운영팀 전자금융팀 비은행결제반	차장 성순현(제1~4절) 과장 김정규(제5~6절) 조사역 양재운(제7절)
제4장	결제정책팀 결제정책팀	과장 남선우(제1,7,8절) 조사역 권용오(제2~6절)
제5장	결제정책팀	과장 김원익

IV.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제1장	결제안정팀	조사역 유 리
제2장	결제안정팀	조사역 유 리

V.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지속계획

제1장	결제운영팀	차장 전익호
제2장	결제운영팀 결제안정팀	차장 전익호(제1절) 과장 김대용(제2절)

VI.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와 과제

결제연구반	조사역 최지아(제1~2절)
결제정책팀	과장 김규수(제3절)

주: 집필진의 소속 부서는 2009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년 12월 23일 인쇄 · 2009년 12월24일 발행

발행인	이성태
편집인	전한백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인쇄인	이동익
인쇄소	동화인쇄공사

ISBN 978-89-92858-99-193320

◆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750-6629, 6630)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ISBN 978-89-92858-99-193320